軍史

Military History

2019.6. 제111호

- 북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조직 · 간부구성
- 주일 미군기지 일본인노무자의 6 · 25전쟁 종군활동과 귀환
- 조선후기 水原府의 軍役 변통과 洞布制 시행
-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성주(星州) 전투
- 강원도 동해안 지역 평지 포곡식 산성의 축조시기와 성격
- 인도의 국방개혁: 전문성과 합동성 추구의 역사
-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로마군 공성전의 전술사적 의미

[서 평]

-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북한사, 북소관계
  – 기광서 저,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선인, 20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111號
2019. 6.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19. 6. 제111호

1	▶ 북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조직 · 간부구성	김선호
47	▶ 주일 미군기지 일본인노무자의 6 · 25전쟁 종군활동과 귀환	양영조
89	▶ 조선후기 水原府의 軍役 변통과 洞布制 시행	임성수
131	▶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성주(星州) 전투	김종수
163	▶ 강원도 동해안 지역 평지 포곡식 산성의 축조시기와 성격	홍영호
217	▶ 인도의 국방개혁: 전문성과 합동성 추구의 역사	손한별
259	▶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로마군 공성전의 전술사적 의미	배은숙

Military History

軍史

Contents | 2019. 6. 제111호

[서 평]

291 ▶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북한사, 북소관계 이재훈

– 기광서 저,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부 록

1. 연구소 동정 ····· 305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 307
3. 『軍史』誌 投稿案內 ····· 309
4. 연구윤리예규 ····· 312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1-45
https://doi.org/10.29212/mh.2019..11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조직·간부구성

김선호*

1. 머리말
2. 민족보위성의 설립과정
   가. 민족보위국의 설립과 성격
   나.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내각
3.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
   가. 민족보위성의 조직과 간부
   나. 민족보위성 간부구성의 성격
4. 민족보위성의 정치세력과 간부충원
   가. 민족보위성의 정치세력 분포
   나. 정파연합체제와 간부충원
5. 맺음말

1. 머리말

북한의 국가기관 중에서 성(省)은 "국가 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조교수

이다.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 관리업무에서 성에 해당하는 부문을 지도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와 조선인민군 고급 장관의 임면(任免)은 내각의 권한이었다.[1] 성은 성의 지도자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서 자체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성의 장관인 상(相)은 "단독적인 지도자"로서 성령(省令)의 심의, 사업의 집행·검열, 간부의 선택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2] 즉 북한의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은 내각의 일부로서 인민군을 지도하고 관할하는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북한의 민족보위성은 1948년 9월 9일에 공식적으로 정부가 수립되면서 설립되었다. 인민군은 정부 수립 이전까지 조선인민군총사령부(朝鮮人民軍總司令部)에서 지휘했으나,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족보위성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6·25전쟁 때까지 인민군을 육성하고 전쟁을 준비한 기관이 바로 민족보위성이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민족보위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 선행연구는 인민군의 창설과정 속에서 민족보위성을 주목했기 때문에 주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정, 편성, 간부문제를 집중적으로 해명하였다. 그 결과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에서 1948년 9월에 민족보위성으로 재편되는 과정, 제105탱크여단·제1중앙정치학교·육전대(陸戰隊) 등 민족보위성의 예하부대 관할계통, 민족보위성의 부서 편성, 총참모장·작전국장·간부부장을 비롯한 간부구성 등이 밝혀졌다.[3]

---

1) 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1950.7.20, 18~19; 23쪽.
2) 김택영, 『최고주권기관과 국가중앙집행기관』, 민주조선사, 1949.9, 83~85쪽.
3) 민족보위성은 주로 인민군의 창설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연구는 다음을 참고 바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673~699쪽;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44~178쪽;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139~176쪽;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8, 33~62쪽; 김광운, 「전쟁 이전 북한인민군의 창설과정」, 국방부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민족보위성의 조직과 간부에 대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족보위성의 설립과정·조직체계·간부구성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적지 않으며, 민족보위성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대표적으로 민족보위성의 전신인 민족보위국(民族保衛局)의 존재와 설립과정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민족보위성의 부처와 간부도 현재까지 9~10개 부처와 15~17명의 간부 이름만 알려져 있다. 또한 간부들의 직책도 선행연구마다 이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황호림(黃虎林)이 민족보위성 부총참모장이라는 견해와 민족보위성 작전국장이라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4]

이와 함께 민족보위성의 정치세력 분포에 대해서도 해명해야할 사실이 적지 않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김일성(金日成) 등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출신이 창군을 주도했으며, 여기에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 출신이 참여하는 형태로 창군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5] 다만 군대의 정치세력 분포에 대해서는 항일연군의 독점적인 군권 장악을 강조하는 견해와,[6]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의용군 출신의 군권 진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7]

그러나 절반이 넘는 간부의 이름·경력이 미확인된 상태에서 정치세력 분포를 분석하는 것은 논리적 토대가 미약하다. 또한 각 정치세력의 권력투쟁과 군대의 주도권 장악문제에 집중할 경우, 각 정치세력이 군대 내부에서 형성하고 있던 역할분담과 역학관계를 포착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1, 군사편찬연구소, 2001, 3~53쪽;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경남대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아카데미, 2006, 63~8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1, 군사편찬연구소, 2004, 297~303쪽;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 오름, 2008, 273~298쪽.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4), 297쪽; 장준익, 앞의 책, 90~91쪽.

5) 김광운, 앞의 논문, 3~53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 250~270쪽; 김광수, 앞의 책, 63~78쪽; 한용원, 앞의 책, 273~298쪽.

6) 김광운, 앞의 논문, 52~53쪽.

7) 서동만, 앞의 책, 259~270쪽.

하기 어렵다. 가령, 인민군이 '김일성 빨찌산부대의 산아(産兒)'로 규정된 것[8]은 다른 정치세력이 군권투쟁에서 밀려났거나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각 정치세력이 군대의 권한을 분점한 상태에서 내부 단결과 무력통일에 필요한 창군이념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민군이 창설된 지 2년여 만에 현대적 공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규군으로 육성된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갈등과 충돌보다 권한의 분담과 분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정치세력이 군대에서 맡은 역할은 개전 당시 인민군의 정치적·군사적 정체성을 해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정과 조직·간부구성을 자료에 입각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인민군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 간부들의 이름과 직책, 그들의 정치적 경력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 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정부수립과정 속에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민족보위성의 간부구성과 간부충원이 북한의 군대와 정치체제 안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2. 민족보위성의 설립과정

가. 민족보위국의 설립과 성격

북한의 군사지휘기관은 1946년부터 여러 차례 조직이 변화하였다.

8) 김웅, 「조선인민군은 공화국의 견고한 성벽이다」,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1950년 3호,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2.1, 29쪽, NARA, RG 242, SA 2009, Box 3, Item 232. 김웅(金雄)은 조선의용군 제1지대장 출신이다.

북한지역에는 1946년 8월 15일에 최초로 보안간부훈련대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가 창설되었으며, 대대부는 1947년 5월 17일에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北朝鮮人民集團軍總司令部)로 개편되었다. 집단군총사령부는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총사령부로 개편되었다.[9] 1948년 9월 9일에 북한정부가 수립되면서 내각에 민족보위성이 설립되었고, 이때부터 민족보위성에서 인민군을 총괄적으로 관할하였다. 그런데 민족보위성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 모체가 된 기관이 있다.

그 기관은 1948년 2월에 신설된 북조선인민위원회 민족보위국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2월 4일에 제58차 회의를 개최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민족보위국 설치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우리 강토와 우리 인민의 자유를 보위하는 역사적 임무를 담임"하기 위해 민족보위국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족보위국은 인민군에 대한 "행정적 통제부서"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2월 5일에 열린 제21차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책(金策)이 민족보위국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부위원장과 민족보위국장을 겸임하도록 조치되었다.[10]

민족보위국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군사담당부서로 설치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장이 별도로 임명되었던 것에 비해, 북조선인민위원회 민족보위국장은 부위원장 김책이 겸임하였다. 민족보위국의 설립 사실은 주한미군 정보참모부에도 포착되었다. 주한미군이 청취한 평양라디오방송에 따르면, 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崔庸健)은 2월 8일에 조선인민군 창설식의 연설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민족

9) 보안간부훈련대대부와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조직과 변화과정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김선호,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역사문제연구』38, 역사문제연구소, 2017.10; 김선호, 「북한의 통일전선 변화와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정책」, 『정신문화연구』4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12.

10) 조선중앙통신사 편, 『해방후 10년일지(1945-1955)』, 조선중앙통신사, 1955, 29쪽;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北朝鮮人民會議 第四次 會議 會議錄』, 朝鮮人民出版社, 1948, 159~168쪽.

보위국(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김책(Kim, Tchaik)이 민족보위국장이라고 공개하였다. 주한미군은 민족보위국이 군사담당부서라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다.[11]

민족보위국의 설립은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모스크바지도부·소련군사령부와 상호 협의한 결과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 12월에 개최한 회의에서 1948년 2월에 북조선인민회의를 소집해 임시헌법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에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슈티코프(Т. Ф. Штыков)에게 북조선인민회의 산하에 "민족보위국"을 설립하는 문제와 인민회의 폐막일에 인민군의 열병식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 모스크바지도부에 허가를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슈티코프는 북한의 요청을 즉시 몰로토프(В. М. Молотов)에게 전달하였다.[12]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슈티코프의 보고를 검토한 뒤, 1948년 1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민족보위국을 설치하며, 인민회의 마지막 날 평양시에서 1개 사단 및 군관학교의 참가 하에 군중집회와 조선인민군 열병식을 거행하도록 허가하였다.[13] 2월 2일, 소련군 제25군사령부 군사위원 레베제프(Н. Г. Лебедев) 소장은 제25군사령부에 민족보위국 창설에 관한 법령내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소련공산당 정치국은 2월 3일에 최종적으로 북조선인민회의 회의를 소집하는데 동의하였고, 민족보위국의 창설을 허가하였다. 같은 날, 레베제프는 슈티코프와 툰킨으로부터 "민족보위국을 창설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달받았다. 또한 슈티코프는 2월 5일에 레베제프에게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위조직과 제반조치를

11) G-2, USAFIK, *G-2 Weekly Summary*, No.126(1948.2.6~2.1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84쪽.
12)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슈티코프, 「몰로토프에게 보낸 보고」(1948.1), ЦАМО(러시아연방국방성문서보관소), ф. 172, оп. 614633, д. 3, лл. 1~2.
13) 기광서, 「북한 무력 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研究』28-3,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228쪽.

강구할 목적에서 민족보위국의 창설을 법령으로 선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14] 북조선인민회의는 2월 6~7일에 개최한 제4차 회의에서 민족보위국의 설립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고, 김책을 정식으로 민족보위국장에 임명하였다.[15] 즉 민족보위국은 1948년 2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모스크바지도부의 최종승인에 따라 조직되었다.

원래 인민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단위는 인민군총사령부였다. 그렇다면 민족보위국이 신설된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인 민족보위국과 군사지휘기관인 인민군총사령부의 상호 관계는 어떠했을까? 민족보위국은 인민군총사령부와 종적이든 횡적이든, 어떤 지시사항이나 보고사항 등 상호연락관계가 전혀 없었다.[16] 따라서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민족보위국을 행정적 통제부서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민족보위국은 인민군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정권기관의 군사담당부서가 아니었다. 민족보위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인민군은 인민군총사령부가 관할했고 총사령부의 지시를 받았다. 현재까지 민족보위국의 간부·부서·활동내용은 북한의 내부문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북조선로동당과 인민군의 극비문서까지 발견되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민족보위국이 설립될 당시, 최용건·강건(姜健)·무정(武亭) 등 창군사업을 주도해온 인물은 대부분 인민군총사령부에서 간부를 맡고 있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인민군 창설을 앞두고 긴급히 군사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민족보위국은 하루 뒤에 정식으로 창설될 조선인민군과 관련된 행정부서로 조직되었고, 김책이 국장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족보위국의 다른 간부와 실무부서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면,

---

14) 전현수 역,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46~48쪽; 기광서, 「소련공산당 정치국의 대한반도 관련 '결정'과 북한정부의 성격 구상(1945-1948)」, 『동방학지』14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373쪽.

15) 제25군사령관 코로트코프,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 관한 보고」(1948), ЦАМО, ф. 172, оп. 614633, д. 3, лл. 20~22.

16) 장준익, 앞의 책, 75~76쪽.

김책은 극소수의 전문인력만을 데리고 활동했던 것 같다. 그는 민족보위국에서 북한정부 수립 뒤에 창설할 군사담당부서를 조직하는 준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보위국은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의해 군대를 관장하는 행정적 통제부서로 규정되었지만, 조직과 인원의 미비로 인해 정권기관에서 주로 민족보위성을 창설하는 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민족보위국이 신설된 1948년 2월 7일부터 정부수립 직전인 9월 8일까지의 기간은 조선인민군총사령부가 인민군을 지휘하고 민족보위국이 행정적 통제기관의 창설을 준비하는 과도기였다.

나.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내각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된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분단정부 수립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유엔소총회는 1948년 2월에 미국 국무장관 마샬(George Marshall)이 제출한 단독선거 실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러자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은 3월 9일에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유엔소총회의 단독선거 결정을 반대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비판했다. 이날 김일성은 북조선민전 회의에 참석해 유엔소총회의 결정이 한반도를 경제적·정치적으로 분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17]

단독선거가 가시화되자, 북조선로동당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첫째, 노동당은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 등의 정치세력과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북조선민전은 3월 25일에 제26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정당·사회단체대표자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는 4월 19일에 평양에서 개막하였고,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는 6월 29일에 평양에서 개최되었다.[18]

17) 金日成, 「1948년 3월 9일 북조선민전 중앙위원회에서 진술한 연설」,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2권, 국립인민출판사, 1949.8.5, 93~110쪽.

둘째, 노동당은 북한지역에 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1948년 4월 28~29일에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 둘째 날인 4월 2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이 통과되었다.[19]

그런데 북한의 정치세력이 단독정부의 수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시점은 이보다 앞선 1948년 2월이다. 북조선인민회의는 2월 6~7일에 개최한 제4차 회의에서 3월 중순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조선의 임시헌법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20] 이들은 2월 6~7일에 단독정부의 헌법을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2월 8일에 한반도의 유일군(唯一軍)으로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이들이 인민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한 이유는 단독정부, 즉 자체적으로 천명한 한반도 차원의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무력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인민민주주의혁명의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3월부터 남북협상을 추진하였고 4월부터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한 정치세력들은 단독정부 수립에 착수하면서 미국정부와 소련정부에 한반도에서 미·소 양군을 철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철수요청은 4월 30일자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지도자협의회는 양군의 동시 철수가 "우리 조국에 조성된 현하 정세 하에서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단독정부 수립계획은 '외국군대의 동시 철수 → 전조선 정치회의 소집 → 임시정부 수립 → 조선입법

18)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7권, 국사편찬위원회, 1989, 734; 738; 742~743; 758쪽. 『북한관계사료집』은 다음부터 반복될 경우에 권수만 표기함.

19) 북한의 헌법 제정과정과 그 성격은 다음 연구에 상세히 해명되어 있다.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1, 선인, 2003, 614~639쪽;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472~485쪽.

20) 제25군 정치담당부사령관 레베제프, 「북조선인민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1948.2.9), ЦАМО, ф .172, оп. 614633, д. 3, л. 19.

기관선거 실시 → 헌법 제정 → 단독정부 수립'이었다.[21]

1948년 2월에 시작된 단독정부 수립과정은 인민군이 육성되고 소련군이 철수를 개시하면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7월 9~10일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월 25일에 북한의 전 체지역에서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조선최고인민회의는 9월 8일에 공식적으로 헌법을 채택하였다.[22]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9월 8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정권과 권한을 최고인민회의에 이양하였다.[23]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인민공화국의 국가형태는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민족통일전선정권으로 규정되었다. 즉, 노동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련립내각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정부는 한 계급의 리해나 한 당의 리해를 대표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전조선인민의 각계·각층과 각당·각파들의 대표들로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24]

북조선로동당은 북한정부를 연립정권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본질은 정부 성원(成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최고인민회의는 9월 9일에 정부 성원을 발표하였다. 북한정부는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외무상 겸임)·홍명희·김책(산업상 겸임), 국가계획위원장 정준택, 민족보위상 최용건, 국가검열상 김원봉, 내무상 박일우, 농림상 박문규, 상업상 장시우, 교통상 주녕하, 재정상 최창익, 교육상 백남운, 체신상 김정주, 사법상 리승엽, 문화선전상 허정숙, 로동상

21)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7권, 741~743쪽.
22)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7권, 760; 769~770; 773~774쪽.
23) 金日成, 「정권위양에 관한 성명-1948년 9월 8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앞의 책, 256쪽.
24) 許가이, 「北朝鮮勞動黨中央委員會 第3次會議에서 陳述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選擧總和와 黨團體들의 當面課業에 對한 報告」,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46권, 국사편찬위원회, 2005, 308쪽.

허성택, 보건상 리병남, 도시경영상 리용, 무임소상 리극로로 구성되었다.[25]

북한정부의 성원 20명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되었다. 정부 성원을 당별로 분류해보면, 노동당원은 김일성, 김책, 정준택, 박일우, 장시우, 주녕하, 최창익, 허정숙 등 8명이다. 민주당원은 최용건, 청우당원은 김정주가 유일했다. 남로당원은 부수상 박헌영, 농림상 박문규, 사법상 리승엽, 로동상 허성택, 보건성 리병남 등 5명이었다. 그 외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을 구성했던 우당(友黨) 출신은 홍명희(민주독립당), 김원봉(인민공화당), 백남운(근로인민당), 리용(신진당), 리극로(건민회) 등 5명이다. 북한정부는 남한에서 월북한 정치인들과 북한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연립정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정당을 고려하면 북한정부의 최대 당파는 북조선로동당이었으며, 초대 내각은 노동당 우위의 정권이었다.[26]

북한정부는 정부수립 직후에 정강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방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10일에 발표한 정강의 첫 번째로, 통일국가의 수립, "국토의 완정(完整),"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일성은 정강을 실현하기 위한 8대 대책 중 하나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시키는 사업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27] 즉, 북한정부는 정강을 통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민군을 강화하고, 인민군의 무력에 근거해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북한정부의 국가적 성격은 인민민주주의국가로 규정되었다.[28] 인

25) 김광운, 앞의 책, 669~671쪽; 서동만, 앞의 책, 226쪽; 기광서, 앞의 책, 516~518쪽.
26) 초대 내각의 성격은 다음 연구에 상세히 해명되어 있다. 서동만, 앞의 책, 225~228쪽; 기광서, 앞의 책, 517~521쪽.
27) 金日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강발표-1948년 9월 10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앞의 책, 257~264쪽.
28) '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서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정치적 형태를 뜻하는 용어다. 그·아·그마나베로브,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민주주의국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기능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내에서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능은 국가기관의 경제적·조직적·문화교양적 수준을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토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는 독립·자주권·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29] 인민민주주의국가는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사회주의의 토대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정부도 정부수립과 동시에 인민민주주의국가로서 군대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30]

북조선인민위원회 민족보위국은 정부가 수립된 당일인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으로 개편되었다.[31] 민족보위성은 인민군총사령부와 달리, 내각에 소속된 군대에 대한 행정적 통제부서였다. 즉, 민족보위성은 내각의 집행기관이다. 내각에는 12개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그 중 하나로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와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권한이 부여되었다. 민족보위성은 "내각이 처리할 문제 가운데서 민족보위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최고집행기관"이었다.[32]

법에 대한 제문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39권, 국사편찬위원회, 2003, 628쪽.

29) 브·쓰·마니꼽쓰끼,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 『근로자』제22호, 로동당출판사, 1949.11.30, 66~67쪽.

30)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도입과정·성격·변화과정 등에 관해 많은 선행연구가 제출되어 있다. 최근의 주요연구는 다음을 참고 바람. 서동만, 앞의 책, 139~279쪽; 정일영,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2014, 31~112쪽;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8, 110~215쪽; 김재웅, 『북한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8, 24~64쪽; 기광서, 앞의 책, 219~244쪽.

31) 장준익, 앞의 책, 90~91쪽.

32)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49-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및 국가기구』,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2, 37~42쪽.

〈도표 1〉 군사지휘기관의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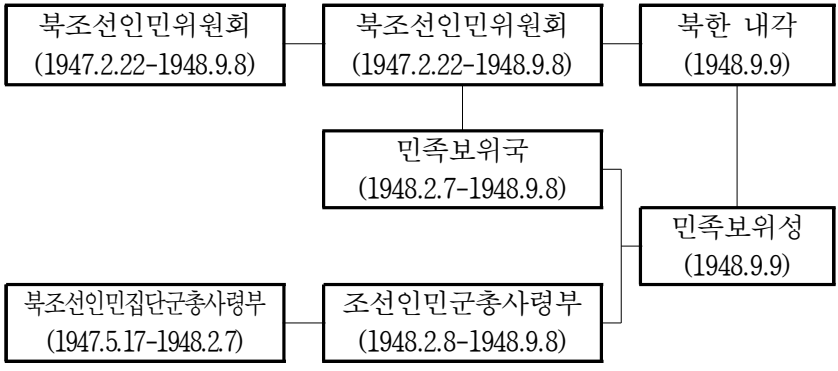

민족보위성이 설립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해방 이후에 소련이 북한지역에 설치한 통치기구가 철거되고 소련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48년 9월 15일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25군사령부의 민정청 요원 80명과 위수사령부 관련 인원 1,154명은 1948년 12월 말까지 철수하도록 결정되었다.[33] 소련군은 1948년 12월 16일자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슈티코프가 1949년 1월 12일에 "조선주차 쏘련특명전권대사"로 북한에 부임하였다. 북한정부는 슈티코프 대사가 부임하자, 이례적으로 1949년 3월에 노동성 기관잡지 『로동』 창간호를 통해 「위대한 쏘베트동맹 특명정권대사 쓰띠꼬브씨를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논설을 게재하였다.[34]

북한에서 소련군의 통치기구가 철거된 것은 북한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소련군 통치기구는 북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사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지도부는 통치기구를 철거시키고, 대신 슈티코프를 북한주재 소련대사로 임명해서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결국 북한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 통치기구가 철거

33) 기광서, 앞의 논문(2004), 231쪽.
34) 勞動省, 『로동』제1호, 勞動省, 1949.3.15, 44~49쪽.

되면서, 인민군에 대한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북한 정부의 장악력은 강화되었다.

민족보위성이 창설되면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인민군을 지휘해온 인민군총사령부가 해소되어 민족보위성으로 완전히 흡수되었다는 점이다. 민족보위성 창설 이전까지 인민군은 정권기관인 민족보위국이 아니라 정권기관의 외부에 있던 인민군총사령부가 지휘했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되고 내각의 군사담당부서로 민족보위성이 창설되자, 인민군총사령부는 내각에 흡수되었다. 또한 민족보위성 고급장관의 임면권도 내각이 보유하였다. 따라서 인민군은 민족보위성이 창설된 이후부터 완전히 내각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3.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

가. 민족보위성의 조직과 간부

인민군총사령부가 민족보위성에 흡수되면서, 총사령부의 간부들은 대부분 민족보위성의 간부로 다시 임명되었다. 또한 민족보위성은 중앙행정기관이었기 때문에 인민군총사령부와 달리 총참모부 외에도 다양한 행정부서가 새로 설치되었고, 그 책임자로 새로운 간부들이 임명되었다.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 보면,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민족보위상(民族保衛相)은 인민군총사령관인 최용건이 맡았다. 민족보위성 부상(副相) 겸 문화훈련국장은 김일(金一), 문화훈련국 부국장은 김일(金日), 총참모장은 강건, 부총참모장은 최인(崔仁), 부상 겸 포병지휘국장은 무정, 포병지휘국 부국장은 김봉률(金鳳律), 전투훈련국장은 김웅(金雄), 후방국장은 최홍극(崔弘極), 작전국장은

유성철(俞成哲, 전임 황호림),[35] 정찰국장은 최원(崔遠), 통신국장은 박영순(朴英順), 공병국장은 박길남(朴吉南), 간부국장은 리림(李林), 군의국장은 리동화(李東華), 전투경험연구부장은 류신(柳新), 정치보위부장은 석산(石山),[36] 정치보위부 부부장은 박광선(朴光善), 민족보위성 총고문은 스미르노프(Смирнов) 소장이 맡았다.[37] 민족보위성 통신부장은 박명수였다.[38] 포병지휘국의 제1부국장은 김봉률이었고, 제2부국장은 서용선(徐龍先)이었다.[39] 간부국의 정확한 부서명칭은 "간부처"이며, 처장은 리림이 맞다.[40]

1950년 3월 당시, 포병지휘국 참모장은 전학준(全學俊), 통신국장은 리종인(李宗仁), 작전국장은 유성철, 작전국 부국장은 윤상렬이 맡았다.[41] 제1대 작전국 부국장은 고려인 김원길이다.[42] 민족보위성에는 1949년 8월 20일에 새로운 병종지휘부가 설치되었다. 이날 북한정부는 인민군 해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하였고, 민족보위성 안에 해군지휘부로 "해군훈련국"을 신설하였다. 해군훈련국장은 한

35) 주영복은 작전국장에 金光俠 소장이 임명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1, 고려원, 1990, 126쪽.
36) 주영복은 정치보위부장에 金波 총좌가 임명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주영복, 앞의 책, 126쪽.
37) 장준익, 앞의 책, 90~91쪽; 주영복, 앞의 책, 126쪽.
38)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2권, 나남, 1996, 724쪽. 제2사단 문화부사단장 최복철의 경력에 입당 보증인이 "보위성 통신부장 박명수"로 기록되어 있다.
39) 朝鮮人民軍 第531軍部隊 第1副部隊長 金鳳律, 「指令-砲兵戰鬪訓練綱領改正에 關하야」(1950.1.30)·朝鮮人民軍 第531軍部隊 部隊長 武亭, 「指令-도라무容器 및 其他容器 還納에 關하야」(1950.3.13), 砲兵參謀部, 『保衛省接受文件綴』, 民族保衛省 砲兵指揮局, 1950.6.16, NARA, RG 242, SA 2013, Box 1, Item 116.
40) 민족보위성 간부처장 리림, 「각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생 수요인원 보고에 관하야」(1950.5.11), 민족보위성,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철』, 민족보위성, 1950.6,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6(이하 출처 생략).
41) 유성철, 「피바다의 비화」,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 경인문화사, 2006, 519~520쪽. 포병지휘국 참모장은 정학준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이름은 전학준이다. 그는 고려인이며, 김일성이 활동한 소련극동군 제88독립보병여단 출신이다.
42) 장학봉 외, 앞의 책, 95쪽.

일무(韓一武), 참모장은 김원무(金元武)가 맡았다.[43]

한편 육군정보국은 6·25전쟁 중이던 1952년에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를 정리하였다. 이 정보에 따르면, 민족보위성은 문화훈련국, 포병지휘국, 해군국, 전투훈련국, 조직보충국, 후방국, 군의국, 간부국, 운수국, 병기국, 보도부(報導部)로 구성되었다.[44] 이 자료를 통해 새로 확인된 부처는 조직보충국, 운수국, 병기국, 보도부다. 또한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에는 규정부(規程部)가 조직되어 각 국의 군사규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이를 토대로 인민군의 군사규정과 군사교재를 제작했다.[45] 이상에서 확인한 민족보위성의 조직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보위성은 총참모부, 6개 국, 1개 처, 1개 부, 2개 소로 구성되었다. 이중에서 총참모부, 포병훈련국, 문화훈련국, 정치보위부, 군사최고검찰소, 군사최고재판소는 부서의 단위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원래 인민군총사령부에 있던 부서들이다. 민족보위성의 총참모부는 9개 국과 2개 부로 구성되었는데, 작전국·정찰국·통신국·공병국·후방국도 인민군총사령부에 있던 부서들이다.[46] 이상의 부서체계를 통해 민족보위성이 인민군총사령부를 완전히 흡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보위성의 해군훈련국과 포병지휘국은 인민군에 총괄적으로 관여하는 다른 부서와 달리, 해군과 포병의 병종지휘부였다.

---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4쪽.

44) 그러나 이 정보도 틀린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육군정보국은 총참모부에 속하는 작전국, 정찰국, 통신부, 공병부를 모두 전투훈련국의 산하부서로 분류하였고, 군의국의 산하부서인 수의부를 후방국의 산하부서로 분류하였다. 육군정보국, 『(軍事極秘) 人民軍特報』, 육군본부, 1952, 105쪽.

45) 民族保衛省總參謀部, 『鬪爭手帖』, 民族保衛省軍事出版部, 1949.2.

46) G-2,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344~346쪽.

〈도표 2〉 민족보위성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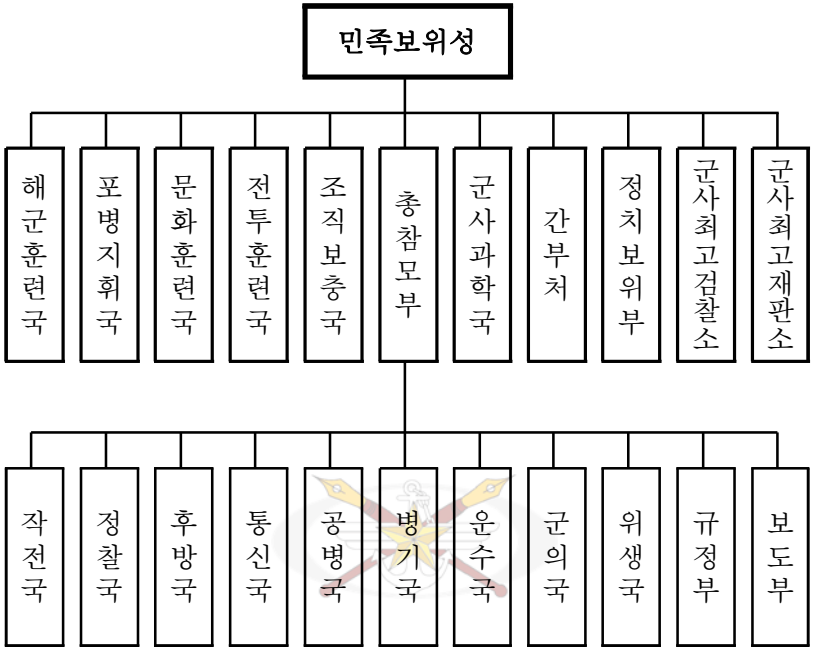

민족보위성의 간부 중 일부 인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먼저 정치보위부장에 대해, 장준익·최태환은 석산(石山), 주영복은 김파라고 서술하고 있다. 석산은 동북항일연군 출신으로 1945년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정식대표로 참여[47]한 이후, 개전 전까지 행적을 알 수 없다.[48] 김파는 내무성이 창설되자 내무성 정치보위국 제1처장에 임명되었으므로 정치보위부장이 아니다.[49] 최태환은 1949년 7월부터 민족보위성 정치보위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그의 증언에 따라 정치보위부장을 석산으로 보았다. 정치보위부 부부장은 최용건의 연락병 출신인 박광선인데, 그는 1936년 말까지 북

47) 김광운, 앞의 책, 365쪽.
48) 석산은 개전 직후에 인민군 전선사령부 안전국장으로 임명되었다. 林隱, 『北韓 金日成王朝秘史』, 自由社, 1982, 181쪽.
49) 육군정보국, 앞의 책, 252쪽.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1937년부터 1940년 봄까지 모스크바의 "국제당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유학했다.[50] 그는 소련의 정치사상과 군사교리를 충실히 학습한 인물이다.

다음으로 작전국장에 대해, 주영복은 김광협(金光俠), 장준익은 1대 황호림, 2대 유성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유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제1대 작전국장은 황호림 대좌가 맞다. 그는 작전국장에 임명되었다가 총참모장 강건과 충돌해 해임되었다. 그 후 황호림은 '불량분자'로 분류되어 소련 꼴호즈로 추방되었다. 유성철은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51] 군사 부교장을 맡다가 1949년 9월에 2대 작전국장으로 부임하였다.[52] 문화훈련국 간부부장은 항일연군 출신 안영(安英)이 맡았다.[53] 정찰국 부국장은 고려인 김창국이 임명되었다. 민족보위성에는 군사과학국이 조직되었는데, 국장은 알 수 없고, 부국장은 고려인 김철운이었다. 문화훈련국 군사번역부 부장은 고려인 림용검이었다.[54]

또한 민족보위성의 간부구성과 관련해, 1950년 2월 23일 당시 인민군에서 활동하고 있던 고려인 명단이 있다. 그들은 "민족보위성 부상(해군훈련국장) 한일무, 포병사령부 참모장(포병지휘국 부국장) 김봉률, 작전국장 유성철, 후방국장 최홍극(최 아나똘리 알렉산드르), 후방병참부 부부장(후방국 부국장) 리승권, 통신연대장(통신국장) 리종인, 병기국장(포병지휘국 제2부국장) 서용선, 위생국장 김송

50) 최태환·박혜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79; 96쪽; 박광선, 『소부대활동의 나날에』, 금성청년출판사, 1991, 14쪽.
51) 북한에는 해방 직후에 2개의 군관학교가 설립되었다.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1946년 7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각 병종의 초급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군관학교다. 평양학원은 1946년 1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고급 정치간부·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군관학교다. 두 학교의 조직과 정치세력 분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軍史』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52) 한국일보 편, 『(證言) 金日成을 말한다』, 한국일보사출판국, 1991, 72쪽; 주영복, 「망향5 : 중립국행자원한 반공포로의 수기」, 『동아일보』, 1962.7.7.
53) 육군정보국, 앞의 책, 261쪽.
54) 장학봉 외, 앞의 책, 131; 140; 353쪽.

남(김 니꼴라이 이바노비치), 공병대장(공병국장) 박길남, 교육부 부부장(문화훈련국 부국장) 김일, 문화훈련국 선전선동부장 천률(천 유리 알렉산드로비치), 해군 교육부장(해군훈련국 문화부장) 주청준, 군 군율과장(규정부장) 리허구, 군 총검사(군사최고검찰소장) 김학인, 군 총검열관 허학철" 등이다.[55] 김학인(金學仁)은 민족보위성 최고검찰소장이 아니라 정부수립 후에 내무성 검찰국장을 맡았다.[56] 인민군총사령부의 최고검찰소장은 한철이었다.[57] 그가 다른 직책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민족보위성 군사최고검찰소장을 한철로 추정하겠다.

인민군총사령부 직속 경위대대는 민족보위성이 설립되면서 '민족보위성 직속 경위연대'로 증편되었다. 1948년 11월 7일 당시 경위연대장은 항일연군 출신 강상호였다.[58] 1948년 11월 17일부터 1949년 8월 12일까지 "보위성 직속 경비련대" 연대장은 리동호(李東浩)였다. 직속 경위연대의 단대호(單隊號)는 제571군부대였다.[59] 리동호는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제3대에서 활동한 인물이다.[60] 문화훈련국 구락부장 겸 인민군협주단장은 의용군 출신

---

55)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87쪽;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1, 선인, 2010, 448~449쪽. 둘 다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필자가 두 글에 서술된 인명과 직책명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괄호 안이 확인된 직책명이다. 민족보위성 규정부장은 두 글에 각각 리허구와 리허규로 서술되어 있는데, 다음 책에서 인명을 확인하였다. 김국후, 『평양의 까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2013, 294쪽.

56) 최용건, 「내무상 박일우 동지 앞」(1948.10.28),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9권, 국사편찬위원회, 1990, 430쪽.

57) G-2,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348쪽.

58) 신영일, 『조선인민군대 간부리력서』, 민족보위성 간부처, 1949.1.8,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13.

59) 신영일, 『조선인민군대 이력서』,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 1948.11,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2.3. 신영일은 평양학원 3기생으로, 1947년 12월부터 1948년 9월까지 "총사령부직속경위대대"에서 문화공작원으로 근무했고, 1948년 11월 17일부터 "보위성직속경비련대"에서 민청지도원으로 근무했다.

60) 楊昭全·李輔溫, 『朝鮮義勇軍抗日戰史』, 高句麗, 1995, 46쪽; 염인호, 『조선의

정률성(鄭律成)이 맡았다. 그는 대대부 시기부터 구락부장 겸 협주단장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61]

이상에서 확인한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62]

단위	직책	간부	단위	직책	간부
민족보위성	민족보위상	최용건(항)	후방국	후방국장	최홍극(고)→정목(모름)
총참모부	총참모장	강건(항)		부국장	리승권(고)
	부총참모장	최인(의)	작전국	작전국장	황호림(고)→유성철(고)
문화훈련국	문화훈련국장	김일(金一)(항)		부국장	김원길(고)→윤상렬(모름)
	부국장	김일(金日)(고)	정찰국	정찰국장	최원(고)
	간부부장	안영(항)		부국장	김창국(고)
	선전선동부장	천률(고)	통신국	통신국장	박영순(항)→리종인(고)
	군사번역부장	림용검(고)		통신부장	박명수(모름)
	구락부장	정률성(의)	공병국	공병국장	박길남(고)
포병지휘국	포병지휘국장	무정(의)	병기국	병기국장	미상
	제1부국장	김봉률(고)	운수국	운수국장	미상
	제2부국장	서용선(고)	군의국	군의국장	리동화(고)
	참모장	전학준(고)	위생국	위생국장	김송남(고)
해군훈련국	해군훈련국장	한일무(고)	간부처	간부처장	리림(의)
	참모장	김원무(고)	정치보위부	부장	석산(항)
	문화부장	주청준(고)		부부장	박광선(항)
전투훈련국	전투훈련국장	김웅(의)	규정부	규정부장	리허구(고)
	전투경험연구부장	류신(의)	군사최고검찰소	최고검찰소장	한철(모름)
조직보충국	조직보충국장	미상	기타	총검열관	허학철(고)
군사과학국	부국장	김철운(고)		경위연대장	강상호(항)→리동호(의)

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2001, 170쪽.

61) 정설송 엮음,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률성①-그의 삶』, 형상사, 1992, 227쪽.

62) 괄호 안은 간부들의 경력을 확인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정치세력을 표시한 것이다. (고)는 고려인, (의)는 조선의용군 출신, (항)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모름)은 경력 모름을 뜻한다.

현재까지 이름과 직책을 알 수 있는 민족보위성의 간부는 총 42명이다. 민족보위성 간부구성의 특징은 인민군총사령부의 간부가 민족보위성으로 그대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은 민족보위상, 총참모장 강건은 총참모장, 문화부사령관 김일(金一)은 부상 겸 문화훈련국장, 포병부사령관 무정은 부상 겸 포병지휘국장에 임명되었다. 총사령부에 있던 각 부서장도 그대로 이동하였고, 일부는 직책 명칭만 변경되었다. 이들은 최홍극(후방부사령관→후방국장), 김일(金日, 문화부장→문화훈련국 부국장), 박영순(통신부장→통신국장), 박길남(공병부장→공병국장), 리동화(군의과장→군의국장), 정률성(구락부장 동일)이다. 민족보위성에서는 후방부사령관이 후방국장으로 강등되었다.

신설된 부서장은 내부승진이나 외부영입으로 충원되었다. 전투훈련국장은 제1사단장 김웅이 승진해 임명되었고, 전투경험연구부장은 제2사단 참모장 류신이 승진해 임명되었다. 민족보위성에 처음 설치된 해군훈련국의 경우, 국장은 북조선로동당 강원도당위원장 한일무가 영입되었고, 참모장은 김원무가 영입되었다.

나. 민족보위성 간부구성의 성격

민족보위성의 직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장관인 민족보위상과 함께 차관에 해당하는 3명의 부상(副相)이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부상은 문화부상 김일(金一), 포병부상 무정, 해군부상 한일무였다. 이 직책은 인민군총사령부에 있던 "부사령관"을 정부수립 이후에 내각의 차관명칭으로 개칭한 것이다. 또한 인민군총사령부에는 "문화부사령관"만 존재했지만, 민족보위성에는 부사령관에 해당하는 부상이 3명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달리 국군 국방부에는 국방부 장관 밑에 1명의 국방부 차관이 임명되었다.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였다. 민족보위성의 문화부상과 포병부상은 국방부에는 없는 직책이다. 국방부에는 해군부상보다 낮은

직급으로 해군참모총장이 있었다. 또한 국방부 본부에도 문화훈련국에 해당하는 정훈국이 조직되었지만, 정훈국장은 국방부차관의 지휘를 받는 부서장이었다.[63] 부상의 특징을 보면, 북한지도부가 인민군의 정치사상사업과 포병·해군을 다른 병종보다 중요하게 인식해 차관급부서로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인민군의 공군은 육군·해군과 달리 독립병종이 아니라 민족보위성의 직속 사단으로 존재했고, 포병처럼 독자적인 병종지휘부도 없었다.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 8월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설립 이후부터 군사지휘기관의 간부를 연임시키는 간부정책을 지향해왔다. 이것은 특정 인물에게 해당부문을 책임지우는 간부책임제(幹部責任制)다. 노동당이 간부책임제를 지향한 이유는 창군사업의 연속성을 견지하고 지휘부 간부들의 업무능력을 전문화·고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족보위성의 간부 중 일부 인물은 간부책임제에 따라 1946년 8월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시기부터 해당부문을 육성해온 창군요원이었다. 이들은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강건, 문화훈련국장 김일, 포병지휘국장 무정, 후방국장 최홍극, 간부처장 리림, 통신국장 박영순, 공병국장 박길남, 정찰국장 최원이다. 이들을 정치세력별로 분류하면,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총사령관과 정치사상부문·통신부문 책임자를 맡아왔고, 조선의용군 출신은 포병부문·간부부문 책임자를 맡아왔으며, 고려인(Корё Сарам)은 후방부문·공병부문·정찰부문 책임자를 맡아왔다. 이 같은 간부책임제에 따라 군대의 정치적·군사적 특징과 업무경험이 민족보위성에 계승되었다.

민족보위성의 간부구성을 정치세력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간부는 총 38명이다. 항일연군 출신은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강건, 문화훈련국장 김일(金一), 문화훈련국 간부부장 안영, 1대 통신국장 박영순, 정치보위부장 석산, 정치보위부 부부장 박광선, 1대 경위연대장 강상호 등 8명이다. 의용군 출신

63)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18~121쪽.

은 부총참모장 최인, 포병지휘국장 무정, 전투훈련국장 김웅, 전투경험연구부장 류신, 간부처장 리림, 문화훈련국 구락부장 정률성, 2대 경위연대장 리동호 등 7명이다. 고려인은 문화훈련국 부국장 김일(金日), 문화훈련국 선전선동부장·군사번역부장 천률·림용검, 포병지휘국 부국장·참모장 김봉률·서용선·전학준, 해군훈련국 국장·참모장·문화부장 한일무·김원무·주청준, 군사과학국 부국장 김철운, 1대 후방국장 최홍극, 후방국 부국장 리승권, 1대·2대 작전국장 황호림·유성철, 1대 작전국 부국장 김원길, 정찰국장 최원, 정찰국 부국장 김창국, 2대 통신국장 리종인, 공병국장 박길남, 군의국장 리동화, 위생국장 김송남, 총검열관 허학철, 규정부장 리허구 등 23명이다. 민족보위성 간부 중 항일연군 출신은 21%, 의용군 출신은 18.5%, 고려인은 60.5%였다.

민족보위성의 의용군 출신은 최인을 제외하고 인민군 창설 이전부터 군사지휘기관에서 활동한 인물이며, 항일연군 출신은 석산과 박광선을 제외하고 인민군 창설 이전부터 군사지휘기관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또한 민족보위성의 의용군 출신과 항일연군 출신은 모두 해방 전에 군사간부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민족보위성의 고려인 23명 중 천률·림용검·한일무·김원무·주청준·김철운·리승권·김원길·김송남·서용선·허학철·리허구 등 12명은 민족보위성 설립 이전에 군사지휘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이중에서 서용선(Ⅲе, Ён-Сен)은 해방 이후에 소련에서 러시아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1948년 3월 2일에 처음 북한에 파견된 인물이다. 또한 소련 국방성 작전국 번역원 김철운과 태평양함대 육전대원 한일무[64]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소련에서 민간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소련군 경력이 없었다.[65]

---

64) 장학봉 외, 앞의 책, 138~139; 724~725쪽.

65) 러시아 학자 송잔나는 러시아연방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의 자료를 수집해서 해방 이후 북한에 파견된 고려인들의 경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자신의 주(州)에서 민간전문가들이었고, 붉은 군대와 관련이 없으며, 북한에 군사전문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입북 이후 필요에 따라 장교의 직위에 임명되었다'고 분석하였다. Ж. Г. Сон,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и КНДР*

고려인들은 입북 직후에 대부분 군사지휘기관이 아니라 소련군의 민정부서와 위수사령부에 통역으로 배치되었고, 일부만 제25군사령부 정치부 제7국에 배치되었다.[66] 그 후 북한의 창군사업에 간부가 부족하자, 소련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1946~1947년에 군대의 교원과 통역원으로 배치되었다. 이들은 1948년 12월에 소련군이 철수할 때 조선인민군 군적(軍籍)과 북한 공민권(公民權)을 취득한 인물들이다. 가령, 김철운은 1946년 말에 소련군 민정청에서 파견되어 정치학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민족보위성 군사과학국 부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천률은 1946년 4월에 민정청에서 파견되어 인민군 제3사단 제1연대와 항공부대 교도대대 통역관으로 근무하다가 1949년 5월에 문화훈련국 선전선동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총검열관 허학철은 1948년 12월 20일까지 『조선인민군』신문 출판사 번역원으로 근무하다가 소련군이 철수할 때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인민군 군적과 북한 공민권을 취득하였다.[67]

고려인은 민족보위성 간부 중 60.5%를 차지했다. 이들이 민족보위성에 가장 많이 배치된 이유는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이들의 점령통치 보조업무가 종료되었고, 민족보위성이 설립되면서 많은 신규간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은 이미 제1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부터 건당·건군·건국사업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소련군적과 소련공민권을 가지고 있던 고려인은 당시 당·정권기관·군대에 즉시 충원될 수 있는 최대의 간부집단이었다. 또한 민족보위성에 새로 충원된 고려인들은 고학력자들이었다. 예컨대, 김원길은 카자흐스탄사범대학 역사학과, 김철운은 우즈베키스탄대학 법학과, 림용검은 우즈베키스탄 고중학교, 천률은 우즈베키스탄사범대

(1946-1948), Корё Сарам, 2016.1.13.

66) 제7국은 소련군 총정치국계통의 정치담당부서로, 북한지역에서 소련군사령부의 한글기관지 『조선신문』 발행 등 특수선전활동을 펼쳤다. 제7국에 배치된 대표적인 고려인은 강미하일(강용구) 소좌와 오기찬 대위다.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현대정치사』, 오름, 1999, 71; 141쪽.

67) 장학봉 외, 앞의 책, 140; 655; 757쪽.

학 역사학과, 한일무는 우즈베키스탄공산대학, 허학철은 우즈베키스탄전문대 자동차학과를 각각 졸업했다. 이 가운데 림용검(1941년 입당)과 천률(1944년 입당)은 소련공산당원이었다.[68] 이들은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과 달리 소련의 혁명역사·법률·교육·과학기술과 소련공산당의 조직·체계·노선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였고, 이 같은 소련의 경험을 인민군에 이식하였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해방 후에 자의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부여한 임무를 받고 북한에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946년 10월 이후 북한에 파견된 고려인들은 소련 국가보안인민위원회(НКГБ)에서 엄격한 검열을 받은 인물들이며, 소련공산당의 정식당원과 후보당원이거나 콤소몰(Комсомол, 전연방레닌주의청년공산주의자동맹)의 맹원이었다. 특히 소련공산당은 파견대상자로 선발된 고려인 가운데, 당과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파견대상에서 제외하였다.[69]

그리고 소련군 철수 이후 북한에 남은 고려인 중에서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소련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잔류한 인물들이었다.[70] 또한 민족보위성의 고려인 가운데 절반은 해방 전에 군사간부 경력이나 해방 후에 군사지휘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고, 일부 인물은 소련군 철수시 처음으로 인민군 군적을 취득하였다. 소련군사령부에서 북한의 국가기관으로 전출된 고려인들은 1948년까

68) 우동현,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65~74쪽.

69) 소련 국가보안인민위원회는 군사정보와 방첩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며, 독소전쟁 당시 소련군의 최고방첩국인 스메르쉬(СМЕРШ)의 전신이다. 소련공산당이 1946년 4월부터 북한에 파견하기 위해 검토한 고려인은 총 1,685명인데, 이중에서 실제로 파견된 인원은 500명 미만이다. Ж. Г. Сон, 앞의 논문.

70) 소련 민정청은 북한에 있던 고려인 23명에게 소련군 철수 이후 거취의사를 청취했다. 답변이 기록된 21명 가운데 당이 명령하거나 필요로 할 경우 잔류하겠다는 사람은 10명, 조건부 잔류자(자녀문제 해결시 잔류)는 3명이었다. 이 가운데 문화훈련국 부국장 김일도 자발적으로 잔류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당이 명령한다면 잔류하겠다고 답변했다. 레베제프, 「1948년 9월 13일자 일기」, 『레베제프 비망록』, 미간행 번역본, 1995.

지 소련군의 계급과 소련 공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71] 고려인은 민족보위성의 최대세력이었으나 군사경력과 군사경험이 가장 적었고, 소련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잔류해 간부로 임명된 인물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은 향후 북·소관계의 변화에 따라 인민군에서 정치적·군사적 지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4. 민족보위성의 정치세력과 간부충원

가. 민족보위성의 정치세력 분포

북한에서 활동한 여러 정치세력은 민족보위성에서 각각 특정한 부문을 장악하고 있었다. 항일연군 출신은 인민군의 지휘권(총사령관·총참모장), 정치사상사업(문화훈련국장·문화훈련국 간부부장), 방첩부문, 통신부문을 장악했다. 의용군 출신은 포병부문 지휘권(포병지휘국장), 전투훈련부문, 전투경험연구부문, 군 전체의 인사권(간부처장)을 장악하였고, 참모부문 부책임자와 문화부문(구락부장)을 담당하였다. 고려인들은 해군사령부, 작전·후방·정찰·공병·군의부문 등 주로 전문기술병종을 장악하였고, 정치문화사업·포병부문·군사과학부문 부책임자와 선전선동·군사번역부문 책임자를 맡았다. 특히, 인민군의 정치사상부문은 항일연군 출신, 인민군의 전투교육·훈련부문은 의용군 출신, 인민군의 해군·포병·공병은 고려인이 책임지고 육성하였다. 그 이유는 항일연군 출신이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독점하고 있었고, 의용군 출신이 가장 전투경험이 풍부했으며, 고려인이 소련군의 전문기술병종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보위성의 실권은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이 분점하고 있었고, 전문기술병종은 고려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71) 안드레이 란코프, 앞의 책, 142쪽.

군대의 총사령관·총참모장·정치사상부문 지휘관은 대대부·집단군총사령부·인민군총사령부에서 항일연군 출신들이 독점해왔다. 또한 대대부·집단군총사령부 총참모장이었던 안길(安吉)이 병사하자, 후임으로 항일연군 출신인 강건이 임명되었다. 항일연군 출신은 최용건·강건·김일을 정점으로 인민군에 대한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었다. 이 같은 특징은 민족보위성의 간부들이 작성한 논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강건은 노동당 당원용 기관잡지에 투고한 논설에서 인민군이 "김일성 장군 항일인민유격대의 고귀한 혁명전통을 토대로 창건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72] 이 '혁명전통'은 독립적 교과목으로 확립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의 기관잡지에 게재될 만큼 공식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다. 이는 항일연군 출신이 정치사상사업을 장악한 결과, 인민군의 정치사상적 정통성이 김일성부대에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항일연군 출신은 노동당내 정치세력의 분포와 인원·군사경력·전문기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의용군 출신과 고려인들에게 다른 부문·병종의 지휘권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인민군의 포병부문·전투교육·전투훈련·간부부문은 의용군 출신들이 장악하였고, 인민군의 전문기술병종은 고려인들이 장악하였다. 이상의 정치세력과 달리, 군사경력이 없는 국내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로동당(南朝鮮勞動黨) 출신은 인민군에서 자리잡지 못했다. 따라서 인민군을 정치세력별로 분석해보면, 인민군은 항일연군 출신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고려인들이 각각 전문적인 부문을 분점하고 있는 정파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민족보위성의 간부를 좀 더 확인해보면, 정파연합적 성격은 더욱 확연해진다. 현재까지 인민군부대 간부의 해방 이전 경력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민족보위성에 소속되어 있는

72) 강건, 「김일성 장군 항일유격부대는 조선인민군의 전투적 골간이다」, 『근로자』1950년 2호, 로동신문사, 1950.1.31, 23쪽.

“문화간부”의 해방 이전 경력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1949년 12월 15일 당시 민족보위성에 있는 문화간부는 모두 1,881명이었다. 이들 중 442명은 해방 전에 “혁명군” 경력자(23.5%)였고, 169명은 일본군 출신(9%)이었다. 해방 전의 경력이 없는 간부는 1,270명으로 전체의 67.5%였다. 혁명군 경력자를 다시 구분해 보면, 422명이 “팔로군”출신, 5명이 “항일연군”출신, 9명이 “지하운동자”, 6명이 “기타”였다.[73]

문화간부의 67.5%를 차지하는 최대 집단은 해방 이후 창군과정에서 육성된 인물들이다. 해방 전에 ‘혁명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23.5%의 문화간부를 분석하면, 이중에서 팔로군(八路軍) 출신이 95.5%(전체 문화간부의 22.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해방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입북한 조선의용군 출신을 뜻한다. 반면에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5명, 지하운동 경력자는 9명에 불과했다. 의용군 출신은 여러 정치세력 중에서 문화간부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었다. 또한 통계가 작성된 1949년 12월 이후에도 조선의용군에서 기원한 중국인민해방군의 조선인부대가 계속 입북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사상사업의 총책임자나 문화부사단장 등 고급간부로 진출하지 못하고 주로 중급·하급 문화간부를 맡았기 때문에 창군이념 등 정치사상사업의 핵심을 주도할 수 없었다.

항일연군·의용군 출신과 함께 고려인도 문화간부로 임명되어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1950년 2월 23일 당시, 인민군 문화간부로 근무하던 고려인은 문화훈련국 부국장 김일(金日), 문화훈련국 선전선동부장 천률, 해군훈련국 문화부장 주청준, 제1사단 문화부사단장 김태권, 제2사단 문화부사단장 김명석, 제3사단 문화부사단장 김학천, 제6사단 문화부사단장 한성천, 제105탱크여단 문화부여단장 안동수 등이 있었다.[74] 고려인들은 민족보위성에서 문화훈련국 부국장·선전

73) 민족보위성 간부부 부장 안영, 「(극비)문화간부성원통계표」(1949.12.15), 습격기연대 문화부, 『쎄미날제강-국내정세』, 습격기연대, 1950.4.3, NARA, RG 242, SA 2009, Box 5, Item 1.5.

74) 안승환, 앞의 논문, 387쪽; 박종효 편역, 앞의 책, 448~449쪽. 둘 다 동일한

선동부장, 해군사령부·보병사단·탱크여단의 문화부 책임자 등 주로 고급 문화간부를 맡고 있었다.

특히 고려인 김일(金日)은 소련 국적과 소련공산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문화훈련국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김일의 정체성은 북한보다 소련에 있었다. 그는 1948년 9월에 소련 민정청이 소련군 철수를 앞두고 국적의 이적(移籍)여부를 물었을 때,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75] 김일뿐만 아니라 민족보위성과 인민군에 있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북한정부 수립 이후에도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정부는 1950년 2월 23일자로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에 고려인 174명에 대해 북한 국적 취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에 대표적으로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은 민족보위성 부상 한일무, 작전국장 유성철, 후방국장 최홍극, 제2사단장 리청송, 제1사단 문화부사단장 김태권, 해군군관학교 교장 김우현, 비행사단 문화부사단장 유성걸 등이다.[76] 즉, 인민군의 고려인 간부들은 소련인과 소련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민군에 소련공산당·소련군의 조직·체계·노선을 이식하였다.

인민군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장 김일(金一)이었다. 그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시절부터 계속해서 문화부문 사령관을 맡아왔다. 그는 동북항일연군 출신을 대표해 인민군 내부에서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일은 이미 해방 전인 1937년 6월에 김일성과 함께 보천보전투에 참가한 이래, 동북항일연군 제2군에서 정치사상사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김일성이 1938년에 제2방면군 지휘에 임명된 이후부터는 제8연대 정치위원으로서 김일성부대의 당사업·대중단체조

자료를 활용하였다. 필자가 두 글에 서술된 인명과 직책명을 비교해 확인하였다. 박종효의 번역본에는 문화훈련국 부국장이 "교육부 부부장", 문화부사단장·문화부여단장이 "대중교화부 부부장" 등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

75) 레베제프, 「1948년 9월 13일자 일기」, 『레베제프 비망록』, 미간행 번역본, 1995.

76) 박종효 편역, 앞의 책, 447~453쪽.

직사업·선전선동사업을 책임졌다.[77] 그는 해방 전부터 김일성부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펼치면서 김일성의 노선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문화간부로 임명된 정치세력 가운데 95.5%는 조선의용군 출신이었다. 또한 문화훈련국의 실무책임자와 해군·보병사단·탱크여단의 문화부책임자는 모두 고려인이었다. 따라서 정치사상사업의 지휘권은 항일연군 출신이 가지고 있지만, 정치사상사업의 집행권은 고려인과 조선의용군 출신들이 분점하고 있었다. 또한 각 정치세력은 문화훈련국 내에서 정치사상사업의 방향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78]

나. 정파연합체제와 간부충원

민족보위성의 간부구성은 크게 분류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북조선로동당이나 내각의 간부구성과 달랐다는 점이다. 북조선로동당은 1948년 3월 27~30일까지 제2차 당대회를 개최해 당지도부를 전면 개편하였고, 이때 조직된 당지도부는 민족보위성 설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위원장은 김두봉(조선독립동맹), 부위원장은 김일성(항일연군)과 주녕하(국내)가 맡았다. 최고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는 김일성·김책(항일연군), 김두봉·최창익·박일우(독립동맹·의용군), 허가이(고려인), 주녕하(국내)로 구성되었다. 67명이 선출된 당중앙위원은 독립동맹·의용군 출신 18명(27%), 고려인 17명(25%), 국내공산주의자 13명(19.5%), 항일연군 출신 8명(12%), 모범노동자·농민 8명(12%), 테크노크라트 2명(3%), 기타 1명(1.5%)으로 구성되었다.[79]

---

77) 김일은 1942년 당시 소련극동군 제88독립보병여단 시절에도 한반도 국경지대에 밀파되어 지방당단체 복구사업과 조국광복회 조직사업을 담당하였다. 림춘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175; 218; 291쪽.

78) 예를 들어, 해방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고려인과 다른 정치세력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최태환·박혜강, 앞의 책, 76~78쪽.

북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은 김두봉(金枓奉)이었으나, 당의 실질적 지도자는 김일성이었다. 노동당이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김일성이 노동자·농민의 대표정당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책임비서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유일당 창당 이후 당의 노선으로 대중정당을 지향했고 통일전선을 추구해왔다. 당은 이 같은 노선에 따라 인텔리·소시민·자본가의 대표정당인 조선신민당(朝鮮新民黨) 당수 출신인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당 지도부는 대중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과 통일전선이라는 당의 노선에 따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80] 이와 함께 당내의 정치세력 분포도 민족보위성과 달랐다. 노동당 지도부의 간부구성을 살펴보면, 독립동맹·의용군 출신이 27%, 고려인이 25%, 국내공산주의자가 19.5%, 항일연군 출신이 12%였다.

북한체제의 정파연합적 성격은 조선로동당의 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조직위원회의 세력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은 1949년 6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조선로동당으로 통합되었다. 조선로동당이 출범하면서 남로당 출신이 대거 당중앙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노동당의 내부 권력구조는 남로당의 참여로 인해 정파연합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김일성이 당위원장에 선출되었지만, 정치위원회의 집단지도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창당 당시 당무 전반을 총괄하는 당비서직이 신설되었고, 제1비서에 고려인 허가이(許哥而), 제2비서에 남로당의 리승엽(李承燁), 제3비서에 남로당의 김삼룡(金三龍)이 선출되었다. 당위원장의 권한은 당무를 총괄하는 비서직이 신설됨으로써 분산되었으며, 당조직위원회도 기존 구성과 달리 정파별로 안배되었다.[81]

---

79) 서동만, 앞의 책, 217~218쪽.

80) 김일성은 1949년 6월 30일에 북로당과 남로당이 합당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창설되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부위원장은 박헌영(朴憲永)과 허가이가 맡았다. 김일성, 「남북조선로동당을 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할데 대하여 남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연합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49.6.30), 『김일성저작집』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22쪽.

북조선로동당이 명목상 지도자로 김두봉을 내세웠음에 비해, 민족보위성의 최고지휘관은 항일연군 출신인 최용건이 맡았다. 그는 1945년 11월 19일에 북조선행정국 보안국장에 임명된 이후 군대의 최고지휘관 위치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다. 민족보위성도 노동당과 유사하게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고려인·국내공산주의자로 구성된 정파연합체제였다. 그러나 민족보위성 간부는 노동당과 달리 고려인이 65%, 항일연군 출신이 19%, 의용군 출신이 16%였고, 국내공산주의자는 거의 없었다. 민족보위성에서 항일연군 출신은 노동당과 달리 민족보위성 간부의 19%를 차지하는 2대 정치세력이었다. 이들은 군대의 핵심부문인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을 장악하고 있었다. 조선의용군 출신은 노동당과 달리 민족보위성 간부 중 16%에 불과했으며, 군대의 인사권과 포병·전투훈련부문을 장악하고 있었다. 고려인은 민족보위성의 최대 정치세력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군대의 지휘권·인사권·정치사상사업 등 핵심부문의 책임자를 맡지 못했다.

항일연군 출신은 민족보위성에서는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고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고려인은 군대의 기술부문과 전문부문을 담당하고 있었다. 의용군 출신은 군대의 포병부문과 인사부문을 장악하고 있었고, 군대에서 중급·하급 간부로 진출했다. 항일연군 출신의 최고지휘부·정치사상부문 장악, 고려인의 전문기술부문 진출, 의용군 출신의 포병·인사부문과 중하급 간부 진출은 1946년 8월의 제1단계 창설과정부터 지속되어온 정치세력의 역할분담이다. 이 같은 역할분담은 민족보위성 시기에 이르러 확고히 정착되었다. 민족보위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항일연군 출신이 최고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 부문을 장악하고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군대에 관철시켰다는 점이다.

민족보위성 간부구성의 두 번째 특징은 간부들의 임명계통이다. 194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민족보위성에서는 인사이동이 심해졌

81) 서동만, 앞의 책, 228~232쪽.

고, 군사간부의 수요도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북조선로동당 간부국은 약 100여 명의 대좌, 200여 명의 중좌를 새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중국에 있던 조선인부대가 귀국했으며, 이에 따라 인민군 육군·해군·공군이 증편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민족보위성 인사이동의 특징은 임명계통이 동일 병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종을 넘나들었다는 점이다. 육군에서 해군으로, 포병에서 탱크병으로, 운수부대에서 자동차부대로 이동하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흐름이었다. 대표적으로 공병국 작전과장 양승환 중좌는 대좌로 승급해 해군 공병부장으로 전임되었고, 제1사단 공병장 박관칠 중좌는 제105탱크여단 공병장으로 임명되었다.[82]

더 나아가 간부들의 임명계통은 민족보위성 시기에 들어와 인민군과 내무성 간의 상호 이동을 넘어서 다른 정권기관·노동당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인민군총사령부에서도 노동당 간부가 영입되었지만, 이 같은 영입방식은 극히 일부였다. 민족보위성 시기에 노동당 간부로 활동하다가 인민군 간부로 임명된 대표적 인물은 해군부상 한일무다. 그는 1945년 8월 9일에 소련 태평양함대 육전대원으로 청진 전투에 참전하였다. 한일무는 1946년 6월까지 북조선분국 원산시당 선전선동부장과 당위원장으로 활동했고, 1949년 8월까지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해방 이후 줄곧 노동당 간부로 활동하다가 해군이 창설되자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83] 정권기관 간부로 활동하다가 인민군 간부로 임명된 대표적 인물은 해군사령부 군사교통부장 박삼철이다. 그는 교통성 산하 청진철도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군사령부에 배치되었다.[84]

민족보위성의 간부 임명계통은 인민군총사령부 시기에 비해서 더

82) 주영복, 앞의 책, 165~166쪽.
83) 장학봉 외, 앞의 책, 723~726쪽.
84) 한일무, 「간부취천의뢰에 대하여」(1950.5.20), 민족보위성,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철』.

욱 확대되었다. 인민군총사령부 시기, 간부의 임명계통은 인민군총사령부와 내무국을 서로 넘나들었다. 하지만 병종 간 임명계통은 보병부대 내부에서 병종 간에만 이루어졌다. 민족보위성의 간부 임명계통에서도 민족보위성 간부가 내무성 간부로 전임되었다. 그러나 병종 간 임명계통은 보병부대 내부를 넘어서 보병계통에서 해군계통, 포병계통에서 탱크병계통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다른 정권기관·노동당의 간부로 활동해온 인물이 민족보위성 간부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6·25전쟁 당시 인민군에서는 정권기관 간부를 군사간부로 배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85] 이 전례는 민족보위성 시기에 출현하였다.

민족보위성 시기에 들어와 간부의 임명계통이 모든 병종으로 확대된 것은 정부수립 이후 인민군이 점차 일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족보위성은 기존에 인민군에서 활동해온 간부를 새로운 병종과 부대에 배치함으로써 인민군 전체에 창설경험과 운용방식을 전파하고 정치사상적·군사적 특징을 확산시켰다. 이를 통해 인민군의 전체 병종·부대는 창설경험·운용방식과 정치사상적·군사적 특징을 공유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육성되었다.

민족보위성 간부구성의 세 번째 특징은 간부들의 충원경로다. 민족보위성은 부족한 간부를 자체적으로 충원한 것이 아니라 북조선로동당을 통해 충원하였다. 민족보위성에 필요한 간부는 주로 민족보위성 간부처장이 노동당 중앙본부 간부부장에게 공문을 보내 충원하였다. 그러나 간혹 민족보위상이 직접 중앙당 간부부장에게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1950년 4월 10일에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간부부장"에게 「자동차 기술간부 소환의뢰에 관하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민족보위성에는 "포견인 자동차

85)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인 남일(南日)이다. 그는 입북 직후부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 부국장, 교육성 부상을 맡는 등 계속해서 교육부문에서 종사하였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8월에 민족보위성 부상으로 임명되었고, 휴전협정 당시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조선인민군 수석대표를 맡았다. 김광운, 앞의 책, 684쪽.

및 뜨락도루"를 관리하는 부서는 있었으나 기술간부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었다. 최용건은 중앙당 간부부장에게 "정치수준이 높고 사상의식이 견실한 자로서 로동당원인 자"를 소환해 3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86] 또한 민족보위성 간부처장 리림은 1950년 5월 11일자로 중앙당 간부부장에게 6월말에 각 대학 및 전문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 중 민족보위성에 필요한 인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민족보위성이 요청한 졸업생은 총 550명이었다.[87]

그런데 민족보위성은 군관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노동당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모집을 요청해 충원했다. 조선인민군 제2중앙정치학교는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에서 관할했다. 1950년 5월 25일경 문화훈련국은 내무성에 "조선인민군 제2정치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 학생들은 제2정치학교 1년반에 소속될 예정이었다. 내무성은 민족보위성의 의뢰에 따라 1950년 5월 25일 「내성1처 제626호」와 6월 2일 「내성1처 제676호」를 하달해 군무자들의 응모를 받았다. 내무성 제1처장 위대성은 6월 11일에 인민군 제2정치학교 학생 선발자 110명의 명단을 중앙당 간부부장에게 발송했다.[88]

민족보위성이 노동당을 통해 간부를 충원한 것은 북조선로동당이 도입한 소련식 당-국가체제 때문이다. 노동당은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정권기관·부문기관·협동단체·사회단체·군대의 간부에 대한 당의 인사권을 확대하였다. 즉, 모든 부문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당이 장악하는 소련식 당-국가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북조선로동당은 1949년에 「간부배치 및 이동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고, 해당기관 당원인 책임자와 간부취급 단임자 외에는 절대 비밀로 취급했다.

86) 민족보위상 최용건, 「自動車 技術幹部 召喚依賴에 關하여」(1950.4.10), 민족보위성,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철』.
87) 민족보위성 간부처장 리림, 「각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생 수요인원 보고에 관하야」(1950.5.11), 민족보위성,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철』.
88) 내무성 제1처장 위대성, 「내성1처 제742호 : 인민군제二정치학교 학생취천에 대하여」, 내무성, 1950.6.11,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7.

북조선로동당은 이 규정에서 당단체, 정권기관, 교육·문화·보건기관, 경리기관·협동단체, 사회단체, 인민군대·경비대·보안대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중앙당과 지방당에서 행사하라고 지시하였다.[89]

이 규정이 채택된 이후, 당·정권기관·부문기관·협동단체·사회단체·군대의 간부는 선출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노동당의 비준을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었다. 인민군 간부 중 중앙조직위원회에서 인사를 취급하는 간부는 사단·여단의 부부대장 이상, 사단·여단의 정치보위부장·문화부장·작전과장·정찰과장, 연대의 부연대장 이상, 해군사령부의 참모장·부사령관이다. 노동당은 인민군에서 부연대장급 이상의 군사지휘관과 사단·여단에서 방첩임무를 수행하는 정치보위부장을 특히 중시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사단·여단의 간부 중 문화부장·작전과장·정찰과장을 중시했고, 인민군에 있는 상급 문화간부를 중시했다. 노동당이 인사권을 행사한 최하급 군사간부는 대대장과 문화부대대장이었다.[90] 문화부대대장 아래의 군사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민족보위성에서 행사했다. 노동당은 문화부대대장 이상 간부에 대해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북조선로동당은 중앙조직위원회를 통해 북한지역 모든 부문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했고, 이를 통해 각 부문에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고 당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당시 중앙조직위원회는 조직부장 허가이를 필두로 고려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당내에 소련식 당-국가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당시 내무성군대에는 당단체가 조직되었지만, 인민군에는 창설 당시부터 당단체가 조직되지 않았다.[91] 이것은 민족보위성과 인민군 각급 부대·기관의

89) 로동당 중앙본부,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한 규정」(194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1권, 국사편찬위원회, 1982, 555~556쪽.
90) 로동당 중앙본부,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한 규정」(194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1권, 557~559쪽.
91) 북조선로동당, 「군대내 당조직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서」(1946.10.21),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30권, 국사

지휘부를 특정한 정치세력이 장악한 것이 아니라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고려인들이 분점(分點)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민군의 지휘부는 6·25전쟁 이전까지 정파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5. 맺음말

북한의 민족보위성은 1948년 2월 7일에 설립된 북조선인민위원회 민족보위국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9월 9일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되어 6·25전쟁 직전까지 인민군을 지휘하고 관할하였다. 민족보위성은 총참모부, 문화훈련국, 포병지휘국, 해군훈련국, 전투훈련국, 조직보충국, 군사과학국 등 총 11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민족보위성의 간부는 민족보위상 최용건, 문화부상 김일(金一), 포병부상 무정, 해군부상 한일무 등 총 42명이 확인된다. 민족보위성이 설립되면서 인민군총사령부가 보위성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민족보위성에는 대부분 인민군총사령부에서 활동하던 간부들이 그대로 임명되었다.

북한지도부는 인민군의 정치사상사업과 포병·해군을 다른 병종보다 중요하게 인식해 민족보위성에서 차관급부서로 운영했다. 반면에 인민군의 공군은 육군·해군과 달리 독립병종이 아니라 민족보위성의 직속 사단으로 존재했고, 독자적인 병종지휘부도 없었다. 인민군의 정치사상부문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인민군의 전투교육·훈련부문은 조선의용군 출신, 인민군의 해군·포병·공병은 고려인이 책임지고 육성하였다. 민족보위성의 실권은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이 분점하고 있었고, 전문기술병종은 고려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인민군은 항일연군 출신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편찬위원회, 1998, 37쪽. 내무성군대는 내무성이 관할하는 무력이며, 인민군은 민족보위성이 관할하는 무력이다. 대표적인 내무성군대로는 38경비여단과 철도경비여단이 있다.

출신·고려인들이 각각 전문적인 부문을 분점하고 있는 정파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민족보위성은 기존에 인민군에서 활동해온 간부를 새로운 병종과 부대에 배치함으로써 인민군 전체에 창설경험과 운용방식을 전파하였다. 이를 통해 인민군의 전체 병종·부대는 창설경험·운용방식과 정치사상적·군사적 특징을 급속하게 공유하였다. 또한 민족보위성은 간부를 자체적으로 충원한 것이 아니라 북조선로동당을 통해 충원하였다. 노동당은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 각 부문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소련식 당-국가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 인민군은 창설 이후 2년여 만에 노동당의 지도 아래 현대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규군으로 변모하였다.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군대의 각 정치세력이 창군 이후에 권력의 갈등과 충돌보다 권한의 분담과 분점을 통해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당-국가체제의 핵심은 1949년 시기에 북한의 정권기관·부문기관·협동단체·사회단체·군대의 모든 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인민군에도 소련식 당-국가체제가 도입되어 노동당에서 군대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당-국가체제는 군대의 대대 이하에는 도입되지 않았고, 대대 이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민족보위성에서 행사하였다. 또한 군대에는 노동당의 당단체가 조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당-국가체제는 군대에서 하부단위까지 관철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의 당-국가체제는 6·25전쟁 이전까지 구축되지 못했으며, 전쟁 중에 민족보위성의 성격이 전환되고 인민군에 총정치국이 설치되면서 점차 변화한다.[92]

92) 당-국가체제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이 정권기관·사회단체·군대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범위다. 당-국가체제는 당의 인사권이 하부단위까지 행사될수록 공고해지며, 당·정·군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북한의 당-국가체제가 1950년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당-국가체제에 관한 주요연구는 다음을 참고 바람. 서동만, 앞의 책, 245~249쪽; 차두현, 『북한 당 · 군관계의 변화과정 : 변화의 동인과 그 의미』, 연세대

이 글에서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해명해야할 내용이 적지 않다. 첫째,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민족보위성의 부서와 간부가 많다. 특히 각 부서의 체계와 간부는 거의 알 수 없다. 둘째, 민족보위성이 지휘하는 인민군 병종부대의 편제와 지휘관도 일부만 밝혀진 상태다. 이 같은 과제가 해명되었을 때, 비로소 6·25전쟁 직전 인민군의 전투서열이 정리될 수 있다. 셋째, 인민군의 정치사상부문은 항일연군·의용군 출신이 담당했고 전문기술부문은 고려인이 담당했는데, 이 같은 역할분담이 인민군의 정체성에 끼친 영향이 해명되지 않았다. 넷째, 개전 이후 민족보위성과 전선사령부의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 문화훈련국장 김일 등 민족보위성의 간부들이 대거 전선사령부로 이동했는데, 그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상의 주제는 연구과제로 남긴다.

(원고투고일: 2018. 11. 9, 심사수정일 : 2019. 4. 25, 게재확정일 : 2019. 5. 7)

주제어 : 조선인민군, 북조선노동당, 당국가체제, 정치연합체제,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군, 6·25전쟁, 최용건

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24~57쪽;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백학순·정성장·이대근·정성임 외 지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한울아카데미, 2007, 32~226, 467~525쪽;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 조직 연구(1945~1960)』, 선인, 2008, 467쪽;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15-3,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김선호, 「북한의 당군관계 출현과 통일전선의 군대」, 『현대북한연구』21-2,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

〈참 고 문 헌〉

1차 사료

『동아일보』, 1962.7.7

강건, 「김일성 장군 항일유격부대는 조선인민군의 전투적 골간이다」, 『근로자』1950년 2호, 로동신문사, 1950.1.31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1·7·9·30·39·46권, 국사편찬위원회, 1982·1989·1990·1998·2003·2005

金日成,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2권, 국립인민출판사, 1949.8.5.

김택영, 『최고주권기관과 국가중앙집행기관』, 민주조선사, 1949.9

내무성 제1처장 위대성, 「내성1처 제742호 : 인민군제二정치학교 학생취천에 대하여」, 내무성, 1950.6.11,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7

勞動省, 『로동』제1호, 勞動省, 1949.3.15

레베제프, 『레베제프 비망록』, 미간행 번역본, 1995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49-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및 국가기구』,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2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1950년 3호,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2.1, NARA, RG 242, SA 2009, Box 3, Item 232

민족보위성,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철』, 민족보위성, 1950.6,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6

民族保衛省總參謀部, 『鬪爭手帖』, 民族保衛省軍事出版部, 1949.2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北朝鮮人民會議 第四次 會議 會議錄』, 朝鮮人民出版社, 1948

브·쓰·마니꼽쓰끼,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 『근로자』제22호, 로동당출판사, 1949.11.30

습격기연대 문화부, 『쎄미날제강-국내정세』, 습격기연대, 1950.4.3, NARA, RG 242, SA 2009, Box 5, Item 1.5

신영일, 『조선인민군대 간부리력서』, 민족보위성 간부처, 1949.1.8,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13

신영일, 『조선인민군대 이력서』,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 1948.11,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2.3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슈티코프, 「몰로토프에게 보낸 보고」(1948.1), ⅡAMO(러시아연방국방성문서보관소), ф. 172, оп. 614633, д. 3, лл. 1~2
전현수 역,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제25군 정치담당부사령관 레베제프, 「북조선인민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1948.2.9), ⅡAMO, ф .172, оп. 614633, д. 3, л. 19
제25군사령관 코로트코프,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 관한 보고」(1948), ⅡAMO, ф. 172, оп. 614633, д. 3, лл. 20~22.
조선중앙통신사 편, 『해방후 10년일지(1945-1955)』, 조선중앙통신사, 1955
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1950.7.20
砲兵參謀部, 『保衛省接受文件綴』, 民族保衛省 砲兵指揮局, 1950.6.16, NARA, RG 242, SA 2013, Box 1, Item 116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단행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1, 군사편찬연구소, 20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1, 선인, 2003
김국후, 『평양의 까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201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재웅, 『북한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8
림춘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박광선, 『소부대활동의 나날에』, 금성청년출판사, 199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2권, 나남, 1996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1, 선인, 2010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현대정치사』, 오름, 1999
楊昭全·李輔溫, 『朝鮮義勇軍抗日戰史』, 高句麗, 1995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2001
육군정보국, 『(軍事極秘) 人民軍特報』, 육군본부, 1952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 조직 연구(1945~1960)』, 선인, 2008
林隱, 『北韓 金日成王朝秘史』, 自由社, 1982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 경인문화사, 2006
정설송 엮음,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률성①-그의 삶』, 형상사, 1992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1, 고려원, 1990
최태환·박혜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한국일보 편, 『(證言) 金日成을 말한다』, 한국일보사출판국, 1991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8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 오름, 2008

논문

Ж. Г. Сон,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и КНДР(1946-1948)*, Корё Сарам, 2016.1.13.
기광서, 「북한 무력 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硏究』28권 3호(2004), http://uci.or.kr/G704-000471.2004.28.3.004
기광서, 「소련공산당 정치국의 대한반도 관련 '결정'과 북한정부의 성격 구상(1945-1948)」,『동방학지』144호(2008), http://uci.or.kr/G704-001255.2008..144.008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경남대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아카데미, 2006
김광운, 「전쟁 이전 북한인민군의 창설과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1, 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우동현,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15권 3호(2012),
http://uci.or.kr/G704-SER000003282.2012.15.3.002

정일영,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2014

차두현, 『북한 당 · 군관계의 변화과정 : 변화의 동인과 그 의미』,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Abstract>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North Korea's National Ministry of Defense and the Composition of it's Organization

Kim, Seon-ho

The North Korea's National Defense Ministry (NDM, *Minjokbowiseong*) derived from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Minjokbowikuk*) of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established on February 7, 1948. The NDM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9, 1948 a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ver the Korean People's Army(KMA). The NDM consisted of 11 departments including the Artillery Command and the Navy Command. At that time, there were more than 42 officers, including the minister Choi, Yong-Keon(崔庸健) and the vice minister Kim, Il(金一).

The North Korean leadership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education, artillery, and naval forces of the KPA, assigned the related affairs to the deputy ministerial division of the NDM. On the other hand, the Air Force of the KPA, unlike the army and navy, was not an independent army, but a unit under the control of the NDM directly. The political field of the KPA was from th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group, education and training from the Korean Volunteer Army group, and naval, artillery and miners from the Korean of Soviet origin. The KPA was a political coalition system in which each political party divided professional fields.

NDM assigned political and military characteristics to the entire unit by deploying the people in the KPA to a new unit. The forces of the KPA were fostered as armies capable of

carrying out modern warfare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sharing political and military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NDM recruited new officers mainly through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Since 1949,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has fully adopted the Soviet-style Nomenclartula system by taking over rights of personnel management to the officers of state institutions and armed forces.

Key words : Korean People's Army, Korean Workers' Party, Nomenclartula system, Political Coalition System,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Korean Volunteer Army, Korean War, Choi, Yong-Keo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47-88
https://doi.org/10.29212/mh.2019..111.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주일미군기지 일본인노무자의 6·25전쟁 종군활동과 귀환

양영조*

1. 문제의 제기
2. 6·25전쟁 발발과 일본인 참전 논의
3. 미 지상군의 참전과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가. 주일 미 지상군의 참전과 일본인 참전 문제의 부각
   나.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동기와 활동
4.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규모와 귀환 과정
   가.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규모
   나.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귀환 과정
5. 맺음말

1. 문제의 제기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일본에 소재해 있던 미 극동군사령부

*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요청으로 수송선, 소해정, 구 해군병력, 기술자, 노무자 등을 한반도로 투입하여 미군과 유엔군의 작전에 협력하거나 전쟁을 지원하였다. 일본의 전쟁협력 사실은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서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1970년 후반부터 비로소 이에 관한 자료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몇몇 학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일본 외무성 자료가 1976년부터 공개되었으며 동시에 미국에서도 외교관계 자료집이 출간되었고, 그 후 보고서의 일부와 참전자 회고록, 수기 등이 출간되면서 이에 관한 몇몇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1] 그러나 이 때까지의 연구는 자료의 제한과 관심의 부족 등으로 기초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는 2000년부터 진행되었다. 후방기지와 병참기지로서의 역할, 해상수송과 수송인력의 지원, 항만 부두노무자의 하역, 일본 특별소해대의 기뢰제거 작업 등은 물론 야마구치(山口)현 사례의 지방사적인 측면에서도 연구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2] 이들 연구를 통해 일본의 유엔군 지원

---

1) 한국에는 유석렬, 「한국전쟁과 일본」, 『한국전쟁사』 제5권(전쟁기념사업회, 1993) ; 양영조, 「한국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육군박물관, 『학예』 제6집(육사, 1990) 등이 있으며, 미국에는 Reinhard Drifte, *Japan's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1989) ; U.S. Navy,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Koraea*, 육군본부(역),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육군본부, 1985) ; Tamara Moser Melia, *Damn the Torpedoes-A short History of U.S. Naval Mine Countermeasures (1777-1991)*(Naval Historical Center Department of the Navy, Washington, D.C., 1991) 등이 있다. 일본에는 三木秀雄, 「支援という名の防衛戰略」, 『防衛大學(社會科學篇)』 第51輯(防衛大學, 1960) ; 吉岡吉典, 「朝鮮戰爭と日本」, 吉岡吉典 外, 『現代朝鮮論』(頸所書房, 1966) ; 鈴木正四, 「朝鮮戰爭と現代史」, 『歷史評論』(歷史評論社, 1981) ; 前田哲男, 『自衛隊は何をしてきたのか?』(筑摩書房, 1990) : 平間洋一, 「掃海艇派遣 - 朝鮮戰爭時の敎訓」(中央公論, 1991) 등의 연구가 각각 발표되었다.

2) 南基正, 「朝鮮戰爭と日本-基地國家を中心に」, 東京大學綜合文化硏究科博士學位論文, 2000; 大沼久雄, 「朝鮮戰爭に於ける日本人の參戰問題」, 『戰爭責任硏究』 第31號(2001) ; 鶴田久夫, 「占領下日本での朝鮮戰爭の後方支援」『防衛學硏究』 第27號(2002); 鈴木英隆, 「朝鮮海域へ出擊した日本特別掃海隊」『戰史硏究年譜』 第8號(防衛硏究所, 2005) ; 庄司潤一郎, 「朝鮮戰爭と日本の對應 -山口縣を事例として-」『防衛硏究所紀要』 第8卷 第3號(防衛硏究所, 2006) ; 石丸安藏, 「朝鮮

에 관한 다양한 역할에 관해 정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 어느 정도 평가의 수준까지 논의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소재한 미 지상군 부대기지에 소속된 일본인노무자(이하 다른 노무자와 구별하기 위해 일본인 기지노무자 또는 종군노무자라고 칭함)들의 종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목하지 못하였으며, 그 의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극히 제한된 일부 몇몇 사람의 증언이나 회고록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쟁 당시 미군 당국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었고, 일본 언론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쟁 중 일본 언론들은 유엔군사령부의 철저한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보도할 수 있었다. 일본 언론사는 기자를 전쟁에 파견할 수 없어 모든 자료를 미군 보도 자료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3)]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을 검토하면서 미 지상군과 함께 한국전선에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의 활동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인 기지노무자는 주일 미군기지 내에 고용되었던 노무자로 그 중 일부가 미 지상군과 함께 전선에서 직접 종군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제한된 지역에서 정해진 역할을 했던 노무자들과는 달리 직접 전선에서 전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였고 그 역할도 매우 다양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으로 이동하여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에 한정하여 그들의 종군 배경과 직접적 동기, 한국으로의 이동과정, 한국전선에서의 지원활동, 그리고 일본으로의 귀환

戰爭と日本の關して」, 『戰史硏究年譜』 第11號(防衛硏究所, 2008) ; 田中明, 「朝鮮戰爭에 있어서 後方支援에 관한 一考察- 仁川上陸作戰에 焦點을 두고-」『韓日戰爭史學術會議輯』(군사편찬연구소, 2012) 등이 발표 되었으며, 일본방위연구소 전사센터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물들을 종합하여 防衛硏究所, 『戰史特輯 朝鮮戰爭と日本』(防衛硏究所, 2013)를 발간하였다.

3) Richard B. Finn, *Winners in Peace, MacArthur, Yoshida, and Postwar Japan*(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92), p.261.

과정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활용된 자료들은 주로 유엔군사령부가 극비리에 예하 각 군단, 사단 등에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각 예하부대들이 조사결과를 보고한 기록들이다. 1950년 말 유엔군 내에서 미 지상군부대에 종군하고 있는 일본인 기지 노무자들의 소재가 확인되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동년 12월 31일 유엔군사령부가 극비리에 예하부대에 소재 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보고서들은 본 논문에서 처음 분석 활용된 자료들이다.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최초 지시(IG 333.5, 1950.12.20일자)는 극동군사령부가 하달하였고, 일본군수사령부가 그 명령을 근거로 각 부대에 조사협조 요청서(TWX E 33986, 1951.2.12)을 송부하였다. 그 결과 각 부대 내의 비공식적으로 속해 있던 일본인 노무자들의 소재가 확인되었고, 이들 모두는 1951년 2월 경 일본으로 소환되어 입한 경위와 역할 등에 관해 치밀한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이 자료의 문서 파일은 각 부대의 조사결과 보고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인 노무자의 개인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고, 또 유엔군사령부, 일본군수사와 제2군수사, 감찰조사관, 군병원 등의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어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들이다. 특히 개인의 진술서는 거의 전 과정이 꾸밈없이 진술되어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자료라고 평가된다.[4]

---

4)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 문서군 RG 338, Entry 11909, Box 46이다. UNC, *Unauthorized Shipment to and Utilization of Japanese Nationals in Korea*(1950.12-5) ; FEC, *FEC to Commander in Chief of UNC*(1950.12-1951.5); Japan Logistic Command Communication Center, *Smuggling Japanese to Korea*(1951.2) ; Southwestern Command, *Southwestern Command to Japan Logistical Command*(1950.1-5) ; Hq X Corps, *Report of Investigation Concerning Unauthorized Entry of Japanese Nationals in UN Forces*(1951.2.6) ; Us Army, *Incoming Massage*(1951.1.5) ; CG Army Eight, *CG Army Eight to CG X Corps*(1951.1-5) ; Hq Camp Mower, *Unauthorized Shipment to and Utilization of Japanese Nationals in Korea*(1951.2.23) ; *Japanese National Personal Statement*(1951.2-5) ect.

2. 6·25전쟁 발발과 일본인 참전 논의

6 · 25전쟁 발발로 주일 미군이 참전한 직후 북한군의 규모나 화력이 예상 외로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미군 대신 일본인 부대를 파견하자는 논의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정계에서도 제기되고 있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한국을 36년간 식민 지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지리와 사회 사정에도 밝다는 것이었다.

한국전에 일본인 부대를 파견하자는 주장은 가장 먼저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정부 일각에서는 1950년 7월 2일 관방장관 오카자키(岡崎勝男) 등이 일부의 일본인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과거 전범자인 고다마(兒玉營士夫)는 동년 7월 20일 일본인 자원자를 한국전선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5] 일본 최고법원장이던 타나카(田中耕太郎)는 1950년 7월 23일자 신문에 만약 유엔의 요구가 있으면 일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6]

일본정부 인사 외에도 참의원의장인 사토(佐藤尙武) 역시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도 일본인들이 개인자격으로 유엔군에 입대하는 것은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7] 민주당의 아시다(芦田均)는 일본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경찰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아시다는 "현재 요시다 정권은 조선전쟁이 주는 기회를 십분 이용함으로써 유엔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

일본인의 참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본의 장래에 매

5) 『讀賣新聞』 1950年 10月 30日字.
6) 『每日新聞』, 1950年 7月 23日字.
7) 『每日新聞』, 1950年 8月 5日字.
8) 『每日新聞』, 1950年 8月 14日字.

우 중요하며 평화협정의 체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많은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일본 여론은 “한일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 사토 의장의 발언처럼 참전 반대의견을 지지하였다.[9]

일본인 참전 주장은 일본 정계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도 제기되었다. 일본의 관방장관의 참전 주장이 발표된 지 1주일 후인 1950년 7월 10일 인디아나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호머(Homer Capehart)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에 일본인을 자원병의 형태로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유엔이 일본인을 편성하여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하에 참전시키도록 하자는 주장이었다.[10]

이에 일본정부는 공개적으로 유엔의 참전을 지지하였으나, 일본인을 참전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동년 7월 11일 일본 수상 요시다(吉田茂)는 유엔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일본의 유엔 지원을 강조하면서 "유엔을 위한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언급했다.[11] 그는 6·25전쟁은 '강 건너 불'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일본 자체도 공산주의의 위협과 무관한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12] 그러나 그는 일본이 피점령국 상황이므로 유엔 협조가 일본의 군사적 참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본인을 참전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13]

일본인의 참전에 관해서는 미국의 여론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었다. 〈뉴욕 타임즈〉는 1950년 8월 12일자 사설에서 6·25전쟁에

---

9) GHQ SCAP, *Prefecture Press Analysis*(27 Aug 1950), MFSN-267(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번호, 이하 같음).
10) 『毎日新聞』, 1950年 7月 10日字.
11) 『毎日新聞』, 1950年 7月 12日字.
12) 『毎日新聞』, 1950年 7月 15日字.
13) 『毎日新聞』, 1950年 7月 12日字.

일본인이 참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일본의 지배 하에서 식민지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돌아오는 것을 반대할 것이며, 일본 군인은 유엔군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군의 용병이 될 것이고, 또한 일본 헌법 역시 일본 재무장을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14]

이렇듯 일본 내외로 일본인의 참전에 관한 의견들이 분분해지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A. MacArthur)는 그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즉, 그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일본인이 유엔군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15] 맥아더가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법률문제보다도 오히려 일본인 참전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일본의 군사적 위기 문제였다. 주일 미군이 한반도로 모두 투입되는 상황에서 일본인마저 투입하게 된다면 일본안보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 미 지상군의 참전과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가. 주일 미 지상군의 참전과 일본인 참전 문제의 부각

6·25전쟁 개전 당시 미국은 전쟁에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미국은 우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지상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지상군은 미 제8군을 비롯하여 4개 보병사단이었다. 미 제8군사령부는 요코하마(横浜)에, 제1기병사단은 혼슈(本州) 중부지역에, 제7보병사단이 홋카이도(北海道)에, 제24보병사단이 큐

14) *New York Times*, 12th August 1950.
15) 『毎日新聞』, 1950年 8月 10日字.

슈(九州)에, 제25보병사단이 혼슈의 남부지역에, 그리고 류큐(琉球)사령부 소속의 제29연대와 제9방공포병단이 오키나와(沖繩)에 각각 주둔하고 있었다.[16]

미 지상군은 이동명령을 하달 받자 전투부대의 완전한 편성보다는 우선 북한군을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미 지상군은 주일 미군이 먼저 투입되고, 이후 태평양기지인 하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본토 순으로 이루어졌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먼저 주일 미군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큐슈에 있는 제24사단을 투입하였고 이어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그리고 홋카이도에 있는 제7사단 순서로 투입했다.

이에 제24사단 가운데 제21연대 제1대대가 스미스특수임무부대(TF. Smith)로 편성되었고, 1950년 7월 1일 출발하여 그날 오후 부산 수영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이들이 한국전에 미 지상군 부대로는 최초로 참전한 부대가 되었다. 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은 7월 3일 대전에 도착했고, 이어 사단 주력이 일본 모지(牟支)와 사세보(佐世保)에서 각각 출발했다.[17] 먼저 제34연대가 7월 2일 부산에, 이어 제21연대, 제19연대가 4일 부산에 각각 도착하였다.

다음으로 혼슈 남부에 주둔하던 제25사단이 한국전선에 투입되었다. 동년 7월 5일 한국 출동명령을 받은 사단은 제27연대를 제8야전포병대대와 함께 7월 10일에 투입되고, 곧이어 제24연대와 제159포병대대 및 제35연대가 각각 부산에 상륙하여 전선으로 배치되었다.[18]

제1기병사단은 인천상륙 계획이 취소되자 7월 18일부터 요코하마에서 포항으로 상륙할 계획이었다. 사단은 7월 12일부터 요

16)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p.52-54.
17) Roy K. Flint, *T.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 5-9 July 1950*(Univ. Press of Kansas, 1988), p.274.
18)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153.

코하마에서 승선하여 18일 새벽 제5, 제8기병연대가 포항 영일만에 상륙했으나, 제7기병연대는 태풍으로 인해 22일에 영일만에 상륙했다.

홋카이도에 주둔한 제7사단은 일본 주둔 미군 보병사단들이 한국전선으로 이동하자, 다른 사단의 병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인천상륙작전의 임무를 맡은 제7사단은 8천여 명에 불과한 병력을 1만 8천 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6주간에 거쳐 미 본토와 오키나와로부터 신병들을 보충 받았고, 부족한 병력 8천 명을 한국군 카투사 병력으로 보충하였다.[19] 제7사단은 인천상륙을 위해 출동할 때 제31, 제32연대 등 2개 연대만이 출동했고, 그것도 각 연대의 5천명의 병력 중 2천명이 한국군 카투사로 편성되었다. 이렇듯 미국은 한반도에 부대를 투입하면서 전선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현지 적응훈련을 수행할 겨를도 없었고, 주일 미군은 당시 투입이전까지 일본을 점령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행정부대나 다름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20]

한편 미군의 참전결정으로 미 지상군이 한반도에 투입되자 당시 공산군과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인이 한국전에 참전하였다는 주장과 비판을 제기하였다. 가장 먼저 북한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은 일본인노무자 종군 문제를 사실보다 훨씬 부풀려 확대시키려 했다. 북한은 전쟁 초기부터 '일본군 참전' 문제를 들고 나와 국제 정치적으로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 1950년 7월 6일 북한인민군총사령부는 "수원동쪽에서 섬멸된 적의 시체 가운데 30여명의 일본인 장교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21] 동년 10월 14일에는 북한 외무상 박헌영이 유엔총회에 북침 증거를 제출하면서 아울러 "미군이 수 백 명의 일본군을 참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22] 1950년 11월 2일 소련도 극동위원회에

---

19)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New York : Times Book, 1987), p.276.
2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USGPO, 1972), pp.165-166.
21) 『日刊建設通信』 1950年 7月 7日字, 吉岡吉田, 앞의 논문, p.77 재인용.

서 미군이 일본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공산군의 그러한 주장은 이후 계속 반복되었다.[23]

이어 북한은 중앙통신기자가 1951년 8월 18일 유엔군의 포로 명부 중에 일본인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중 2명 야스이(安井龍文, 25세), 토오이(筒井淸人, 23세)와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였다.[24] 이 시기는 휴전협상이 개시되어 한창 휴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때였다. 두 사람의 증언 내용 중 야스이의 발언은 크게 무리가 없으나, 토오이의 내용은 공산군의 선전선동을 위한 작위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사이신문〉은 1952년 11월 13일자에 "조선에서 전사했던 한 일본인"이란 제목으로 하라츠카(平塚重治)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다음날 같은 신문에서 동일한 경우가 또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오분현(大分縣)의 세 사람(吉原嶺文, 橋本忠二, 越智英一)도 조선에서 소식이 끊겼다고 연이어 보도했다.[25]

그 후 오랫동안 이들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나 일본의 유엔군 협력에 관한 자료와 회고록 등이 공개되고 있을 무렵인 1976년 7월 『湖』의 취재반이 종군노무자 3명(藤岡幹二, 菊本勝敏, 富永松雄)의 증언을 받아 「조선에 '참전' 했던 일본인」이란 제목으로 소개하였다.[26]

대체로 전쟁기간 일본인 참전문제에 관한 양측의 입장은, 미군이나 유엔군은 국제적인 정세를 고려해 일본인 노무자의 종군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면 외교적으로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저하게 은폐하는 편이었고, 반면 공산군은 사실 이상으로 문제를 부각시켜 정치적인 공세를 가하는 입장이었다.[27]

---

22) 『朝日新聞』, 1950年 10月 16日字.
23) 『朝日新聞』, 1950年 11月 14日字.
24) 『朝日新聞』, 1951年 12月 19日字.
25) 『朝日新聞』, 1952年 11月 13日字 및 14日字.
26) 本誌取材班, 「朝鮮で'戰死'したある日本人」『湖』, 1976年 7월號, pp.99-106.
27) 1992년에는 러시아 군사연구소 가브렐 코르트코프 연구원이 "경찰예비대 소속

나.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동기와 활동

1) 종군 동기

주일 미 지상군의 한반도 투입이 결정되자, 각 사단에 소속된 있던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일부가 미군과 동반하여 한국전선으로 이동하였다. 본 절에서는 미군에 소속된 일본인 노무자들이 미군을 따라 왜 종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군이 왜 그들을 동반하여 데리고 갔는지 그 직접적인 동기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에게 있어서는 소속 미군부대의 한국 이동이 곧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했다. 이들은 길게는 거의 5년 동안 미군부대 기지에 고용되어 통역, 주방, 기술, 잡역 등 각종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전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그것은 흔치 않은 기회였다. 이들은 미군부대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면 일자리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어쩌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한국행을 택하게 되었다. 이들은 미군부대에서 일한다는 선망과 질시 속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결정짓는 미군 상관의 요구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종군 동기는 자신들이 진술한 내용에 잘 묘사되어 있다.

제24사단 63포병대대 서비스중대에 소속되어 있던 타케오(Ariyoshi Takeo, 21세)의 경우, 후쿠오카(福岡)의 미군부대에서 14개월 간 주방 일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그 부대가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한국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곧장 그의 상관인 미군 상사에게 한국으로 따라가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는 미군부대와 함께 1950년 7월 4일 부산에 도착하여 줄곧

의 일본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으며, 그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연합통신』, 1992년 10월 12일자.

생사를 같이 하였지만, 전혀 급료를 받지 않고 종군했다. 그가 전선에 있는 동안 받은 돈이라고는 미군병사들이 크리스마스 때 갹출하여 선물한 75불이 전부였다.[28]

타케시(Matsunobu Takeshi, 20세)는 제24사단 포병연대 본부에서 2년 3개월간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고 1950년 7월 4일 자원하여 한국으로 갔다. 그는 상사로부터 하카다(博多) 캠프로 돌아갈 때 노무 장교를 만나 급료와 일자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29] 후미조(SaitoFumizo, 47세)는 1946년부터 제24사단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한국행을 자원하였지만 담당 상사가 반대하여 7월 8일 몰래 승선하여 부산으로 갔다고 했다. 그 역시 종군동안에 급료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부대 상사가 일본에 돌아가면 급료를 지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했다.[30] 키야마(Taruo Kiyama, 17세)는 1945년 7월에 한국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1950년 7월 23일 미군 제24사단 19연대 A 중대에 들어가 주방 일을 했으며, 부대 상사로부터 4만 엔을 받았다고 진술했다.[31] 1946년부터 미 제24사단 기술부대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타모츠(Ueno Tamotsu, 20세)는 중대 상사가 통역으로 한국에 가자고 권유했고, 중대장도 허락하여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종군도중 상사로부터 3만-4만 엔씩 세 번 받았다고 했다.[32] 그것은 급료의 성격이 아니라 상사가 개인적으로 준 것이었다.

제25사단에 소속된 일본인노무자들의 동기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제25사단 24연대에 1948년 12월부터 고용되었던 태루오(Katsuki Teruo, 18세)는 미군 부대 병사들이 같이 가자고 하여 부대와 상관의 허락 없이 몰래 승선하였다고 했다.[33] 또

28) Ariyoshi Takeo, Statement(1951.2.17).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29) Matsunobu Takeshi, Statement, Ibid.
30) Saito Fumizo, Statement, Ibid.
31) Taruo Kiyama, Statement, Ibid.
32) Ueno Tamotsu, Statement, Ibid.

제25사단 35연대에 1946년 7월부터 고용되었던 시게오(Kimura Shigeo, 26세)는 7월 2일 여러 장교들이 함께 가자고 하여 자원하게 되었고, 1950년 12월과 1951년 1월 두 달치의 급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34] 제25사단 27연대 본부중대에서 통역으로 일을 하고 있던 히데키(Okamura Hideaki, 26세)는 일본인이 아니라 전쟁 전에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 온 한국인이었으며, 동년 7월 7일 많은 장교들이 한국어 통역으로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자원하였다고 했다. 그도 종군하는 동안 급료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미군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고 진술했다.[35]

제1기병사단의 사례도 이와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제1기병사단 82포병대대에 근무하던 쇼지(Imaizumi Shoji, 23세)는 중대장이 함께 가자고 하여 자원했다고 했으며, 그 중대장은 부대에서 민간인 신분인 자신과 늘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36] 제1기병사단 5기병연대 박격포대대에 고용되었던 만조(Honda Manzo, 36세)는 자원하여 1950년 7월 25일 포항으로 갔으며 종군하면서 잡역을 수행했다. 그의 중대장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만조에게 규정과 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한국으로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중대 병사들이 몰래 그를 탑선시켜 데려갔다고 했다.[37]

이 문제에 관해 후에 제1기병사단 감찰참모는 사단으로부터 일본인 소재에 관한 조사를 위임 받고, 최종 보고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즉, "담당 중대장들이 일본인들을 공식적인 절차 없이 허락한 것은 잘못이고, 그들이 그것이 위법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책이 될 수 없다.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들어간 것은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조사결과를 보고했다.[38]

---

33) Katsuki Teruo, Statement, Ibid.
34) Kimura Shigeo, Statement, Ibid.
35) Okamura Hideaki, Statement, Ibid.
36) Imaizumi Shoji 및 그레이브 대위, Statement, Ibid.
37) Honda Manzo, Statement, Ibid.
38) 제1기병사단 감찰참모의 조사보고(1951.1.26), Ibid.

다음으로 제10군단과 제7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일본인 종군노무자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슈지(Ono Shuji, 28세)는 제10군단 공병단에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1950년 11월 27일에 미군 대령이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그와 함께 군용 항공기로 동경에서 북한 용포비행장으로 갔다고 했다. 슈지는 공병단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 받았고 주로 대령의 개인 일을 도와주었으며, 그 대령이 그에게 일본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처를 찾아가 640달러를 받으라 했다고 진술했다.[39] 그 대령은, 1951년 1월 8일 조사과정에서, "부대 내 일본인들의 수송, 통역, 잡역 등은 부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무기를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반면 미 군단감찰참모는 대령의 행동은 미군과 유엔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평가서를 보고했다.[40]

제7사단 32연대 57야포대대에 주방에 고용되어 있던 켄죠(Takatsu Kenzo, 19세)는 미군 병사들이 함께 한국으로 갈 수 있으며 나중에는 미국도 갈 수 있다고 하여 자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41] 이처럼 일본인 자원자들 중에는 아메리칸드림을 생각하면서 자원한 사람들도 몇몇 확인된다. 제7사단 52수송트럭대대에 속해 있던 다케요시(Katoda Dakayoshi, 25세)의 경우, 동경전기빌딩에서 1년간 취업해 있었고 전쟁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요코하마 항구에서 하역감독으로 고용되었다. 이때 그는 자신의 미군 상관이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 권유했고 그를 트럭에 숨겨 요코하마에서 인천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그도 역시 미군부대 상사의 권유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었으나, 종군하는 동안 급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진술했다.[42]

---

39) Ono Shuji, Statement, Ibid.
40) 페어뱅크 대령, Statement ; 제10군단 감찰실이 제10군단장에게 보고(1951.1.8), Ibid.
41) Takatsu Kenzo, Statement, Ibid.
42) Kakoda Dakayoshi, Statement, Ibid.

같은 사단 제49야전포병대대에 소속되어 있던 산시로(Shimokochi Sanshiro. 19세) 역시 그의 부대 대대장이 같이 가자고 권유했고 그를 따라 요코하마에서 인천으로 갔다고 했다. 그도 한국에서 급료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떠나기 전에 대대장으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았다고 했다.[43] 대대장의 진술에 의하면, 미군이 일본인노무자들을 한국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지침도 없었고 그저 일본에서처럼 상식선에서 데리고 갔다고 했다.[44] 또 제7사단 32연대 전차중대에서 7개월간 목수로 고용되어 있던 쿠마가이(Yuxi Kumagai)는 그 부대와 같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중대의 담당 상사가 허락하지 않아 몰래 승선하여 한국으로 이동한 후 그 부대와 다시 합류했다고 진술했다.[45] 제7사단 17연대 D중대에 고용되었던 사토(Masao Sato, 20세) 의 경우는 1950년 9월 5일 자원하여 후지(富士)캠프에서 요코하마를 거쳐 인천으로 갔으며, 출발 전에 중대장으로부터 일본에 돌아가면 급료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46] 카즈오(Eto Kazuo)의 경우는 제7사단 31연대 G중대와 함께 1950년 8월 24일 삿포로(札幌)를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였다. 그는 중대 상사가 435달러를 준 적이 있으며 일본에 귀환한 후에도 그가 약속한 7개월 치의 급료를 받고 싶다고 진술했다.[47]

일본인 종군노무자들의 지원동기에 관해서는 제49포병대대가 제7사단사령부에 보고한 기록이 참조가 된다. 이에 의하면, 이들 일본인들은 거의 모두 잡일로 고용되었고 자원하여 한국으로 갔으며, 출발하기 전에 담당 미군 상사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한국으로 갈 경우 복무에 대한 미군의 보상은 없으며, 부상이나 사망 시 가족에게도

43) Shimokochi Sanshiro, Statement, Ibid.
44) 테일러 대대장이 사단 포병에게(1951.1.16), Ibid.
45) Yuxi Kumagai, Statement, Ibid.
46) Masao Sato, Statement(1951.2.23) ; JLC to CG Southwestern Command(1951.2.12), RG 338, Entry 11909, Box 46.
47) Eto Kaseo, Statement, Ibid.

일체의 보상이 없으며, 일본정부도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중대장 역시 함께 종군하려는 일본인들에게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어떤 보상도 없을 것이며 미국과 일본 양국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다고 진술했다.[48]

제24, 제25, 제1기병, 제7사단 이외의 부대가운데에도 일본인의 종군동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츠네시데(Shigamitsu Tsuneshide, 12세)는 제2사단 23연대 1대대 A중대 하우스보이로 있다가 흑인병사를 따라 아무 것도 모른 채 한국으로 따라 갔으며, 미군 대령이 급료의 의미로 104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했다.[49] 수기타(Sugeichi Sugita, 23세)는 1945년 이후 미군 노무사무실을 통해 제27보급중대에 고용되었다. 그는 1950년 7월 15일 한국행을 자원하였고 중대장이 미군 상사에게 부탁하여 전차 속에 숨겨 한국으로 갔다. 그는 중대장으로부터 일본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처를 찾아가 급료와 일자리를 요청하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50] 그의 중대장은 1950년 말 미군부대 내의 일본인 소재가 문제로 부각되었을 때도 수기타가 부대에서 대단히 신망을 얻고 있으며 부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국에 잔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하고 요청할 정도였다.[51]

세이이치(Ninowa Seiichi, 32세)는 미군 제8086 세탁부대와 함께 1950년 9월 14일 중대장과 함께 요코하마를 출발하였고, 출발 전에 90일 이후 일본으로 돌아오면 월 1만 5천 엔을 준다고 약속 받았다고 했다.[52] 쇼지(Haruyama Shoji, 12세)는 1945년 이후 제54헌병중대의 하우스보이로 들어가 1946년 군정중대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갔다. 그는 1948년 중대가 한국을 떠

48) 제49포병대대가 제7사단 포병연대에게(1951.1.15), Ibid.
49) Shigamitsu Tsuneshide, Statement, Ibid.
50) Sugeichi Sugita, Statement, Ibid.
51) 제27보급중대장 마르티네즈 대위 확인서(1951.2.25), Ibid.
52) 전방 통합 수송사령부의 보고(1950,12,14), Ibid.

나자,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 부대에 들어갔고 그 때 전쟁이 났다고 했다.[53] 이 경우 부대 하우스보이로 종군한 특이한 경우이지만, 당시 미군부대에는 그와 유사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엔진대대에 소속되어 있던 야마다(Nobuichi Yamada, 26세)의 경우도 기술대대에 고용되어 일하다가 갑자기 중대장으로부터 멀리 같이 갈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듣고 한국행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다고 했다.[54]

이상과 같이 미군기지 내 일본인 종군노무자들은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군부대 내에서 주방, 세탁, 기술, 잡역,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미군이 한국전선으로 이동하게 되자, 스스로 자원하거나 미군의 권유에 의해 미군을 따라 한국전선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미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리나 개인적인 관계로 비공식적으로 편성된 것이었다. 이들의 종군 동기는 대체로 미군부대의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또는 아니면 막연히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자원하여 한국행을 자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종군 활동

미군 부대를 따라가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은 한국전선에서 미군을 도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노무자들은 미 제24사단이 한반도로 진출할 무렵인 1950년 7월 초부터 제25사단, 제1기병사단이 한국에 들어올 때 미군 부대와 함께 들어왔다.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은 그때부터 미군부대와 함께 종군하면서 주로 취사, 세탁, 기술, 통역, 잡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간혹 북한군과 외모가 비슷하다고 하여 정찰부대와 함께 정찰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소속된 부대가 전투에서

53) Haruyama Shoji, Statement, Ibid.
54) Nobuichi Yamada, Statement, Ibid.

위기에 처할 때나 혹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전투에 가담한 일도 종종 발생했다. 그러면 각 부대별로 이들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인 기지노무자들 중 한국전선에 가장 먼저 종군한 사람은 미치하루(Iwata Michiharu, 20세)였다. 그는 항공중대 하우스보이로 1950년 7월 1일 중대장과 함께 군용기에 몰래 탑승하여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그는 7월 중순 제25사단 24연대 D중대에 소속되어 종군하였으며 주로 잡역을 수행하였다.[55] 제24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타케시(Matsunobu Takeshi, 28세)는 1950년 7월 4일 이후 사단 포병본부를 따라 통역 겸 기술자로 종군하였고, 대전에서 부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는 직접 전투를 가담하여 북한군 2명을 사살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신의 부대가 전선에서 5마일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투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56]

같은 제24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미네후미(Yoshiwara Minefumi)는 1950년 7월 19연대 G중대와 함께 종군하면서 주로 주방 일을 수행하였다. 그는 지연전을 수행하던 중대와 함께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7월 20일 대전전투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처가 미 187공수연대 군 경찰을 통해 소재 파악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치카마우가(Chickamauga) 캠프에서 제24사단 기록과 의무일지, 관련자 증언 등을 치밀하게 조사한 결과 최종 실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안은 미군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써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조사를 맡은 부대는 이 사건이 한국전에서 일본인 운용에 관련하여 공표한 미군의 정책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상부의 특별한 지침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사안은 특별 보안이 유지되도록 통제되었다.[57]

---

55) Iwata Michiharu, Statement, Ibid.
56) Matsunobu Takeshi, Statement, Ibid.

미네후미의 실종은 엄격한 보안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시 〈아사이신문〉은 1952년 11월 14일자에 오오분현의 주민 중 미군을 따라 갔던 다른 2명(越智英一, 橋本忠二)도 1950년 7월 미 제19연대와 함께 한국으로 이동하여 소식이 끊겼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당시 실종자 부인이 일본 외무성에 남편의 소재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1952년 10월 14일 극동군사령부는 여러 루트를 통해 조사하였지만 현재 그의 소재는 알 수가 없으며, 그의 경우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권유에 의해 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58] 아무튼 미네후미 실종사건은 그 제기 시점이 한창 양측 간에 휴전협상이 전개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1951년 가을 그의 처가 조사요청을 한 직후부터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타모츠(Ueno Tamotsu)는 1950년 7월 9일 부산에 도착하여 열차로 대전으로 갔고 제24사단 34연대 통역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7월 20일 대전전투에서 부대 대부분 와해되자 야간 9시경 사단장 딘 장군과 함께 논에 숨어 있다가 대열을 이탈하게 되었고, 다음날 부상당해 쓰러져 있던 34연대 중대장을 만나 그를 군 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부대와 종군하면서 항상 전투에 참가하여 사격전에 수행했다고 진술했다.[59]

이외 제24사단에 소속되어 종군한 마스토(Yamasaki Masto), 요시오(Hirakura Yoshio), 후미죠(Saito Fumizo) 등도 역시 군복과 소총을 지급받아 종군하면서 잡역 등을 수행하였으며, 대전전투 시에는 부대가 완전히 와해되어 직접 전투에도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60] 후미죠의 경우는 사단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철수작전 시 개성 북쪽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북한군과 사격전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57) 치카마우가 캠프가 서남부사령부에게, 실종자 건 보고(1951.11.26) ; 유엔군사령부가 일본 군수사령부에게(195112.20), Ibid.
58) 『朝日新聞』, 1952年 11月 14日字.
59) Ueno Tamotsu, Statement, Ibid.
60) Yamasaki Masto, Hirakura Yoshio, Saito Fumizo, Statement, Ibid.

다음으로는 제1기병사단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모루(Toyooka Mamoru, 20세)는 아버지가 일본인,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1950년 8월 15일 제1기병사단과 함께 종군하였다. 그는 1951년 1월 일본으로 귀환한 후 특이하게도 다시 동년 2월 다시 참전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동하여 제24사단 19연대 D중대에 소속되어 군복과 소총을 지급받고 다시 종군하였다. 그는 많은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수많은 적을 사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61] 히데키(Okamura Hideaki, 26세) 역시 부 일본인, 모 한국인으로 제1기병사단에 소속되어 주로 폭탄제거 전문가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전투에 참가한 적은 있지만 적을 사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62]

히라츠카(Shigeji Hiratsuka)는 1950년 7월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 E중대에 소속되어 종군하였다가 1950년 9월 4일 낙동강 전투에서 교전 중 사망하였다. 기병사단으로부터 조사임무를 받은 감찰참모는 1951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교전 중 사망했다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사단에서는 다시 예하부대에 그에 대한 의무기록이나 인명손실 기록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각 부대의 조사결과 의무기록이나 사망기록이 전혀 없다고 보고되었다.[63]

그런데 1952년 11월 13일 아사이신문에 "조선에서 전사했던 한 일본인"이란 제목으로 히라츠카(平塚重治)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이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1950년 7월 10일 그의 아들이 제1기병사단 E중대와 함께 조선으로 건너갔다고 들고 경시청과 법무성에 송환수속 요구를 하였는데, 10월 10일 갑자기 그를 찾아온 아들의 중대장 부부로부터 히라츠카는 상당수의 적병을 쓰러뜨리고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61) Toyooka Mamoru, Statement, Ibid.
62) Okamura Hideaki, Statement, Ibid.
63) 1st Calvarly Devision Inspector, Certification(1951.1.26) ; 1st Calvarly Devision, Certification(1951.1.28) ; 15th Medical Inspector, Japanese Nationals evacuated through medical channels(1951.1.29), Ibid.

군 당국은 공식적인 승인 없이 밀항한 것이기 때문에, 9월 4일 전사한 자 가운데 확인할 수 없고 그의 매장지나 소지품도 알 수 없다고 했다.[64] 이의 경우 미군 보고서 내용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9월 4일 낙동강전투에서 전투 중 사망하였으나 당시 미군 부대는 희생자명부 기록이나 10종 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제7사단에 소속된 일본인노무자들은 인천상륙이후 북진작전과 철수작전에 참가하였다. 제7사단 32연대 G중대 소속 료죠(Akanuma Ryozo)는 1950년 9월 중대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 군복은 지급받았지만 소총은 지급받지 않았고 종군하는 동안 주로 잡역이나 통역임무를 수행하였다.[65] 코바야시(Sakae Kobayashi, 21세)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시 제7사단 32연대 H중대의 하우스보이로 종군하였으며, 북진작전에서는 중대장과 함께 정찰을 나가 북한군을 만나 사격전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중대장은 만에 하나 공산군이 그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고 하여 즉시 후방으로 가도록 지시했으며, 그 후 중대장은 전투 중 전사했다고 진술했다.[66]

다케요시(Kakoda Dakayoshi, 25세)는 제7사단 제52수송대대장이 그를 받아주지 않아 친구의 소개로 제10군단 헌병대로 가서 하우스보이로 종군하였다. 그는 군복과 소총 등을 지급받았고, 이때 헌병 소령으로부터 "너도 이제 한국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항상 그의 밑에 있던 한국인 14명과 같이 경계근무도 섰고 사격전에도 5~6회 정도 참가했으며, 종군 내내 미군들로부터 잘 대우받았다고 진술하였다.[67]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이 종군도중 미군들로부터 대우를 잘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거의 모든 경우 비슷하게 진술되고 있다.

---

64) 『朝日新聞』, 1952年 11月 13日字.
65) Akanuma Ryozo, Statement, Ibid.
66) Sakae Kobayashi, Statement, Ibid ; 8041st Army, Certification (1951.2.22), Ibid.
67) Kakoda Dakayoshi, Statement, Ibid.

켄죠(Takatsu Kenzo, 19세)는 1950년 9월 15일 제7사단 32연대 57포병대대에 소속되어 종군하면서 주로 주방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북진작전에도 동행하여 대대가 동년 11월 25일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사격전에 참가했으며, 대대가 중공군의 공격으로 장비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는 철수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으나 다행히 한국군과 함께 철수할 수 있었다. 그는 동년 11월 30일 해병사단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후쿠오카 제118병원을 거쳐 12월 18일 오사카의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켄죠의 경우는 중공군과 교전 중 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극동군사령부는 이미 동년 12월 20일부터 조사에 들어갔으며, 그의 사안에 대해 특별히 비밀등급을 1급 비밀로 상향할 정도로 민간하게 처리하였다. 그의 부상이 확인됨에 따라 극동군사령부는 각 부대에 그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경우 비밀로 분류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일본군수사령부에서는 그와 비슷한 경우가 획인될 경우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하달하기도 했다.[68]

제7사단 32연대 F중대에 소속된 사우오이(Yashiaki Sauoi, 15세)는 1950년 9월 15일 군종장교를 따라 인천으로 이동하였으며 주로 잡역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는 요코하마에 승선하였을 때 중대로부터 군복과 소총을 지급받았으며, 몇 차례 사격전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늘 군종장교를 따라 다녔으며, 그가 서울 수복이후 제10군단으로 전출가게 가자, 자신은 중대를 따라 북진작전에 종군하여 주로 주방 일을 맡았다. 그는 함흥에서 군종장교의 추천으로 제10군단 항공부대로 이동하였다고 했다. 항공부대장에 의하면, 당시 사오우이가 한국인노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69]

---

68) 서남부사령부가 일본군수사령부에게(1950.12.20) ; 일본군수사령부가 극동군사령부에게(1950. 12.22) ; 극동군사령부가 일본군사사령부에게(1950.12.22) ; Takatsu Kenzo, Statement, Ibid.

제7사단장이 1951년 1월 25일 제8군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제7사단 내에 있는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이 비록 공식 승인절차 없이 들어왔지만, 전투가 아니라 병력장비의 수송 등 노무지원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이 종군하면서 미군들의 전투근무지원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제24, 25, 제1기병, 제7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일본인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에서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이 전투근무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타케세(Ito Takeshe, 20세)는 전쟁 이전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과 함께 한국으로 왔으나, 전쟁이 발발한 후 제24사단 21연대 C중대에 소속되어 미군 병사들과 똑같이 군복과 소총 등을 지급받고 전투에 참가했다. 그는 특이하게도 7개월 동안 전선에서 공산군을 20명 정도 사살하였고 자신도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미국정부로부터 퍼플 허트(Purple Heart) 훈장을 수여받았다고 진술했다.[70] 이 훈장의 수여는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 가운데 유일한 경우로 미국정부가 그의 종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당국은 거의 모든 경우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의 종군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제2사단 23연대 1대대 A중대 소속되었던 츠네시데(Shigamitsu Tsuneshide)는 부대의 하우스보이였으나 소총을 지급받았고 북한지역에서 중공군을 만나 사격전을 전개하여 3~4명을 사살하였으며, 자신도 중공군의 사격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71] 제8군 보급부대에 있던 마모루(Ishibashi Mamoru, 9세)는 1950년 7월 중순 중대장을 따라 하우스보이로 한국으로 이동하였으나, 북진작전 시에는 대구에 남아 있었다. 이때 상부로부터

69) Yashiaki Sauoi, Statement, Ibid ; XCorps, Report of Investigation (1951.4.26.), Ibid.
70) Ito Takeshe, Statement, Ibid.
71) Shigamitsu Tsuneshide, Statement, Ibid.

부대 내에 일본인 하우스보이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하달되었고, 미군 장교가 그를 한국소년 10명과 함께 서울의 고아원으로 보냈다. 뒤에 그 중대장은 마모루를 입양하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었다.[72]

마사오(Toda Masao, 33세)는 일본인 시민권을 갖고 있으나 조선인 거류민단 출신이었다. 그는 참전을 자원하였고 1950년 9월 9일 민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규슈 아사카와캠프에 가서 다른 한국인 자원자 400여명과 2주간 훈련을 받은 다음 인천으로 상륙하였다. 이들은 인천에서 여러 미군부대에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는 중장비부대에 소속되어 부평, 영등포 일대로 전투원으로 종군하였다.[73]

니와(Kimio Niwa, 20세)는 큐슈대학 무역학부 1학년생으로서 미군부대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전을 자원한 경우였다. 그는 참전을 위해 조선 민단본부를 찾아갔고, 다른 한국인 지원자 160명과 함께 한국행을 결정하였다. 참전단의 자원은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도 승인한 사안이었으며, 니와는 참전을 자원한 160명 가운데 유일한 일본인이었다. 그는 1950년 10월 18일 부산으로 갔으나, 언어의 한계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한국군 제2훈련소장 최경록 장군의 하우스보이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11월 12일 귀환하도록 지시를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근무하였다. 그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근무하는 동안 다른 일본인처럼 급료는 없었다.[74]

이상과 같이 미 지상군에 소속된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은 대체로 전선 후방에서 미군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전투근무지원을 수행하였고, 주로 미군을 도와 취사, 세탁, 기술, 통역, 잡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소속된 부대가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에나 자신의 신변을 위협받았을 경우 사전에 지급된 소총으

72) 제8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에게(1951.3.31), Ibid.
73) Toda Masao, Statement, Ibid.
74) Kimio Niwa, Statement, Ibid.

로 전투에 가담하여 사격전을 수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어느 조사장교의 평가처럼 미군부대의 작전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75]

4.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규모와 귀환 과정

가.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규모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부대가 한반도로 이동준비에 들어가자, 이 과정에서 미군기지 내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일본인 기지노무자 중 일부가 미군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동하여 종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미국, 한국 등 학계에서 미군기지 일본인 노무자의 종군 규모에 관해서는 일부 추정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당시 유엔군사령부, 극동군, 서남부사령부, 일본군수사령부, 제2군수사령부, 제8군, 제10군단, 제24사단,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제7사단, 141병원 등 군사병원 등의 각종 관련 보고서 가운데, 미 지상군과 함께 종군했던 일본인들의 명단을 확인하여 대체적인 그 규모를 가늠해보기로 한다.

다만, 이들 보고서에 언급된 명단은 한국전에 종군하였다가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만을 파악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원을 망라하여 담고 있지는 못하다. 즉, 종군 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실종자나 사망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 미군 관련보고서에 언급된 미 지상군부대에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을 모두 발췌하여 정리하면

75) 조사장교가 제7사단 제32연대장에게, 조사결과 보고(1951.2.24), Ibid.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미군이 일본인의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의 명단은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미군 관련 자료는 미 국립 문서기록 및 관리청(NARA) 자료 문서군 RG 338, Entry 11909, Box 46의 각종 미 지상군 부대의 종군 일본인 노무자 관련 보고서들이다.

〈종군 일본인 기지노무자 현황〉

번호	성명	연령	소속	임무	입한 날짜 등
1	Akanuma Ryoxo		제7사단 32연대G중대	통역	50.9
2	Ariyoshi Takeo	21	제24사단 63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7.4
3	Eto Kazuo		제7사단 31연대	잡역	50.9.6
4	Kimura Shigeo	25	제25사단 35연대	잡역	50.7.14
5	Hamasaki Sadao	20	제24사단 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7.4
6	Harudo Yamada		제7사단 17연대 중전차중대	주방	50.9
7	Han Yong He	25	제24사단 19연대 G중대	통역 전투참여	50.7.4, 한국인
8	Haruyama Yoshio	13	제53헌병대	하우스보이	1946-51 체류 군정중대, KMAG
9	Haruyama Shojo				
10	Hisakaxu Nakahara		제7사단 49포병대대		
11	Hiroshi Yasuoka	22	제24사단 19연대G중대	잡역	50.7
12	Hirakura Yoshio	19	제24사단 63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7.5
13	Hidechi Okada	27	제1기병사단 60탄약단	폭탄기술자 전투참여	50.8, 부상 모 한국인
14	Honda Manxo	36	제1기병사단 5연대 S중대	세탁	50.7.25

15	Igarashi Yasutaka		제7사단 7통신중대	수리공	50.9.22
16	Imazumi Shoji	23	제1기병사단 82포병대대	잡역	50.7.18
17	Inoue Junichi	20	제24사단 63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7.5
18	Inoue Sadao				
19	Ishi Bashi Mamoru	9	제8군 보급부대	하우스보이	50.7
20	Ito Takeshe	20	제24사단 21연대C중대	전투참여	50.1 KMAG과 입한, 종군, 부상, Purple Heart훈장 수여
21	Iwata Michihara	20	항공중대	하우스보이	50.7.2, 김포 도착
22	Kanje Hirata	18	제7사단 49포병대대	잡역	50.9
23	Kazuku Teruo	18	제25사단 35연대A중대	잡역	50.7
24	Kanemitsu Choichiro (Kim Guang Sik)	10	항공대	하우스보이	50.9, 부 한국인
25	Katsuku Teruo	18	제25사단 35연대A중대	잡역	50.7.14
26	Karaki Kakichi	51	제24사단	이발	50.7.4
27	Kato Tokayoshi	25	제10군단 52수송대대	운전수 전투참가	50.9.25
28	Kim Sak Takasugi		제7사단 17연대 중전차중대	잡역	50.9
29	Kimio Niwa	20	의용군 육군훈련소	잡역	50.10.18, 의용군중 유일 일본인(공식) 한국군사단장 하우스보이, 11.12 귀환지시
30	Kimura Shigeo	26	제25사단 35연대	잡역	50.7.14
31	Kobayashi Sakae		제7사단 32연대H중대	하우스보이	50.9
32	Matsunobu Takeshi (Mitsuyasu Ota) (Jung Sam Te)	18	제24사단 19연대1대대D	잡역 전투참여	50.7 입한, 부상 입원, 동생 Yasunori Ota 확인
33	Matsuda Ryuji		제7사단 32연대 H중대	하우스보이	50.9
34	Maekawa Norio				보호소 탈출
35	Manikawa Tatsuzo		제24사단 기술대대	기술자 전투참여	50.7.6

36	Toyo Oka Mamoru	20	제1기병사단	전투참여	50.7 입한, 귀환 후 51.2 재입한, 모 한국인, 참전자원
37	Masato Yanasaki		제24사단 63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7.4 입한
38	Matsunobu Takeshi	28	제24사단 포병대대	통역,기술자 전투참여	50.7.5 입한
39	Matsuzaki Tetsuo	27			
40	Minowa Seiichi	32	공병부대	운전	50.9.24 입한 한국외무장관 12.15 문제제기
41	Miyahara Masateru	19	제24사단 공병대대	통역	50.7.4 입한
42	Minao Hushime		제24사단		
43	Nagano Shigeo		제7사단 17연대		
44	Nobuichi Yamada	26	1기병사단 8공병대대 C중대	잡역 전투참여	50.8.20 입한, 북진전투
45	Ninowa seiichi		제8086기술단	기술자	50.9.24 입한
46	Ochi Eiichi			폭탄제거	50.7월 입한, 교포참전자원
47	Okamura Hideaki	22	제25사단 27연대	통역 전투참여	50.7.9 입한, 한국인
48	Ono Shuji	28	제10군단 공병단	하우스보이	50.11.27 입한
49	Sadro Ha Asaki				
50	Sawagashira Rokuzo		제7사단 32연대	잡역	50.9 입한
51	Sakae Nochiharu		제7사단		
52	Saito chuji		제7사단 17연대		
53	Saito Fumixo	47	야전병원	의료보조, 전투참여	50.7.8 입한. 개성전투
54	Shinokochi Sanshiro	19	제7사단 49포병대대	주방	50.9.15 입한
55	Shigamitsu Tsuneshide	12	제2사단 제23연대 1대대A중대	하우스보이 전투참여	50.12 입한, 부상 (미군 언론에 소개)
56	Shigeji Hiratsuka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E	잡역 전투참여	50.7 입한, 9.4 전투사망, 조사 완료보고(의료 및 손실보고에 전무)
57	Sinji Sato		제7사단 17연대 중전차중대	하우스보이	50.9.29 입한

58	Songitimtask				
59	Suematso Tominago		제7사단 17연대A중대		50.9.15 입한
60	Sugeichi Sugita	23	제1기병사단 27병기중대	하우스보이	50.7.15 입한
61	Takayama Tsukuo		제7사단 32연대G중대	잡역	50.9 입한
62	Takatsu Kenzo	19	제7사단 32연대 57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9 입한, 포로 탈출, 부상 50.11.30 귀환(비밀등급상향)
63	Tsukatoshi Ohara		제7사단 헌병중대	잡역	50.9.15 입한
64	Taruo Kiyama	17	제24사단 19연대 1대대A중대	주방	45.7 입한, 50.7.23 종군
65	Toda Masao (Do Jin Sun)	33	제7사단	참전자원	50.9 입한, 참전자원
66	Ueno Tamatsu		공병대대	통역 전투참여	50.7.9 입한, 대전전투 시 Dean 장군 동행
67	Uwartan Michiharu				
68	Uneo Temotsu	20			
69	Yamasaki Masao		제24사단 63부대S중대	잡역 전투참여	50.7.4 입한, 성병환자
70	Yamata Mishiharu	14	제25사단 24연대1대대D	잡역	50.7 입한
71	Yasiaki Sauoi	15	제7사단 32연대F중대	전투참여	50.9.15 입한
72	Yashio Kotahara		제24사단		
73	Yonekawa Tatsuzo		제24사단 공병대대	기술자 전투참여	50.7.7 입한
74	Yonekawa Tatsuzo				성병환자
75	Yoshiwara Minefumi		제24사단 19연대G중대	주방	50.7 입한, 대전전투시 실종, 처의 조사요청
76	Yuxi Kumagai		제7사단 32연대 전차중대	목수	

위의 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자료에서 확인된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는 모두 76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입한 규모는 부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별로 나누어 보면 제24사단이 20명, 제25사단이 6명, 제1기병사단 7명, 제7사단 22명, 기타 부대 11명, 소속 불명 10명 등으로 나타난다. 그 중 제24사단과 제7사단의 경우가 가장 많은 이유는 제24사단의 경우 최초에 전선으로 출동하면서 이전부터 고용되었던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동반하였기 때문이었고, 제7사단의 경우는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력이 절대 부족하였고 그 상당부분을 한국군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을 동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24사단은 대전전투 등 지연전투를 전개하는 동안 북한군으로부터 후방이 차단되거나 기습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실종이나 사망자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24사단 각 예하부대들은 전선의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참전하였고, 1950년 7월 20일 대전전투에서는 모든 부대가 분산된 상황에서 일본인 기지노무자도 예외 없이 모두 전투에 가담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을 겪었다. 사단은 대전전투에서만 전체 병력 중 30%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76]

그러나 당시 미군이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에 대한 손실보고서나 의료기록 등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사단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종군자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가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4사단 19연대 G중대 미네후미(Yoshiwara Minefumi)의 경우[77], 그의 가족이 조사요청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미

76) Willam 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1950, Leavenworth Papers*(Fort Leavenworth Kansas : Combat Studies Institutes, 1985), p.6.

77) 일본군수사령부가 8162군사병원에게(1951.12.31), RG 338, Entry 11909, Box 46.

극동군사령부가 예하부대의 상황을 조사한 경우이지만, 그 이외 실종, 사망자의 경우에는 조사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귀환 과정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은 미 제24사단이 최초 참전할 때부터 인천상륙작전, 북진작전, 철수작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 중공군의 제1, 제2차 공세로 전선이 대략 38선 부근에서 형성될 무렵,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12월 갑자기 극비리에 유엔군 지상군부대 내에 일본인 종군노무자가 있을 경우 즉시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극동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의 지시를 근거로 동년 12월 20일 그 소재파악을 위한 명령(IG 333.5)을 하달하였으며, 일본군수사령부도 각 부대에 협조요청서(TWX E 33986)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명령과 보고서 내용가운데 제8군사령관의 1951년 1월 5일자 명령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즉, 제8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군단, 사단 및 예하 부대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GX-295, KGP5)을 하달하였다.[78]

"유엔군사령관은 한국에서의 유엔군부대 내에 공식적인 승인 없이 일본인이 있다는 비공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전원 집결시키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모든 지휘관은 먼저 각 부대의 상황을 조사하여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또 공식적인 승인 없이 한국에 들어오게 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라. 부대 내에 근무하는 동안 일본인의 활동과 행동에 대해서도 조사하라. 이미 의무 계통으로 후방으로 소개되었거나 사망, 또는 전투 중 실종자 등을 파악하라. 아울러 각 지휘관은 그들을 지시된 장소로 옮기고 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어떤 면담이나 토의도 금지한다. 먼저 그들에 관해 성명, 일본주소, 건강상태 등을 완전히 조사하여 사령부에 즉각 보고하라. 이 지시를 받자마자 필요한 명령을 제2군수사령부에

78) CG Army Eight, *Incoming Massage*(1951.1.5), Ibid.

보고하고, 반드시 군의 경호 하에 일본인을 동반하라. 이 조사는 1951 월 1월 15일까지 마무리하라. 제2군수사령관은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을 인수받아, 숙소 및 치료 등을 제공하라. 이 사안은 1급 비밀(Top Secret)이다"

즉, 제8군사령관은 유엔군부대, 미군 부대 내에 비공식적으로 동반한 일본인들을 모두 조사하여 현황을 보고하고 즉시 그들을 집결시켜 일본으로 귀환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사령부가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활동에 관해 전혀 언급이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굳이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인 기지노무자 세이이치(Ninowa Seiichi)의 진술내용이 참조가 된다.

제8군사령부의 명령이 하달되기 이전인 1950년 11월 27일 세이이치가 부산에서 한국 군 경찰의 검문에 걸려 심문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군 헌병이 이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다. 결국 한국외무부가 김두한 외무장관 명의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세이이치의 한국입국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아울러 즉시 그를 일본으로 귀환시키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극동군사령부는 제8군사령부에게 보낸 지시공문에 세이이치의 사안은 국제적인 복잡성에 비추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공식적인 승인 없이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인 문제는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79] 이 경우가 미군 내부적으로 종군 일본인 기지노무자에 대해 가장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려한 사안이었다. 일본인 종군노무자들의 소재가 공산측에 알려지면 미국이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79) 전방통합수송사령부의 보고(1950.12.15) ; 한국외무부가 미군 대사관에게 (1950.12.15) ; 극동군 사령부가 제8군사령부에게 (1950.12.20) ; 제2군수사령부가 제8군 경유, 유엔군사령부에게(1950. 12.20) ; 제8군이 제2군수사령부에게(1951.1.8), Ibid.

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이때의 전선 상황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대거 38선 이남으로 철수하고 있고, 미국 정책부서 내에서는 휴전과 현상유지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의 소재는 미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 사건 직후 1950년 12월 20일경 극동군사령부는 제7사단 32연대 소속 켄죠(Takatsu Kenzo)가 전선에서 부상을 입어 현재 군병원에 입원 중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그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먼저 주일 서남부사령부가 이미 그는 동년 11월 30일 일본으로 귀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일본군수사령부가 그의 사안이 매우 중요하여 비밀 등급을 1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그와 유사한 경우들이 현재 정보보고로 제출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80]

미군의 이러한 사건에 대한 관심은 국제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네후미(Yoshiwara Minefumi) 실종 건도 유엔군사령부에서부터 각 예하부대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결국 그 조사 이유도 그 사건이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81] 미네후미 실종 건은 미국이 대외적으로 한국전에 일본인을 참전시키지 않았다고 공표한 정책 입장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82] 미군 당국은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의 개인 진술을 받을 때에도, 마지막 질문 부분에는 예외 없이 '한국을 여행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짐 받았으며, 미군부대에서 다시 일할 생각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

80) 서남사가 일본군수사에게, 1950.12.20 ; 일본군수사가 극동군사에게(1950.12.22), Ibid.
81) 일본군수사령부가 8162군사병원에게(1951.12.31), Ibid.
82) 치카마우가 캠프가 서남사령부에게, 실종건 보고(1951.11.26), Ibid.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12월 유엔 지상군내 일본인 종군노무자들을 귀환시키도록 명령한 것이었다. 이에 미군 각 부대에서는 그 명령에 따라 중대에서부터 상급부대로 현황을 보고하였고, 또 사단에서 종합하여 8군사령부와 일본군수사령부로 각각 보고하였다. 각 현황보고와 아울러 이들이 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각 사령부나 부대, 병원 등에서 보고와 보안을 유지되도록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은 대부분 1951년 2월경까지는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그들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에도 예외 없이 모두 군 병원에서 철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이례적으로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강조하였다. 부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그들이 일본에 도착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미군의 안내 하에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그 경호요원은 반드시 그를 안전하게 호송하였다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미군이 이 사안에 대해 지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 사령부에서는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이 일본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그들이 원하는 지역의 미군 부대기지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켄죠의 경우, 부대관리자는 그가 일본에 귀환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서비스중대에 재고용되었으나 근무태만, 업무보고 미 이행, 업무불만, 업무무단이탈 등으로 재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환경' 때문'에 그가 다시 일하려고 하면 다시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할 정도였다.[8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의 종군사실이 공산 측이나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에 대한 일련의

83) 오사카 캠프의 보고(1951.3.14), Ibid.

조치는 유엔군이 1950년 12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미 합참이나 정책부서에서는 이미 6·25전쟁을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단에 의해 마무리해야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 양측이 협상을 전개할 경우, 일본인 종군 사실은 미군과 유엔군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미 극동군사령부는 일본 점령통치 초기부터 일본인 노무자를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그 노무자는 단순 잡역에서부터 전문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으며 심지어 미군기지에 대한 경계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다량의 장비와 무기, 그리고 군수품을 수송 및 하역하기 위해 일본인 노무자를 한국으로 보내 운용하고 있었다. 주일 미 대사(1952-53년) 머피(Robert D. Murphy)의 회고에 의하면, "일본인의 선주와 철도전문가들이 그들에 소속된 숙련된 기술자와 함께 한국으로 가서 미군과 함께 유엔군사령부 예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극비의 사안이었다. 결국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인 수 천 명의 도움이 없었다면 유엔군의 작전은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84]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미 지상군의 참전이 결정되자, 주일 미군기지 내에 고용되어 있던 일본인 기지노무자 중 일부가 미군들과 함께 한국전에 종군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원하거나 미군의 권유에 의해 종군하였다. 이들은 미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로 종군한 것이었다. 엄격하게 규정하면 이

84) 三木秀雄, 앞의 논문, 「支援という名の防衛戰略」, p.141. 재인용.

들의 종군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내외로 일본인의 참전에 관한 논의들이 분분할 무렵, 유엔군사령관 맥아더가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일본인이 유엔군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종군 동기는 미군부대의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또는 아니면 막연히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자원하여 한국으로 갈 것을 자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본인 종군노무자는 모두 76명으로 파악되었고, 각 부대별로 미 제24사단이 20명, 제25사단이 6명, 제1기병사단 7명, 제7사단 22명, 기타 부대 11명, 소속 불명 10명 등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전선 상황에 따라 공산군으로부터 후방이 차단되거나 기습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실종이나 사망자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미군이 일본인 종군노무자에 대한 손실보고서나 의료일지 등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은 대체로 일본 미군기지 내에서 활동한 형태와 유사하게 한국전선 후방에서, 때로는 전선에서 미군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전투근무지원을 수행하였고, 주로 잡역이나 취사, 세탁, 기술, 운전,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소속된 부대가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에나 신변을 위협받았을 경우 사전에 지급된 소총으로 전투에도 가담하였음이 확인된다. 미군은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에게 대부분 군복과 소총을 지급하였고, 전선 상황에 따라 다수가 전투에도 가담하여 사격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종군노무자인 이토의 경우는 7개월간 전선에서 적 20여 명을 사살하는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자신도 부상을 입어 미국정부로부터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들의 소재가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유엔군이 위기에 처해 있던 1950년 12월 시점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극비리에 지상군부

대 내에 일본인 종군노무자가 있을 경우 즉시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미 극동군사령부는 이를 근거로 동년 12월 20일 소재파악 명령을 하달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조치는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의 소재가 공산측에 알려지면 미국이 국제 정치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미국 정책부서에서 휴전과 현상유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인 종군노무자들의 소재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군 각 부대에서는 중대에서부터 상급부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현황을 보고하였고, 또 이를 사단에서 종합하여 제8군사령부와 일본군수사령부로 각각 보고하였다. 이들의 귀환 과정도 각 사령부나 부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본인 종군기지노무자들은 1951년 2월까지 대부분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원고투고일: 2019. 3. 15, 심사수정일 : 2019. 4. 25, 게재확정일 : 2019. 5. 7)

주제어 : 6·25전쟁, 유엔군사령부, 주일미군 군사기지, 일본기지노무자, 종군노무자, 종군동기, 종군활동, 전투근무지원, 일본귀환

〈참고 문헌〉

유석렬,「한국전쟁과 일본」,『한국전쟁사』제5권(전쟁기념사업회, 1993)

양영조,「한국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육군박물관,『학예』제6집(육사, 1990)

三木秀雄,「支援という名の防衛戰略」,『社會科學』第51輯(防衛大學, 1960)

吉岡吉典,「朝鮮戰爭と日本」, 吉岡吉典外,『現代朝鮮論』(頸所書房, 1966)

鈴木正四,「朝鮮戰爭と現代史」,『歷史評論』(歷史評論社, 1981)

前田哲男, 『自衛隊は何をしてきたのか?』(筑摩書房, 1990)

平間洋一,「掃海艇派遣 － 朝鮮戰爭時の敎訓」(中央公論, 1991)

南基正, 「朝鮮戰爭と日本－基地國家を中心に」, 東京大學綜合文化硏究科博士學位論文, 2000

大沼久雄,「朝鮮戰爭に於ける日本人の參戰問題」,『戰爭責任硏究』第31號(2001)

鶴田久夫,「占領下日本での朝鮮戰爭の後方支援」『防衛學硏究』第27號(2002)

鈴木英隆,「朝鮮海域へ出擊した日本特別掃海隊」『戰史硏究年譜』第8號(防衛硏究所, 2005)

庄司潤一郎, 「朝鮮戰爭と日本の對應 －山口縣を事例として－」『防衛硏究所紀要』第8卷 第3號(防衛硏究所, 2006)

石丸安藏,「朝鮮戰爭と日本の關して」,『戰史硏究年譜』第11號(防衛硏究所, 2008)

田中明,「朝鮮戰爭에 있어서 後方支援에 관한 一考察－ 仁川上陸作戰에 焦點을 두고－」『韓日戰爭史學術會議輯』(군사편찬연구소, 2012)

防衛硏究所,『戰史特輯 朝鮮戰爭と日本』(防衛硏究所, 2013)

『聯合通信』,『朝日新聞』,『讀賣新聞』,『每日新聞』,『日刊建設通信』,『湖』.

Reinhard Drifte, *Japan's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1989)

U.S. Navy,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Koraea*, 육군본부(역),『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육군본부, 1985)

Tamara Moser Melia, *Damn the Torpedoes－A short History of U.S. Naval Mine Countermeasures(1777－1991)*(Naval Historical Center Department of the Navy, Washington, D.C., 1991)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

1953(New York : Times Book, 1987)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USGPO, 1961)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USGPO, 1972)

Roy K. Flint, *T.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 5-9 July 1950*(Univ. Press of Kansas, 1988)

Richard B. Finn, *Winners in Peace, MacArthur, Yoshida, and Postwar Japan*(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92)

Willam 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1950, Leavenworth Papers*(Fort Leavenworth Kansas : Combat Studies Institutes, 1985)

UNC, *Unauthorized Shipment to and Utilization of Japanese Nationals in Korea*(1950.12-5), RG 338, Entry 11909, Box 46

FEC, *FEC to Commander in Chief of UNC*(1950.12-1951.5), RG 338, Entry 11909, Box 46

Japan Logistic Command Communication Center, *Smuggling Japanese to Korea*(1951.2), RG 338, Entry 11909, Box 46

Southwestern Command, *Southwestern Command to Japan Logistical Command*(1950.1-5), RG 338, Entry 11909, Box 46

Hq X Corps, *Report of Investigation Concerning Unauthorized Entry of Japanese Nationals in UN Forces*(1951.2.6.), RG 338, Entry 11909, Box 46

Us Army, *Incoming Massage*(1951.1.5) ; CG Army Eight, *CG Army Eight to CG X Corps*(1951.1-5), RG 338, Entry 11909, Box 46

Hq Camp Mower, *Unauthorized Shipment to and Utilization of Japanese Nationals in Korea*(1951.2.23.)

Japanese National Personal Statement(1951.2-5), RG 338, Entry 11909, Box 46

JLC to CG Southwestern Command(1951.2.12), RG 338, Entry 11909, Box 46.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GHQ SCAP, *Prefecture Press Analysis*(27 Aug 1950), MFSN(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목록)-267.

<Abstract>

The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of Japanese Laborers and their repatriation in the US military Bases in Japan

Yang, Yong-Jo

This study is about the participation and activity in the Korean War of Japanese Laborers in the US military Bases in Japan and repatriation after the war. When the US ground troops were decided to join, some of the Japanese laborers who had been employed at the US military bases moved to Korea with the US troops.

Most of them volunteered for themselves went to the South Korea following the US troops by recommendation of the US troops' officials. These were not officially organized by the US forces but went to Korea for personal reasons. Strictly speaking, their move to the South Korea was illegal. These fact is confirmed in the public statement by General MacArthur that is impossible legally for the Japanese to join the United Nations' forces.

Their motivations were analyzed as volunteering to supported US troops's, to earn money, to get a chance to go to America, or to vaguely get better opportunities. The number of laborers working at Japanese US military bases identified in the materials up to is 76. In each unit, 20 members in 24th division, 6 members in 25th division, 7 members in 1th cavalry division, 11 members in another units, and 10 members in unidentified unit were counted.

However, it is assumed that there were many missing persons or deaths that were not included because they were often blocked or surrendered to the rear depending on the

situation. Since the US troops did not record the loss report or obligation to the Japanese laborer at that time, no date has been confirmed so far.

They carried out the combat service support under the strict control of the US military in the rear of the Korean front, as practiced at the US military bases in the Japan, and helped the US military in the role of helping, cooking, washing, technical support, driving, and interpreting. However, if the troops were in crisis or threatened by their own personal identifies, it is confirmed that they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battle action with a pre-paid rifle. A Japanese laborer had been awarded Purple Hart Medal by the US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in seven months, killing at least 20 enemies on the front line and wounding.

Their first existence was in December 1950 when the United Nations troops was at stake. In December 1950, the United Nations Command ordered that it should be reported immediately if there were Japanese Laborers in the United Nations ground troops. The measur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if the existence of Japanese Laborers was known to the Communist side, the United States would be stuck with international politics. The process of returning Japanese Laborers to Japan was also throughly managed by each Command or Unit. As a result, they returned to Japan in February 1951.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US military Bases in Japan, the Japanese Laborers, the participation, the combat service support, the returning to Japa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89-129
https://doi.org/10.29212/mh.2019..111.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후기 水原府의 軍役 변통과 洞布制 시행*

임성수**

1. 머리말
2. 壯勇營 外營의 置廢와 軍役 변화
3. 洞布制의 시행과 軍摠 설정
4. 지역별 洞布 배분과 재정구조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후기 水原은 思悼世子의 묘소를 華山으로 이장하면서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조는 재위 13년(1789)

*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2017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강사

수원부의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백성을 이주시켰으며,[1] 동왕 17년(1793)에는 수원부의 호칭을 華城으로 바꾸고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또한 수원유수는 壯勇外使와 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판관 한명을 두어 그를 보좌하게 하였다. 정조는 수원을 황천에 계신 朝宗의 도움으로 얻은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좋은 자리라고 자평하며, 천억 만 년 끝없을 큰 운수를 정하였으니 수원의 소중함은 周나라의 豊이나 漢나라의 沛와 같이 융성할 것이라 하였다.[2]

정조의 특별한 관심은 수원유수부의 군제 변통으로 이어졌다. 그는 수원에 顯隆園을 조성한 뒤부터 관방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정성을 다해 수호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정3품직이었던 수원부사를 정2품 留守로 격상시키고,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여 방어체제를 강화하였다. 정조 18년(1794)에는 華城 城役을 시작하여 2년여 만인 동왕 20년(1796)에 완성하였다. 새 성곽을 수축하고, 새 군영을 창설하고, 새 군제를 마련한 수원유수부는 명실상부한 군사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정조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수원은 외형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지만, 이를 계획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채워줄 백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신설 군영과 화성의 운영에는 많은 군병이 필요했기에 군제 변통에는 지휘부의 격상 뿐 아니라, 군병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도 병행되었다. 그런데 수원유수부의 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원 백성들은 그 부담을 가장 많이 감당해야 했으며 여러 관청이 들어서면서 각종 잡역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군역을 안정시켜 민심을 바로잡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화성의 장기적인 유지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이에 정조는 수원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줄여주고자

1)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5일(기해).
2)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役을 견감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다.

일련의 대책들은 수원유수부의 군역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유수부에는 인근 고을의 군병이 투입되어 역을 분담하였고, 장용영의 운영을 위해 다양한 재원이 마련되어 부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원의 민심과 군제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정조 재위 기간 내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조가 사망한 이후 수원의 군제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순조 2년(1802) 장용영이 혁파되면서 군사 편제와 군역, 재정 등이 대대적으로 재편되었다. 화성 방어의 핵심 병력이던 장용영 외영이 사라지면서 군액이 대폭 감소했으며, 장용영의 남은 재원들이 호조와 內需司로 귀속되거나 본래 군현으로 돌아가자 재정적인 기반도 취약해졌다. 이때부터 군역은 수원부의 재정운영에서 위상이 강화되었고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재정운영에 군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침내 고종 6년(1869) 수원부에 전격적으로 洞布制를 시행하면서 군역을 둘러싼 변통은 일단락되었다.

이처럼 수원부는 왕조정부의 정책에 따라 군역 운영이 크게 변화하였다. 수원부의 군역 변화는 18세기 이후 수원부의 위상 변화와 군역 운영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특히 유수부로 승격 이후 군역 변화와 19세기 중반 동포제의 시행은 수원부 군역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장용영 외영의 창설로부터 혁파, 동포제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수원부 군역제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 수원부의 군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거의 연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수원부의 군사편제는 장용영에 대해 일부 연구가 되었지만, 대부분 도성에 있던 內營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3] 최근 장용영의 내·외영 체제와 재정운영을 분

3) 장용영의 편제와 기능 등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준혁, 「正祖代

석하면서 수원부의 군제를 검토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4] 연구 범위가 장용영이 혁파되는 19세기 초까지 한정되어 본고에서 주목하는 동포제의 시행과 19세기 군역 문제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洞布制에 있어서는 시행배경과 운영방식 등이 비교적 상세히 해명되었다.[5] 19세기 군역 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공동납 형태인 동포제가 시행되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왕의 연구가 수원부의 사례는 아니지만 동포제의 제반사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본 연구가 수원부의 군역 뿐 아니라 19세기 동포제의 구조와 성격을 해명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壯勇營 外營의 置廢와 軍役 변화

수원은 서울과 兩湖 지방을 잇는 육로에 위치하여 교통, 통신, 물류의 주요 거점이었다. 또한 서쪽으로는 황해와 연결되어 해상 물류와 외적 방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다. 수원은 고려 원종 12년(1271) 都護府로 승격된 이후 정치적

壯勇營 설치의 政治的 推移」,『사학연구』78, 한국사학회, 2005; 이방섭, 「正祖의 壯勇營 운영의 정치적 구상」,『조선시대사학보』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방범석, 「壯勇營의 편제와 재정운영」,『한국사론』6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6; 박범, 「장용영 내영의 향색제조 역할과 재정확보 과정」,『역사와 현실』102, 한국역사연구회, 2016.

4) 박범,『正祖代 壯勇營의 軍制와 財政 運營』,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5) 한우근, 「大院君의 稅源擴張策의 一端 -高宗朝 洞布·戶布制 實施와 그 後弊-」,『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編纂委員會, 1969; 김용섭, 「朝鮮後期 軍役制釐正의 推移와 戶布法」,『성곡논총』13, 성곡학술문화재단, 1982; 송양섭, 「19세기 良役收取法의 변화; 洞布制의 성립과 관련하여」,『한국사연구』89, 한국사연구회, 1995; 「均役法 施行 以後 軍役制 變動의 推移와 洞布制의 運營」,『군사』31, 국방군사연구소, 1995.

사건에 따라 牧、府、郡 등을 오가며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6] 조선전기 수원부는 戶數 1,842戶, 口數 4,926口 규모의 고을이었으며, 軍丁은 侍衛軍 197명, 船軍 405명이 소속되어 있었다.[7] 호구수를 비교하였을 때 당시 지방의 주요 府、牧과 유사한 大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 수원부의 위치

임진왜란 이후 수원부의 군사적 역할은 점차 강화되어 갔다. 水原都護府使는 선조 35년(1602)부터 경기방어사를 겸하였고, 현종 9년(1668)에는 別中營將을 겸하고, 숙종 13년(1687)부터는

6) 수원의 행정적 역사와 변화는 다음 연구에 자세하다. 최홍규, 「수원지방의 역사적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화」,『경기사학』4, 경기사학회, 2000.
7)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수원도호부.

摠戎左營將을 겸하였다.[8] 수원부의 군사적 기능이 강화된 데에는 임진왜란 이후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왜적에 대한 방어가 주요 과제가 된 상황과 17세기 이후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제가 강화되면서 배후지로서 수원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17세기 후반 이미 수원은 '獨鎭、雄邑이며 군병이 精練하다'는 당대의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번성한 지역이었다.[9] 다음은 숙종 20년(1694) 수원부사 李彦紀가 수원부의 군사적 위상에 대해 언급한 상소의 내용이다.

> 祖宗朝에서 本府에 獨鎭을 설치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 뜻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진실로 땅은 三南의 목구멍을 잡고 있고 정예한 兵馬가 일만에 가까워서 비록 성곽과 험준한 지형은 없지만, 위급한 때에 믿을만한 것은 남한산성이나 江都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漢의 좌우 憑翊과 唐의 關內 節鎭이 이것입니다. 천혜의 요새인 강도와 아주 험준한 남한산성은 진실로 국가의 보장처지만 兵馬의 액수는 모두 本府의 3분의 1도 되지 않으니 本府가 畿輔에 제일 중요한 鎭임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와 남한산성、강도는 서로 表裏가 되니 결코 그 사이에 輕重을 정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단지 눈과 귀로 보고 기억한 것만으로도 나라가 본부에서 힘입은 것 역시 한둘이 아닙니다. 갑자년의 변란[이괄의 난]에 公州로 호종하였고, 정묘호란에는 江都에 들어가 지켰으며, 병자호란에 남한산성에서 守堞하였습니다. 군병을 징발하여 모이는데 아침나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방어할 적에 공로가 진실로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조대왕은 자주 위급할 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수원부보다 나은 곳에 없다고 칭찬하셨고, 효종대왕 역시 일찍이 편안해도 위험을 잊지 않으며 兵事에 뜻을 쏟으시면서 항상 本府를 한 나라의 精兵이 있는 곳으로 여기셨습니다.[10]

---

8) 『大東地志』 1冊, 卷2, 水原府.

9) 『承政院日記』 315책, 숙종 12년 5월 3일(병술).

10) 『承政院日記』 360책, 숙종 20년 7월 26일(임진). '蓋祖宗朝 以本府設爲獨鎭 倚以爲重者 其意豈偶然哉 誠以地控三南之咽喉 兵馬近萬之精銳 雖無城郭險阻 而緩急之足恃 不下於南漢與江都故也 漢之左右憑翊 唐之關內節鎭 是已 江都之天塹 南漢之絶險 誠爲國家之保障 而兵馬之額 皆不滿 本府三分之一 則本府之爲畿輔第一重鎭 據此可知 然則本府與南漢江都 相爲表裏 而決不可左右輕重於其間也 明矣 只以耳目之所睹記 國家之得力於本府者 亦非一再 甲子之變 扈蹕於公州 丁卯之警 入衛於江都 丙子之亂 守堞於南漢 而發徵期會 曾不崇朝 扞禦之際 功勞實多 是

이언기의 표현처럼 수원부는 삼남으로 향하는 목구멍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예병이 일만이 넘는 군사 요충지였다. 수원부는 강도나 남한산성처럼 천혜의 험난한 자연환경을 갖춘 곳은 아니었지만, 병마의 수가 월등히 많고 실질적으로 도성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에도 수원부에서 병력을 조기에 징발하여 전투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었다. 이 때문에 17세기 이후 수원부는 남한산성, 강도와 함께 왕조의 중요한 보장처로 인식되었다.[11]

군사적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수원부의 호구와 군액도 조선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수원부의 군액은 평시 약 5천여 명 수준이었으나, 여러 왕대를 거치면서 숙종 20년(1694)에는 본부에서 구관하여 조련하는 속오군만도 실제 액수가 각각 兵馬 750명, 步軍 3,630명, 各樣雜色軍兵 3,430여명으로 도합 7,812명이었다. 이외에도 京上司와 각 都監에 소속되어 立番하거나 納布하는 군액 역시 5,510명 이상에 이르렀고, 兵曹騎步兵 2,777명, 有廳 617명, 餘丁 21명, 內吹保 9명, 族親衛 9명, 定虜衛 1명, 御營軍 170명, 御營軍保 592명, 禁衛軍 114명, 禁衛軍保 266명, 砲保 164명, 軍器寺別破陣 15명, 水軍 142명, 水軍保 297명, 樂生保 32명, 驛保 236명, 禁保 8명, 牧子 115명, 惠民署生徒 5명, 壇直保 5명 등으로 모두 계산하면 9,518명이었다. 경아문 소속 군병과 수원부 소속 속오군을 더한 수원부의 군총은 17,330명에 달하였다.[12]

이에 반해 17세기 후반 수원부의 男丁 25,019명 가운데 실제 군역을 질 수 있는 인원은 11,883명에 불과했다.[13] 결국 정해진 군총을 모두 책임지기 위해서는 疊役이 불가피했다. 수원부사

以仁祖大王 亟稱以爲緩急之可任 無逾於此府 孝宗大王 亦嘗安不忘危 垂意兵事 而常以本府 爲一國精兵之處'

11) 『承政院日記』 278책, 숙종 6년 9월 13일(무진). '水原南漢江都俱是保障 重地'

12) 『承政院日記』 360책, 숙종 20년 7월 26일(임진).

13) 박범, 「17~18세기 중반 수원부의 군제 변화와 별효위 창설」, 『수원학연구』11, 수원시정연구원, 2016, 16쪽.

이언기는 경아문에서 구관하는 수군、어영청、금위영의 군병만이 實丁이고 나머지 騎步兵들은 모두 속오군 가운데 '一身兩役'을 지고 있다고 하였다. 본래 하나의 역에 응하던 자들이 군총이 증가하면서 부득이 첩역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고을 안에 한명의 백성도 軍이 아닌 자가 없고, 한 집 가운데 부자、형제가 모두 군대에 속하여 이미 束伍의 역을 지면서도 騎步兵의 포까지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백성이 軍事에 전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番次나 納布를 당할 때도 한번에 徵出해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14]

이에 이언기는 1년에 납포하는 규모가 100여 동에 불과한 騎步兵布를 줄여줄 것과 병조와 여러 도감, 각사에 속한 保人들을 혁파하여 전부 수원부에 소속시키고 그 비용으로 잡역을 처리하게 할 것, 속오군 외의 다른 신역을 제거하고 모두 본부에서 專管하게 하여 농사와 훈련에 전념하게 할 것, 기보병과 각사보인을 혁파한 비용으로 馬軍의 비용을 지원해 줄 것 등의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15] 이언기 주장의 핵심은 수원부의 군정 가운데 타 지역이나 군문에 충정된 인원을 모두 혁파하여 역 부담을 줄여주고, 해당 재원을 수원부에 이속하며, 지휘권을 수원부에 전적으로 달라는 것이었다. 부사의 건의는 그대로 수용되지 못한 듯하다. 숙종 28년(1702) 수원부사에 임명된 閔鎭遠도 유사한 사안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원부 소속 군병이 8,138명, 중앙아문 소속 군병이 6,124명, 도합 군총이 14,262명인데 반해, 帳籍의 남정은 24,082명에 불과한 상황을 진술하며 중앙아문에 소속된 군액을 혁파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민진원은 이듬해에 전라감사로 이임된 후에도 수원부 군액 문제의 변통을 요구하여 중앙아문 소속 군액 일부를 수원부로 귀속시켰다.[16]

14) 『承政院日記』 360책, 숙종 20년 7월 26일(임진).
15) 『承政院日記』 360책, 숙종 20년 7월 26일(임진).
16) 박범, 2016, 앞의 논문, 19쪽.

이후에도 몇 차례 군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17세기 이후 대폭 증가한 수원부의 군액은 18세기 후반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다음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수원부의 군총 변화를 정리한 표이다.

〈표 1〉 정조~순조대 수원부의 軍摠 변화

정조 9년(1785)		정조 15년(1791)		정조 18년(1794)		순조 31년(1831)	
別驍士	1원	職役	軍額	職役	軍額	職役	軍額
將	2원	別驍士別將	1원	把摠	3원	標下軍敎師	6명
馬兵別將	2원	左右將	2(각1원)	哨官	13원	別破陣	50명
千摠	3원	馬兵別將	2원	知敲官	10원	牢子	71명
把摠	6원	千摠	3원	知敲官馬丁	30명	巡令手	74명
哨官	38원	把摠	6원	敎鍊官	5원	吹鼓手	78명
敎鍊官	10원	哨官	33원	敎鍊官馬丁	15명	大旗手	100명
知敲官	5원	敎鍊官	10원	旗牌官	30원	燈籠手	25명
旗牌官	61원	知敲官	5원	旗牌官馬丁	60명	細樂手	58명
本營都案軍官	61인	旗牌官	61원	都訓導	4인	帳幕手	25명
中營都案軍官	40인	摠戎把摠	1원	都訓導馬丁	4명	塘報手	20명
募入軍官	30인	摠戎哨官	2원	步軍	1,625명	別牙兵	22명
都訓導	4인	摠戎在家軍官	115인	輜重軍	100명	左右列將標下軍	12명
別驍士	222인	防營軍官	12인	壯勇外使標下軍	297명	五司把摠標下軍	125명
別將標下軍	18명	討捕軍官	16인	諸將標下軍	65명	馬軍別驍士	204인
左右將標下軍	10명	都案軍官	61인	吏奴作隊軍	214명	步兵精抄軍	3,175명
馬兵別將標下軍	36명	都訓導	4인	吹鼓手	44명	新豊隊	1,016명
千摠標下軍	54명	別驍士	222인	錠旗手	20명	牙兵	410명
把摠標下軍	108명	兵馬	444명	大砲手	10명	禿城所屬僧軍	103명
馬兵	444명	步軍	3,000명	細樂手	17명	守門卒	13명
輜重軍	200명	輜重軍	204명	大旗手	109명	烽燧軍	50명
募入哨軍	375명	營將標下軍	297명	牢子	34명	保軍良保軍	1,560명
步軍	3,750명	諸將標下軍	411명	巡令手	64명	在家軍官	147명
本營牢子	34명	錚手	20명	弓矢人	50명	減馬士	204명
本營旗手	63명	大砲手	10명	壯勇軍	635명	減馬保	471명
本營吹手	91명	細樂手	17명	親軍衛	204인	輜重保	105명
本營大旗手	100명	大旗手	109명	別將	1원	都案軍官	103명

中軍牢子	12명	壯勇軍	635명	左將	1원	屯牙兵	186명
中軍旗手	12명	額外牢子	37명	右將	1원	別牙兵	10명
額外本營牢子	37명	巡令手	11명	別軍官	100인	收布鄕軍	280명
額外本營旗手	12명	大旗手	2명	禁盜軍官	475인	留防軍	936명
額外本營大旗手	1명	吹手	20명	列校軍官	306인	使喚軍	200명
額外本營牢子	10명	弓矢人	50명	屯壯抄兵	186명	需米軍	2,000명
額外本營旗手	22명	執事馬丁	152명	壯牙兵	125명	奴牙兵	125명
執事馬丁	152명	都副導馬丁	4명	減馬保軍	111명	別武士	1,532명
輜重	4명	吏奴作隊軍	214명	輜重保軍	100명	壯抄	250명
都副導馬丁	4명	壯抄軍	250명	減馬士	200명	西庫別武士	203명
		牙兵	152명	軍需保軍	2,000명	別驍士保	306명
		屯壯抄軍	204명	留防軍	702명	討捕除番軍官	459명
		需米軍	2,000명	在家軍官	144명	守牒除番軍官	303명
		討捕納米軍	466명	都案軍官	101명	忠翊衛	300명
		防營納米軍	294명	良保軍	840명	鄕聽馬丁軍	30명
		別武士	2,894명	奴保軍	720명	執事聽馬丁軍	100명
		別馬士	204명	軍需別武士	2,002명	旗牌官聽馬丁軍	50명
		防營軍	702명	西庫別武士	300명	別武士聽馬丁軍	50명
		中營隨率軍官	40명	禿城守牒軍官	130인	振威八達隊軍	981명
		募入軍官	30명	募入軍官	30인	龍仁蒼龍隊軍	1,334명
		牢子	13명	隨率軍官	40인	安山華西隊軍	445명
		巡令手	12명	別軍官	8인	果川長安隊軍	762명
		步軍	360명	城門將	4인	始興協守隊軍	474명
		標下軍	34명	巡令手	34명	平薪鎭屯牙兵	354명
		額外牢子	10명	牢子	22명	禿城各軍	1,946명
		巡令手	12명	武庫別武士	722명	烽燧軍保	100명
		守牒軍官	130인	東庫別武士	500명		
		別武士	1,523명	別庫別武士	400명		
		弓矢人	50명	募入保軍	116명		
		標下軍	22명	壯抄兵	250명		
		保軍	400명	弓矢人	50인		
		隨率軍官	40명	僧軍	51명		
합계	6,034	합계	16,035	합계	14,434	합계	21,943

* 典據 : 『水原府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0743 · 奎 17364), 『軍國總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2195), 『華城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915.12-H991j).

정조 9년(1785) 『수원부읍지』의 군총은 중앙군문에 소속된 군병과 별무사 등 일부 군병을 기재하지 않고 속오군을 위주로 정리하여 실제 군총과 차이가 크다. 반면에 순조 31년(1831) 군총에는 수원부에 배속되었던 진위、용인、안산、과천、시흥、평신진 등의 군병과 독성(禿城)의 군병이 모두 수록되어 수원부의 자체 군액보다 훨씬 많다. 정조 15년(1791)과 정조 18년(1794) 군총이 18세기 후반 수원부의 군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수원부는 18세기 전반과 마찬가지로 정조 15년(1791)까지도 16,000명이 넘는 군총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조 13년(1789)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戶口總數』에서 수원부의 호구는 15,121호, 57,660구였으며, 이 가운데 남자는 28,340구, 여자는 29,420구였다.[17] 18세기 초반에 비해 남정의 수가 4천명 이상 증가했지만, 군총도 2천명 가까이 증가하여 역부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군총은 수원부의 호총보다도 많은 상황이었다. 호총에는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호도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 호에서 2명 이상이 군역을 지거나 남정 한 명이 첩역을 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가운데 정조 13년(1789) 수원부의 읍치가 팔달산 아래로 옮겨졌다. 동왕 17년(1793)에는 유수부로 승격되었으며, 장용영 외영이 설치되고 화성이 축성되면서 수원부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정조의 구상대로 수원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府民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정조는 수원부 백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즉위 22년(1798)에 있었던 군역 변통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정조는 18세기 내내 부민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과도한 군총을 줄이고, 수취액도 조정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음은 당시 군역을 재감해준 내역을 정리한 표이다.

17) 『戶口總數』 2책, 京畿 水原.

〈표 2〉 정조 22년(1798) 수원부 군역 減額·減斗 결과

구분 \ 부과액	六斗軍	五斗軍	四斗軍	三斗軍	합계
前在	7,479	749	578	2,401	11,207
時在	0	8,228	0	1,979	10,207
감액량	498석 9두	0	38석 8두	200석	737석 2두

* 典據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기유).

당시 수원부에서 米를 납부하던 良私軍은 모두 11,207명이었다. 이들은 3두、4두、5두、6두 등 4등급으로 나누어 미를 납부하였는데, 그 가운데 3두를 납부하던 2,401명 중 1천명의 군액이 감액되었다. 또한 6두、4두를 납부하던 군액도 부과액을 모두 1두씩 줄여 5두、3두가 되었다. 軍案에 따르면 감액된 1천명은 모두 兒別武士였으며, 감두된 6두군과 4두군에는 良保軍、在家軍官、減馬士、減馬保、輜重保、都案軍官、留防軍、需米軍、別武士、西庫別武士 등이 포함되었다.[18] 그 결과 3두군 1천명의 감액으로 200석, 6두군과 4두군의 감두로 각각 498석 9두과 38석 8두, 도합 736석 2두의 납부액이 줄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納布軍[19]은 5두군과 3두군으로 재편되었으며, 징수되는 3,138석 7두은 本府에 2,604석 10두, 禿城에 533석 12두가 배분되어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支放에 사용되었다.[20]

감액、감두 조치로 인해 줄어든 736석 2두에 대한 급대 방안도 마련되었다. 壯勇衛 提調 鄭民始의 건의에 따라 경기 소재 읍에 있는 江都米 모곡 300석과 勅需米 모곡 500석 도합 800

18)『華城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915.12-H991j).
19) 米를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華城誌』에서는 이들을 納布軍이라 지칭하였다. 良保軍과 留防軍도 동전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減錢되었지만, 역시 모두 減斗라고 표현하였다. 洞布制 하에서도 실제로는 布가 아닌 錢을 거두었던 것처럼 '納布軍', '減斗', '洞布制' 등의 용어가 특정 물종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당시 군역제도 일반에 사용되던 개념어였던 것으로 보인다.
20)『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기유).

석을 급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때 수원부가 직접 모곡을 취해 수송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여 경기 지역에 있는 대동저치미를 옮겨와 급대에 사용하고, 강도미·칙수미의 모곡을 해당 지역에 옮겨주도록 하였다.[21]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수원부의 군역 부담은 일부 줄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감액·감두의 대상이 납포군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중앙군에 소속되었던 군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중앙군과 속오군의 역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첩역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여전히 호총 대비 군총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총을 추가로 감액하거나, 군역을 부담하는 호수를 대폭 늘리는 대안이 요구되었다.

3. 洞布制의 시행과 軍摠 설정

장용영이 혁파되면서 수원부의 군제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화성을 방어하던 장용외영이 해체되었고, 수원부의 군제는 화성과 현륭원을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병력과 지역방어체제를 담당하는 부대로 재편되었다. 장용외영의 병력은 다른 군영이나 군현으로 재배치되었으며, 일부는 납포군으로 전환되었다. 소속의 군병이 감소하고, 화성을 운영하던 주요 재원이 다른 기관으로 이속되면서 수원부의 재정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 결과 남은 수원부의 군총은 재정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시되었고, 부민들의 부담도 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수원부의 군역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상세

21)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기유).

한 내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만 고종 6년(1869) 洞布制를 시행하면서 마련한 절목에는 19세기 전반 수원부의 군역 운영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수원부의 군역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군역을 질 수 있는 실제 戶數보다 배정된 군액이 더 많아 疊役을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1869년(고종 6) 동포절목을 제정하면서 수원부에서 뽑아낸 호수는 모두 13,174호였는데, 이 중 군역 부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가난한 호를 제외하면 實戶는 12,182호였다. 그런데 수원부에 배정된 軍丁의 原額은 모두 12,871명이었기 때문에 호당 한 명씩 군역자를 낸다고 가정하더라도 689호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에 수원부에서 최소 689호는 군역자가 2명 이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22] 여기에 군역을 부담하지 않았던 양반호를 제외하면 실제 군역을 담당하는 호수는 더 감소하여 상당수의 호에서 2명 이상의 군역자를 내야 했음으로 과중한 군역 부담을 안고 있었다.

과중한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면서 남은 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순조 31년(1831) 14,588호였던 수원부의 元戶는 고종 6년(1869)에는 1,400여 호 이상 감소한 상태였다.[23] 당시 수원부 判官에게 내린 감결에는 본부의 弊瘼 중 가장 고치기 어려운 일로 軍政을 지목하였다. 대대적인 更張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소민들이 살아갈 길이 없을 뿐 아니라 公納을 채워낼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수원부사는 정조대 華營으로 승격된 초기에 減斗·減額 조치를 취하면서 화성의 백성들을 軫念한 은택이 내려졌으나,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고 간사한 짓이 날로 불어나서 세금의 輕重이 불균하

22) 『華營新定式節目』(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8-13), 「各面軍政洞布節目」.
23) 『華城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915.12-H991j). 元戶 14,588호 가운데 城內 1,341호, 城外 13,241호였고, 口數는 남자 30,183구, 여자 27,858구를 합쳐 58,041구였다.

고, 軍伍가 비거나 첩역을 지는 일이 더욱 더 많아졌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부득이 조정에서는 고종 즉위년(1863)에 米錢을 균등히 배분하여 납부 물종을 유연하게 조종해주었다. 이어서 고종 4년(1867)에는 군역 배정의 근거가 되는 洞案을 수정해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民輩들이 법을 피해가는 습속이 더욱 심해져서 권력이 있고 부유한 자[勢力稍饒者]들이 있는 호는 모두 면역되었고, 貧殘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은 口마다 번번이 역을 지며 고통을 받고 있었다.[24] 여러 대책에도 강구했지만, 부유한 자들이 규정을 피해 역을 피해가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應役戶가 줄어들면서 黃口簽丁·白骨徵布 등의 寃徵이 자행되었고 한 집에 4~5丁이 疊納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 결과 수원부의 백성이 가까운 인접 고을로 이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예전에 온전하고 번성하였던 面이 民戶가 점점 감축되어 凋殘한 洞과 같이 변모하였고, 簽丁도 또 다시 문란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25]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대원군은 대대적인 변통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원군은 전교를 내려 洞布 시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수원부의 大小民에게 편부를 물은 결과 모두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동포제 시행을 지시한 감결에는 이미 다른 도와 읍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公論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동포가 가장 합당한 대책임을 강조하였다. 동포란 군현에 배정된 軍摠을 신분·계층을 망라하여 군현에 소속된 戶摠에 똑같이 배분해 징수하는 방식이었다. 戶布가 본래 배정된 군현의 군총과 무관하게 조정에서 정한 징수액을 모든 호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동포의 경우 군현

24) 『華營新定式節目』(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8-13),「甘結本府判官」.
25) 『華營新定式節目』(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8-13),「甘結本府判官」.

에 부과된 군총을 호총으로 나눠 모든 호에 동일한 액수를 징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호포제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호에 부과된 역가가 균일하였지만, 동포제에서는 기존에 정해진 군현의 군총 규모에 따라 징수되는 동포의 액수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었다.[26] 호포제가 그 시행을 위해서 국가적인 군제 개편과 재정계획 재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大變通이었다면, 동포는 『良役實摠』 이후 군현별로 정액화된 기존 군총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小變通이었다.

동포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府內의 家戶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했다. 그래야만 군역 부담을 최대로 분담시켜 동포의 시행 취지를 살릴 수 있었으며, 특정 가호가 군역에서 이탈하면서 느끼는 백성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均役을 실현할 수 있었다. 수원부는 우선 모든 家座를 여러 차례에 걸쳐 샅샅이 조사하여 洞별 戶數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가운데 군역을 부담할 경제력이 사실상 없는 부류를 제외하고, 大戶·小戶의 구분 없이 동을 통틀어 본래 받아야 할 米錢의 수효를 각 가호에 균등히 분배하였다. 그리고 그 납부 책임을 일차적으로 洞에 부여하여 기일에 맞춰 수납하도록 하였다.[27] 부과액은 수원부 전체 군총과 호총으로 계산하였지만, 수납 단위는 洞별로 구별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 동포제의 중요한 운영방식 중 하나였다.

조정에서는 동포를 시행한 후에 불만을 갖고 납부하지 않는 호

---

26) 호포제는 균역법 이후 감필된 역가 1인당 1필(혹은 錢 2냥)을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호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 고종 8년(1871) 법이 시행된 초기에는 각 지역별로 할당된 군총에 따라 호포 부과액이 다르게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범, 「19세기 후반 戶布法의 運營實態에 대한 檢討」,『동방학지』77·78·7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을 참조한다. 본문에서는 숙종대 이후 양역변통과정에서 제기된 군역수취방식으로서 호포제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27) 『華營新定式節目』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8-13),「甘結本府判官」.

가 있다면 조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니 법대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를 시행할 시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게 될 大民, 즉 양반층과 부호층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었다. 대민들이 軍案에 이름이 오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빼놓지 않았다. 우선 동포를 납부하는 것이 군역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양반층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진하였다. 洞布는 軍案에 簽名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읍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정사이니 大民도 마땅히 즐겁게 도울 것을 제안하였고,[28] 군역의 폐단으로 소민들이 지탱하지 못하는 현실을 들며, 소민들이 없다면 대민들 역시 어찌 높은데 있을 수 있겠냐는 논리도 폈다. 一洞의 기강을 주관하며 一洞의 모범이 되는 자가 大民임을 지적하고, 一洞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는 것은 부당하며 반드시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서울에 사는 卿宰家는 동전 몇 백 냥을 墓村·農村에 주어 殖利를 통해 역에 응하는 비용으로 삼았으며, 역시 서울에 사는 士大夫家는 동전 몇 십 緡을 주어 本洞·本里를 보존하고 역을 돕는 방법으로 삼았다는 사실도 소개하였다. 수원부도 이와 같이 했다면 대민이 사는 洞에 소민만이 어찌 치우치게 고통 받아 지탱하기 힘든 폐단이 있었겠는가 물으며, 지금 洞布는 바로 洞中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가 軍米이고 軍錢이라는 이유로 대민들이 소민과 더불어 균등하게 징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洞布라는 것은 洞米이고 洞錢이라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일찍이 빈약한 군정[疤丁]과 더불어 역에 응하는 것을 똑같이 軍米·軍錢이라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민의 道는 진

28) 『華營新定式節目』(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8-13), 「甘結本府判官」.
29) 『華營新定式節目』(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8-13), 「傳令各面各洞大小民人」.

실로 소민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는 것이고, 힘에 따라 도움을 주는 것은 자신들의 존엄을 보존하는 바탕이 되니 굳이 조정의 勸勉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각자 헤아려서 방법을 찾아 공공을 구제하는 것(公濟)을 기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펼쳤다.[30]

동포 시행을 위한 양반과 부호층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회유와 설득에서 끝나지 않았다. 동포의 시행 규칙을 담은 절목에는 이들에 대한 징수 방식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세 번째 항목에는 만약 士夫家에서 해마다 동포를 납부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별도로 洞中에 錢이나 재물을 내도록 하고, 그것으로 식리하여 동포 징수액에 맞춰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였다.[31] 요컨대 납부방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洞內의 모든 호에서 정해진 동포를 수납하는 것이 제도의 시행 취지였다. 19세기 전반 다른 지역에서 시행된 동포제가 주로 避役으로 발생한 闕額을 공동부담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어 담세자층을 양반까지 확대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제도였던데 반해,[32] 수원부의 동포제는 담세자층을 군역에서 벗어나있던 양반·부호층에게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동포제에서 담세자층이 확대되는 변화는 임술민란 이후 두드러지는데, 慶州府의 사례에서도 같은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33]

동포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은 수원부 소속의 납포군이 아닌 중앙군영에 소속된 精抄軍과 待年軍이었다. 수원부에는 다수의 속오군과 일부 중앙군영에 군정이 배정되어 있었다. 속오군은 처음부터 上番하지 않고 米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華營으로 승격하기 전까지 양인은 米 6두, 奴는 米 4두를 납부하는 것이 규례였다. 營으로 승격한 이후에 징수대상

30) 『華營新定式節目』(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8-13), 「傳令各面各洞大小民人」.
31) 『華營新定式節目』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8-13),「各面軍政洞布節目」.
32) 송양섭, 앞의 논문, 1995, 179쪽.
33) 송양섭, 앞의 논문, 1995, 183쪽.

이 되는 군액을 줄이고 납부액도 줄여주는 조치를 취하였고, 납부액이 줄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兩湖의 모곡으로 급대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고종 즉위년(1863)에는 징수물종을 米·錢 두 가지로 늘려주었다. 그러나 중앙군영에 소속된 군정의 경우에는 관할하는 기관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들은 동포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중앙군영의 유지를 위해서 군영의 番次에 따라 입번해서 역을 감당해야만 했다. 문제는 이들도 동포를 시행하기 위해 파악한 전체 호수에 모두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동포를 부과한다면 입역과 납포의 부담을 모두 지는 첩역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중앙군 소속의 군정을 임의로 없앨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절목에서는 남정이 하나 뿐인[單口] 호는 첩역이 되므로 다른 호 가운데 丁이 많은 곳에 옮겨 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한 호에서 두 가지 역을 감당하는 결과는 피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남정 한명이 첩역을 지는 일은 없애고자 한 조치였다. 또한 城內에서 급료를 받고 일하는 三班 관속들의 동포 납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시대 지방관청에서 근무하던 향리나 군교와 같은 부류는 업무 자체가 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군역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절목에서는 동포가 오로지 大小를 균평하게 하고 호구를 늘리는 방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도 모두 동포 대상자에 편입시켰다.[34]

동포의 대상을 확정한 다음에는 군총에 맞춰 징수액을 결정하였다. 당시 수원부의 군정 原額은 12,871명이었으며, 매 명당 米 3두씩 도합 2,574석 3두와 錢 5전씩 도합 6,535냥 5전을 징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포를 시행하기 위해 뽑은 戶의 原數는 13,174호였으며, 그 가운데 동포 납부가 힘든 가난한 호를 제외한 實戶는 12,182호였기에 군정 원액과 비교하면 689호가 부족

34) 『華營新定式節目』(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8-13),「各面軍政洞布節目」.

하였다. 이 부족분과 더불어 陵園所 保軍 258명의 番錢 516냥, 興天烽燧 保軍 104명의 番米 20석 12두, 番錢 52냥 등을 급대하기 위한 비용을 모두 마련하기 위해 징수액을 본래 군총을 호총으로 나눈 값보다 매 호당 米 2升, 錢 8分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그 결과 수원부의 동포는 매 호당 米 3두 2승, 錢 5전 8푼으로 정해졌다.[35] 19세기 이미 동포제를 시행하던 尙州、任實、榮川에서는 신분별로 부담액에 차등이 있었던데 반해,[36] 수원부에서는 모든 호에 동일한 징수액이 책정되었다. 언뜻 동포제를 시행한 이후 징수액이 더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포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軍丁 1인당 징수액이고, 동포제에서는 대부분 1戶당 징수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1호마다 1인의 군역만 부과되면서 첩역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민들의 호에서 납부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男丁이 한명이었던 호나 군역에서 빠졌던 부민층과 양반호는 과세 부담이 발생하였다.

동포를 시행하여 實戶에 정해진 수를 모두 징수하면 米 2,598석 12두 4승과 錢 7,065냥 5전 6푼을 징수할 수 있었다. 절목에는 새로 조사된 實戶를 대상으로 원래 받아야 할 米錢의 수효를 분배해서 징수액을 정했다고 하였지만, 실제 동포를 통해 징수되는 액수는 기존에 납부하던 액수보다 米 24석 9두 4승, 錢 530냥 6푼이 더 많았다. 이는 군총 대비 부족한 戶數를 채우고, 급대를 위해 추가로 징수한 米錢의 규모가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크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납분이나 추가 수요를 감안하여 넉넉하게 징수액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해진 동포는 이후에 호수의 증감이 있더라도 변동하조 못하

35) 『華營新定式節目』(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8-13), 「各面軍政洞布節目」.
36) 김용섭, 『韓國近代農業史硏究』上, 일조각, 1984, 292쪽; 송양섭, 「均役法 施行 以後 軍役制 變動의 推移와 洞布制의 運營」, 『군사』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5.

도록 고정하였다. 동포는 洞 단위로 수량에 맞게 마련하여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최초 부과액은 수원부의 호총을 기준으로 호 단위로 동일하게 마련되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洞內의 호수 증감에 따라 호당 부과액이 변경될 여지가 있었다. 조정에서는 동포의 운영이 本洞에서 戶數를 계산하여 배분하고 거두는데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호를 招集하여 호수를 늘려서 호당 부과액을 줄이는 '戶多排少'의 효과를 내도록 독려하였다. 즉, 호당 부과액을 줄이고 싶다면 호를 최대한 많이 파악하라는 취지였다. 또한 금번 조사에서 혹시 누락된 호가 있거나 잘못 기록된 호가 있다 하더라도 本洞에서 납부할 전체 총수에 맞춰 분배하여 균등하게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37] 동포제는 군역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洞 단위에 부여하여 각 洞이 공동체적 상호부조를 통해 자발적으로 호수를 늘려 군역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납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였다.

洞 단위 운영의 책임은 洞長이 맡았다. 洞長은 風力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확립되었으며 근면성실한 자로서 洞中의 의견을 모아 정하도록 하였다. 동포는 10월 그믐 내를 기한으로 납부해야 했으며, 만일 기한을 넘어서도 납부하지 않은 호가 있다면 面任과 洞任이 일일이 관아에 보고하고 감독하여 징수를 독촉하도록 하였다. 조선의 말단 지방행정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자체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관아의 이서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단을 방지하는 것도 동포제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원군이 동포제를 시행했던 시기에는 지방관청 주도의 군역 운영으로 인해 많은 폐단이 야기되고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에 발생하였던 임술민란에서도 군역 불균에 따른 불만과 더불어 군역 운영과정에서 이서

37) 『華營新定式節目』(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8-13), 「各面軍政洞布節目」.

들의 각종 농간은 백성들의 불만을 증폭시킨 주된 요인이었다.[38] 당시 이서들은 동별 군역 부과액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각종 뇌물을 받으며 임의로 호총을 조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39] 그러나 군포(수원부는 米錢) 납부를 洞長이 책임지고, 동별 군총에 확정된 동포제 하에서는 그러한 개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고종 6년(1869) 대원군은 전격적으로 수원부에 동포제 시행을 지시하였다. 동포시행은 군역 불균과 첩역을 견디지 못한 府民들이 고을을 이탈하자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수원부는 서울과 지방을 잇는 육로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왕실에게 중요한 의례 공간이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수원부의 쇠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 동포제를 시행하면서 수원부는 기존 군총을 유지하면서도 신분계층에 무관하게 호총에 따라 군역 납부액을 배분하였다. 이는 임술민란 시기 제기되었던 소민들에게만 편중된 군포를 각 호마다 균등하게 부담시켜 호포제와 같은 동포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40] 이 시기에 이르러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포제는 그 운영을 각 洞에 맡기면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였다. 수원부의 동포제는 군역 부과를 마을의 모든 實戶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호포제의 운영방식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戶布나 丁錢이 부과대상과 물종을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동포에서 洞은 실제로 부과액을 결정하는 요소이거나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布도 부과물종이 아니었다. 동포는 호 단위로 군역을 부과하면서도 군역 운

38) 송양섭, 「임술민란기 부세문제 인식과 三政改革의 방향」, 『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임성수, 「임술민란기 秋琴 姜瑋의 현실인식과 三政改革論」, 『조선시대사학보』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39) 송양섭, 「1888년 영해부 호구분쟁에 나타난 戶政運營의 일단 - 호적색 윤일찬의 '捧賂減戶'에 대한 마을민의 등소 사례」, 『조선시대사학보』82, 조선시대사학회, 2017.

40) 송양섭, 앞의 논문, 1995, 181쪽.

영과 징수 책임을 동 단위에 부여한다는데 주안점이 있었다.

4. 지역별 洞布 배분과 재정구조

고종 6년(1869) 동포제가 시행되면서 수원부의 군역 운영방식은 전면적으로 재편되었다.

동포제는 기존 지방관청에서 주도적으로 관할하던 군포 징수를 面、洞、里과 같은 고을의 하위 행정구역에 일임한 제도였다. 따라서 동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호당 징수액의 설정 뿐 아니라, 징수의 책임을 맡은 행정구역을 배분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였다. 동포제가 시행될 당시 수원부의 坊里 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순조 31년(1831) 간행된 『華城誌』를 그 통해 대략을 추론할 수 있다. 19세기 전반 수원부에는 40개면 440개 동으로 행정구역이 편제되어 있었다.[41] 고종 31년(1894) 『畿甸營事例』에는 章州面이 빠진 39개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42] 이후 간행된 고종 32년(1895) 『畿甸營誌』[43]와 광무 3년(1899) 『水原府邑誌』[44]에 모두 순조 31년과 동일한 40개면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19세기 전반 수원부의 행정편제가 대체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순조 31년 수원부의 坊里 편제는 〈부표 1〉과 같다.

수원부에는 府內에 있는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모두 40개 면 아래에 451개 洞、里、村이 편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동북면

41) 『華城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915.12-H991j). 실제 『화성지』에 기재된 동리수를 모두 계산하면 451개이다. 기록에 착오가 있거나, 계량 방식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42) 『畿甸營事例』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2200).
43) 『畿甸營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2187).
44) 『水原府邑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0702).

은 총 22개로 가장 많은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용복면은 4개로 가장 적었다. 순조 31년(1831) 『화성지』에는 각 면이 1창、5창、6창、7창、8창、9창 등 6개의 糶糴 창고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동포제의 운영구조는 조적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행정편제와 차이가 있었다. 동포제도 기본적으로 미、전을 납부하는 창고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해당하는 창고의 이름과 행정구역의 편제가 달랐다. 특히 환곡 창고가 면 단위로 구분된데 반해 동포제는 면、동、리 등 다양한 행정단위가 독립적인 납부주체로 편성되었다. 군역의 운영과 조적의 운영 방식이 달랐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화성지』에서 남부에 소속되었던 벌리와 팔탄면에 소속되었던 동촌이 「洞布節目」에서는 모두 북부로 행정편제가 변화하였다.

본격적으로 수원부 동포제의 운영구조를 살펴보자. 〈표 3〉은 「동포절목」에 기재된 각 행정구역별 동포의 납부처와 물종별 징수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수원부의 동포는 需米庫、餉需庫、保餉庫、捕廳、守堞廳、西庫、良丁所、忠翊所、山武別、山守堞、山東別、山壯抄、山保別 등 13개 창고 및 관청으로 납부되었다. 납부처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원부의 동포는 부내 여러 관청의 운영비, 군향곡, 군사시설의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각 창고별로 소속된 면、동、리의 등급과 동포의 규모는 천차만별이었다. 가장 규모가 큰 창고인 需米庫에는 宗德、五朶、宿城、貢鄕、漁灘、廣德、鴨汀、葛潭、三峯 등 9개 면과 南部 소속 11개 洞을 합쳐 모두 20개 행정구역이 소속되었고, 守堞廳과 山守堞의 경우에는 각각 八灘面과 玄巖面 한 개 면씩만 소속되었다. 창고의 역할과 지출 규모에 따라 소속된 행정구역이 배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수원부의 동포제에서는 면 단위로 동포를 수납하는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洞、里 단위로 운영되는 지역은 대부분 南部와 北部 소속이었다. 해당 지역이 府內에

위치하여 호수가 많고 주민들의 구성도 복잡했기 때문에 특별히 동리별로 구분하여 동포를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各面洞布分劃都摠

창고	구역이름	물종	수량	창고	구역이름	물종	수량
需米庫	宗德	米	46석 14두	保餉庫	본고재원	米	330석 3두
需米庫	宗德	錢	127냥 6전	保餉庫	징수합계	錢	896냥 6전 8푼
需米庫	五朶	米	28석 12두	保餉庫	본고재원	錢	825냥 5전
需米庫	五朶	錢	78냥 3전	保餉庫	加劃條餉需庫出給	錢	71냥 1전 8푼
需米庫	宿城	米	19석 9두 4승	捕廳	楊澗	米	29석 13두
需米庫	宿城	錢	53냥 3전 6푼	捕廳	楊澗	錢	81냥 2전
需米庫	貢鄕	米	78석 7두 6승	捕廳	浦內	米	75석 4두 6승
需米庫	貢鄕	錢	213냥 4전 4푼	捕廳	浦內	錢	204냥 7전 4푼
需米庫	漁灘	米	66석 2두	捕廳	松洞	米	50석 2두
需米庫	漁灘	錢	179냥 8전	捕廳	松洞	錢	136냥 3전
需米庫	廣德	米	60석 8두 8승	捕廳	北部 石山洞	米	2석 5두 2승
需米庫	廣德	錢	164냥 7전 2푼	捕廳	北部 石山洞	錢	6냥 3전 8푼
需米庫	鴨汀	米	90석 10두	捕廳	징수합계	米	157석 9두 8승
需米庫	鴨汀	錢	246냥 5전	捕廳	餉需庫 推来	米	5두 2승
需米庫	葛潭	米	45석 3두 4승	捕廳	본고재원	米	158석
需米庫	葛潭	錢	122냥 9전 6푼	捕廳	징수합계	錢	428냥 6전 2푼
需米庫	三峯	米	69석 14두 6승	捕廳	본고재원	錢	395냥
需米庫	三峯	錢	190냥 2전 4푼	捕廳	加劃條餉需庫出給	錢	33냥 6전 2푼
需米庫	南部 龜川洞	米	33석 4두 2승	守堞廳	八灘	米	101석 8두 2승
需米庫	南部 龜川洞	錢	90냥 4전 8푼	守堞廳	八灘	錢	276냥 8푼
需米庫	南部 山樓洞	米	17석 13두 8승	守堞廳	징수합계	米	101석 8두 2승

需米庫	南部 山樓洞	錢	48냥 7전 2푼	守堞廳	본고재원	米	100석 14두
需米庫	南部 池洞	米	12석 12두	守堞廳	加劃條餉需庫出給	米	9두 2승
需米庫	南部 池洞	錢	34냥 8전	守堞廳	징수합계	錢	276냥 8푼
需米庫	南部 長芝洞	米	7석 10두 2승	守堞廳	본고재원	錢	252냥 5전
需米庫	南部 長芝洞	錢	20냥 8전 8푼	守堞廳	加劃條餉需庫出給	錢	23냥 5전 8푼
需米庫	南部 古等村	米	4석 8승	西庫	文市	米	58석 4승
需米庫	南部 古等村	錢	11냥 2푼	西庫	文市	錢	157냥 7전 6푼
需米庫	南部 梅山洞	米	4석 13두 6승	西庫	北部 下光敎	米	6석 6두
需米庫	南部 梅山洞	錢	13냥 3전 4푼	西庫	北部 下光敎	錢	17냥 4전
需米庫	南部 梅香洞	米	18석 11두 6승	西庫	北部 高陽洞	米	2석 11두 6승
需米庫	南部 梅香洞	錢	51냥 4푼	西庫	北部 高陽洞	錢	7냥 5전 4푼
需米庫	南部 香木洞	米	3석 3두	西庫	징수합계	米	67석 3두
需米庫	南部 香木洞	錢	8냥 7전	西庫	餉需庫 推来	米	7두
需米庫	南部 南昌洞	米	45석 13두	西庫	본고재원	米	67석 10두
需米庫	南部 南昌洞	錢	124냥 7전	西庫	징수합계	錢	182냥 7전
需米庫	南部 細洞	米	8석 1두 6승	西庫	본고재원	錢	167냥
需米庫	南部 細洞	錢	22냥 4푼	西庫	加劃條餉需庫出給	錢	13냥 7전
需米庫	南部 校洞	米	3석 9두 4승	良丁所	北部 驛村	米	20석 10두 4승
需米庫	南部 校洞	錢	9냥 8전 6푼	良丁所	北部 驛村	錢	56냥 2전 6푼
需米庫	징수합계	米	666석 10두	良丁所	北部 觀吉同	米	3석 12두 6승
需米庫	징수합계	錢	1,812냥 5전	良丁所	北部 觀吉同	錢	10냥 4전 4푼
需米庫	본고재원	錢	1,666냥 5전	良丁所	징수합계	米	24석 8두
需米庫	餉需庫 出給	錢	146냥	良丁所	餉需庫 推来	米	10두
餉需庫	南面	米	84석 4두	良丁所	본고재원	米	25석 3두
餉需庫	南面	錢	229냥 1전	良丁所	징수합계	錢	66냥 7전
餉需庫	龍伏	米	45석 9두 8승	良丁所	본고재원	錢	63냥
餉需庫	龍伏	錢	124냥 1전 2푼	良丁所	加劃條餉需庫出給	錢	3냥 7전
餉需庫	土津	米	55석 13두 4승	忠翊所	正林	米	50석 8두 4승
餉需庫	土津	錢	151냥 9전 6푼	忠翊所	正林	錢	137냥 4전 6푼
餉需庫	荊石	米	49석 7두 4승	忠翊所	楚坪	米	53석 14두

							6승
餉需庫	荊石	錢	134냥 5전 6푼	忠翊所	楚坪	錢	146냥 7전 4푼
餉需庫	雨井	米	96석 3두 2승	忠翊所	징수합계	米	104석 8두
餉需庫	雨井	錢	261냥 5전 8푼	忠翊所	餉需庫 推来	米	6두
餉需庫	梧井	米	55석 13두 4승	忠翊所	본고재원	米	104석 14두
餉需庫	梧井	錢	151냥 9전 6푼	忠翊所	징수합계	錢	284냥 2전
餉需庫	日用	米	36석 4두	忠翊所	본고재원	錢	260냥 5전
餉需庫	日用	錢	98냥 6전	忠翊所	加劃條餉需庫出給	錢	21냥 7전
餉需庫	南部 支長洞	米	6석 6두	山武別	草長	米	45석 9두 8승
餉需庫	南部 支長洞	錢	17냥 4전	山武別	草長	錢	124냥 1전 2푼
餉需庫	北部 上光敎	米	7석 7두	山武別	床笏	米	35석 9두 4승
餉需庫	北部 上光敎	錢	20냥 3전	山武別	床笏	錢	96냥 8전 6푼
餉需庫	北部 紙竹洞	米	3석 9두 4승	山武別	安寧	米	78석 4두 4승
餉需庫	北部 紙竹洞	錢	9냥 8전 6푼	山武別	安寧	錢	212냥 8전 6푼
餉需庫	北部 垌村	米	7석 3두 8승	山武別	隹士 三島	米	40석 8두
餉需庫	北部 垌村	錢	19냥 7전 2푼	山武別	隹士 三島	錢	110냥 2전
餉需庫	北部 屯村	米	6석 6두	山武別	징수합계	米	200석 1두 6승
餉需庫	北部 屯村	錢	17냥 4전	山武別	山壯抄 推来	米	1석 12두 4승
餉需庫	北部 舊川洞	米	1석 13두 8승	山武別	본고재원	米	201석 14두
餉需庫	北部 舊川洞	錢	5냥 2전 2푼	山武別	징수합계	錢	544냥 4푼
餉需庫	北部 花山洞	米	1석 13두 8승	山武別	본고재원	錢	505냥
餉需庫	北部 花山洞	錢	5냥 2전 2푼	山武別	加劃條餉需庫出給	錢	39냥 4푼
餉需庫	北部 長安洞	米	16석 12두 8승	山守堞	玄巖	米	39석 6승
餉需庫	北部 長安洞	錢	45냥 8전 2푼	山守堞	玄巖	錢	106냥 1전 4푼
餉需庫	北部 普施洞	米	38석 9두 2승	山守堞	징수합계	米	39석 6승
餉需庫	北部 普施洞	錢	104냥 9전 8푼	山守堞	山壯抄 推来	米	14두 4승
餉需庫	北部 北水洞	米	11석 7두 8승	山守堞	본고재원	米	40석
餉需庫	北部 北水洞	錢	31냥 3전 2푼	山守堞	징수합계	錢	106냥 1전 4푼
餉需庫	北部 新豊洞	米	39석 7두	山守堞	본고재원	錢	100냥

餉需庫	北部 新豊洞	錢	107냥 3전
餉需庫	北部 軍器洞	米	19석 3두
餉需庫	北部 軍器洞	錢	52냥 2전
餉需庫	北部 洌里	米	1석 1두
餉需庫	北部 洌里	錢	2냥 9전
餉需庫	징수합계	米	585석 5두 8승
餉需庫	守堞廳 推来	米	9두 2승
餉需庫	실제합계	米	586석 두
餉需庫	保餉庫不足條出給	米	5두 8승
餉需庫	捕廳不足條出給	米	5두 2승
餉需庫	西庫不足條出給	米	7두
餉需庫	良丁所不足條出給	米	10두
餉需庫	忠翊所不足條出給	米	6두
餉需庫	山壯抄不足條出給	米	6두 6승
餉需庫	興天烽燧保軍畓米 出給	米	20석 12두
餉需庫	본고재원	米	558석 10두
餉需庫	지출합계	米	582석 2두 6승
餉需庫	鄕校募入畓錢條給代次	米	3석 12두 4승
餉需庫	징수합계	錢	1,591냥 5전 2푼
餉需庫	需米庫加劃條推来	錢	146냥
餉需庫	保餉庫加劃條推来	錢	71냥 1전 8푼
餉需庫	捕廳加劃條推来	錢	33냥 6전 2푼
餉需庫	守堞廳加劃條推来	錢	23냥 5전 8푼

山守堞	加劃條餉需庫出給	錢	6냥 1전 4푼
山東別	靑龍	米	40석 1두 6승
山東別	靑龍	錢	109냥 4푼
山東別	東北	米	75석 7두 8승
山東別	東北	錢	205냥 3전 2푼
山東別	南部 遠川洞	米	9석 5두 8승
山東別	南部 遠川洞	錢	25냥 5전 2푼
山東別	징수합계	米	125석 2승
山東別	본고재원	米	125석
山東別	加劃條山保別出給	米	2승
山東別	징수합계	錢	339냥 8전 2푼
山東別	본고재원	錢	312냥 5전
山東別	加劃條餉需庫出給	錢	27냥 3전 8푼
山壯抄	山城	米	43석 7두 8승
山壯抄	山城	錢	118냥 3전 2푼
山壯抄	佳士	米	32석 12두 8승
山壯抄	佳士	錢	89냥 3전 2푼
山壯抄	南部上柳川	米	7석 3두 8승
山壯抄	南部上柳川	錢	19냥 7전 2푼
山壯抄	下柳川	米	4석 10두 4승
山壯抄	下柳川	錢	12냥 7전 6푼
山壯抄	禿山洞	米	6석 12두 4승
山壯抄	禿山洞	錢	18냥 5전 6푼

餉需庫	西庫加劃條推来	錢	13냥 7전	山壯抄	징수합계	米	95석 2두 2승
餉需庫	良丁所加劃條推来	錢	3냥 7전	山壯抄	餉需庫 推米	米	6두 6승
餉需庫	忠翊所加劃條推来	錢	22냥 7냥	山壯抄	실제합계	米	95석 8두 8승
餉需庫	山武別加劃條推来	錢	39냥 4냥	山壯抄	山武別 出給	米	1석 12두 4승
餉需庫	山守堞加劃條推来	錢	6냥 1냥 4푼	山壯抄	山守堞 出給	米	14석 4두 4승
餉需庫	山東別加劃條推来	錢	26냥 3냥 8푼	山壯抄	본고재원	米	92석 12두
餉需庫	山壯抄加劃條推来	錢	26냥 6전 8푼	山壯抄	징수합계	錢	258냥 6전 8푼
餉需庫	山保別加劃條推来	錢	22냥 3전 2푼	山壯抄	본고재원	錢	232냥
餉需庫	실제합계	錢	2,026냥 5전 6푼	山壯抄	加劃條餉需庫出給	錢	26냥 6전 8푼
餉需庫	陵園所保軍畓錢 給代條出給	錢	516냥	山保別	長安	米	66석 2두
餉需庫	興天烽燧保軍畓錢給代條出給	錢	52냥	山保別	長安	錢	179냥 8전
餉需庫	본고재원	錢	1,396냥 5전	山保別	水北	米	23석 10두 2승
餉需庫	지출합계	錢	1,964냥 5전	山保別	水北	錢	64냥 3전 8푼
餉需庫	鄕校募入畓錢條給代次	錢	62냥 6푼	山保別	南部山南洞	米	6석 2두 8승
保餉庫	南谷	米	94석 4두 4승	山保別	南部山南洞	錢	16냥 8전 2푼
保餉庫	南谷	錢	256냥 3전 6푼	山保別	勸善里	米	6석 2두 8승
保餉庫	台村	米	90석 10두	山保別	勸善里	錢	16냥 8전 2푼
保餉庫	台村	錢	246냥 5전	山保別	징수합계	米	102석 2두 8승
保餉庫	晴湖	米	44석 12두	山保別	山東別 推來	米	2승
保餉庫	晴湖	錢	121냥 8전	山保別	본고재원	米	102석 3두
保餉庫	梅谷	米	66석 11두 6승	山保別	징수합계	錢	277냥 8전 2푼
保餉庫	梅谷	錢	181냥 5전 4푼	山保別	본고재원	錢	255냥 5전
保餉庫	南部 南水洞	米	33석 4두 2승	山保別	加劃條餉需庫	錢	22냥 3전 2푼

					出給
保餉庫	南部 南水洞	錢	90냥 4전 8푼	도합	米 38,970석 12두 4승
保餉庫	징수합계	米	329석 12두 2승	도합	錢 7,065냥 5전 6푼
保餉庫	餉需庫 推来	米	5두 8승		

「동포절목」에서는 모든 호에 정확하게 米 3두 2승, 錢 5냥 8푼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절목의 내용도 米、錢 등 물종이나 지역, 납부처에 무관하게 정확하게 수치가 일치한다. 수원부는 동포제를 시행하여 12,182호에서 米 38,970석 12두 4승, 錢 7,065냥 5전 6푼을 징수하였다. 창고별로 살펴보면, 需米庫는 미 666석 10두, 냥 1,812전 5냥으로 가장 많은 동포를 거두었으며, 良丁所는 미 24석 8두, 66전 7냥을 거두어 가장 징수 규모가 적었다. 징수 규모를 통해 납부처별 호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동포 납부처별 호수

납부처	호수	납부처	호수
需米庫	3,125	山保別	479
餉需庫	2,744	守堞廳	476
保餉庫	1,546	山壯抄	446
山武別	938	西庫	315
捕廳	739	山守堞	183
山東別	586	良丁所	115
忠翊所	490	총합계	12,182

수미고에는 가장 많은 3,125호가 편성되었고, 다음으로 향수고, 보향고 등등의 순이었다. 동포로 거둔 재원이 주로 수원부의 운영비용과 군사재원에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나머지 비용들은 대부분 수원부가 관할하는 군사시설에 투입되었다.

수원부의 동포제에서 주목되는 점은 납부처인 창고와 관청들

사이에서 징수된 미·전이 서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일방적인 재정 지원도 있었지만, 두 기관이 물종의 교환을 통해 재원을 주고받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재정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창고는 향수고였다. 향수고는 동포가 납부되는 모든 창고와 관청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수미고는 일방적으로 향수고에 재정 지원을 하였지만, 다른 창고나 관청의 경우 주로 동전을 향수고에 보내고 米를 받는 형태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향수고는 총 2,744호에서 米 585석 5두 8승과 錢 1,591냥 5전 2푼을 징수하였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재원은 米 558석 10두와 錢 2,026냥 5전 6푼이었다. 향수고는 절목에 기재된 창고나 관청 외에도 鄕校에서 모입한 이들의 番錢을 급대하기 위해 米·錢을 지출하였고, 陵園所 保軍의 番錢과 興天烽燧 保軍의 番錢을 급대하기 위해 錢을 지출하였다. 앞서 언급한 동포제를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일부 군역에 대한 급대 책임을 향수고에서 담당하였던 것이다. 특히 능원소 보군을 위한 급대에는 향수고 전체 동전의 1/4이 넘는 516냥이 지출되었다.

수첩청의 경우는 유일하게 향수고에서 돌려받는 것 없이 米·錢을 모두 향수고에 지원하였다. 다른 군사시설에서 모두 米를 받고 錢을 보내는 형태를 취한 것은 군사시설의 특성상 직접 사용해야 하는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향수고는 급대를 담당했기 때문에 지출에 용이한 동전이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향수고 외에도 각 기관들 사이에서는 재원의 이동이 있었다. 山武別과 山守堞은 山壯抄에서 米를 받았으며, 山保別은 山東別에서 역시 米를 받았다. 그러나 그 규모가 작게는 2승에 불과할 정도로 보잘 것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원을 지원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수원부의 동포 징수액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포제는 호포제와 달리 해당

지역에 정해진 군총에 따라 호당 부과액이 달라진다. 비슷한 시기 동포제가 시행되었던 전라도 임실군에서는 大民·中民·小民 등 3등급으로 호를 나누어 동포를 징수하였는데, 1년 부과액은 각각 0.65냥, 3.48냥, 3,81냥이었다. 영광군의 사례를 보면 대소민이 매호당 2냥씩 부담하였다.[45] 수원부에서 米 3두 2승, 錢 5냥 8푼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전세를 비롯한 각종 國稅와 잡역이 군현 단위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다른 역의 부과 현황까지 검토해야만 정확한 과세부담을 파악할 수 있지만, 군역 부과액만으로 놓고 볼 때 수원부의 백성이 상기한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동포를 납부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만큼 수원부의 군총이 호수에 비교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원부에서 동포제가 시행된 뒤 2년이 지난 고종 8년(1871) 3월 전교에 따라 전격적으로 호포제가 시행되었다.[46] 호포제는 '均一'을 목표로 모든 호에 동일하게 군역을 부과하는 것이 시행취지였다. 기존 군역을 부담하지 않던 양반호는 奴名으로 포를 납부하도록 허용하여 모든 신분계층이 역을 분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행된 호포제는 동포제와 운영상에 큰 차이가 없었다. 군현별로 군총에 따라 호포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호포의 부담액도 각기 달랐다. 또한 호포제에서도 1차적인 징수 책임은 면·동·리 차원에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동포제와 같았다.[47] 이미 양반호에게도 군역을 징수하던 동포제의 운영형태를 유지하면서 명칭을 호포로 바꾸어 명분을 갖추고,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均一'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 호포제의 시행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수원부는 동포제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호포제를 따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후 수원부의

45) 송양섭, 앞의 논문, 1995, 188~189쪽.
46) 『고종실록』 권8, 고종 8년 3월 25일(을묘).
47) 호포제의 운영실태는 이종범, 앞의 논문, 1993 참조.

군역 운영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지만, 고종 30년(1893) 호총은 12,916호로 동포제가 시행된 이후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48] 호총의 변화를 군역 문제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순조 31년(1831)부터 동포제가 시행될 당시까지 줄었던 호총과 비교하면 수원부의 부세 운영이 일정 부분 안정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5. 맺음말

수원부는 도성을 둘러싼 경기 지역에서 제일가는 大邑이자 삼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大路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17세기 이후 수원부는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군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7세기 말에는 군역 자원에 비해 군총이 많은 상황이 되면서 '一身兩役'이 군역 운영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獨鎭으로서 독자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중앙군영의 군병이 다수 배정되면서 군역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원부사는 계속해서 중앙군영에 소속된 군병을 수원부에 이속시키고, 군액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미 정해진 군총을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18세기 말 수원부가 화성으로 변경된 뒤에 정조의 전교에 따라 군액이 일부 감액되고, 납부하던 부과액도 줄었지만, 수원부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군총 과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장용영이 혁파된 뒤에는 인근 지역에서 지원하던 군병들과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수원부의 군역 운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다. 호총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된 군총은 특정 호와 소민들에게 심대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48) 『畿甸營事例』(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2200).

이러한 불합리한 군역 운영은 19세기 중반까지도 지속되었다.

오랜 기간 누적된 군역 문제는 19세기 전반 黃口簽丁、白骨徵布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표면화되었다. 여기에 일부 부호층이 뇌물을 주고 군역 부담에서 빠져나가면서 남은 빈잔한 백성의 고통은 가중되어 갔다. 수원부의 백성이 군역의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인근 고을로 이주하면서 군역을 부담할 수 있는 호총은 점점 더 감소하였고, 수원부의 군역 운영은 더욱 난관에 봉착하였다. 지속적인 백성의 몰락과 이탈은 수원부의 존립에도 위협이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통이 요구되었다. 이에 고종 6년(1869) 흥선대원군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동포제가 시행되었다.

동포제의 시행으로 문제의 근원이었던 과도한 군총이 조정된 것은 아니었다. 기존 군총을 유지하되, 군역에서 제외되었던 양반층과 부호층에게 모두 군포를 납부하게 하면서 소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었다. 동포제 시행으로 군포를 납부하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호당 납부액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호당 납부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포제가 시행되었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원부의 징수규모는 작지 않았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처럼 호의 등급을 구분하여 징수액에 차등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소민이 모두 같은 액수를 부담하였다. 즉, 수원부 동포제의 취지는 소민들의 역을 견감해주면서도 府內의 모든 백성이 동일한 역을 부담하는 '均役'에 있었다.

동포제는 수원부에 배정된 군총을 새로 조사한 호총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첩역을 줄이기 위해 수원부의 백성이 중앙 군영에 소속되어 납부하던 군포에 대해서도 모두 동포를 통해 급대가 이루어졌다. 일부 중앙군에 소속된 군병의 경우 男丁이 많은 호에 돌아가며 배정함으로써 역의 편중을 줄이고자 하였다. 동포제는 부과대상만 확대하는 방식은 아니었

다. 군포 징수의 책임을 각 마을 단위에 부여하면서 동포의 안정적인 징수를 도모하는 한편, 마을 단위의 자체적인 운용을 보장하여 공동체적 협력을 유도하였다.

수원부에서 동포제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난 고종 8년(1871)에는 전국적으로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호포제는 모든 호를 대상으로 군포를 부과하여 군역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서 운영방식은 동포제가 거의 유사하였다. 요컨대 동포제는 호포제의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기존에 군역에서 벗어나 있던 양반층과 부호층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시범적인 제도의 성격이 강했다. 조정에서는 동포제를 통해 군역 대상자를 확대하면서도 양반층의 반발을 우려하여 그들이 거리낌 없이 군역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리로 명분을 부여하였다. 또한 양반층이 직접적으로 군역을 납부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부 형태의 이행도 용인하였다. 그 결과 큰 반발 없이 동포제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양반층·부호층과 소민들이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안정적인 군역 운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에서 동포제적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는, 즉 호포제를 시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투고일: 2019. 3. 22, 심사수정일 : 2019. 4. 25, 게재확정일 : 2019. 5. 7)

주제어 : 동포제, 수원부, 화성(華城), 장용영, 호포제, 군역, 군포

〈부표 1〉 순조 31년(1831) 수원부의 坊里 편제

面名	洞·里		面名	洞·里	
	수	洞里名		수	洞里名
남부	20	남창동, 남수동, 매향동, 구천동, 산루동, 교동, 하유천, 장지촌, 향목정, 독산리, 상류천, 하지장포, 상지장포, 벌리, 세동리, 권동, 천동, 내동, 우만리, 신폭	상홀면	6	동지동, 창동, 질목동, 갈전, 서천리, 송산리
북부	14	보시동, 북수동, 장안동, 군기동, 신풍동, 관길동, 역촌, 용연동, 지소동, 광교동, 서둔동촌, 고양동, 화산동, 서둔촌	남면	12	요동리, 백토동, 두모리, 상두리, 내동리, 화리현, 하두리, 서송리, 증거리, 갈천동, 오실리, 삼미성
일용면	7	미륵당, 파동, 일림리, 대송죽리, 조원, 정산리, 진목정	양간면	11	사양리, 포곡, 석천, 만어언리, 만촌, 육당리, 용소리, 기동, 가오실리, 신왕동, 독조리
장주면	9	권선리, 산남리, 궁촌, 구역촌, 원천, 매곡, 영통, 신목동, 평촌	종덕면	9	가내리, 동청리, 개야산, 구도리, 조곡리, 지곶리, 두응리, 당본리, 막금리
형석면	6	신기촌, 율전, 천천리, 탑현동, 방축동, 이목동	토진면	10	천계리, 후평, 신당, 월곡, 판교장, 건의촌, 상토진, 하토진, 고좌의, 한현
안녕면	9	야반정, 독지동, 배양동, 작현동, 송산리, 장치존, 하류천, 곡반정, 궁촌	수북면	10	도염리, 육백리, 평촌리, 상가내, 하가내, 벽동, 암증리, 항동, 어연리, 한산리
용복면	4	기전리, 상송리, 신촌, 고색리	오타면	9	울성리, 신리, 동고리, 방축리, 정자리, 효학리, 건곤리, 오영리, 흑동리
매곡면	15	화봉리, 신촌, 조산리, 금곡, 노리촌, 자목리, 대촌동, 가산리, 천천리, 원평리, 송촌리, 교기리, 화촌리, 송촌리, 기곡	청룡면	12	창촌, 덕우리, 수촌, 신능리, 옥길리, 개사리, 동산리, 작동, 강길리, 죽동, 후사동, 벌대리
태촌면	17	진언리, 장생점, 구봉리, 송고리, 신대리, 개라동, 독재동, 내동, 능동, 운정리, 기산리, 마성촌, 상소촌, 작교, 하소촌, 망포동, 당의암	숙성면	7	동언리, 어호동, 좌구리, 양교동, 구평리, 죽동, 조두리
송동면	7	빈정리, 중촌, 야목리, 현천, 병실, 송라동, 만평리	오정면	14	길산동, 양성촌, 상룡촌, 삼정리, 황금리, 율리, 학현리, 임촌, 율산동, 소반동, 탑리, 미촌, 루촌, 안중촌

삼봉면	12	수기촌, 방축리, 분천리, 신천, 산동, 동화촌, 신촌, 현천, 신수리, 내동, 여래동, 수영리	포내면	7	당두리, 곡교리, 거산리, 무수리, 감탕리, 운정동, 둔내리
문시면	8	명학동, 죽담점, 묵암동, 신촌, 옹동, 평촌, 세교, 관음동	현암면	5	문곡리, 화양동, 도대리, 당상리, 천곡리
남곡면	19	귀래동, 단구, 사근촌, 발산리, 신촌, 한적동, 봉황동, 와곡, 당두, 문학동, 오곡, 신기촌, 갈천, 만은동, 괘랑리, 모산리, 보통천, 판전, 오일리	광덕면	8	신암동, 대외동, 구둔동, 소외동, 덕목리, 죽현리, 냉정리, 신성리
갈담면	9	왕림촌, 세동리, 당하촌, 류대리, 덕구리, 마하리, 이덕리, 지도리, 봉양촌	가사면	12	두마리, 안중리, 계두리, 권관리, 맥산리, 기곡리, 수산동, 삼도, 신둔촌, 동성포, 밀두리, 맥언리
산성면	5	서리, 남리, 지곶리, 신촌리, 양산리	공향면	16	창촌, 매산리, 화당촌, 공장촌, 각곡리, 덕구리, 고죽동, 갈곡리, 고주동, 한절리, 방축리, 중촌리, 도이동, 한천동, 복촌리, 정촌
어탄면	10	장지촌, 기곡, 산척동, 이곡, 송촌, 평촌, 신암리, 방교, 암산, 금곡	팔탄면	9	언창리, 전대리, 사천리, 서촌, 동촌, 장지촌, 동막, 로상리, 진월리
동북면	22	오산리, 목족동, 농촌리, 만의동, 직동리, 초목동, 내곡리, 중촌리, 괴목정, 지사정, 청계동, 영평야, 선납현, 골마동, 화약리, 소랑리, 반송리, 궁평, 내촌, 진구리, 송내촌, 묵실리	장안면	16	장내리, 독정리, 신촌리, 원당리, 감촌리, 거묵동, 화전리, 가장촌, 방축동, 이물촌, 석포리, 양촌리, 대유정리, 아강동, 장작원, 거산리
청호면	7	갈곶리, 기문동, 당리, 원통리, 부산동, 수덕동, 천변동	우정면	24	거물리, 원종리, 원안리, 안두촌, 굴원리, 호곡리, 봉화곡, 계양리, 만진리, 소곶리, 파소리, 배행리, 여소곡, 한정리, 달무리, 평전리, 운정리, 고잔리, 내운정리, 한각리, 방축리, 반곡리, 멱동, 창촌
초평면	14	수철리, 누읍리, 타종리, 마유동, 신촌, 모전촌, 용란리, 서촌, 여대리, 내창동, 어은굴리, 대화촌, 궁기리, 어인포	초장면	9	노정동, 진목리, 흥천리, 신언리, 구천리, 덕다곶, 독지동, 어은동, 사랑리
정림면	11	덕촌, 비정리, 물면리, 내촌, 사근동, 고지동, 용수동, 인복리, 망우리, 신기촌, 제지촌	압정면	20	만곶리, 중강리, 당곡리, 맹곶리, 주곡리, 덕목리, 가내동, 고온포, 야미라, 시여촌, 장포리, 일원리, 고기리, 양촌리, 습촌, 한촌, 조암리, 농촌리, 서재동, 마산동

* 典據 : 『華城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915.12-H991j).

〈참고 문헌〉

사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大東地志』, 『戶口總數』, 『華城誌』, 『畿甸營事例』, 『水原府邑誌』, 「華營新定式節目」, 「各面軍政洞布節目」

연구논저

김용섭, 「朝鮮後期 軍役制釐正의 推移와 戶布法」, 『성곡논총』13, 1982.

김용섭, 『韓國近代農業史硏究』上, 일조각, 1984.

김준혁, 「正祖代 壯勇營 설치의 政治的 推移」, 『사학연구』78, 2005. UCI : G704-001261.2005..78.008

박범, 「장용영 내영의 향색제조 역할과 재정확보 과정」, 『역사와 현실』102, 2016. UCI : G704-000054.2016..102.006

박범, 「17~18세기 중반 수원부의 군제 변화와 별효위 창설」, 『수원학연구』11, 2016.

방범석, 「壯勇營의 편제와 재정운영」, 『한국사론』6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6.

송양섭, 「19세기 良役收取法의 변화; 洞布制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89, 1995.

송양섭, 「均役法 施行 以後 軍役制 變動의 推移와 洞布制의 運營」, 『군사』31, 1995.

송양섭, 「임술민란기 부세문제 인식과 三政改革의 방향」, 『한국사학보』49, 2012. UCI : G704-000690.2012..49.005

송양섭, 「1888년 영해부 호구분쟁에 나타난 戶政運營의 일단 - 호적색 윤일찬의 '捧賂減戶'에 대한 마을민의 등소 사례」, 『조선시대사학보』82, 2017.

이방섭, 「正祖의 壯勇營 운영의 정치적 구상」, 『조선시대사학보』53, 2010. UCI : G704-000303.2010..53.005

이종범, 「19세기 후반 戶布法의 運營實態에 대한 檢討」, 『동방학지』77

、78、79, 1993.
임성수, 「임술민란기 秋琴 姜瑋의 현실인식과 三政改革論」, 『조선시대사학보』79, 2016. UCI : G704-000303.2016..79.014
최홍규, 「수원지방의 역사적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화」, 『경기사학』4, 2000.
한우근, 「大院君의 稅源擴張策의 一端 -高宗朝 洞布·戶布制 實施와 그 後弊-」,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編纂委員會, 1969.

<Abstract>

The Flexibility of Suwonbu(水原府) gunyeok(軍役) and implement of dongpoje(洞布制) in the late Joseon Dynasty

Im, Seong-soo

Suwonbu was the biggest town in Gyeonggi area around the doseong and strategic point located on the way(大路) to Seoul in Samnam. After the 17th century, Gunchong(軍總) was increased so much as the military importance of Suwonbu was weighed on. In comparison with Gunyeok resources, which means, the military service manpower, there were lots of Gunchong and Cheopyeok(疊役) became the biggest problems in Gunyeok management. After Suwonbu was changed into Hwaseong in the late 18th century, a part of military amount was reduced and opposing amount was also reduced by the order of Jeongjo, but fundamental problem of excessive Gunchong of Suwonbu had not been solved. After Jangyongyeong was broken, the supports of soldiers and finance were stopped around there and it was more difficult to manage Gunyeok of Suwonbu.

The problems of Gunyeok that had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were shown by various aspects in the whole 19th century. As a part of rich classes was out of the Gunyeok burden by offering bribe, the pain of remained poor people, was increased. Therefore, Dongpoje started to be fulfilled generally by the order of Heungseondaewongun in the 6th year of Gojong(1869). Dongpoje was the method to reduce the burden of people while maintaining existing Gunchong and

letting Yangban who are noble class and rich classes who were excluded from Gunyeok pay Gunpo. Dongpoje was fulfilled by the method to evenly oppose Gunchong arranged to Suwonbu to hochong investigated newly. Also, while responsibilities in Gunpo collection were given to each unit of town, it's promoted to collect Dongpo stably. In the other hand, autonomous management of town unit was guaranteed and communal cooperation was induced. In the area where Dongpoje was fulfilled, Yangban classes、rich classes, and general people were cooperative and stable Gunyeok could be managed by unit of town. Those results are judged to a decisive opportunity to expand the management of Dongpoje nationally by the court, fulfill Hopoje.

Key words : dongpoje(洞布制), suwonbu, Hwaseong(華城), jangyongyeong, hopoje(戶布制), gunyeok(均役), Gunpo(軍布)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131-161
https://doi.org/10.29212/mh.2019..111.4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성주(星州) 전투

김종수*

1. 머리말
2.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실태
3. 『난중잡록』을 통하여 본 성주 전투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실태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상도 성주 지역에서 전개된 전투의 실상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열흘만인 4월 23일 성주성은 함락된다. 이후 이듬해인 1593년 1월 15일 성주성을 수복하기까지 근 10개월 동안 성주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군과 왜군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성주성은 임진왜란 초기 왜군이 번성(藩城)으로 삼았던 곳으로서, 경상도 지역의 침략을 담당하였던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의 통솔 하에 왜군 주둔의 거점이자 이들의 수송과 보급 선상에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리고 또 성주 지역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조선으로서도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수복해야 하는 곳이었다. 이에 성주 지역에는 10개월 동안 십여 차례의 전투가 있었다. 그런데 성주 전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출된 논문은 단 1편뿐인 실정으로[1],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 성과가 요구되는 부문이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방어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전기 방어체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전기의 방어체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크게 구분된다.[2] 평시체제는 5위로 이루어진 중앙군과 진관체제로 편제된 지방군이 평상시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에는 이들이 다시 전시체제로 재편되어 전투에 나서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평시체제의 지휘관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자신이 평소에 선발하고 훈련한 군인들을 직접 지휘할 수는 없었고, 전시에는 중앙에서 별도로 임명받아 내려온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도원수 등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군대를 이처럼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신라와 고려시대 때에도 있었던 일이다.[3] 그런데 조선왕조에 들어와 평시체제와 전시체제의 운영은 더욱 철저하고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

1) 신윤호, 「임진왜란기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역사학연구』 53. 2014.
2) 평시체제와 전시체제에 대해서는 김종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웅치·이치 전투」『전북사학』 51호, 2017 ; 김종수, 『숙종시대의 군사체제와 훈련도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참조.
3) 김종수, 「신라 중대 군제의 구조」『한국사연구』 126, 2004. ; 김종수, 「고려시기 부병제의 운영과 그 원칙」『역사교육』 73, 2000.

조선은 위화도 회군이라는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역대 국왕들은 군사 문제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 신경을 썼다. 특히 태종은 병권에 대하여 대단히 예민한 왕이었다. 그는 병권이 곧 권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4], 국왕이 확고하게 병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사병제를 혁파하고 공병제를 수립하였으며, 장군과 군인 간의 일체의 사적 관계를 철폐하려 하였다.[5] 그리고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군사 체제를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각각 구분하여, 전시에는 혹시라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에서 국왕이 직접 임명한 지휘관으로 하여금 군대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시체제 지휘관은 전시에 생면부지(生面不知)의 군사를 데리고 전장에 나서게 되었다.[6] 그리고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도원수 등 전시체제 지휘관에는 국왕이 가장 신임하는 대신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체제를 서애 유성룡이 '제승방략'이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오해가 발생하였다.[7] 즉 유성룡은 을묘왜변 때 제주목사 김수문이 진관체제를 고쳐 제승방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

4)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6월 20일 (癸丑). "태상왕(태조 이성계: 필자주)께서 병권을 잡았기 때문에 고려 말에 능히 화가위국(化家爲國)할 수 있었다."

5) 김종수, 「조선초기 중앙군제의 정비와 사병제 개혁」『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2002.

6)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0일 (丙午). 비변사는 여기에서 전시에 지휘관이 자신이 직접 훈련한 군사들은 데리고 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군사를 데리고 전장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7)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10월 1일 (癸巳) ; 『선조실록』 권49, 선조 27년 3월 29일 (丁未).
"국초에는 각도의 군병(軍兵)을 모두 진관에 분속시켰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관이 속읍을 통솔하여 잘 정돈하고 있으면서 주장(主將)의 호령을 기다렸습니다. … 그런데 지난 을묘왜변 이후 김수문(金秀文)이 전라도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분군법(分軍法)을 고쳐 도내의 여러 고을을 순변사 · 방어사 · 조방장 · 도원수 및 본도의 병사와 수사에게 나누어 소속시키고 이를 제승방략이라고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군이 패배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오해였다. 일개의 정3품 제주목사가 마음대로 조선의 방어체제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진관체제를 제승방략으로 고칠 수도 없었다. 진관체제는 평시체제로서 제승방략이라고 잘못 말한 전시체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조선전기 방어체제의 원칙 상 평시체제가 전시체제로 변할 수 없듯이, 진관체제가 제승방략으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이러한 유성룡의 말을 근거로 하여 제승방략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제출되었다.[8]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과 도체찰사를 지낸 유성룡의 말은 어느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어 지금까지 아무도 그의 말의 진위를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말도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조선전기 군사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도의 방어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본군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전라도와 경상도의 대응 태세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는 진관체제로 이루어진 평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로써 왜군의 침략에 대항한 반면, 경상도는 조선전기 국가가 마련한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의병들이 전시체제를 형성하여 왜적의 방어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유력한 의병장들은 의병뿐만 아니라 관군까지 지휘하면서 국왕에 의하여 임명된 전시체제의 지휘관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성주 역시 경상우도 지역에 있었으므로 경상도의 방어체제와 동일한 실정이었다. 본 논문 2장에서는 임진왜란 초기 서로 다른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 실태에 대하여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한편 본 논문의 3장에서는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의 방어 실

8) 허선도, 「제승방략 연구-임진왜란 직전 방위체제의 실상(상, 하)」『진단학보』 36 · 37, 1973 · 1974.

태와 관련하여 성주 전투를 예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겠다. 성주 전투는 지금까지 이형석이 그의 책『임진전란사』에서 1차, 2차, 3차 성주성 전투가 있었다고 서술한 이후[9], 다른 책이나 논문들에서도 대체로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주 전투가 3차례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성주 전투에 관한 유일한 논문인 신윤호의 논문 역시 성주 전투가 3차례 있었다고 보고 있다.[10] 그러나 성주 전투는 3차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4월 23일 성주성을 일본군에게 빼앗긴 이후 의병들은 6월부터 성주성이 회복되는 1593년(선조 26) 1월까지 무려 18차례 이상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병들이 희생되었다. 본 논문 3장에서는 이러한 성주 전투를『난중잡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겠다.

2.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실태

조선전기의 군사체제는 크게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구분된다. 치안 유지나 소규모 전란의 진압은 중앙과 지방에서 평시체제 하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각각 담당하였고, 대규모의 전쟁은 중앙군과 지방군이 통합하여 재편된 전시체제로 대처하였던 것이다. 평시체제 하의 지방의 방위체제는 진관체제로 운영되었다. 진관체제는 각 도 육·수군의 최고 책임자인 병마절도사[11]나 수군절도사의 주진(主鎭) 휘하에 몇 개의 거진(巨鎭)을 두고, 거진

9) 李烱錫,『壬辰戰亂史』中卷,「제Ⅱ편 壬辰·癸巳 作戰期」,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482~605쪽.
10) 신윤호, 앞의 논문, 2014, 78쪽.
11) 병마절도사(병사)는 경기·강원도의 경우에는 종2품 관찰사가 例兼하였지만, 충청·전라·황해·평안도는 관찰사가 예겸하고 전임의 병사 1명을 두었고, 경상·영안도는 관찰사가 例兼하고 전임의 병사 2명을 두었다.

지역의 해당 지방관인 목사·부사가 절제사(節制使)나 첨절제사를 겸임하면서, 그 아래 제진(諸鎭)을 관할하게 하였다. 제진이 설치된 군현의 책임자인 군수·현령·현감 등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절제도위(節制都尉)를 겸하면서 자기 지역의 방위를 책임졌다.[12] 진관체제를 성주가 속해있는 경상우도의 예를 들어 도식화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경상우도 진관체제 편성표[13]

			관찰사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겸)	감영 : 상주
主鎭			우도 병마절도사	우병영 : 창원
	巨鎭		諸鎭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상주 진관	상주 목사	성주목사 선산부사 금산군수	상주판관 성주판관 개령현감 지례현감 고령현감 문경현감 함창현감
	진주 진관	진주 목사	합천군수 초계군수 함양군수 곤양군수	진주판관 거창현감 사천현감 남해현령 삼가현감 의령현감 하동현감 산음현감 안음현감 단성현감
	김해 진관	김해 부사	창원부사 함안군수	거제현령 칠원현감 진해현감 고성현령 웅천현감

이러한 진관체제 하에서 지방 각 진(鎭)은 각자 싸우고 각자 지키는 자전자수(自戰自守)를 원칙으로 하였다. 비록 외적이 침입하거나 내란이 일어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각 진의 군사 책임자들은 다른 도(道)의 군사를 요청하거나 통솔할 수 없었다.[14] 자신의 지역은 자신의 군사로 책임지고 방어해야했던 것이다.

12) 민현구, 「Ⅳ. 진관체제의 확립과 조선초기 지방군제의 성립」『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13) 『경국대전』 권4, 병전, 외관직.
14) 『성종실록』 216, 성종 19년 5월 10일(癸酉) "設鎭置兵 皆令自守自戰 不必皆藉他鎭之助"

평시체제 하의 중앙군과 지방군은 유사시에는 다시 전시체제로 재편되었다. 전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관체제 하의 지방군은 중앙군과 통합되어 전시체제의 출정군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시체제 지휘관에는 국왕이 가장 신임하는 대신이 임명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조선 정부는 즉시 전시체제를 편성하여 이일을 순변사로 삼아 중로(中路)에 내려 보내고, 좌방어사 성응길을 좌도(左道)에, 우방어사 조경을 서로(西路)에 내려 보내고, 조방장 유극량과 변기로 하여금 각각 죽령과 조령을 지키게 하였다. 또한 좌의정 유성룡을 도체찰사로, 병조판서 김응남을 부체찰사로 삼는 한편, 한성판윤 신립을 도순변사로 삼아 충주로 파견하여 왜군을 저지하게 하였다.[15]

그런데 순변사로 임명된 이일은 서울에서 중앙군 3백 명을 통솔하고 가려고 병조에 있는 군적[選兵案]을 살펴보았으나 모두 시정잡배나 아전, 유생이 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었다고 한다. 이에 이일은 왕명을 받은 지 3일이 지나도 떠나지 못하다가 할 수 없이 혼자 먼저 상주로 내려가고, 별장(別將) 유옥으로 하여금 뒤따라 군사를 수습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16] 한편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경상감사 김수(金睟)는 경상도 여러 고을에 글을 보내, 각 고을의 수령들로 하여금 자기 고을의 군사를 인솔하여 전시체제 하의 신지(信地)에 주둔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문경 새재 이남에 있는 지방 수령들은 각각 군사를 이끌고 대구에 집결하였는데, 이 당시 군사들은 모두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로서 순변사만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15) 『선조수정실록』 26, 선조 25년 4월 14일 (癸卯) "啓請以李鎰爲巡邊使 竹嶺 邊璣爲助防將 守鳥嶺 … 上召問碏 碏亦不辭 遂以爲都巡邊使"下中路 成應吉爲左防禦使 下左道 趙儆爲右防禦使 下西路 劉克良爲助防將 守

16) 유성룡, 『징비록』 권1, 선조 25년 4월 17일. "李鎰欲率京中精兵三百名去 取兵曹選兵案視之 皆閭閻市井白徒 胥吏·儒生居半 臨時點閱 儒生具冠服持試卷 吏戴平頂巾 自愬求免者 充滿於庭 無可遣者 鎰受命三日不發 不得已令鎰先行 使別將兪沃 隨後領去"

와중에 왜군의 습격을 받아 군사들이 흩어지고, 수령들 또한 모두 달아나버린 후에야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일 역시 왜군의 습격을 받아 패배하였다.[17] 상주에서 승리한 왜군은 다시 문경새재를 넘어 도순변사 신립이 있는 충주로 들이닥쳐 신립 군을 격파하고 곧바로 서울로 진격하였다.

이와 같이 20만 대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전기의 군사체제는 속수무책으로 붕괴되었다. 평시체제로 왜군과 대면하였던 부산진과 동래성은 대규모의 왜군 앞에서 자전자수(自戰自守)를 고수하였으나 하루 사이에 각각 격파당하고 전멸되었다. 또 전시체제에 따라 중앙에서 긴급히 파견된 순변사 이일과 도순변사 신립도 상주와 충주에서 모두 격파되었다. 상주에서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정에서는 우의정 이양원을 경성도검찰사(京城都檢察使), 박충간을 도성검찰사, 이성중을 수호사, 변언수를 유도대장(留都大將) 등으로 삼아 도성을 지키게 하고, 김명원(金命元)을 도원수에, 신각(申恪)을 부원수에 임명하여 한강을 수호하게 하였다.[18] 그러나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의 기세 앞에서 서울과 한강 방어는 모두 허사로 끝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왜군을 피하여 정신없이 북쪽으로 피난가고 있는 조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이미 순변사 이일과 도순변사 신립이 격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전시체제에 따른 지휘관을 재차 편성하여 내려보낼 수도 없었다.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를 고려할 것 없이 각 지역에서 책임지고 왜군을 물리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초기 방어체제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조정으로부터 아무런 특별한 조치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대응 태세는 사뭇 달랐다. 전라도는 평시체제를 그대로 유지

17)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8) 『선조실록』 26, 선조 25년 4월 17일 (丙午)

하면서 이로써 전시 상황에 대처하였다. 원래는 평시체제의 지휘관이 전시에 자기 휘하의 군대를 통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전시체제의 지휘관을 내려 보내지 않자 평시체제의 지휘관인 전라감사가 전라도 진관군사들을 통솔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을묘왜변이 일어난 1555년(명종 10)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한하여 관찰사가 순찰사를 겸임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면서[19], 전라도 관찰사가 자신의 진관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경상도에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붕괴됨에 따라 각처의 사족들이 의병장이 되어 산졸(散卒)들을 수습하여 왜적 퇴치에 나섰다. 그런데 이러한 의병 조직은 전시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즉 조정에서 파견된 전시체제의 지휘관이 부재(不在)한 상황에서 의병장들이 전시체제의 지휘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왜적을 퇴치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라도관찰사 겸 순찰사 이광(李洸)은 경상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의 침입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광주목사 정윤우(丁允祐)가 이러한 이광의 태도를 비난하며 즉시 근왕(勤王)의 군대를 출동시킬 것을 역설하였고, 전라도 사람들 역시 왜군의 침입에도 복지부동하고 있는 이광의 행동에 분통해 하였지만, 이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이광은 국왕으로부터 내려온 징병령의 교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전라도 각 진관 군사를 징발하여 근왕군을 편성하여 서울로 향하여 올라갔다.[20] 그런데 이광은 5월 4일 공주(금강) 근처에서 서울이 왜군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곧 회군하였다.[21] 이때에

19) 『명종실록』 19, 명종 10년 10월 18일 (己卯)
20) 『난중잡록』 1, 壬辰年 6월.
21) 『국역 대동야승 Ⅵ』, 「난중잡록 1」, 임진년 5월 4일, 민족문화추진회, 1985, 358쪽.

도 여러 수령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이광은 듣지 않았고, 또 군사들은 회군하면서 이광은 국왕의 호위에는 뜻이 없고, 단지 우리들을 고생시키기 위해 징발하였다고 원망했다고 한다.[22] 이와 같이 공주(금강) 부근에서 회군한 것은 이광이 왕명이 없이는 자신의 관할 구역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광은 2년 6개월 전에 전라도에서 벌어진 정여립 사건을 목도하고, 또 이를 직접 처리한 사람이다.[23] 따라서 정여립처럼 국왕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군사 행동은 언제든지 반역으로 몰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었다.[24] 이에 이광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왕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군사를 징병하거나, 자신이 맡은 관할 범위를 벗어나 군사를 출병시키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광이 이끄는 근왕군이 공주에서 회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왕은 세자시강원 관리인 심대(沈岱)를 보내어 이광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즉시 다시 기병(起兵)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순찰사 이광은 전라도 전역에 제2차 징병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번째의 징병은 쉽지 않았다. 지난번 공주까지의 행군 과정에 많은 고통을 겪었던 군인들이 이에 응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2차 징병령에 반발한 옥과 · 순창의 관군들은 형대원(邢大元)과 조인(趙仁)을 우두머리로 삼아 순창의 관청 건물을 불 지르고 감옥

『임진록』 1. "全羅監司李洸 兵潰於錦江 李洸領兵七萬 勤王行到錦江 聞訛言 遽令破陣 諸軍潰散

22) 송정현, 「임진왜란 초기 호남의병의 봉기와 활동양상」『임진왜란과 전라좌의병』, 보고사, 2011, 12쪽.

23) 『선조수정실록』 24, 선조 23년 3월 1일 (壬寅).

24)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전라도 지역에는 정여립 사건이 발발하여 1천여 명의 인사들이 처형되었다. 정여립은 국왕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동계 등을 조직하여 손죽도에 침입한 왜적을 물리치는 등 군사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후에 역모를 꾀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죽었다. 이후 정여립과 관련된 인사 1천여 명이 처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웅치 · 이치 전투」『전북사학』 51, 2017. 참조.

을 부수기도 하였다.[25] 또 남원 · 구례 · 순천 등지에서 올라오던 군사 8천여 명도 삼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26] 이와 같이 동원된 군사들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전라감사 이광은 4만의 군사는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2만의 군사는 방어사 곽영(郭嶸)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면서 다시 북상하였다. 여기에 경상순찰사 김수(金睟)와 충청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의 군사가 합류하였다.

제2차 근왕군은 전라 · 경상 · 충청 3도 연합군의 성격을 띠면서 6만 대군의 규모를 형성하여 6월초에 경기도 용인 경내까지 북상하였다. 그런데 2차 근왕군은 국왕의 재 기병 명령에 급조된 군대로서, "행군할 즈음에 군사들은 마치 양을 몰아 풀을 먹이는 것 같이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통일성이 없었다."[27]라고 하듯이 지리멸렬하여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이광은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닌 경기도에서의 전투에 극히 불안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광은

> 신들이 기병 · 보병 6만여 인을 거느리고 이달 3일에 수원(水原)에 진을 쳤는데 양천(陽川) 북포(北浦)를 경유하여 군사를 건너려고 합니다. 앞뒤 양쪽에서 들이치는 계책을 조정에서 급속히 지휘해주소서.[28]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군대의 행진 상황을 조정에 보고하면서 지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상하고 있는 일본군에 쫓겨 황급히 피난 가고 있는 조정으로부터 신속한 지휘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6만의 대군이 겨우 1,600여 명에 불과한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휘하의 일본 수군과의 접전에서 제대로 전투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궤멸되고 말았다.[29] 조정에

---

25) 『선조수정실록』 26, 선조 25년 5월 1일 (庚申).
26) 『국역 대동야승 Ⅵ』, 「난중잡록 1」, 임진년 5월 20일, 368쪽.
27)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3, 임진 8월.
28) 『선조실록』 27, 선조 25년 6월 21일 (己酉). "洸又庸怯不知兵 行師之際有如驅羊就牧 散亂無統 首尾不相知"

서는 이후 용인전투 패배의 책임을 물어 이광을 파직시키지만, 이광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왕명이 내려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광은 용인에서 후퇴하여 군졸을 이끌고 6월 15일 경 전주로 돌아왔다.[30] 그런데 이광은 왜군이 서울을 점령한 이후 조선 팔도에 군정(軍政)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다시 전라도로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호남 방어에 나서게 된다. 즉 6월 중순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가 통솔하는 일본군은 경상도 성주·김산과 충청도 영동 등을 거쳐 무주와 금산 방면으로 진격하며 전라도를 위협하고 있었다. 호남지역이 위기상황에 몰리자, 전라감사 이광은 전라도 관군을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배치하여 경계 근무에 임하도록 하였다. 먼저 광주목사 권율, 전라도 조방장 이유의, 남원판관 노종령 등을 남원에 배치하여 경상도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막게 하였고, 장수 육십령 지역에는 이계정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동복현감 황진, 나주판관 이복남과 김제군수 정담 등으로 하여금 웅치와 이치의 험한 곳을 지키게 하여 대비하였다.[31] 이와 같은 이광의 활약에 의해 결국 전라도 땅에는 일본군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광은 전시체제가 아닌 평시체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일본군의 침입을 방어했던 것이다.[32]

이에 반해 경상도는 일본군의 침략과 동시에 평시체제와 전시

29)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이광의 활동과 용인전투에 대한 재고」『사총』 89, 2016.

30) 하태규,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韓日關係史硏究』26집, 2007, 157쪽.

31) 『宣祖修正實錄』 26, 선조 25년 6월 1일 (己丑) "倭賊犯全羅·忠淸郡縣初湖南兵潰 歸本道 列邑洶洶 … 洸卽牒 慄爲都節制使 進守湖嶺之界 於是 分布防禦使郭嶸·同福縣監黃進·全州義兵將黃璞·羅州判官李福男·金堤郡守鄭湛于熊峴·梨峴等關隘 以防賊入"

32) 김종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웅치·이치 전투」『전북사학』 51, 2017.

체제가 모두 붕괴되어 버렸다. 경상도 전역에 왜적의 침략 사실이 알려지자 지방 수령은 도주하고 백성들은 피난가기 시작하였다. 임란 발발 직후 경상도 지역의 관군과 수령의 동태는 다음 자료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좌병사 이각은 소산역에서 진을 치고 적을 막으려 하다가 밀양성의 함락을 보고 놀라서 멀리 도망가 버렸다. 본영의 좌수사 박홍도 영사에 불 지르고 멀리 달아나 버렸다. 여러 장수가 무너지고 사졸들이 새떼같이 흩어져버렸다. 적은 무인지경을 가는 것 같았다.[33]

> 창원군수 장의국은 성을 버리고 달아나고, 우후 이혐은 병기를 연못에 던지고 군량창고를 불사르고 성문을 열어 먼저 숨어 버리니 모든 진영과 모든 고을의 수령들이 일시에 다 도망갔다. 의령군수 오응창은 처음 김해로 나아가다 배가 침몰하여 정병 100여 인을 익사케 하고 군량과 병기를 모두 잃고는 간 곳을 알지 못하고, 창령군수 이철용과 현풍군수 유덕신은 순찰사의 전령으로서 모두 고을을 버리고 도망갔다.[34]

이와 같이 지방 수령이 도주하고 사졸들이 새떼같이 흩어지면서 경상도의 평시체제는 무너져버렸다. 경상감사 김수가 그나마 잔존한 평시체제 상의 각 고을 군사를 이끌고 전시체제에 따른 약속 장소인 대구에 집결하였다가 왜적의 습격을 받아 무너지고, 상주에 가서 순변사 이일을 만났지만 이마저도 왜적의 야습으로 패배하면서 전시체제 역시 무너져버렸다. 이와 같이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붕괴하였지만, 조정에서는 또 다른 전시체제의 지휘관을 내려 보내거나 하는 등의 별도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경상도의 사족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의병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

33) 이탁영, 『譯註 征蠻錄』, 4월 17일. "左兵使李珏 蘇山驛 結陣遏截 驚見留城之陷 自知難當遠走 本營 左水使朴泓 自焚營舍 亦走出 諸將瓦解 士卒鳥散 故如入無人之境"

34) 이로, 『용사일기』(전규태 역주, 을유문화사, 1974), 32쪽,

경상우도 지역에서 의병이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달인 5월에 들어서였다. 곽재우가 의령(宜寧)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조직한 것은 4월 하순 무렵이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곽재우는 급속히 진격해오는 왜군으로부터 고을을 지키기 위해 가동(家僮) 10여 인을 거느리고 개인 사재를 내어 용사 수십 명을 모집하여 급히 의병 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곽재우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우도의 의병은 대체로 초유사로 임명된 김성일의 주도하에 각처의 사족들이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조직된 것이었다.[35] 김성일이 초유사로 임명되어 경상도 함양으로 들어온 것은 5월 4일이었다. 김성일은 함양에 도착한 즉시 경상우도의 여러 고을에 1~2인의 소모유사(召募有司)를 임명하여 주위의 군병을 모으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격문을 발표하여 의병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였다.

> 이제 보건대, 도망하여 무너진 병졸들이 산골짜기에 가득 차 있다. 처음에는 비록 몸을 빼서 살 길을 구한 것이나, 마침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게 되자, 모두 분발하여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특히 아직 창의(倡義)하는 이가 없을 따름이다. 이때를 당해서 만약 한 사람의 의사라도 있어 분기하여 창의하면 원근의 군사들이 모여들어 향응(嚮應)할 것을 앉아서도 예측할 수 있다.[36]

이러한 김성일의 종용으로 경상우도의 유력 인사인 김면과 정인홍은 5월 10일 합천의 숭산동에서 회합하여 의병의 기병을 논의하게 된다.[37] 이후 김면은 곧바로 자신의 근거지인 고령에서 정예 군병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5월 22일에는 인근 고을인 의령, 함양, 산음, 단성, 삼가 등에도 기병유사(起兵有司)를 선정하여 군병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그리고 김면은 성주와 초계에 머

35)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역사와 현실』 64, 2007, 41쪽.
36) 이로, 『용사일기』(전규태 역주, 을유문화사, 1974), 46쪽,
37) 정경운, 『고대일록』, 임진년 5월 10일.

물고 있는 왜적이 날로 성하니, 속히 일어나 힘을 합쳐 왜적을 몰아내자고 호소하였다.[38]

이 시기 소모유사들의 노력으로 확보된 군병들은 주로 낙오된 관군 출신자인 '산졸(散卒)'로 보인다.[39] 당시 경상도 지역 각처에는 낙오병들이 다수 발생하여 자신들이 사는 고을 주변의 산골짜기에 흩어져 숨어살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는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급속한 진격으로 인해 평시체제의 지휘부는 와해되었지만 대부분의 관군 병사들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전시체제에 따라 대구에 모이기로 한 경상도 군사들의 경우도 일본군과 대면하기는 하였지만 직접 전투하지도 못하고 와해되었으므로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40] 이와 같이 다수의 낙오된 군병들이 각처에 흩어져있는 상황에서 소모유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들을 수합하면서 의병부대는 신속하게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합천에서 기병한 정인홍 부대의 경우 6월 초순경에는 정병 수백 명과 창군(槍軍) 수천 명을 확보하고 있었다.[41] 의령의 곽재우 부대도 처음에는 가동 10여 명과 모집한 장사(壯士) 5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초계(草溪) 등 주변에 흩어져 있는 관군을 모아 전체 군병의 수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이에 더하여 김성일의 지시로 삼가(三嘉)의 군사가 곽재우 부대에 편입되면서 전체 병력은 2천여 명에 달하였다.[42] 고령에서 기병한 김면 부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가동이나 거창의 산척(山尺) 약간 명으로 출발하였으나 곧 여러 지역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4, 5일 만에 군사 2천여 명을 모을 수 있었다.[43] 이와 같이 경상우도의

38) 정경운, 『고대일록』, 임진년 5월 22일.
39) 노영구, 앞의 논문, 2007, 41쪽.
40) 조정, 『임란일기』, 임진년 4월 24일 ; 노영구, 앞의 논문, 2007, 42쪽 재인용.
41) 고석규, 「내암 정인홍의 의병활동」 『남명학연구』2, 1992, 43쪽.
42) 『국역 대동야승 Ⅵ』, 「난중잡록 1」, 임진년 4월 22일, 339쪽.

의병장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병 부대의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평시체제가 붕괴하면서 흩어진 군졸들을 의병 부대에 편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44]

평시체제 하의 군졸들을 수습하여 형성된 의병부대는 비록 국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지휘관이 내려와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외형상 전시체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 경상우도 의병을 예를 들면, 초유사 김성일의 통제 하에 김면, 곽재우, 정인홍 등 3명의 의병 대장이 대체로 담당 구역을 나누어 자기가 담당한 군현의 군사를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전시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45] 그리고 의병 조직의 내부 모습도 김면 군의 의병 조직을 예를 들면, 의병장 김면 아래에 참모장, 선봉장, 복병장, 돌격장, 좌부장, 우부장 등 여러 직책을 두었는데 거창현감, 제포만호, 김해부사, 지례현감 등 현직 관리 다수가 이 직책에 참여하고 있었다.[46] 그리고 다음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인홍은 작전에 태만한 성주목사와 고령현감을 잡아다 매질하기도 했다.

> 호남의 임대장(임계영; 필자주)이 장졸 500여 명을 보내 성주의 적을 유인해 들에서 엄습하였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적을 섬멸하였다. 그런데 성주목사 제말(諸沫), 고령현감 곽천성(郭天成)이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아 좋은 기회를 가만히 앉아서 놓치고 성주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대장(정인홍)이 크게 노해 성주목사와 고령현감에게 매를 때렸다.[47]

이와 같이 현직 관리를 군사 조직에 참여시키거나, 또 현직

43) 노영구, 앞의 논문, 2007, 44쪽
44) 『정만록 坤』, 7월 15일. "所謂義旅者 非如一家親戚奴僕 同盟決死之兵 不過散亡軍卒收拾之類" 정경운, 『고대일록』, 임진년 6월 14일. "官軍與義兵 均是國事 所謂盡心力而止耳 安有二路於其間哉 生等又收疲盡之卒 咨問山谷之間 募得數百餘人"
45) 노영구, 앞의 논문, 2007, 54쪽
46)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도의 의병운동」『壬亂義兵史의 再照明』, 안동시, 2012, 126쪽.
47) 『고대일록』 12월 15일.

관리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왕에 의해 임명된 전시체제의 지휘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48] 즉 김면, 정인홍은 의병 대장이지만 또한 전시체제 지휘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상도의 의병은 전시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왜적을 몰아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라도는 왜적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아 평시체제가 온존할 수 있었다. 이에 전라도는 평시체제로써 왜적을 방어하였다. 반면 경상우도는 왜적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받아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붕괴하였다. 이에 의병들이 나서 전시체제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왜적을 퇴치하였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경상우도의 상황을 성주 지역을 예로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 『난중잡록』을 통하여 본 성주 전투

성주 지역의 전투와 관련해서 일찍이 이형석이 그의 책 『임진전란사』에서 1차, 2차, 3차 성주성 전투로 3분하여 서술한 바 있다.[49] 이후 성주 전투를 다룬 다른 책이나 논문에서도 대체로 이형석의 3차 구분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이형석은 1차 성주성 전투는 1592년(임진년) 8월 21일에, 2차 성주성 전투는

48) 1592년 4월 17일 국왕 선조는 신립을 삼도순변사에 제수하면서 "이일(李鎰) 이하 그 누구든지 명을 듣지 않는 자는 경이 모두 처단하라. 중외의 정병을 모두 동원하고 자문감(紫門監)의 군기를 있는 대로 사용하라.(『宣祖實錄』 26, 선조 25년 4월 17일 (丙午))"라고 말하듯이, 전시체제의 지휘관은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49) 이형석, 『壬辰戰亂史』 中卷, 「제Ⅱ편 壬辰·癸巳 作戰期」,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482~605쪽.

9월 10~11일에, 3차 성주성 전투는 12월 7~14일에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성주 전투는 이렇게 3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후술하듯이 수많은 전투가 있었다. 또 이형석의 『임진전란사』는 초창기의 연구서이다 보니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1차 성주성 전투에 의병장 임계영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임계영은 10월 중순에나 성주에 들어오므로 명백한 오류이다. 이처럼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상북도에서 편찬한 『경북의병사』[50]나 『성주군지』[51] 등에서는 대체로 『임진전란사』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형석의 1차, 2차, 3차 성주 전투 구분법은 위에서 제시한 책뿐만 아니라, 성주 전투를 다룬 여러 논문들에서도 준용하고 있다. 「경상우도 임진의병의 전적 검토 - 김면·정인홍 의병군단을 중심으로」[52]라는 논문에서는 성주 전투를 1차(8/19~8/20), 2차(12월 14일경)로 구분하고 있고, 또 「1592년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53]에서도 이형석의 1차, 2차, 3차 구분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 『난중잡록(亂中雜錄)』, 『정만록(征蠻錄)』, 『고대일록(孤臺日錄)』 등 당시의 기록물을 살펴보면 성주 전투가 3차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가 있었다. 임란 당시의 기록물 중 조경남의 『난중잡록』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역사서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54] 『난중잡록』은 경상도 감영에서 전해진 「경상순영록」을

5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慶北義兵史』, 경상북도, 1990.
5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성주군지편찬위원회 편, 『星州郡誌』, 경상북도, 1996.
52) 정현재, 「慶尙右道 壬辰義兵의 戰跡 검토 - 金沔·鄭仁弘 의병군단을 중심으로」『慶南文化硏究』 17, 1995.
53) 신윤호, 「1592년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임진왜란과 전라좌의병』, 보고사, 2011.
54) 정구복, 「『난중잡록』과 전라좌의병」『임진왜란과 전라좌의병』, 앞의 책.

이용하여 일본군의 침략과 그에 대한 항쟁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하여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난중잡록』을 중심으로 성주 전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지 열흘만인 4월 23일에 일본군은 성주로 들어오게 된다. 『난중잡록』 4월 23일 조에는 "가운데 길[中道]로 침입해 오는 왜군은 인동을 불태워 버렸고, 오른쪽 길[右道]로 오는 왜군은 현풍에서 길을 나누어 낙동강을 건너서는 성주를 불태워 버리니, 성주판관 고현(高晛)은 도망쳐 달아났고, 목사 이덕열(李德悅)이 겨우 몸만 살아남아서 끝까지 고을을 지켰다. 왜적이 성안으로 들어와 점거하고 있으면서 목사를 가칭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꾀어 모으자 궁박해진 백성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왜적에게 항복하고 부동하는 자들도 많았다."[55]라고 서술되어 있다. 『정만록』에는 이때 장졸(將卒)들은 왜적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뿔뿔이 흩어지고 적이 경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집을 비우고 달아났다고 한다.[56] 성주에 들어온 일본군은 잔혹하기가 조령으로 간 적보다 더 심하였다고 하고, 또 성주의 중 찬희(瓚熙)라는 자는 적중(賊中)에 들어가서 왜장과 글로써 응답하고는 군사를 모아 환자곡(還上穀)을 분급하고, 일주(一州)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였다고 한다.[57]

『난중잡록』 6월 6일 조에는 "왜적이 창녕 · 현풍으로부터 김산(김천의 옛 지명)에 이르는 한줄기의 큰길을 닦고 위아래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중간에 위치한 성주는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은 많아 왜적은 큰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다."[58]라고 적혀있다. 이

55) 『국역 대동야승 Ⅵ』 제26권, 「난중잡록 1」, 임진년 4월 23일, 341쪽.
56) 이탁영, 『역주 정만록』, 「征蠻錄 坤」, 의성군, 2002, 239쪽.
57) 앞의 책, 242쪽.
58) 『고대일록』(정경운 지음, 문인채 외 옮김, 서해문집, 2016), 계사년 2월 5일 조에서 정경운은 "성주목사 이덕열이 범같이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봄이 되면 거둬들이기를 독촉해 곡식을 산더미같이 쌓아 두었다. 마침내는 쌓아 둔 곡식을 왜노에게 약탈당했으니 이덕열의 죄가 왜적과 무엇이

에 정인홍이 손인갑에게 "무계[59]의 왜적이 현풍과 성주 사이에 끼어서 왕래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있으니 반드시 이 왜적을 먼저 제거해서 강 길을 끊어 놓은 후에야 성주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5월 27일 군사행동을 시작하여 6월 4일 밤에 진군하였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60] 성주성 회복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 보인다.

『난중잡록』 6월 17일 조에는 손인갑이 사원동(성주 남쪽 20리에 있음)에 복병을 매설했다가 불리하여 퇴각한 기록이 실려 있다. 성주와 현풍의 왜적이 강줄기를 따라 목책을 설치하고 약탈한 짐을 운반하기 위해 강으로 떠내려 보내므로, 손인갑은 복병을 매설하여 이것을 습격하고자 김면에게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손인갑이 독자적으로 사원동에 복병을 매설하여 성주의 왜적 300여 명과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배하고 박응성이 전사하였다.[61] 이 전투는 『연려실기술』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62], 또 김면과 정인홍의 두 군사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최초의 본격적인 성주 전투라 할 수 있다.

『난중잡록』 6월 19일 조에는 성주 주부 배설(裵楔)이 성주의 가장(假將)이 되어 군사 수백 명을 모아 복병을 매설하여 왜적의 통로를 차단하고 목 벤 수효가 많아 포상되어 합천군수로 승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의 부친 전 군수 배덕문(裵德文) 역시 왜적에 붙좇은 중 찬희(瓚熙)를 잡아 목 베어 상으로 판사의 직을 받았다. 비록 성주성은 왜적에 점거되었지만 민족 반역자는 즉시 처단하는 것으로 보아 성주 사족들의 민에 대한 통제력은 놓치지

다른가?"라고 성주목사 이덕열을 질타하고 있다.

59) 무계는 달성군 현풍 서쪽에 위치하여 낙동강에서 성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서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60) 『국역 대동야승 Ⅵ』, 「난중잡록 1」, 임진년 6월 6일, 403~404쪽.

61) 『국역 대동야승 Ⅵ』, 「난중잡록 1」, 임진년 6월 6일, 412쪽.

62) 『국역 연려실기술Ⅳ』 제16권,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 때의 의병」, 민족문화추진회, 1988, 179쪽.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만록』 6월 28일 조에는 성주 가장(假將) 배설이 복병장(伏兵將) 허후형이 왜적 1명을 참두(斬頭)(斬頭)하였고, 성주 가리현 복병장 이응량이 왜적 1명을 사참(射斬)하였다고 치보하고 있다.[63] 이와 같이 성주를 수복하기 위해 성주의 관민(官民)들은 6월부터 끊임없이 왜적을 공격하고 있었다.

또 『난중잡록』에 의하면 6월에 경상도 고령 선비 박정완(朴廷琓)이 장사 4백여 명을 모집하여 강기슭에 복병을 설치하고, 사재를 기울여 군량을 구입하여 활과 화살을 준비하여 창녕(昌寧)·현풍(玄風)·성주(星州)에 왕래하며 충돌하는 적들을 많이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또 배를 수선하고 수장(水杖)을 설치하여 강을 타고 내려오는 적을 막았다. 김면(金沔)이 무계에서 승첩한 것은 실로 박정완의 힘이 컸는데 박정완은 공을 나누는 데는 참여하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애석히 여겼다고 한다.[64] 『난중잡록』의 저자 조경남은 "김면이, 박정완이 왜적의 배를 노획하고 80여 급을 목 벤 공을 억눌러 나타내 주지 않았고, 손인갑(孫仁甲)이 사원동(蛇院洞)에서 복병을 쓴 작전을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그가 여러 사람의 모의를 어기고 패군 했다는 죄로 몰아넣었으니, 진실로 공(功)을 시기하여 모함한 흔적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김면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65]

『난중잡록』 7월 9일 조에는 합천 의병대장 정인홍과 가장(假將) 김준민이 군사 2,800명을 거느리고 안언[66]의 적을 공격하여 다 섬멸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67] 이때 400여 명의 왜적이 무계로부터 성주로 향하여 소, 말 백여 바리에 짐을 싣고 오는 것을 김준민과 정방준이 사수(射手) 천여 명을 거느리고 매복하

63) 이탁영, 『역주 정만록』, 앞의 책, 303쪽.
64) 『국역 대동야승 Ⅵ』, 「난중잡록 1」, 임진년 6월, 454쪽.
65) 『국역 대동야승 Ⅵ』, 「난중잡록 1」, 임진년 6월 3일, 393쪽.
66) 안언(安堰)은 성주군(星州郡) 용암면(龍巖面) 상언동(上彦洞)에 있었다.
67) 『국역 대동야승 Ⅵ』, 「난중잡록 1」, 임진년 7월 9일, 467~469쪽.

였다가 말을 달려 산을 내려가 일시에 활을 발사하여 왜적을 공격하였는데, 왜적의 죽은 시체가 서로 잇대고 흐르는 피가 들판에 가득할 만큼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 전투는『연려실기술』과『내암집』에도 실려있다.『내암집』에서는 이 전투에 대해 "고령과 성주의 군대가 합세하여 안언역 옆에 복병을 설치하여 올라오는 적을 요격하였는데, 적을 거의 모두 죽였고 우마 140여 두를 빼앗았으며 군량과 기계, 화약 등의 물자는 그 수와 종류를 알 수 없었다. 그 당시의 보첩에 상세한 내용이 있다. 이것이 세 번째 큰 전투였다"[68]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이 전투는 정인홍이 치른 3대(大) 전투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형석의『임진전란사』에는 이 전투가 기록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후의 여러 논문과 저서 등에서도 이 전투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전투는 이후 왜적이 낙동강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성주 전투 중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난중잡록』 8월 3일 조에는 김면이 지례에 둔친 적을 토벌하여 거의 다 태워 죽인 기록이 있다. 이 때 전라도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을 함께 다 태워 죽이고, 우리 측 군사도 50여 명이 죽었다고 한다.[69] 남은 적들이 도망하여 성주로 향했는데, 성주의 군사들이 이들을 무찔러 남김없이 멸하였다고 한다. 한편『고대일록』 8월 19일 조에는 김면과 정인홍이 성주에 주둔한 왜적을 토벌하기 위해 각각 정예병 1천여 명씩을 거느리고 성주 남쪽 사대촌에 진을 치고, 8월 23일 성주성을 포위하여 공격하였으나 왜적 2천여 명의 반격에 의해 후퇴한 기록이 있다.[70] 그런데 이 기록

68)『내암집』 12권, 雜著, 遺與兒孫昌後看. "又請金俊民爲假將 與高靈·星州軍合勢 設伏於安彦驛旁 要擊上來賊 殺賊幾盡 奪牛馬百四十餘頭 軍糧器械火藥等物不知數目 詳在其時報牒 此三大戰也 自此三大戰之後 賊兵不得由江上下"

69)『국역 대동야승 Ⅵ』,「난중잡록 2」, 임진년 8월 3일, 502쪽.

70)『고대일록』 8월 19일, 23일.

은 『난중잡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난중잡록』 9월 조에는 정인홍이 김면과 세력을 합쳐 성주성을 공격한 기록이 있다. 이때 성주성 밖 5리에 진을 치고 왜적과 대진하고 있었는데,

> 김면이 배설(裴楔)을 시켜 부상현(扶桑峴)에 매복을 시켜 개령(開寧)에서 응원하러 오는 적을 방비하게 하였다. 배설이 응낙하고는 물러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서생에게 절제(節制)를 받아서 그를 위해 중로에 매복한다는 말인가." 하고 드디어 가지 않았다. 이날 밤에 성주의 적이 개령에 달려가서 급함을 알리매 개령의 적이 크게 왔는데도, 우리 군사들이 알지 못하고 이튿날에야 바야흐로 성을 지킬 기구를 준비하였다. 응원하는 적이 불시에 크게 이르러 학익진(鶴翼陣)을 치고 에워쌌으며 성중의 적 또한 성문을 열고 앞뒤에서 공격하였다.[71]

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정인홍과 김면의 연합군이 크게 패배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우순찰사 김성일은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투를 치렀다고 하여 합천 의병군관을 잡아다 곤장을 쳤다고 한다. 이 전투가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서 임진년 9월 10~11일에 전개되었다는 제2차 성주성 전투로 보인다.

『난중잡록』 10월 18일 조에는 "성주 · 개령에 점거한 적이 더욱 치성하므로 관군과 의병이 연달아 싸워 불리하다. 본도의 감사와 모든 의병장이 여러 번 체찰사에게 보고하여 간절히 구원병을 청하였더니, 정철이 운봉 현감 남간(南侃)과 구례 현감 이원춘(李元春) 등을 영장(領將)으로 삼아서 본도의 관군 5천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개령 · 성주의 전투를 돕게 하다. 남간 등이 해인사(海印寺)에 진군하여 영남의 여러 장수들과 협력하여 성주성을 치다가 크게 패하여 돌아왔는데 죽은 자가 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전투는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서 서술하고 있는 제1차 성주성 전투(임진년 8월 21일)와

71) 『국역 대동야승 Ⅵ』, 「난중잡록 2」, 임진년 9월, 536쪽.

그 내용이 유사하다.

『난중잡록』 계사년(1593) 5월 24일 조에는 임진년 10월 18일부터 성주에서 전개된 전라 좌의병장 임계영의 활동에 대하여 도체찰사 유성룡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임계영이 이끄는 전라 좌의병은 정인홍의 요청에 의해 성주에 와서 10월 18일에는 부장 장윤이 왜적의 머리 2개를 베고, 10월 20일에도 머리 2개를 베고, 11월 3일에 머리 8개를 베고, 11월 22일에 또 싸우고, 12월 2일에 또 싸우고, 12월 7일에 왜적 5명을 즉사시켰다. 그리고 임계영은 12월 10일 정인홍과 관군 여러 장수와 만나 4일 후에 성주성을 공격하기로 약속하였다.

> 그 뒤 우리 군사들이 약속대로 4일 후에 만나 종일토록 왜적과 죽도록 싸워서 들판과 큰길이 모두 핏빛이 되었으며 성 밑에 쌓인 송장이 언덕과 같았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왜적의 머리를 베려고 앞 다투어 성 밑으로 달려갔더니, 궁지에 몰린 왜적이 죽음을 무릅쓰고 반격하여 우리 용사 1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장 또한 말이 피곤하여 달리지 못하므로 말에서 내려 걸으면서 용맹을 떨쳐 돌입하여 한 화살에 한 놈씩 죽인 것이 수를 헤아릴 수 없자, 적이 그제야 물러나 달아났습니다. 흉한 놈들 중에 죽은 자가 3분의 2는 되었는데 한창 싸울 때에 쏘아 맞히고 쏘아 죽인 것은 낱낱이 들 수도 없으니, 성주의 수복이 꼭 그날에 있게 되었는데, 이 도의 모든 장수들이 약속을 배반하고 응원하지 않았으니 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72]

그러나 위 인용문과 같이 임계영이 이끄는 전라좌의병은 종일토록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현지의 관군과 의병이 약속을 어겨 성주성 탈환에는 실패하였다. 정경운의 『고대일록』을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인홍이 성주목사와 고령현감을 징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73] 이 전투가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서 서술하고 있는 제3차 성주성 전투(임진년 12월 7~14일)이다. 그러나 임계

72) 『국역 대동야승 Ⅵ』, 「난중잡록 2」, 계사년 5월 24일, 639쪽.
73) 『고대일록』 12월 15일.

영의 성주성 전투는 12월 7~14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0월 18일부터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후 『난중잡록』 계사년 1월 15일 조에는 "성주의 적이 군사를 철수하여 퇴각하여 내려가므로 연로(沿路)에 있던 호남·영남 여러 군사가 본성에 들어가 점거하다."[74]라고 서술하여 성주성의 수복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주 전투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3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성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18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가 성주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투는 주로 정인홍, 김면, 손인갑, 배설, 박정완, 김준민, 임계영 등 의병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의병장들은 일본군의 기습 침략으로 경상도의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스스로 떨쳐 일어나 전시체제를 형성하여 일본군을 퇴치하였다. 18차례의 성주 전투는 그 역사적 증거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전기 평시체제·전시체제 운영과 이에 따른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난중잡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성주 전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은 위화도 회군이라는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성립한 나라이다. 이에 조선의 역대 국왕들은 군사 문제에 대단히 예민하였다. 특히 태종은 병권을 권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국왕이 병권을 확고히 독점하기 위해 사병제를 혁파하고 공병제를 확립하였으며, 장군과 군인 간의 사적인 관계를 제도적으로 철폐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군대를 평시체제와 전시체

74) 『국역 대동야승 Ⅵ』, 「난중잡록 2」, 계사년 1월 15일, 629쪽.

제로 나누어, 평시체제의 지휘관은 전시에는 자신이 평소에 선발하고 훈련한 군대를 지휘할 수 없고, 중앙에서 별도로 임명한 지휘관으로 하여금 그 군대를 통솔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시체제 지휘관은 전시에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서야 했다. 그리고 전시체제 지휘관에는 국왕이 가장 신임하는 대신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체제를 유성룡이 '제승방략'이라고 잘못 칭하면서 오해가 발생하였다. 즉 그는 진관체제가 변하여 제승방략이 되어 임진왜란 초기에 패배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오해였다. 진관체제는 평시체제로서 제승방략이라고 말한 전시체제와는 차원이 다른 체제였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초기 방어 체제와 관련하여 북상하는 일본군을 피해 정신없이 피난 가는 조정으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대응 태세는 사뭇 달랐다. 전라도는 평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로써 전시 상황에 대처하였다. 원래는 평시체제의 지휘관이 전시에 자기 휘하의 군대를 통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전시체제의 지휘관을 내려 보내지 않자 평시체제의 지휘관인 전라감사가 전라도 진관군사들을 직접 통솔하였던 것이다. 이에 전라감사 이광은 전라도 군사를 이끌고 용인까지 북상하여 왕명을 기다리다가 전투에서 패배를 겪기도 하지만, 다시 전라도 지역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관할 군사를 거느리고 일본군의 진입을 격퇴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경상도에서는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서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붕괴됨에 따라 각처의 사족들이 의병장이 되어 산졸(散卒)들을 수습하여 왜적 퇴치에 나섰다. 그런데 이러한 의병 조직은 전시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즉 정부에서 파견된 전시체제의 지휘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병장들이 전시체제의 지휘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왜적을 퇴치하였던 것이

다. 경상우도의 예를 들면, 김면, 곽재우, 정인홍 등 세 명의 의병 대장이 담당 구역을 나누어 해당 군현의 군사를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전시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의병 조직의 내부 모습도 의병장 아래 참모장, 선봉장, 복병장, 돌격장, 좌부장, 우부장 등 여러 직책을 두었는데, 현직 관리가 이 직책에 참여하고 있었다. 즉 전라도는 평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란에 대처하였고, 경상우도는 변형된 전시 체제를 갖추어 왜적에 대항하였던 것이다.

성주 전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 따라 3차례 전투가 있었다고 알려져 왔다. 성주 전투를 다룬 책이나 논문에서도 대체로 3차례 성주 전투가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난중잡록』을 살펴보면 성주 전투는 3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성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무려 18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 와중에 수많은 의병들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주성에서 일본군을 몰아내었다. 그런데 성주 전투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에서는 전라도처럼 평시체제의 관군이 아니라 의병들이 중심이 되어 왜적을 퇴치하였다. 즉 경상도는 전라도보다 의병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상도에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붕괴한 면도 있지만, 전라도보다 사족간의 결속력과 사족들의 민에 대한 지배력과 통솔력이 강하였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원고투고일: 2019. 2. 28, 심사수정일 : 2019. 4. 25, 게재확정일 : 2019. 5. 7)

주제어 :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 전라도 방어, 경상우도 방어, 성주 전투, 평시체제, 전시체제, 난중잡록, 의병

〈참고 문헌〉

『朝鮮王朝實錄』『亂中雜錄』『燃藜室記述』『懲毖錄』『壬辰錄』『寄齋史草』『征蠻錄』『龍蛇日記』『孤臺日錄』『壬亂日記』『來庵集』

이형석,『임진전란사』,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최영희,『임진왜란중의 사회동태-의병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원, 1975.
민현구,『조선초기의 군사체제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송정현,『조선사회와 임진의병 연구』, 학연문화사, 1998.
김강식,『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혜안, 2001.
조원래,『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조원래,『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임진왜란사연구회,『임진왜란과 전라좌의병』, 보고사, 2011.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안동시 ·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2.
전북사학회 편,『임진왜란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전라북도 완주군, 2017.
고석규,「내암 정인홍의 의병활동」『남명학연구』2, 1992.
김종수,「16세기 갑사의 소멸과 정병입역의 변화」『국사관논총』32, 1992.
정현재,「경상우도 임진의병의 전적 검토 - 김면 · 정인홍 의병군단을 중심으로」『경남문화연구』17, 1995.
김종수,「Ⅰ-4. 군역제도의 붕괴」『한국사』28, 국사편찬위원회, 1996.
노영구,「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한국문화』31, 2003.
노영구,「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역사와현실』64, 2007.
하태규,「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한일관계사연구』26집, 2007.
이호준,「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군사』77, 2010.
김진수,「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군사』84, 2012.

하태규, 「임진왜란 초 호남지방의 실정과 관군의 동원실태」『지방사와 지방문화』 16권 2호, 2013.
신윤호, 「임진왜란기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역사학연구』 53, 2014.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이광의 활동과 용인전투에 대한 재고」『사총』 89, 2016.
김종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웅치·이치 전투」『전북사학』 51, 2017.

<Abstract>

The Status of Defense at the Initial Period of Imjin-War(壬辰倭亂) and the Seongju (星州) Combat

Kim, Jong-soo

As Chosun was a country founded with the military coup caused by Wihwado(威化島) Retreat as a chance, the kings of the country throughout the history were quite sensitive about the employment of the military. Particularly, Taejong(太宗) regarded military power as the source of authority and abolished the private miliary system but established the public one in order to make the king's monopoly of the military power firmly, and he also abolished the private relations between the general and soldiers. Later, Chosun government divided the military organization into peace and war footings and did not allow the commander of the peace footing to lead the military that he had selected and trained himself during the war and allowed the commander appointed additionally by the center to command the military.

Concerning the defense system at the initial period of Imjin-war, Jeolla-do(全羅道) and Gyeongsangwu-do(慶尙右道) dealt with it quite differently. Jeolla coped with the wartime situations while maintaining the peace footing. Originally, the commander of the peace footing was not allowed to lead the military under his command during the war. In the urgent situation, however, as the government did not send the commander of the war footing, Jeolla's governor, the commander of the peace footing, did command and control the troops and soldiers. In Gyeongsangwu-do, however, as

both peace and war footings collapsed at the early period of Imjinwaeran, sajok(士族) from all different places became the forces leader and collected the scattered soldiers to go out to drive away the Japanese invaders. Yet, that forces organization was similar to that of the war footing.

About the Seongju(星州) Combat, it has been known that it took place three times, but according to『Nanjungjaprok(亂中雜錄)』, those three times were not all. To recover Seongju Seong(星州城), either large or small combats had developed up to 18 times. In the meantime, a lot of righteous armies were sacrificed. The righteous armies' activity was even more noticeable in Gyeongsangwu-do than in Jeolla-do. As one of the reasons for that, we can point out the fact that peace and war footings both collapsed in Gyeongsang and also solidarity among sajok(士族) and their control over the people were stronger there than in Jeolla.

Key words : The Status of Defense at the Initial Period of Imjin-war(壬辰倭亂), The defense system of Jeolla-do(全羅道), The defense system of Gyeongsangwu-do(慶尙右道), The Seongju (星州) Combat, The peace footing, The war footing, Nanjungjaprok(亂中雜錄), Righteous armies(義兵)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163-215
https://doi.org/10.29212/mh.2019..111.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강원도 동해안 지역 평지 포곡식 산성의 축조시기와 성격

홍영호*

1. 머리말
2.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평지 포곡식 산성 조사
가. 속초 동명동 속초리토성(束草里土城)
나. 양양 양양읍성(襄陽邑城)
다. 양양 조산 대포영성(大浦營城)
라. 양양 현북 광정진성(廣丁鎭城)
마. 강릉 연곡 방내리성지(坊內里城址)
바. 강릉 사천 석교리토성(石橋里土城)
사. 강릉 성산 금산리 명주성(溟州城)
아. 강릉 구정 학산리 왕현성(王峴城)
자. 강릉 강동 모전리 장안성(長安城)
차. 동해 망상 심곡리성지(深谷里城址)
카. 삼척 근덕 광태리성(光泰里城)
타.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湖山里城址)
3. 축조시기와 성격 분석
4. 맺음말

* 문학박사, 태백 세연중 역사 교사

1. 머리말

강원도 영동지방은 백두대간의 동쪽에 있고, 동해를 연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 지형적 조건은 영동지방을 중앙으로부터 떨어진 격절성을 가지게 만들었고, 북쪽과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외적을 상대해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영동지방은 고려시대에 東界 지역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영동지방에는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외적을 막고, 지역민들이 입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한 산성과 성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 영동지방의 산성과 성보들 가운데에는 바다를 조망하고 감제하는 데에 유리하고, 방어에도 유리한 곳에 위치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현재 영동지방의 산성과 성보들에 대한 조사연구는 축성시대별, 성격별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연구가 부족하였고, 실증적인 연구가 결여된 채 전해오는 기존의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동해안에는 예국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축조되었다는 산성과 성보들이 있는데, 사실 실증적인 자료로 뒷받침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이들 산성과 성보에 대한 조사연구가 각 시대사(삼한,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나 주제사(관방사, 국방사)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문적 오류를 야기하여 역사적 해석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말하자면 삼국시대의 성이 아닌데, 전승되어 오는 대로 삼국시대의 성으로 분류하여 역사 해석을 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산성의 정확한 축조시기와 성격부터 실증적으로 올바르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동안 영동지방의 산성과 성보들을 시대별, 성격별로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 글의 목적도 특정한 입지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성과 성보

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그동안 혼란했던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분포한 평지 포곡식 산성, 즉 평면 '∩'자형(말굽형) 산성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2.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평지 포곡식 산성 조사

가. 속초 동명동 속초리토성(束草里土城)

속초리토성은 속초시 동명동[1]의 시외버스정류장 맞은편에 위치한다. 토성은 일제 강점기에 철도가 지나가고,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교회·성당과 주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파괴되어 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므로 토성의 평면형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산 능선이 평면말굽형으로 그 내부를 둘러싸며 남쪽은 평지와 연결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속초리토성은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서 처음 보이는데, 도천면 속초리에 있는 성지로 삼백칸이며 흙으로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2] 이후 『한글지명총람』에서 '장골(장안골)'에 옛 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3]

속초리토성은 일부 토성벽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기저부를 정지한 후, 가공정도가 조잡한 세장방형 석재들을 활용하여 1~3단의 석축기단을 쌓고, 기와를 혼입하여 내·외벽을 성토하는 등

---

1) 조선시대 양양도호부에 속하였던 속초리가 해방 이후 속초시로 발전하면서 유적이 있는 지역이 東明洞으로 되었다. 이 글에서는 역사성을 고려하여 속초리토성으로 명명하여 사용한다.

2)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襄陽郡, 1942, 543쪽.
城址, 道川面 束草里, 私有, "束草里部落ノ西方ニ近接セル小丘上ニアリ周圍約三百間土築, 稍完全"

3)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속초시, 1967, 174쪽.
•장골(장안골), 속초리 서북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옛 성이 있었다 함.

고려시대의 축조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4] 특히 '天慶三年'명(1113년) 기와가 출토되었으므로 이 성이 고려 전기에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여기에 '(立)官舍'명 기와가 수습되었고, '長安'이라는 지명도 전해지므로 이 성이 고려 전기에 지역토착세력의 거점이자 중심마을이며, 치소적 성격이자 행정적·군사적 거점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닷가 평지에 입지하였다는 점에서 동여진 해적과 같은 소규모 적을 방어하거나 입보하는 데에도 활용되었을 것이다〈도판 1, 11〉.

그 후 고려 말~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 시기에 水軍浦津을 설치하여 왜구를 방어하고, 沿海 지역을 재건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安集하면서 연해민들을 入保시키는 산성(토성)을 운영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속초리토성은 다시 활용되었을 것이다.[5] 이것은 조선초기의 사료에서 속초포진, 쌍성포진, 산성포진 등이 등장하는데,[6] 이들 포진이 속초리토성이므로 입증이 된다. 즉 사료에 보이는 속초포, 쌍성포, 산성포는 혼용된 명칭이거나 해상방어체제의 변화 속에서 다르게 부른 것일 뿐, 그 실체는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束草浦의 束草/束津이라는 지명이 청초호 北岸 속초리토성 일대에 남아 있고, 속초리토성이 청초호 출입구 앞의 만에 위치하여 바다로 출입할 수 있는 포구를 가진 평지 산성이므로 山城浦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속초리토성은 사료에 나오는 束草浦, 雙成浦, 山城浦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적이다.[7]

---

4) 예맥문화재연구원, 『束草 東明洞遺蹟』, 學術調査報告 第61冊, 2014.
5) 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白山學報』108, 白山學會, 2017, 84쪽.
6)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水軍萬戶守禦處의 束草浦, 『세종실록』권28, 7년 4월 26일 乙丑 기사의 雙城浦, 『세종실록』권15, 4년 1월 25일 癸未 및 권29, 8년 9월 14일 乙巳 기사의 山城浦 참조.
7) 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白山學報』108, 白山學會, 2017, 84쪽.

나아가 이 성이 동해안에서 배의 피항과 정박에 유리한 석호[청초호] 옆에 위치하였으므로 漕運과 海運의 거점 역할도 필요시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8)]

나. 양양 양양읍성(襄陽邑城)

양양읍성은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성내리 일원에 위치한다. 『고려사』에 의하면 목종 10년(1007)에 348간 규모로 축조되었고,[9)] 몽고군이 침입할 때에도 존재하였으며,[10)] 고려 말기에는 許周가 知襄州事가 되어 왜구를 방비하기 위하여 쌓았다.[11)] 조선시대에는 태조 2년에 襄州城 안에서 불이 났다는 기록이 보인다.[12)] 양양읍성의 규모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둘레가 1,088步의 토성으로 나온다.[13)] 이후 문종 대에는 양양읍성을 둘레 2,724尺, 높이 5~10여척으로 쌓도록 상소하는 내용이 나온다.[14)]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양양읍성이 석축 403척, 토축 2,825척으로 구분되며, 지금은 반이 퇴락하였다고 나온다.[15)] 이후의 지리지나 읍지들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대

8) 고려시대에 東界나 北界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바다를 이용하였다는 연구 성과 및 조선시대에 비정기적이나마 필요시 漕運과 海運이 동해안에서 이루어진 사료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白山學報』108, 白山學會, 2017, 76~77쪽.

9) 『高麗史』卷82, 志36 兵2 城堡, "… 又城翼嶺縣三百四十八間門四."
『高麗史節要』卷2, 穆宗 丁未 10年條.

10)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
『高麗史』卷24, 高宗3 癸丑 40年 10月 丙寅日條.

11) 『世宗實錄』卷91, 22年 12月 8日 丁丑, "歲乙丑 出知襄州事 時倭寇充斥 民不安業 皆竄匿山谷以避之 周下車 卽築邑城 備禦有制."

12) 『太祖實錄』卷3, 2年 2月 20日 乙未, "大風 城中多失火 江陵道襄州一家失火 延燒官舍民家殆盡."

13) 『世宗實錄地理誌』卷 第153 江原道 襄陽都護府, "邑土城 周回一千八十八步."

14) 『文宗實錄』卷10, 1年 11月 28日 壬戌, "襄陽邑城 周回二千七百二十四尺 役本府及原州軍人一千四百七十五名 … 高或十餘尺 或七八尺 或五六尺."

15) 『新增東國輿地勝覽』 襄陽都護府 城郭, "邑城 石築周四百三尺高五尺 土

동소이하다.[16] 현재 양주성 또는 양양읍성의 규모는 관공서와 민가, 도로 등으로 파괴되어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통해 양주성(양양읍성)의 길이는 약 1,513m, 면적은 123,524㎡(약 37,366坪)로 추정한 바 있다.[17] 실제 구릉지대의 양상을 볼 때 읍성의 석축부가 확인되는 현산공원부터 양양시내를 감싸는 나지막한 능선이 읍성의 잔재로 추정된다.[18] 다만 양양읍성도 北高南低의 地勢이나, 높은 능선이 말굽형으로 내부를 둘러싸는 지형인지는 알기 어렵다.

양양읍성의 축성방법과 축성시기의 규명은 북문지 주변의 발굴결과가 도움이 된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4차례의 사용 시기로 구분된다. 1차 성벽은 암반을 삭토하고 판축한 뒤 석재를 사용하여 기저부를 조성하였다. 2차 성벽은 잔존하는 1차 성벽 상부에 와적층을 놓고 기저부로 삼았다. 3차 성벽은 2차 성벽 외벽에서 성외측 방향으로 1.3m 떨어진 와적층 상부에 조성되었다. 4차 성벽은 3차 성벽의 상부에 조성하였는데, 1~3차 성벽과는 축조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축조시기는, 1차 성벽은 1007년의 초축성벽으로 판단된다. 2~4차 성벽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축인지, 부분적인 보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성벽 지근거리에 조성된 축대, 건물지 등 민가를 통해 15세기 이후 성이 퇴락하였다는 문헌기록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19]

출토된 기와는 대부분 고려시대 기와이며, 1·2차 성벽과 관련

築周二千八百二十五尺 內有二井 今半頹落."

16) 예를 들어 『東國輿地誌』·『輿地圖書』·『關東誌』·『關東邑誌』·『增補文獻備考』는 규모를 동일하게 서술하고, 다만 동·남·서문이 남아 있다는 구절의 첨가 유무만 차이가 있다.

17) 池賢柄, 「襄州城의 性格과 特徵」『양주성축성 1천주년 기념을 위한 학술토론회』, 양양문화원, 2004, 25쪽.

18) 박경식, 「양양읍성의 정비와 복원의 당위성」『양주성축성 1천주년 기념을 위한 학술토론회』, 양양문화원, 2004, 54쪽.

19) 한백문화재연구원, 『양양읍성-추정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2013, 145쪽.

된 체성부와 외황 와적층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1차 성벽 후 매몰된 와편과 2·3차 성벽 사이의 와적층에서 출토된 기와는 속성의 차이가 없어 시기구분이 어렵다. 간지와 연호가 확인된 기와는 '癸巳'명(1113년) 기와, '丁未'명 기와, '大德三年'명(1229년) 기와이다. 성곽의 초축과 관련하여 1차 외황 바닥에서 수습한 목탄시료 연대측정 결과 890·890·970·1020년의 보정연대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문헌 및 고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차 성벽은 1007년에 축조된 초축성벽일 가능성이 높다. 2차 성벽은 1차 성벽 이후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1385년 허주의 중수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3차 성벽은 일부 구간을 수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차 성벽은 1~3차 성벽과 축조방법 및 평면위치에서 차이가 확인되어 3~4차 성벽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헌기록에는 1451년에 수축기사가 있으나 3,4차 성벽의 축조시기를 비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4차 성벽은 축조방법, 위치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조선시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양읍성은 조선 중기인 16세기에 와서 성의 기능을 점차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성벽에 근접해 조성된 1호 축대와 성벽 북쪽 외곽에서 확인되는 건물지, 주거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20]

특히 양양읍성에서 출토된 '癸巳'명 기와는 '天慶三年癸巳四月日'명 기와로 볼 수 있다.[21] 이 기와는 1007년에 초축된 양주

20) 한백문화재연구원, 『양양읍성-추정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2013, 125~126쪽.

21) 양양읍성 출토 '○年癸巳四月…'명 기와, '○三年癸巳…'명 기와는 陳田寺址에서 출토된 '天慶三年癸巳四月日'명 기와와 글자의 형태와 문장의 양상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 '天慶…'명 기와는 강릉 堀山寺址, 양양 西禪寺址, 속초리토성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양양읍성 출토 '○年癸巳四月…'명 기와 역시 '天慶三年癸巳四月日'명 기와의 일부로 판단된다(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백산학보』 108, 백산학회, 2017, 66쪽). 양양읍성 출토 '○三年癸巳…'명 기와의 '○'자는 '慶'자의 밑 부분이 남아 있다고 추정되므로 합리적인 판단으

성의 관아 건물의 기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양읍성 북문지 발굴조사에서 '立官舍'명 기와를 수습하였기 때문이다〈도판 12〉. 이 '官舍'명 기와는 속초시의 속초리토성에서도 수습된 바 있다.

한편 1차 성벽 이후 와적층을 기저부에 넣고 그 위에 2차 성벽을 쌓은 방식을 1385년 허주의 중수시기와 관련된다는 발굴보고서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다음 절에서 언급될 양양 조산리 대포영성에서도 동쪽 성벽 내부 기저부 부분에 기와들이 열을 이루며 끼워져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 즉 대포영성의 축조시기도 고려말~조선초임을 시사하는데, 이것은 조인벽이 대포영성에 있었다는 설화와 일치하여 의미가 있다. 양양읍성의 발굴에서 나타난 성벽의 면석을 보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品字형태의 바른층쌓기를 한 외벽의 면석이 아니다. 양양읍성은 외벽에 석축이 명확히 보이는 구간도 있어 석축과 토축으로 분류는 가능하나, 그 위에 토루도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토성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다. 양양 조산 대포영성(大浦營城)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대포영은 양양 동쪽 12리에 위치하며, 강릉 안인포에서 조선 성종 21년(1490)에 양양으로 옮겨왔고, 중종 15년(1520)에 석축으로 쌓았는데, 성곽 둘레가 1,469척, 높이 12척이라 하였다.[22] 안인포에서 대포로 만호영을 옮겨 온 것은 안인포가 돌로 막혀 있어 배의 출입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23]

로 생각된다.

2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4 襄陽都護府 關防 "大浦營, 在府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 自江陵安仁浦 移泊于此 水軍萬戶一人 正德庚辰築石 周一千四百六十九尺 高十二尺." 비슷한 내용이 『輿地圖書』上 江原道 襄陽 鎭堡 大浦營條에 실려 있다.

23) 『成宗實錄』卷261, 成宗 23年 正月 己卯.

그 후 『조선지지자료』에는 대포성이 위산면 조산리에 있다고 그 위치가 기록되었고,[24]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대포영성이 土築이며, 일부 구간은 石築으로 나온다.[25] 그런데 『문화유적총람』에서는 城內에서 初期鐵器時代의 土器片이 발견되므로 土城이 이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 시사하였다.[26]

그런데 조선시대 양양도호부에 속하였던 지금의 속초시 대포(항)도 성종대 강릉 안인포에서 옮겨온 대포영이 있었고, 중종대 석축을 쌓았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 혼란스럽다.[27] 일단은 성종대에 설치된 대포영이 양양 조산리이며, 속초 대포와 마산재 대포성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束草浦[28]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보겠다.

양양 대포영지 역시 배후로부터 내려오는 산 능선의 말단부와 가지능선이 평면 '∩'자형이며, 그 능선을 성벽으로 이용하여 북고남저의 토성을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역삼각형으로 남쪽 꼭

24) 『朝鮮地誌資料』(1911~1912년경 편찬) 江原道4 襄陽郡, (城堡名) 大浦城 (諺文) 디포셩 (備考) 位山面 造山里.

25)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542쪽, 襄陽郡 15, 城址, 襄陽面 造山里, 私有, "造山里部落ニ 近接セル西方峰筋ニ在リ周圍約三百間土築一部石築, 不完全."

26)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438쪽, 大浦營址, 襄陽面 造山里.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襄陽關防條에 "在府東十二里 成宗21年 自江陵安仁浦移泊于此 水軍萬戶一人(新增) 正德庚辰築石 城周 1469尺, 高12尺"이라는 記錄이 있어 1490년 安仁津에서 옮겨왔으며 1520년에 石築으로 修築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졌는데, 城內에서 初期鐵器時代의 土器片이 발견되고 있고 土城은 이때부터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

27)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365쪽, 大浦城址, 束草市, "마산재 위에 있는 石城으로 조선 成宗 21년(1490)에 江陵 安仁浦에서 옮긴 大浦營이 있어 水軍萬戶가 주둔했으며, 中宗 15년(1520)에 높이 3.6m, 둘레 440m의 城을 쌓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城의 터만 남아 있다."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171~172쪽에서도 속초 청초호에 수군만호영이 있었고, 안인포에서 옮겨왔다는 대포영 기록이 있다.

28) 『세종실록지리지』(강원도)에 실린 水軍營鎭(水軍萬戶 守禦處)은 越松浦(平海), 束草浦(襄陽), 江浦口(高城), 三陟浦(三陟), 守山浦(蔚珍), 連谷浦(連谷縣)이다.

지점 부분이 출입부로 열려 있다. 내부는 평지와 높이 차이가 크지 않다. 성 내부에 趙仁璧을 배향하는 東溟書院과 민가 2채가 있으며, 경작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남쪽에는 작은 개천이 흘러가며, 성의 주위는 농경지가 펼쳐진다.

성의 남서편에는 추정 문지로, 동쪽 성벽 자른면에 큰 화강암 석재가 3~4단으로 남아 있다. 성벽 외곽 전체 길이는 약 550m이고, 폭은 약 4m이다. 북쪽 능선 성벽에는 오목하게 북문지가 있으며 안쪽에서 보아 좌측면에는 문지의 기초석이 잘 남아 있다.[29]

필자는 이 성도 자연능선을 삭토/성토하여 축조한 평면 말굽형 토성이며, 문지나 일부 구간의 기저부·기단부 내·외면 정도만 '석축' 또는 '석축+기와'를 혼입하였다고 판단한다.[30] 그러므로 석축성으로 보기 곤란하다. 중종 15년(1520)에 양양 대포성을 석축으로 쌓았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사도 기저부·기단부의 내·외면 석축이나 문지의 석축 정도를 쌓았음을 말해준다.

필자는 성 내에서 신라토기편도 채집하였다. 하지만 이들 신라토기편을 근거로 토성의 축조시기를 신라시대까지 올리기는 곤란하다.[31] 왜냐하면, 이 신라토기가 신라시대의 건물지나 생활면, 고분 등과 관련될 수 있고, 이 성의 기저부·기단부 외면에 축조한 '석축+기와' 혼입 구간의 기와도 신라~통일신라시대의

29) 지현병·전유길, 「襄陽郡의 關防遺蹟」『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學術叢書 5冊, 1994, 209~212쪽.

30) 대포영성이 위치한 造山(里)라는 지명도 딴봉(外峰)에서 유래하는데, 딴봉은 대포영 성지 동쪽 끝 봉우리를 말한다(襄陽文化院, 『襄陽의 땅이름』, 1995, 56쪽). 아마 자연능선을 활용하여 (토)성을 만들다가, 필요한 구간에는 인위적으로 쌓았음을 말해준다.

31) 유재춘은 양양 大浦營城에서 초기철기시대의 토기편이 발견되고, 일부 토축의 흔적이 있는 점(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438쪽)을 근거로 이미 城이 있던 곳에 다시 대포영성을 수축한 것으로 생각되며, 대포의 만호영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18세기 중반 이전에 폐지되었다고 한다(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이사부와 동해』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43~44쪽 및 『輿地圖書』 江原道 襄陽都護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지명총람』양양군 조산리(성안-말)의 지명유래를 보면, 고려말 萬戶 趙仁璧(?~1393)이 이곳에 살면서 마을 둘레에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있는데,[32] 실제 조인벽이 江陵道에서 倭寇를 물리친 사료가 있다.[33] 대포성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라. 양양 현북 광정진성(廣丁鎭城)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에 土築으로 쌓은 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34] 양양지역의 읍지 및 지리지에는 "廣汀鎭이 襄陽邑 南四十里 縣北面 上光丁里에 舊墟가 있다. 城址의 南北의 길이가 六十間 東西가 約三百間 山에는 石城을 쌓은 城址가 宛然히 남아 있으며 일찍이 女眞과 倭寇의 侵入을 防禦하던 鎭터이다."라는 기록도 있다.[35]

배후의 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가지능선의 말단부 형태가 평면 '말굽형(∩자형)'으로, 이러한 자연능선을 활용하여 토성을 만들었고 남쪽은 열려 있다. 토성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북쪽 성벽의 바깥은 급경사이고, 상단부에 많은 기와와 약간의 돌

3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229쪽, 양양 조산리: 성안-말【마을】 고려 말에 만호(萬戶) 조인벽(趙仁璧)이 이곳에 살면서 마을 둘레에 성을 쌓았음.
양양읍성 내에 있던 마을도 성내리(城內里)〔성안마을, 성안말〕라고 부르므로 마을을 싸는 의미도 있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227쪽, 양양군 양양면 성내리).

33) 『高麗史節要』卷23, 福王 八年 四月(1382), "江陵道上元帥趙仁璧 副元帥權玄龍 與倭戰 斬三十級."

34)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541쪽, 襄陽郡 5, 城址, 縣北面 上光丁里, 私有, "上光丁里ノ西北約百五十間ノ小丘上ニアリ延長約二百間土築, 不完全."

35) 이 기사는 광무5년(1901)경의 「襄陽邑誌」의 내용으로 다음 책에 수록되어 있다(양양문화원, 『鄕土誌』, 1976, 199쪽). 이후에 편찬되는 향토지들은 이 기록을 전재했다.

을 혼입하여 토루를 쌓았다.[36] 성벽 전체 길이는 280m 정도이며,[37] 성의 북쪽과 남쪽에는 작은 실개천이 흐른다. 성의 내부는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되며, 성의 주위로는 농경지가 펼쳐진다.

광정진성이 사용된 시기는 여진과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던 곳이라는 전승 기록을 근거로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조선 초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기사문리 일대의 포구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38]

마. 강릉 연곡 방내리성지(坊內里城址)

방내리성지는 坊內里土城, 橋虛城이라고도 불리운다. 관련 기록은 『문화유적총람』에 방내리 교허성지로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 世祖 때 鎭管府를 두고 2府 4郡 2縣과 기타 屬縣을 설치할 때 현재의 連谷面이 連谷縣으로 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縣監이 있었던 城으로 추정되며 말굽모양의 山勢를 이용하여 쌓은 길이 1㎞ 정도의 包谷式 土城이다. … 하략 ….」[39]

이 성은 연곡면사무소의 북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성안

---

36) 광정진성의 토축은 일부 구간이며, 대체로 內托式의 石築으로 되어 있고, 다른 성들처럼 토성으로 축조되었다가 석축으로 개축한 것으로 보는 견해(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이사부와 동해』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41쪽), 성곽의 상면을 토석혼축으로 쌓았다는 견해도 있다(지현병·전유길, 「襄陽郡의 關防遺蹟」『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學術叢書5冊, 1994, 212쪽, 廣丁鎭). 필자는 높고 정연한 석축 구간이 없고, 산의 자연 능선을 성벽으로 활용하였으며, 성벽의 외형도 흙이 중심이므로 토성으로 분류한다.

37) 지현병·전유길, 「襄陽郡의 關防遺蹟」『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學術叢書 5冊, 1994, 212쪽.

38) 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이사부와 동해』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41쪽.

39)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453쪽, 명주 연곡면 방내리 교허성지.

길'이라고 쓰여진 도로 표지판 방향의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산 능선을 활용한 토성이다. 북쪽 능선 성벽의 중앙 부분에 문지가 있고, 동쪽 능선 성벽에도 문지가 있다. 山勢를 따라 '北高南底'의 단면을 보이며, 남쪽은 열려 있어 출입부의 기능을 한다. 성의 남쪽 앞에는 연곡천이 흐르고, 그 주위로 넓은 충적대지가 펼쳐진다. 토성의 내부는 평지와 낮은 구릉이며, 문흥사라는 절과 민가들이 있다.

성내에서 신라토기가 채집되었고, 連谷面 일대가 三國時代에 支山縣으로 高句麗 領縣이었다가, 그 후 新羅의 領縣이 되었으므로 縣治와 관련된 城으로 간주하기도 한다.[40] 성의 부근에 삼국시대의 連谷古墳(강원도 문화재자료 제53호)과 고려시대의 坊內里 三層石塔(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6호)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古)縣城으로 축조되었고, 조선시대 前期에도 縣城으로 기능한 후, 중기 이후 縣의 폐지와 함께 퇴락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41] 그 때문에 방내리토성 일대를 縣의 治所, 즉 '古縣城'으로 보기도 한다.[42] 실제 연곡현은 조선시대에 강릉대도호부의 속현이었으므로 방내리성지가 治所였을 가능성이 있다.

성안에서는 기와편과 신라토기편들이 발견되지만, 산성의 내외부에는 신라 고분들이 분포하며, 도굴 때문에 고분유구가 노출된

40) 『三國史記』卷 第35(雜志 第4) 地理2 溟州條; 李俊善, 「江陵地域의 古代山城」『地理學』25, 大韓地理學會, 1982, 18쪽.
유재춘도 방내리토성이 불분명하지만,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한다(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이사부와 동해』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36쪽).

41) 『關東邑誌』에 縣治의 官舍, 倉庫를 보수한 기록이 1600년대부터 180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보이고, 連谷大廳, 連谷館修葺과 같은 官의 통제가 확인되는 기록과 관련시키고 있다(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臨瀛文化』23, 江陵文化院, 1999, 56~58쪽).

42) 성의 명칭은 인근에 교동마을이 있고, '連谷縣館重修記'에도 校虛城이라 하였으므로 校虛城, 또는 古縣의 의미를 가진 坊內城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臨瀛文化』23, 江陵文化院, 1999, 56쪽).

것도 많고 그 주위로 신라토기편들이 흩어져 있으므로 신라토기들이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될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43]

바. 강릉 사천 석교리토성(石橋里土城)

석교리토성(石橋里土城)은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의 서쪽 평지에 인공적으로 쌓은 원형의 토성이다. 이곳을 토성마을이라고 한다. 이 성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처음 보이는데, 土壘이며 고려시대 萬戶僉事廳址로 소개되었다.[44] 『한국지명총람』에는 土城, 『문화유적총람』에는 土壘로 소개되어 있다.[45]

석교리토성은 평면 원형의 평지성이고, 전체 길이는 약 397m 정도이다. 성벽은 단면 사다리꼴로 약간의 기와, 석재를 섞어 흙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높이는 1.5~2m 정도로 낮으며, 매우 잘 남아 있다. 문지는 남쪽과 북쪽 가운데에 있으며, 토성벽에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성내에는 와편이 산재하고, 민가가 여러 가구 있다. 성의 남쪽에는 沙川川이 흐르며, 그 주위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다. 최근 토성 남서쪽 성벽 외측을 발굴조사하여 해자(垓字)의 흔적을 확인하였고, 기와, 자기편 등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어 구전과 일치한다는 점이 밝혀졌다.[46]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과 垓字의 사용연대는 토성의 지표 및 垓字 내부에서 기와편들이 수습되어 麗末鮮初의 것으로 추정된

43) 신호웅·이상수, 「溟州郡의 關防遺蹟·陶窯址」『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5, 1994, 250~251쪽, 橋虛城.

44)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537쪽, 江陵郡 11번 城址, 沙川面石橋里, 私有, "… 土壘ニシテ … 중략 … 高麗時代ノ萬戶僉使廳址ト稱ス."

4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83쪽.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上, 1977, 451쪽.

46) 강원문화재연구소, 『강릉 신복사지 -부록 강릉 석교리 473-7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총서75책, 2007; 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이사부와 동해』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39쪽).

다〈도판 5〉.[47]

이 성은 규모가 작은 土城이므로 고려시대에 축조된 地域土豪 또는 萬戶僉事廳址로 추정하고, 고려시대 지방 세력가의 莊園의 담장으로 판단하기도 한다.[48] 만호첨사청이라는 傳言을 근거로 고려시대 여진이나 왜구 방어와 관련될 토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49]

그런데 이 토성을 辛氏 富者가 쌓았다는 주민의 언급이 있어 소개한다.

- 石橋里 1반의 자연지명으로 노동하리와 경계지역이며, 현재 城內의 475번지에 살고 있는 崔容澈(76세)翁에 의하면 옛날 辛씨성을 가진 이 마을의 큰 부자가 흙으로 성을 쌓았으며, 토축 성벽을 파면 기와편과 잡석이 섞여 나온다고 한다.」[50]

이 성은 평지에 낮은 토루로 축조하였으므로 군사적 방어시설로는 매우 취약하고, 필자가 검토하는 배후산지에서 내려오는 능선의 말단부를 이용한 산성들과는 다르다.[51] 그러나 기와를 섞어 토루를 축조한 점, 출토유물이 고려시대 만호 전설과 일치하는 점, 신씨부자 전설처럼 지역토호가 축조했을 가능성도 시사하는 점에서 평면'∩'자형 산성의 성격이 포착된다.

---

47) 江原文化財硏究所, 『江陵邑城』, 學術叢書 57冊, 2006, 33쪽.
48) 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硏究」『臨瀛文化』23, 江陵文化院, 1999, 石橋里城址, 83~84쪽 및 91쪽.
49) 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이사부와 동해』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40쪽.
50) 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硏究」『臨瀛文化』23, 江陵文化院, 1999, 石橋里城址, 83쪽, 각주 80번.
51) 석교리토성은 나말여초 호족들이 쌓은 지방세력들의 지배거소라는 의미에서 居館的 성격의 居館城과 비교도 가능하다. 나말여초 성지와 호족들의 거관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글을 참조.
성정용·이성준, 「大田 九城洞土城」『百濟硏究』34, 2001, 175~202쪽.
朴淳發, 「湖西地域 平地·野山城에 대하여-築造時點 및 性格을 中心으로-」『湖西考古學』10, 2004, 45~61쪽.

사. 강릉 성산 금산리 명주성(溟州城)

溟州城(명주산성)은 강릉시 성산면 금산2리 산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소곡지를 산 능선이 둘러싼 평지 포곡식 산성(토성)이다. 북쪽의 산 능선과 좌·우 가지능선이 말굽처럼 北高南低의 평면 '∩'자형 山勢이고, 그 능선 상면은 평탄하게 정지되어 성벽의 역할을 하며, 남쪽은 트여져 평지와 이어져 출입구 역할을 한다. 성의 앞(남쪽)은 넓은 들이 펼쳐지고 하천이 흐른다. 산성의 내부는 입구부를 제외하면 구릉지대이다.

산성의 둘레는 1,624m이다. 성내의 시설물로는 문지 5개소, 곡성 4개소, 망대지 4개소, 우물지 1개소, 건물터 등이 확인되었다. 채집 유물로는 '명주성'명 수막새를 비롯하여 통일신라~고려시대의 평기와류 및 토기편, 청자편, 백자편이 수습되었다.[52]

명주성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에서부터 나오지만,[53] 이 명주성이 지금의 금산2리에 있는 이 산성을 말하는지, 아니면 지금의 강릉읍성(강릉대도호부)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곳 명주성에서 '溟州城'명 수막새가 여러 점 수습되었고, 이 일대가 上長安, 下長安으로 불리므로 溟州郡王 金周元이 도읍했던 터로 보기도 한다.[54] 이 성에 대한 최초의 현장 설명은

52) 관동대학교 박물관, 『江陵 溟州山城-地表調査報告書-』, 학술총서 43책, 2009, 53쪽.

53) 『高麗史』卷82, 志36, 兵2, 城堡條(1034), "德宗三年修溟州城."
『高麗史』卷103, 列傳16, 金就礪條(?~1234), "… 金就礪彦陽人 … 追至溟州大關山嶺將卒怯懦退屯旬日乃進賊已踰嶺矣 中軍左軍前軍復追賊至溟州毛老院敗之獲玉帶金銀牌器仗 賊圍溟州四軍追之後軍不及 …." 이 기사의 명주는 '賊圍溟州…'라는 표현으로 보아 명주성의 줄임말로 생각된다.
『고려사』에는 江陵城이라는 명칭도 보인다(『高麗史』卷20, 世家20, 明宗2, 明宗24年 2月條(1194), "… 庚申 左道兵馬使崔仁率銳卒數千擊賊 至江陵城設伏以待賊至執 …").
그다지 주목받지는 않지만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洛山二大聖 觀音正趣, 調信條에도 1258년 몽고의 침입시 溟州城이 등장한다.

54) 江陵古蹟保存會, 『增修臨瀛誌』 1933, 城池條, 溟州城.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토석혼축성이며, 말발굽형으로 명주군왕의 居城, 長安城址라고도 칭한다고 소개되어 있다.[55] 그동안 이 산성은 거의 방치되어 왔었고, 2007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56] 이후 명주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이해의 자료가 제공되었다.[57] 특히 이 지표조사에서 '溟州城'명 수막새 1점을 수습하여 傳言대로 이곳에서 '명주성'명 수막새가 채집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이 '명주성'명 수막새가 거의 대부분 이 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58] 이 산성이 명주성임을 분명히 알려준다. 이러한 문헌 및 고고자료를 근거로 명주성을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산성으로 통일신라 9주의 하나인 溟州의 治所城으로 추정한다.[59]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읍토성(둘레: 784보)이 보이고, 문종 원년 11월에 강릉읍성(둘레: 3720척)을 축조하기 위하여 본부(강릉)와 평창, 영월, 정선군인 1556명이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있다.[60] 이 기사의 성은 지금의 강릉대도호부성이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건축물인 객사문[국보 51호]이 존재하므로[61] 적어

55)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강원도 강릉군 16번, 城址, 城山面 金山里, "江陵ノ西約一里江陵ヨリ原州ニ通セル小丘上ニ在リ土石混築ノ城址ニシテ殆ド崩壞シ僅ニ城壁址略馬蹄形ニ斷續セリ一般ニ溟州郡王ノ居城ニシテ長安城址ト稱セリ."

56) 이상수, 「명주성지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명주성의 보존실태와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7.
김흥술, 「명주성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명주성의 보존실태와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7.

57) 관동대학교 박물관, 『江陵 溟州山城』, 학술총서 43책, 2009.

58) '명주성'명 수막새 총6점 가운데, 1점만 강릉 굴산사지에서 채집되었고, 5점은 명주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거나 확인되었다(관동대학교 박물관, 『江陵 溟州山城』, 학술총서 43책, 2009, 114쪽).

59) 이상수, 「溟州와 朔州의 治所城-位置比定을 中心으로-」『강원의 신라-문화와 역사-』,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 연계 학술심포지움, 2013, 51~67쪽.

60) 『世宗實錄地理誌』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邑土城, 周回七百八十步."
『文宗實錄』 江陵邑城, "周回三千七百二十尺 役本府及平昌寧越旌善軍人一千五百五十六名 …."

61) 다만 후대의 기록이지만 임영관이 고려 태조 19년(936)에 세운 것으로

도 이 시기부터는 읍치가 이곳 일대이고,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금산리 장안성을 통일신라기 명주의 치소성으로 보는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초기 이후,[62] 13세기 이후,[63] 고려말 이후[64]에 지금의 강릉대도호부 일대로 옮겨갔다는 차이가 있다.

강릉대도호부 자리인 강릉읍성은 발굴 결과에 의하면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고려시대에 土城으로 축조되어 있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석축으로 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토성의 初築 시기는 적어도 고려 말 이전에는 축조되었고, 인근의 관아지, 임영관지 발굴조사에서 고려 초기까지 올라가는 관아 건물지가 확인되므로 읍성의 축조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고려 초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제시하였다.[65]

명주성은 구간에 따라 능선(성벽)의 바깥이나 능선(성벽)의 내부에 돌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토축과 석축을 부분별로 혼용하였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 산 능선을 이용하였으므로 토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산성의 현상을 『고려사』의 기록을 고려하면, 석심토축(石心土築)의 토루 성벽을 1차 성벽으로 만들었다가 2차로 성벽의 바깥에 석축 면석을 덧붙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석축 면석이 덕종 3년에 개수하여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성벽 외벽의 돌들이 규격화된 면석들도

되어 있어 이를 따르면 고려 초기부터 강릉대도호부 일대가 치소성으로 볼 수 있으나 후대의 기록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高麗 太祖 19년(936)에 東原京이라 부르고 臨瀛館을 세웠다는 『關東誌』의 기록과 부합한다(『關東誌』 권10, 江陵 上 江陵府邑誌 建置沿革).

62) 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硏究」『임영문화』23, 江陵文化院, 1999, 53쪽.
63) 이상수, 「溟州와 朔州의 治所城」『臨瀛文化』37, 강릉문화원, 2013, 107~108쪽.
64) 유재춘, 『韓國 中世築城史 硏究』, 경인문화사, 2003, 77~79쪽.
65) 江原文化財硏究所, 『江陵邑城』, 學術叢書 57冊, 2006, 86~88쪽.

아니고, 돌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질서정연하게 쌓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의 축조기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성의 현상을 고려하면 필자도 명주성이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 치소성의 기능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고려사』에 나오는 목종 대의 명주[강릉]성보다도 더 앞선 당대의 1차 사료를 주목하고 싶다. 즉, 굴산문 범일의 제자 낭원대사 개청의 탑비문에 '郡城'이 나온다. 이 당대의 비문을 통해 통일신라 말기~고려 초기에 강릉 지역에 溟州郡城이 존재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66] 이렇게 보면 '명주성'명 기와가 금산리 장안성에서만 수습되고, 현재의 강릉대도호부 일대인 임영관지나 읍성지, 관아지 발굴 등에서 한 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금산리 장안성이 통일신라시대 말기와 고려 초기에 적어도 치소성과 같은 기능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溟州城'이라는 명칭에서 邑治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城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려시대 건물인 객사문이 현재의 강릉대도호부 일대에 존재하므로 고려시대 어느 시기에는 이 일대에 치소성이 있었음은 분명하나, 정확히 언제부터 이곳에 자리 잡았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이 일대가 대표적인 강릉김씨 동족마을이라는 점도 주목된다.[67] 이곳 金山里는 강릉의 12鄕賢 중의 한 분인 臨鏡堂 金說의 부친인 김광헌[68]이 세운 마을이라고 전해지며, '갱금[建金]'이라는 지명도 있어[69] 강릉김씨가 이 일대에 대하여 연

66) 「江陵 地藏禪院 朗圓大師 悟眞塔碑文」, "… 大師此時 暫移慈盖 來至郡城 尊州師勤王 讚邑人之奉佛 …."

67) 젠쇼 에이스케는 전국의 대표적인 특색있는 동족부락을 조사 소개하면서 강원도의 경우 각 군별로 1~2개를 소개하였는데 강릉군에서는 금산리의 강릉김씨 동족부락 1곳만을 소개하였다(善生永助, 『朝鮮の聚落』(後篇), 朝鮮總督府, 1935, 949쪽). 이로 보아 강릉에서는 강릉김씨 동족마을로 성산면 금산리(상장안, 하장안 일대)가 가장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68) 현재 강원도유형문화재 제46호인 臨鏡堂 古宅이 명주성의 서쪽 능선 아래 평지에 자리잡고 있다.

고 의식 및 발상지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강릉김씨와 이 성의 관련성도 상정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이 성의 남쪽 출입부 입구 우측에는 1942년에 건립된 溟州郡王古都紀蹟碑가 세워져 있다.

아. 강릉 구정 학산리 왕현성(王峴城)

강릉 왕현성은『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처음 나타나며, 이 성이 학산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둘레 3백간의 土壘로, 長安城으로 부르며 穢國 때 축성하였거나 고려 우왕·창왕 때 축성한 것으로 나온다.[70]『한국지명총람』에서는 왕현성이 '왕고개' 북동쪽에 있다고 구체적인 위치를 언급하였고, '장안성(터, 재)'이라고 하여 이 성이『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왕현성임을 확인시켜 주며, 돌로 100m 쌓은 자리가 남아있다고 서술하였다.[71]『문화유적총람』에서는 왕현성을 '包谷式 石城'이라고 하였다.[72] 지리학자 이준선은「강릉지역의 고대산성」(1982)에서 이 성이 장안성으로 둘레 500m의 土·石混築城이고, 南壁直下에 井址가 分布한다고 우물의 존재를 처음 언급하였으며, 성 내부에 土器 및 瓦片이 散布한다고 하였다.[73] 이후에도 왕현성은『한국의 성곽과 봉수』

---

69)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성산면 85쪽.

70) 朝鮮總督府,『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江陵郡, 26번. 城址 下邱井面 鶴山里 私有, "江陵ノ南約一里鶴山里北西丘上ニ在リ土壘ニシテ周圍約三百間 一般ニ長安城址ト稱シ江陵が穢國ノ都タリシ際ノ築城トモ亦高麗恭讓王ノ時僞王辛隅辛昌ガ 築ケルモノトモ稱セリ."

71)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2-강원도-』, 1967, 명주군, 77~78쪽.
- 장안-성터(長安城-)[장안재]【고적】 왕고개 북동쪽에 있는 성터. 동남쪽 약 100m 돌로 쌓은 자리만 남아 있는데, 고려 말엽 우왕이 이곳에 쫓겨 와 있었다 함.
- 장안-재【고적】 → 장안성터.

72)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文化遺蹟總覽』上, 1977, 溟州郡, 447쪽. 王峴城址.

73) 李俊善,「江陵地域의 古代山城」『地理學』25, 大韓地理學會, 1982, 20~21쪽, 餘贊里의 王峴城.

에서도 소개되었고,[74] 개인적 조사도 이루어졌다.[75]

왕현성은 관동대학교에서 서남쪽으로 가다가 섬석천을 가로지르는 梧桐橋를 지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낮은 고개[왕고개]의 도로 좌측 산에 위치한다. 구정면 보건지소의 뒷산이 곧 왕현성이다. 성의 내부는 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밭, 상단에는 민가들이 있다. 남쪽 평지와 연결되는 입구부의 내부 좌우(동·서 능선 성벽) 양쪽으로 은행나무 2그루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은행나무는 500여 년의 수령을 가지고 있어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또한 산성의 내부 서쪽[서벽쪽:왼쪽] 은행나무의 위쪽에는 '왕현산성지(王峴山城址)' 표지석이 있는데, 그 뒷면에는 고려 우왕 전설과 함께 이 성이 삼국시대 이전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산성의 서쪽능선[서벽쪽]의 내부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시멘트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는 도랑물이 흐르고, 동벽쪽[동쪽 능선] 내부의 밭 사이로도 도랑물이 흐른다. 왕현성의 축조기법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는 '토루(土壘)'라고 표현하였고, 『문화유적총람』에서는 '포곡식 석성'으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준선이 「강릉지역의 고대산성」에서 토·석혼축성으로 서술한 이후 『한국의 성곽과 봉수』·「강릉지역 성곽연구」·『디지털강릉문화대전』도 이를 따르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왕현성은 북고남저의 지형에 입지하였고, 자연적인 산의 능선을 활용하여 성벽과 길을 만들었을 뿐 능선[성벽]의 내·외측에 석축을 쌓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토성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왕현성의 북쪽벽에서 동벽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동벽 일부 구간에는 내부쪽으로 강돌들이 깔려 있지만 토성 벽의 일부 구간의 필요한 지점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토·석혼축성으로 이름을 붙이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평지

74)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상), 1989, 419~420쪽.
75) 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臨瀛文化』23, 江陵文化院, 1999, 78~81쪽.

포곡식 평면말굽형' 유형의 산성들은 산의 능선을 최대한 성벽으로 활용한 토성이면서, 일부 필요한 곳에는 약간의 돌들을 축조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왕현성의 북쪽벽(능선)에서 동벽(능선)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돌들은 강돌이 성의 외벽(외부)이 아니라 내벽(내부)쪽에 극히 일부분만 깔렸다는 점에서 담장이나 계단[출입로] 기능 등을 하였을 수도 있다. 동벽(능선)의 일부 지점의 내부 안쪽에 깔려 있는 돌들도 그 기능과 용도가 불확실하다. 이와 같이 왕현성의 경우 작은 돌들이 일부 한정된 곳에 敷石처럼 깔은 느낌을 주고 있어 축성 시기를 삼국시대까지 올리기가 어렵다.[76] 성 내부에서 수습되는 토기 및 와편에 대해서 관동대 박물관은 성의 토축부와 외부 경사면에서 신라토기편과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편을 약간 수집하였는데, 이는 本城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곳에 매장되어 있던 遺構가 성 축조시에 攪亂된 것으로 보았다.[77] 기와편의 편년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성이 삼한(穢國)시대에 처음 축조되었다고 전해져 오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없고,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올릴 근거도 없다.

결국 왕현성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北高南低의 山勢를 이용하여 북쪽 능선과 서쪽 및 동쪽 능선을 성벽으로 삼아서 산의 능선이 성 내부를 안고 있고, 남쪽은 열려 평지와 연결되므로 평지 포곡식 산성이다. 왕현성의 축조 시기는 현재 특별한 단서는 없지만 이러한 유형의 산성이 많이 만들어진 시기와 우왕 및 창왕 전설을 고려하면 고려말기에 축성되었거나, 그 전에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

76) 신라 초기의 토성인 경주 월성의 토루는 비교적 큰 돌들이 토루 상면에 노출되어 있어 왕현성의 토루 석축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77) 關東大學校 博物館, 『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 5冊, 1994, 244쪽.

자. 강릉 강동 모전리 장안성(長安城)

강릉 모전리 장안성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이 성이 土壘이고, 둘레가 350간으로 그 내부는 밭으로 경작되며, 기와편이 수습되고 穢國시대에 축조된 長安城址로 칭한다고 서술된 점 등이 주목된다.[78] 이후 『文化遺蹟總覽』에서 이 성이 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土石城으로 1㎞ 가량의 둘레를 가지며, 濊國 때 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기술하였다.[79]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는 이 성을 '토루'라고 하였지만, 『문화유적총람』에서는 '토석성'으로 표현한 차이가 있다.

이후 지리학자 이준선은 「강릉지역 고대산성」(1982)을 통해 모전리 장안성을 최초로 학술조사 하였다.[80] 이 조사는 모전리 장안성이 강동국민학교의 북쪽 구릉의 소곡지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처음 밝혔고, 당시까지의 현상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안성은 석축부 위에 얇은 토축이 덮혀 있고, 남벽 중앙부에 문지가 있으며, 동벽은 양단부만 관찰되고 우물터가 부근에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하면서 주위에 토기편과 기와편이 산재하다고 하였다.

그 후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81] 관동대학교 박물관,[82] 강릉대학교 박물관의 조사가 이어졌으나 기존의 조사 내용을 전재하였다. 다만 강릉대 박물관은 『江陵正東津高麗城址地表調査報告書』

78)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江陵郡, 25번, 城址, 資可谷面 茅田里, 私有, "江陵ノ東南約二里茅田里ノ後方自江陵至三陟道路ニ接セル丘上ニ在リ土壘ニツテ周圍約三百五十間內部ハ田トナリ瓦片散在セリ一般ニ穢國時代ノ築造ニ係リ長安城址ト稱セリ."

79)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上, 1977, 449쪽, 溟州郡 長安城址.

80) 李俊善, 「江陵地域의 古代山城」『地理學』25, 大韓地理學會, 1982, 21쪽, 茅田里의 長安城.

81)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상), 1989, 421~423쪽.

82) 關東大學校 博物館, 『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5, 1994, 243쪽 4. 長安城.

(1998)를 간행하면서 모전리 장안성을 토석혼축성이며, 산성의 길이(501m)를 확인한 점이 의미가 있다.[83] 이와 함께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1998)에서는 장안성의 위치가 강동초등학교 뒷산에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위치가 파악된다.[84] 또한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에서는 長安城에 대하여 시대는 '未詳'으로 서술하였다.[85] 한편 이 분포지도에는 장안성의 남쪽 구릉에 청동기시대 유물 산포지와 모전리 신라토기 산포지도 표기되어 있다.[86] 이후 김흥술은 모전리 장안성이 그 명칭으로 보아 城이라기보다는 고대에 지역세력가의 私邸를 보호하는 垣墻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87]

모전리 장안성과 관련된 지명 유래를 찾아보면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보이지 않으나,[88] 『강릉지역 지명유래』에서는 장안성터, 둔지말, 병산이골, 장안재 등이 남아 있다.[89]

필자는 현지 조사 결과 장안성의 위치는 이준선의 조사 내용 및 『문화유적분포지도』에 표기된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즉 필자는 이 장안성도 '∩'자 형태로 형성된 산의 서 · 남 · 북쪽 능선을 따라 능선 상면을 평탄하게 하고 내 · 외부를 삭토/성토하여 성벽으로 만든 '평지 포곡식 평면 말발굽형 산성(토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산성의 동벽은 평지이고, 그 옆으로 강릉과 삼척을 통과하는 7번국도(옛 동해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남벽의 동단

83) 江陵大學校 博物館, 『江陵正東津高麗城址地表調査報告書』, 學術叢書 18책, 1998, 28~29쪽.
84)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1998, 123쪽 邱井(019).
85)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1998, 290쪽, 317번 長安城.
86)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1998, 290쪽, 318번 모전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및 319번 모전리 신라토기 산포지.
87) 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臨瀛文化』23, 江陵文化院, 1999, 81~82쪽.
8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도편)』, 1967, 명주군, 70쪽.
89)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144쪽.

과 북벽의 동단이 7번국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성의 내부는 밭이 있고, 풀이 많아 살피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남벽 쪽에 있다던 문지와 동벽 부근의 우물터 등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성의 내부에는 작은 도랑물이 흐르고, 기와편들이 수습된다. 이들 기와편 가운데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없다. 이 성의 축성기법은 토루, 토석성, 토석혼축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수풀 때문에 관찰하기 어려웠지만, 특별한 석축 구간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산성에서 제한적인 목적으로 석축이 일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산의 능선을 성벽으로 활용한 토성(토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차. 동해 망상 심곡리성지(深谷里城址)

이 城은『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江陵郡 城址에 "망상면 심곡리 國有, 강릉의 동남 약 8리 심곡리 남쪽 山上에 있으며, 土城으로 주위는 약 4百間 성내에 와편이 산재하며, 일반에 古縣城址로 칭하며, 廢縣된 후 寺院이 건립된 일이 있다."고 처음 소개된다.[90] 이후의 자료인『문화유적총람』과『한국지명총람』에도 흥미로운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 낮은 야산의 능선을 따라 둥글게 쌓은 1㎞ 정도의 土, 石混築城으로 長安城 또는 安土城이라 부르는데 鎭將을 두었었다고 전하고 혹은 大津里 봉화대를 지키던 軍兵이 주둔했다 전해지며 瓦片이 散在되어 있고 성의 윤곽만 알 수 있다.」[91]
- 장안-성(長安城)〔長安土城【고적】댓말 서쪽 산에 있는 옛 토성(土城). 둘레 약 1㎞쯤 되는데, 고려 때 병마(兵馬)를 훈련하던 곳이라 함」.

90) 朝鮮總督府,『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540쪽, 江陵郡 39번 城址.
91) 文化財管理局,『文化遺蹟總覽』上, 1977, 446쪽, 高峴城址, 명주군 묵호읍 深谷里 山69.

장안-토성(長安土城)【고적】→장안성」.[92]

산성은 山勢를 따라 '∩'자형의 평면과 '北高南底'의 토성이고, 출입부는 남쪽이다. 성의 내부는 평지와 계단식의 구릉이 이어지는데, 과수원과 밭 등이 있으며 民墓도 있다〈도판 4〉. 성의 남쪽 앞에는 마상천이 흐르고, 그 주위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다. 성에서는 동해고속도로와 영동선 철도, 동해안이 잘 보인다. 성의 둘레는 약 600m이며,[93] 성 안에는 우물자리 1개소가 있고, 토기 및 기와편이 산재하는데, '卍'자형 무늬 기와편이 발견되었다.[94]

남벽의 석축부분 밑에서는 적황색토와 크기가 Cobble 이하인 원력이 혼합된 상태로 관찰되고 그 표면이 회백색이며 견고한 점으로 보아 염분이 포함된 판축부로 보기도 한다.[95] 또한 성벽 내벽의 기저부에 폭 30~40㎝ 정도의 석재를 서북벽 회절부까지 드문드문 이어 축조된 것이 확인되며, 서벽의 추정 서문지 부분은 황갈색과 흙갈색의 사질토를 교대로 盛土한 흔적도 있다.[96]

---

9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80쪽, 명주군, 묵호, 深谷里.

93) 권순진, 「동해 심곡리성지에 대하여」『박물관지』2 · 3합집, 관동대 박물관, 2002, 36쪽 및 42쪽 지도 참조.

94) 李俊善, 「江陵地域의 古代山城」『地理學』25, 大韓地理學會, 1982, 22~23쪽. 이준선은 동해 심곡리성지의 둘레가 위 논문 22쪽에서 약 700m라고 하였다. 이 성에서 '卍' 자무늬 기와는 권순진도 수습 소개하였고(위 논문, 2002, 60쪽 사진 26 참조), 필자도 수습 소개하였다(앞 논문, 2010, 38쪽 사진 4 참조).

95) 方東仁·李昇哲, 「東海市의 關防·窯址·其他」『東海市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 博物館 學術叢書 11冊, 1996, 392~393쪽, 古峴城(長安城) 참조.

96) 權純珍, 「東海 深谷里城址에 대하여」『博物館誌』2·3합집, 關東大 博物館, 2002, 42쪽.
성벽 내외 기저부 일부와 문지 부분에 석재가 이용된 까닭인지 『문화유적총람』 및 김흥술은 土石混築城으로 보는데(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臨瀛文化』23, 江陵文化院, 1999, 87~88쪽, 高峴城址), 필자는 자연능선을 삭토/성토를 하여 성벽으로 활용하였고, 석재의 사용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으므로 토성으로 분류한다.

축성연대에 대해서는 고구려,[97] 고려초기[98]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심곡리성지는 성 내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으며, 기와편은 고려시대 후기에서 조선시대로 편년되고, 토기와 자기류도 질그릇과 백자편들로 조선시대에 속하며, 성벽 축조방법도 통일신라 후기에 나타나는 성벽 기저부에 석열을 1~2단 쌓고 그 위에 조잡하게 성토한 양상을 보이고, 성 내부가 훤히 보여 전투용(방어용)산성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역에 쌓은 戰鬪用 山城이 아니며, 入堡籠城 또는 治所的 性格의 성도 아닌 것으로 본다. 대신, 이 성이 고대 교통로의 연변이면서 驛路의 주변에 위치하므로 고려 후기에 축조되어 조선 중기까지 사용되다가 폐지되었던 驛路 주변의 소규모 倉城이나 牧馬場과 같은 성격으로 추정한 연구가 있다.[99]

필자는 성의 축조에 자연능선을 이용하였고, 기와류가 고려후기~조선시대로 추정되므로 산성의 축성시기를 이 때로 보며, 鎭將을 두었다는 채록 내용으로 보아 萬戶 또는 千戶와 관련된 鎭城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카. 삼척 근덕 광태리성(光泰里城)

삼척 광태리성은 심의승이 1916년에 편찬한 『삼척군지』에서부터 찾아진다.[100] 하지만 그동안 이 광태리성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101] 그러므로 이 기록을 불신하거나 주변의 다른 성

97) 臨瀛誌發刊委員會, 『臨瀛誌』, 1975, 218쪽.
98) 江原日報社, 『太白의 邑面』, 江原文化叢書9, 1975, 158쪽.
99) 權純珍, 「東海 深谷里城址에 대하여」『博物館誌』2·3합집, 關東大 博物館, 2002, 31~62쪽.
100) 沈宜昇, 『三陟郡誌』, 1916, 近德面 起源條, "…今光泰里新坪에城周約七十間의遺址가尙存ᄒᆞ니라 …"
沈宜昇, 『三陟郡誌』, 1916, 近德面 光泰里 舊蹟條, "新坪의舊城址는面誌所述과如히往時盛況이莞然을目擊함과如ᄒᆞ며敏泰佛宇□交柯驛子等의所設이라其廢址年代는 未詳ᄒᆞ다."

을 광태리성으로 불렀다고 보았다. 즉 여러 지리지에는 광태리성을 비롯하여 부남고성,[102] 교가고성,[103] 만향고현성[104]으로 불리는 성들이 교가역 옆에 있다고 기술되었는데, 광태리성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실체도 혼란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광태리성의 위치가 최근에 와서야 정확히 밝혀졌다.[105] 이 위치 비정을 토대로 광태리성이 부남고성, 교가고성, 만향고현성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106]

결국 광태리성은 광태리라는 행정구역 지역 내의 新坪이라는 자연 지명(마을)에 소재한다. 이를 단서로 『한국지명총람』을 찾아보면 '신평(新坪)'이 나오는데, '신평'을 한글의 뜻을 따라 '새-두루'[필자:새로운 들(판)]라고 부르며, 광탯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새두루에 둘레 70칸의 성터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107] 즉 심

101) 한편 최만희는 『진주지』(1963)를 편찬하면서 이 성이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기술하였다. 그 이유는 광태리성의 형태와 축성 방식이 석축성이 아니라, 산의 자연 능선을 성벽으로 이용한 토성인 까닭에 없어졌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동일한 이유로 이 성을 (산)성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102) 김종언, 『陟州誌』下, 1848, 城池, "府南古城古交柯古海利縣云"
『增補文獻備考』卷二十八(1908), 輿地考十六, 關防四, 城郭四, "府南古城在南二十五里交柯驛"
최만희, 『眞珠誌』卷一, 1963, 古蹟條, "府南古城在郡南二十五里交柯驛西新坪今廢."

103) 『輿圖備志』十五(1853~1856), 三陟都護府, 古城, "交柯古城有土築遺址"

104) 『大東地志』卷十六(1861~1866), 三陟, 城池, "滿鄕古縣城交柯驛傍"

105) 정석교, 「삼척지역의 고대산성에 대한 지리적 고찰」『悉直文化』24, 삼척문화원, 2013; 이상수 · 김흥술, 『삼척의 관방유적』, 삼척시립박물관, 2017, 109쪽, 광태리산성 추정 위치 및 지형도에서 재인용).
정석교와 윤은숙은 이미 1984년에 삼척의 산성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정석교 · 윤은숙, 「三陟地域의 古代山城에 관한 硏究」『關東』15, 관동대학 학도호국단, 1984, 250~251쪽). 그들은 이 글에서 광태리성을 府南古城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였는데, 신라시대의 성으로도 추정하였고, 광태리성의 위치를 지도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설명 내용은 현재 찾아진 광태리성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6) 이와 관련한 필자의 논증 과정은 다음 글 참조.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3)-평면 말굽형 城址를 중심으로-」『博物館誌』25,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65~96쪽.

의승의 『삼척군지』 근덕면 기원조에서 둘레 70칸의 성터가 광태리 신평에 있다고 기록된 내용과 『한국지명총람』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다.[108]

광태리성은 위치와 규모, 축조방법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의 자료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조선총독부, 1942)에 소개된 다음 자료가 참고가 된다.

- 城址, 近德面 光泰里 葛夜山城 國有林 三陟ノ東南約三里自同邑至蔚珍道路ノ西方約三町南大川ノ右岸小丘上ニ在リ土城ニシテ周圍約六百間處々破壞セリ一般ニ宰山城址ト稱ス.[109]

현재 찾아진 광태리성은 울진으로 가는 도로 옆에 있고, '토성(土城)'이므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설명과 일치한다. 다만 위의 내용 가운데 '남대천'은 삼척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필자는 광태리성의 출입부 앞쪽(동쪽:평지와 연결되는 열린 구간)에 마읍천이 흐르는데, 우리말에서 '앞'이 '남', '뒤'가 '북'으로 사용되므로 여기의 '남대천'은 성의 '앞(출입부)에 있는 하천'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성의 둘레가 600간이고, '재산성지(宰山城址)'로 부른다는 점도 주목된다〈도판 3〉.

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이 성이 『삼척군지』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수록된 광태리성이며, '평지 포곡식 평면 말굽형 산성'으로 분류한다. 우물도 남쪽 성벽의 끝 부분에 존재하므로[110]

---

10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도)』, 1967, 삼척군, 111쪽.

108) 『한국지명총람』의 광탯골은 『문화유적분포지도-삼척시-』에는 광태리로 표기되어 이 일대의 중심 마을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북쪽에 '새두들'도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광태리성은 '새두들' 내에 위치하지 않았고, 더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하였다(江原文化財硏究所, 『文化遺蹟分布地圖(三陟市)』, 學術叢書 16冊, 2004, 105쪽 및 123쪽 참조). 즉 위 책의 105쪽에 4번 光泰里古城이 표기되어 있으나 그 위치가 틀리다.

109)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三陟郡 16번.

이 성은 거주 공간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광태리 성 내부에는 기와편들이 산재한다. 전근대사회에서 기와가 건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건대 성에 거주하는 인물을 지배층(지역의 재지세력 또는 관리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성이 산이나 고개에 있어 성을 우리말로 '잣, 재'로 읽고, 한자어로는 '현(峴), 성(城)' 등으로 쓰는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는 광태리성을 '재산성지'라고 칭하며, '재'자가 한자로 '宰'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 '宰'자는 벼슬아치, 관리를 의미하므로 광태리성의 성격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의 성들에서 찾아지는 성격과 이 '宰'의 의미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태리성이 위치한 곳은 남벽 능선 성벽 위 무덤의 묘비 내용을 볼 때 '만호곡(萬戶谷)'이다. 이를 통해 광태리성의 성격이 관리, 지배자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도판 6 · 7〉.

타.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湖山里城址)

金正浩의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에는 원덕 호산리 일대의 가곡천[月川]과 바닷가 부근에 '城'이 표기되어 있다. 이 성은 옥원리성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문화유적총람』에도 옥원리성지가 소개되어 있다.[111] 그러므로 호산리성지는 옛 문헌기록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110) 광태리성의 우물에 대해서는 광태리성의 북벽(북쪽 능선)쪽 아래에 있는 호수식당의 안주인으로부터 우물 자리는 남벽(남쪽 능선)쪽의 내부 배수로 5m 위에 위치한다고 확인받았다. 또한 그녀는 이 산을 '재산'으로 부르며, (7번)국도가 놓이기 전에 마읍천이 이 성 앞에까지 들어와 호수처럼 되었고, 이 앞에 배도 머물렀다고 하였다.

111) 『大東地志』卷16, 三陟, 倉庫條, "城倉(在沃原古城)."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469쪽, 삼척군 원덕면 옥원리 808, 조선 태조 2년(1393)에 축조하였고 주위 540m이다.
옥원성은 다음 논문을 참조(柳在春, 「驛에 대한 築城과 기능에 대하여-三陟 沃原驛城을 중심으로-」『江原文化史硏究』3, 江原鄕土文化硏究會, 1998, 28~41쪽).

호산리성지는 총길이(둘레) 약 930m이고,[112] '北西高 南東底' 山勢이다. 서벽 능선에는 오목하게 만들어 기저부만 낮게 석축을 한 문지도 있다. 북쪽에도 오목한 문지가 있으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사도는 완만한 편이다. 동남쪽은 열려 있고 나머지 모든 구간은 자연적인 능선을 성벽으로 삭토/성토하여 활용하였다. 성 내부는 평지와 구릉으로 이어지며, 기와류가 발견되는 평탄면이 있어 건물지도 곳곳에 있었다고 보인다. 출토유물은 어골문, 선조문, 격자문 등이 찍힌 기와 등이다. 성의 남쪽은 가곡천[月川]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며, 동쪽은 동해 바다이다. 성의 서쪽은 7번 국도가 지나가면서 다소 변형되었으나, 성의 전체 형태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도판 2〉. 이 성이 위치한 산을 '재산'으로 부르는데, 단순히 '재(고개)가 있는 산'으로 볼 수 있지만, '재(잣)'가 城을 의미하므로 城을 인식하고 붙여진 지명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三陟郡의 위치 未詳 領縣인 竹嶺縣[113]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삼척시 남쪽인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 옥원역이 죽령현의 옛 터라고 언급[114]한 이후, 허목의 『척주지』[115]를 비롯한 많은 읍지와 지리지가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沃原(驛)城은 규모도 매우 작고, 평지에 가까운 대지에 위치하여 쉽게 노출되며, 倉城, 軍倉, 積倉 등[116]으로 기록되

112) 李相洙 外, 『국도7호선(북면~원덕간)도로확·포장공사 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關東大 博物館 學術叢書 24冊, 2000, 13쪽. 토석혼축성으로 보기도 하나(李相洙 外, 2000), 자연능선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석재는 문지의 기단부 정도만 사용한 점에서 토성으로 간주한다.

113) 『三國史記』卷 第35(雜志 第4) 地理2, 溟州 三陟郡.

114) 『新增東國輿地勝覽』卷44 三陟都護府 古蹟條, 古竹嶺縣.

115) 許穆, 『陟州誌』, 德蕃下條; 『輿地圖書』; 『三陟郡誌』(沈宜昇, 1916) 등.

116) 『世宗實錄』卷153, 地理志 江原道 三陟條, "沃原驛土城周回一百八十步有倉三間無泉井."
『新增東國輿地勝覽』卷44, 江原道 三陟都護府 城郭條, "沃原城在沃原驛傍土築周五百七尺高八尺有軍倉."
『陟州誌』下, 德蕃下條, "… 沃原縣九十里我太祖二年築城周五百二十三

어 있으므로 삼척의 倉城이었고, 그 대신 호산리성지를 竹嶺縣의 治所城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 근거로 호산리성지가 竹峴에 위치하고, 성의 규모가 비교적 크며(둘레 930m), 입지 조건상으로도 군사적·행정적인 복합기능을 한 현의 치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들었다.[117] 나아가 고분, (산)성, 불교유적이 현의 치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분과 산성이 있는 지역인 호산리산성이 죽령현의 치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118] 그러나 호산리성지를 발굴한 결과 신라~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된 바 없고, 기와류도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 걸치며, 도자류도 청자·백자·질그릇편만 수습되었으며,[119] 통일신라기의 뚜렷한 불교유적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죽령현의 치소로 연결시킬만한 자료가 아직 없다.

또한 현재까지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견·조사된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성들인 양양 후포매리 신라산성,[120] 양양 임천석성(삼국

尺有積倉."
『輿地圖書』江原道 三陟 城址條, "沃原城在府南九十里土築周五百七尺高八尺有軍倉."
『輿地圖書』江原道 三陟府 倉庫條, "外沃原倉在府南一百里二十四間."

117) 李相洙 外, 『국도7호선(북면~원덕간)도로확·포장공사 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關東大 博物館 學術叢書 24冊, 2000, 13~14쪽.
李相洙, 「『三國史記』地理誌의 三陟郡 領縣에 대한 位置比定 摸索」『博物館誌』4, 關東大 博物館, 2005, 67~68쪽 및 80쪽.
이와 달리 필자는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태백시 구간 일대를 통일신라시대 竹嶺縣으로 보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洪永鎬, 「三陟市 下長面 宿岩里 山城의 발견과 역사성 검토-『三國史記』地理誌의 三陟郡 竹嶺縣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江原史學』19·20合輯, 江原大學校 史學會, 2004, 1~17쪽).

118) 李相洙, 「『三國史記』地理誌의 三陟郡 領縣에 대한 位置比定 摸索」『博物館誌』4, 關東大 博物館, 2005, 67~68쪽.

119) 江原文化財硏究所, 『三陟 湖山里遺蹟』, 學術叢書 128冊, 2013.
최근에 옥원리 일대에서 상당한 규모의 신라고분군이 발굴되었다(해동문화재연구원, 2012,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사택예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이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때 이 일대가 주요한 지점이었음은 분명하므로 치소성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말~통일신라시대),[121] 강릉 강문동신라토성, 고성 고성리산성(통일신라시대)[122] 등은 모두 산 정상을 둘러싼 테뫼식이다. 반면,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는 바닷가 평지에 입지하였고, 포곡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더구나, 호산리성지는 필자가 이 글에서 살피는 성보들과 동일한 입지 조건과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성보들과 축조시기와 성격을 같이할 것이다.

실제 호산리산성의 내부에서는 고려시대 기와 건물지들이 발굴조사되었고, 경부파상문호편(1·2·3호), 청자편(1·2·3호), '卍'자명 기와(2호와 4호)와 '三陟郡'명 기와(3호)도 출토되었다.[123] 경부파상문호편은 이 성의 상한을 시사하며, 기와를 얹은 건물지나 청자류들로 보아 유력인물이나 유력층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三陟郡'명 기와의 글자는 반대로 찍혀 있고, 삼척의 鎭山인 갈야산성에서 출토된 기와의 글자는 바르게 찍혀 있어 차이가 있지만,[124] 최근에 죽서루(삼척관아유적) 출토 기와의 글자는 반대로 찍혀 있어 동일한데,[125] 이들 기와 모두 소성상태나 색깔이 흡사하다. 호산리산성에서 출토된 卍자무늬 기와도 평면 말굽형 평지

120) 洪永鎬, 「양양 후포매리 신라 산성의 고찰」『先史와 古代』30, 韓國古代學會, 2009.6, 285~317쪽.

121) 이창현·김진형, 『襄陽 石城山城』, 江原文化財硏究所 學術叢書 85冊, 2008.

122) 지현병, 「高城郡의 關防遺蹟」『高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學術叢書 10冊, 1995, 117~120쪽 및 136~137쪽 사진 참조.

123) 江原文化財硏究所, 『三陟 湖山里 遺蹟-삼척 호산리 LNG 산업단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叢書 128冊, 2013, 268~269쪽.

124) 方東仁 외, 「三陟市의 關防遺蹟·窯址·社稷壇」『三陟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9冊, 1995, 429쪽. 이 글에서는 '三陟郡 …'명 기와를 근거로 갈야산성을 통일신라시대에 축성한 것으로 보았다. 갈야산성이 통일신라시대의 성일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三陟郡 …'명 기와의 편년은 그 방증자료라 하기는 곤란한 셈이다.

125)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삼척 죽서루 주변 유적 3차 발굴조사 1차 학술자문회의자료」, 2013.8, 33쪽.
단 죽서루 출토 기와는 '三陟郡丁○○…'명으로 갈야산성 출토 기와의 명문과는 차이가 난다.

포곡식 산성의 축조시기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126]

주요 출토유물의 편년을 보면, 해무리굽이 소멸된 후 등장하는 윤형굽 형태의 청자완을 12~13세기, 1호 건물지 출토 소형의 완을 11세기 후반, 파상문이 시문된 도기호는 간략화되고 있어 10~12세기, 3호 건물지 출토 주름무늬병 저부의 편년은 11세기로 보고 있다. 또한 3호 건물지 출토 '三陟郡' 명문와를 갈야산성 출토 '三陟郡戊子年○'명 기와와 비교하여 고려초인 성종(988)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127] 다른 기와들도 10~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산리성지에서는 신라고분(횡혈식)이 단 1기뿐이고, 기와류는 어골문 기와류가 46.7%를 차지한다.[128] 이렇게 보면,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려다 볼 유물들이 없다고 하겠다. 고고자료로 해석하면 호산리산성은 고려시대가 중심이며, 출토유물의 편년으로 보아 고려초기·전기에 이미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호산리산성은 고려시대의 治所城的이자 官衙的 성격을 가진 그 일대의 행정적·군사적 중심 거점(마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126) 『高麗史』 兵志의 城堡조와 鎭戍조를 보면 목종(997~1009)대 이전에 축성된 성곽은 북계지역의 비율이 단연 많으나 목종대에는 동계지역의 축성비율이 약 50%로 변화한다. 이로 볼 때 목종대인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 해안지역에 대한 방비가 급격히 강화됨을 알 수 있고, 현종대에 동여진 해적이 경주를 침입하면서 경상도 해안지역에도 축성을 하고 있다. 결국 연해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시기에 전국 혹은 최소한 경남 지역의 성곽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축 내지는 수·개축을 시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김갑진, 「나말여초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 연구」『문물연구』24,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3, 59쪽). 즉 강원도 동해안의 성들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卍' 자명 기와, '三陟郡' 명 기와, '天慶' 명 기와 등이 여러 성보에서 출토되는 것 같다.

127) '三陟郡戊子年○' 명 기와의 편년은 다음의 글 참조.
朴東祜, 「羅末麗初期 강원지방 평기와 연구」『先史와 古代』35, 韓國古代學會, 2011, 270~271쪽.

128) 江原文化財硏究所, 『三陟 湖山里 遺蹟-삼척 호산리 LNG 산업단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叢書 128冊, 2013, 268~269쪽 및 283쪽.

3. 축조시기와 성격 분석

앞의 장에서 살펴본 각 산성들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이들 산성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평지 포곡식 산성 현황

연번	지역/명칭	평면 형태/총둘레 자연적평면말굽형(∩) 산성(토성)	주요 유물	사료 및 주요 전설
1	속초 속초리토성	【예문연】 733m 【고적】(土築, 三百間)	•【예문연】'天慶三年' 명(1113년) 기와, '立官舍' 명 어골문기와	•【고적】 城址 •【지명】 장골(장안골)
2	양양 조산 大浦營城	〃 【강릉박1】 550m 【고적】(三百間, 土築, 一部石築)	• 신라토기편 • 와편 •【총람】 초기철기시대 토기편	•【지명】 성안-말, 고려말 萬戶 趙仁璧이 이곳에 살면서 둘레에 성을 쌓음 •【신증】 성종21년(1490) 安仁浦가 이곳으로 옮겨옴
3	양양 양양읍성	【지현병】 1,513m 【고적】 항목 無	•【한백연】'天慶三年' 명(1113년) 기와, '立官舍' 기와, '大德三年' 명(1229년) 기와	• 고려 穆宗 10년(1007) 襄州城 • 조선 태종 13년(1413) 석성(길이 403척), 토성(2,828척) 축성,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는 거의 동일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토성으로 둘레 1,088보
4	양양 현북 廣丁鎭城	【강릉박1】 280m 【고적】(二百間, 土築)	• 와편(어골문 등)	•【항토】 女眞, 倭寇를 방어하던 鎭터
5	강릉 연곡 坊內里城址	【홍영호】미상 【총람】 1㎞ - (포곡식토성) 【고적】 항목 無	• 와편 • 신라토기편 출토 • 신라통일신라고분군 주위 분포	•【총람】 조선시대 현감이 있었던 縣城
6	강릉 사천 石橋里土城	인공 원형 토성 【강문연1】 397m 【고적】(土壘, 三百間)	• 와편(어골문 등)	•【고적】 고려시대 萬戶僉事廳址 •【지명】 토성마을 •【김흥술】 辛氏富者가 흙으로 성을 쌓음
7	강릉 구정 王峴城 (학산)	【강문연】 500m 【고적】(土壘, 三百間)	• 와편	•【고적】 長安城址, 穢國 都邑 때 축성, 고려 공양왕 때 辛隅, 辛昌이 축성

8	강릉 성산 명주(산)성	【관동박】 1,624m 【고적】(土石混築, 馬蹄形)	• '溟州城' 명 수막새	• 【증수】 '명주성' 명 수막새 채집 • 【고적】 溟州郡王의 居城, 長安城
9	강릉 강동 長安城 (모전)	【강릉박2】 501m 【고적】(土壘, 三百五十間)	• 와편	• 【고적】 穢國時代 築造 長安城址
10	동해 망상 深谷里城址	【권순진】 600m 【고적】(土城, 四百間)	•【관동박】 와편(어골문, 근자무늬 등)	• 【고적】 古縣城址 • 【총람】 高峴城址, 鎭將, 長安城(장안토성) 또는 安土城, 大津里 봉화대를 지키던 軍兵 주둔 • 【지명】 고려 때 병마를 훈련하던 곳, 장안성(장안토성)
11	삼척 근덕 光泰里城址	【이 · 홍】 600m 【고적】(土城, 六百間)	• 와편	• 【고적】 宰山城址
12	삼척 원덕 湖山里城址	【이상수】 930m 【고적】 항목 無	• 와편(어골문 등) • 【강문연2】 어골문 · 선조문 · 격자문 기와, '근' 자무늬기와, '三陟郡' 銘 기와, 청자, 신라 횡혈식석실분 1기, 고려시대 건물지 4기 등	·

이 〈표 1〉에 의하면 이 글에서 다룬 12개의 성들 가운데 둘레가 1500m급은 강릉 명주(산)성(1624m)과 양양읍성(1513m)에 불과하고, 1000m급은 강릉 연곡 방내리성지 1개이다. 나머지 9개의 성은 1000m 미만인데, 특히 500~600m가 5개이고,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가 930m, 속초리토성이 733m, 양양 현북 광정진성이 280m, 사천 석교리토성이 397m이다. 그런데 1500m 이상인 두 성은 읍성과 관련되고, 1000m인 강릉 연곡 방내리성지가 현성과 관련이 된다면, 930m인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도 현성의 가능성도 있겠다.

이 성의 축조시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사료를 비롯하여 전승되어 온 문헌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고고자료이다. 사료로는 강릉 명주(산)성이 통일신라말~고려전기, 양양읍성이 고려~조선시대, 속초리토성[속초포

진]은 조선초기에 존재한다. 고고자료로는 속초리토성에서 '天慶'명 기와, 양양읍성에서 '(天慶)癸巳'명 기와와 '大德'명 기와가 출토되어 이들 성이 고려시대에 존재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卍'자무늬(卍+사격자문) 기와가 동해 심곡리성지와 삼척 호산리성지에서 수습되어 주목된다. 이 기와는 동해 어달산 봉수대, 강릉 정동진 고려성지, 강릉 정동진 등명사지, 강릉 옥계 우계산성, 강릉 산성우리 삼한산성, 삼척 갈야산성, 삼척 호산리성지, 정선 임계 새을기(寺乙基) 절터 등 강릉이남~삼척 일대에서 수습되고 있다. 이 기와 편년의 하한은 동해 어달동 봉수대 남쪽 약 1㎞ 지점의 해발 217m 정상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초기의 봉수터 자료가 도움이 된다. 이곳은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백자와 '卍+사격자문 기와'가 수습되었다. 수습된 백자류는 15~16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므로, 봉수터는 그 보다 선행하는 조선시대 초기로 추정한다.[129] 이 기와의 하한을 시사하는 것이다. 상한은 이 기와가 발견된 유적들의 중심시대가 고려시대이므로 이 시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130] 실제 '卍자무늬'기와가 출토된 삼척 호산리성지 내부에서 고려시대 유구와 유물만 조사되는데, 유구는 규모로 보아 관아지로 추정하면서 '三陟郡'명 기와를 근거로 10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자기 등을 통해서 11세기 후반~13세기까지 유적이 존속되었다고 추정하였다.[131] 결국 '卍+사격자문 기와'의 상한은 고려시대까지 올라가며, 어달동 추정 봉수대로 보아 조선 초기·전기까지를 하한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성의 축조시기와 중심시기도 고려시대~조선 초기·전기에 걸칠 것이다〈도판 8 · 9 · 10 · 13 · 14〉.

---

129) 江陵大 博物館, 『東海 於達山 烽燧臺』, 學術叢書 33冊, 2001, 33·57·63쪽.
130) '卍+사격자문' 기와의 상한을 논증하는 과정은 필자의 다음 글 참조.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1)」『博物館誌』17,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0, 28~30쪽.
131) 江原文化財硏究所, 『三陟 湖山里遺蹟』, 學術叢書 128冊, 2013, 305쪽.

전승되어 오는 문헌자료도 고고자료의 분석과 일치하여 주목된다. 즉 양양 대포영성은 고려말 조인벽 설화, 양양 광정진성은 여진과 왜구를 방어하던 진터, 사천 석교리토성은 고려시대 만호첨사청지, 강릉 왕현성은 우왕과 창왕 설화 등이 전해지므로 이들 성이 고려와 조선초기에 존재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삼척 근덕 광태리성지도 '만호곡' 지명의 '만호'라는 명칭에서 이들 성과 동일한 시기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문헌 및 전승자료와 고고자료가 서로 일치하므로 이들 성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해석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표 2〉.

반면 예국시대나 삼국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전승되어 오는 일부 성들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고고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양양 대포영성이나 연곡 방내리성에서 철기시대 토기편 또는 신라토기편이 수습되었거나 주위에 신라고분이 있어도 이들 유물과 유적들이 성의 축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사 당시에 고고자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축조시기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더구나 이들 성에서 발견되는 기와류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의 기와가 거의 없다.

이들 성의 성격은 속초 속초리토성, 강릉 명주성, 강릉 왕현성, 강릉 장안성, 동해 심곡리성지가 首都를 의미하는 '長安城'이므로 그 지역의 행정적 거점성(거점마을)을 의미하고,[132] 양양

132) 이준선은 평지의 야산에 만든 이들 산성을 신라하대에 지방호족(지방토착세력)들이 자신의 세력기반을 과시·지칭하고 自衛를 위한 방어시설이며, 고산지대에 있는 성들은 후삼국시대에 평지 야산성 축조 집단과 대립하는 집단이 만들었다고 본다(李俊善, 「江陵地域의 古代山城」『地理學』25, 大韓地理學會, 1982, 24~26쪽). 그러나 필자는 이들 산성의 대부분이 고려~조선 전기에 해당하고, 평지야산성과 고산지대에 있는 성이 서로 대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표 2〉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평지 포곡식 산성의 축조 및 운영 시기 현황[필자안]
(음영: 축조 및 운영의 중심 시기, –: 상한 및 하한 추정 시기)

구분	삼한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속초 속초리토성 (장안성)														■		■	■			
양양 대포영성																	■			
양양 읍성													■	■		■	■	–		
양양 현북 광정진성														■		■	■			
강릉 연곡 방내리토성									–	–	–	–	–	–	–	–	■			
강릉 사천 석교리토성																■	■			
강릉 성산 명주산성 (장안성)									–	–	–	■	■	–						
강릉 구정 왕현성 (장안성)																■	■			
강릉 강동 장안성 (장안성)																■	■			
동해 망상 심곡리성지 (장안성)													–	–	–	■	■			
삼척 근덕 광태리성지																■	■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													■	–						

대포영성, 양양 광정진성, 사천 석교리토성, 동해 심곡리성지, 삼척 광태리성지는 '萬戶' 및 '鎭將(진터, 군병 주둔, 봉화대 관리 등)'과 관련되므로 군사적 거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행정적 지배자가 군사적 지휘관을 겸하거나, 군사적 지휘관이 행정적 지배자를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 성의

성격은 그 지역의 행정적 지배거점이나 군사적 거점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거점에는 중앙에서 행정 관리나 군사 지휘관을 파견할 수도 있지만, 지방토착세력이 그 지위와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다. 특히 읍성이나 현성의 규모가 아닌 작은 성들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리토성과 양양읍성에서 '官舍'명 기와가 출토되었고, 명주성도 '溟州城'명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연곡 방내리토성은 조선시대 현성으로 전해지고, 동해 망상 심곡리성지는 古縣城址로 전해지는 것이며, 일부의 성은 수도의 의미인 '長安城'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고려말기에 萬戶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이고, 千戶는 지방의 토착세력이 맡는 직임으로 구분되며,[133] 萬戶도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만호와 재지토호로 임명되는 만호가 있다고 한다.[134] 그렇다면, 이 글에서 다루는 성들은 토착세력인 만호 및 천호 중심의 큰 마을, 또는 신씨부자 전설처럼 그 지역의 토착세력이 자신의 거처와 집단을 과시·방어하는 목적으로 행정 및 군사적인 거점[135] 기능으로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136]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산성이 등장하고 운영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이들 성의 축조시기를 정리해보면 강릉 명주산성은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초기 · 전기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삼척 호산리성지는 고려초기~전기에 축조되어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속초 속초리토성과 양양읍성

133) 張學根, 「朝鮮前期水軍萬戶考」『海士論文集』26, 1987, 9~38쪽.
134) 吳宗祿, 「朝鮮初期의 邊鎭防衛와 兵馬僉使·萬戶」『歷史學報』123, 1989, 102쪽.
135) 박순발은 신라말 고려초에 호족세력이 지방에 자신들의 거점으로 축조한 성을 居館的 성격의 城으로 표현하고, 후에 지방행정의 치소와 일치하는 예도 있으므로 邑城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朴淳發, 「湖西地域平地·野山城에 대하여-築造時點 및 性格을 中心으로-」『湖西考古學』10, 2004, 45~61쪽).
136)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1) -평면 말굽형 城址를 중심으로- 」『博物館誌』17,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0, 31쪽.

에서는 '天慶三年'명(1113년) 기와가 출토되므로 고려 전기에 운영되었을 것이다. 나머지 성들은 고려말기~조선초기에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137] 이러한 양상은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즉 고려말에는 偰長壽가 왜구를 막기 위하여 해변 마을에 城堡를 축조하고 200~300戶를 한도로 官守를 설치하여 주민을 수용하자는 상소를 올리고 있다.[138] 이것은 고려말~조선초 왜구를 막기 위하여 水軍을 강화하면서 각 지역에 築城(修築·新築)을 추진하는 데에서 추정이 가능하다.[139] 조선시대에는 柳廷顯이 對馬島 정벌 직후 海邊의 각 리에 30~40戶 단위로 屯을 만들고 屯城을 쌓아 주민을 入堡시킬 것을 제의하였고,[140] 세종 16년(1434)에는 兵船이 정박하는 곳 외에는 각도 연변지역에 30리를 넘지 않게 柵堡를 설치하고 적이 상륙하면 각 柵이 서로 구원하도록 하였다.[141] 세종 24년(1442)에는 연변지역에도 屯城·民堡 형태의 성을 축조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42] 이로 보아 이 글에서 다루는 성들의 일부는 고려말기~조선 초기·전기에 수군포진을 설치하여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고 연해지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백성을 안집하면서 沿海民을 入保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성들은 출입부가 평지와 연결되므로 쉽게 내부를 볼 수 있고, 방어 전면인 산성(토성)의 성벽 경사도 심하지 않은 까닭에

137) 몽고의 침입을 받은 고려는 山城海島入保政策을 실시하였고, 공민왕대에는 홍건적과 倭寇의 침입을 淸野策으로 막으면서 沿邊(沿海)지역을 포기하고 내륙의 산성으로 피난 입보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산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기보다는 단속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다.

138) 『高麗史』卷112 列傳 偰遜 附 長壽.

139) 車勇杰,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鎭戍와 築城」『史學硏究』38, 韓國史學會, 1984, 129~157쪽.
구산우, 「고려말 성곽 축조와 향촌사회의 동향」『역사와 경계』75, 부산경남사학회, 2010, 233~273쪽.

140) 『世宗實錄』卷4, 世宗 元年 7月 辛未.

141) 『世宗實錄』卷64, 世宗 16年 6月 甲子.

142) 『世宗實錄』卷97 世宗 24년 8월 辛卯.

대규모 적을 방어하기에는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들 성이 고려전기 동여진의 침입과 고려말기 왜구의 침입 등과 같은 소규모 적을 방어하기 위한 입보용·둔전용 성이자,[143] 행정적 거점으로서의 성채마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들 성은 동해안에서 배의 피항과 정박을 고려하여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漕運과 海運의 거점 역할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144] 왜냐하면 삼척 호산리성지와 속초리토성은 각각 바닷가와 석호에 바로 붙어 입지하였고, 다른 성들은 바다에서 하천을 통해 들어가는 하천변에 연한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표 1〉에 나온 성들의 입지가 동일하며, 고고자료 및 사료와 전승자료로 보건대 이들 성의 대부분은 고려시대에 중앙관(외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 같은 경우 토착세력이 지역의 행정관리이자 지역방위를 주도하므로[145] 그들의 거점이자 행정적 치

143)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는 바닷가 평지에 城堡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高麗史』卷82, 志36, 兵二 城堡, "문종 즉위년(1046)에 兵部郎中 金瓊을 보내어 東海로부터 南海에 이르기까지 沿邊에 城堡와 農場을 만들어 해적의 要衝을 막았다."
『高麗史』卷9, 世家9, 문종 32년(1078) 9월 甲午, "都兵馬使가 奏하기를 "八助音部曲城은 바닷가 平地에 있으므로 자주 東路海賊의 來侵을 입어 백성들이 安居할 수 없사오니 請컨대, 그 城을 옮기게 하소서"라 하매 이를 聽從하였다."

144) 고려시대에 準南道지역이나 南道지역에서 兩界로의 군량 수송은 陸路보다는 海路를 통해 이루어졌다. 원거리 海運을 통해 수송된 軍糧은 주요 浦口에서 하역된 뒤, 다시 陸路를 통해 목적지로 옮겨졌다(한정훈, 「고려 전기 兩界의 교통로와 운송권역」『韓國史硏究』141, 2008, 151쪽).

145) 최종석, 「고려 전기 지역방어체계의 특징」『史林』40, 首善史學會, 2011, 137~171쪽.
최종석, 「고려말기 지역방어체제와 그 시대성」『역사와 현실』85, 한국역사연구회, 2012, 305~348쪽.
최종석, 「고려시대 지역방어체제의 변화 양상과 그 성격」『韓國思想과 文化』64,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2, 167~199쪽.

소(성)의 역할을 하며, 군사적 방어 거점 기능도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부는 양양읍성처럼 중앙관(외관)이 파견된 치소성도 있었을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분포한 자연적인 山勢를 이용한 평지 포곡식 평면말굽형(평면 '∩'자형) 산성을 살펴보았다. 이들 산성은 평지에 입지하고 산능선을 자연적인 성벽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강력한 적을 방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들 산성의 축조시기와 그 성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기존에는 이러한 형태와 입지를 가진 산성들에 대하여 지표조사 때에 수습한 극히 단편적인 유물을 근거로 예국시대(철기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성 등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당시 발굴된 산성이 아직 없었던 까닭에 고고자료가 부족하였지만, 이러한 산성들에 대하여 수습유물, 지명유래, 전설, 사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대부분이 고려시대(전기)와 고려말기~조선초기의 산성이며, 중앙관 또는 지방토착세력가의 행정적·군사적 거점(마을)이자 소규모 적의 침입시 입보를 겸하는 성격의 산성임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동일한 형태와 입지를 가진 산성인 삼척의 호산리산성과 양양의 양양읍성 및 속초리토성을 발굴하였는데 세 성 모두 통일신라기의 유물은 사실상 출토되지 않았고, 고려시대의 유물만 출토되어 필자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나아가 이들 성이 바닷가에 입지하고, 하천으로 성까지 연결되고 있어 고려시대 東界의 海運을 위한 항구의 역할을 했을 가

능성이 있다.

결국 이들 성에 대한 사료 및 전승 자료와 고고자료가 서로 일치하므로 축조시기와 성격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의 행정적·군사적 지배거점(마을)으로 규모에 따라 중앙관이 파견된 치소성이거나 그 휘하의 지방토착세력의 거점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9. 4. 3, 심사수정일 : 2019. 4. 25, 게재확정일 : 2019. 5. 7)

주제어 : 평지포곡식산성, 동계, 관사, 장안(성), 만호, 진장, 치소성, 지방토착세력의 행정적 군사적 거점, 조운과 해운의 거점

〈도판1〉 속초리토성의 위치(1918,1:50,000) (출전: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속초 동명동유적』)

〈도판2〉 삼척 호산리산성 평면형태(출전: 강원문화재연구소, 2013,『삼척 호산리 유적』)

〈도판3〉 삼척 광태리성지 원경(서→동)

〈도판4〉 동해 심곡리성지 근경(남→북)

〈도판5〉 강릉 사천 석교리토성 항공사진(출전: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신복사지』)

〈도판6〉 삼척 광태리성지 남벽(능선) 묘와 묘비

〈도판7〉 삼척 광태리성지 남벽(능선) 묘비(음기)“광태동만호곡몰(…光太洞万戶谷歿…)” 문구

〈도판8〉 삼척 호산리산성 내 2호 건물지 출토 卍자무늬 기와(출전: 강원문화재연구소, 2013, 『삼척 호산리유적』, 139쪽).

〈도판9〉 동해 심곡리성지(傳 長安城 또는 安土城) 수습 어골문기와 및 卍자무늬 기와

〈도판10〉 동해 어달산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출토 '卍'자 무늬 기와(출전: 강릉대 박물관, 2001, 『동해 어달산봉수대』, 57쪽).

〈도판11〉 속초리토성 '立官舍'명 기와-양양읍성 출토 '立官舍'명 기와를 근거로 필자가 '立'으로 판독함(출전: 속초 다우니네-束草愛人:blog.daum.net).

〈도판12〉 양양읍성 출토 '立官舍○ 造官舍'명 기와(출전: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양양읍성』, 35쪽 및 158쪽).

〈도판13〉 강릉 정동진 등명사지 출토 卍자무늬 기와 및 귀목무늬 기와(출전: 관동대 박물관, 1994,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73쪽).

〈도판14〉 삼척시 갈야산성 수습 '卍'자 무늬 기와1·2(출전: 관동대 박물관, 1995, 『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적』, 451쪽).

〈참고 문헌〉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成宗實錄』, 『文宗實錄』,
『世宗實錄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東國輿地誌』, 『關東誌』, 『關東邑誌』, 『增補文獻備考』, 『輿圖備志』, 『大東地志』, 「江陵 地藏禪院 朗圓大師 悟眞塔碑文」

[읍지 및 지리지]

『陟州誌』(許穆), 『三陟郡誌』(沈宜昇, 1916), 『眞珠誌』(최만희, 1963), 『陟州誌』(김종언, 1848)

[단행본]

江陵古蹟保存會, 『增修臨瀛誌』, 1933
江原日報社, 『太白의 邑面』, 江原文化叢書9, 1975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善生永助, 『朝鮮の聚落』(後篇), 朝鮮總督府, 1935
양양문화원, 『鄕土誌』, 1976
襄陽文化院, 『襄陽의 땅이름』, 1995
이상수 · 김흥술, 『삼척의 관방유적』, 삼척시립박물관, 2017
臨瀛誌發刊委員會, 『臨瀛誌』, 1975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1911~1912년경 편찬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198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논문]

구산우, 「고려말 성곽 축조와 향촌사회의 동향」『역사와 경계』75, 부산경남사학회, 2010

; http://uci.or.kr/G901:A-0002789905
권순진,「동해 심곡리성지에 대하여」『박물관지』2 · 3합집, 관동대 박물관, 2002
; http://uci.or.kr/G901:A-0001947956
김갑진,「나말여초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 연구」『문물연구』24,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3
金興術,「江陵地域 城郭研究」『臨瀛文化』23, 江陵文化院, 1999
; http://uci.or.kr/G901:A-0001462540
김흥술,「강릉지역의 성곽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http://uci.or.kr/G901:A-0004891672
김흥술,「명주성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명주성의 보존실태와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7
박경식,「양양읍성의 정비와 복원의 당위성」『양주성축성 1천주년 기념을 위한 학술토론회』, 양양문화원, 2004
朴東祜,「羅末麗初期 강원지방 평기와 연구」『先史와 古代』35, 韓國古代學會, 2011
; http://uci.or.kr/G901:A-0003013400
朴淳發,「湖西地域 平地·野山城에 대하여-築造時點 및 性格을 中心으로-」『湖西考古學』10, 2004.
; http://uci.or.kr/G901:A-0002023521
方東仁 외,「三陟市의 關防遺蹟·窯址·社稷壇」『三陟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9冊, 1995
; http://uci.or.kr/G901:A-0008467781
方東仁·李昇哲,「東海市의 關防·窯址·其他」『東海市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 博物館 學術叢書 11冊, 1996
성정용·이성준,「大田 九城洞土城」『百濟研究』34, 2001
; http://uci.or.kr/G901:A-0001667415
신호웅·이상수,「溟州郡의 關防遺蹟·陶窯址」『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5, 1994
吳宗祿,「朝鮮初期의 邊鎭防衛와 兵馬僉使·萬戶」『歷史學報』123, 1989
; http://uci.or.kr/G901:A-0000775059
柳在春,「驛에 대한 築城과 기능에 대하여-三陟 沃原驛城을 중심으로-」

『江原文化史硏究』3, 江原鄕土文化硏究會, 1998
; http://uci.or.kr/G901:A-0002019166
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이사부와 동해』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 http://uci.or.kr/G901:A-0002802417
유재춘, 『韓國 中世築城史 硏究』, 경인문화사, 2003
; http://uci.or.kr/G901:A-0006065830
李相洙, 「『三國史記』地理誌의 三陟郡 領縣에 대한 位置比定 摸索」『博物館誌』4, 關東大 博物館, 2005
; http://uci.or.kr/G901:A-0002841094
이상수, 「명주성지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명주성의 보존실태와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7
이상수, 「溟州와 朔州의 治所城-位置比定을 中心으로-」『강원의 신라-문화와 역사-』,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 연계 학술심포지움, 2013
이상수, 「溟州와 朔州의 治所城」『臨瀛文化』37, 강릉문화원, 2013
; http://uci.or.kr/G901:A-0003511810
李俊善, 「江陵地域의 古代山城」『地理學』25, 大韓地理學會, 1982
張學根, 「朝鮮前期水軍萬戶考」『海士論文集』26, 1987
; http://uci.or.kr/G901:A-0000673617
정석교 · 윤은숙, 「三陟地域의 古代山城에 관한 硏究」『關東』15, 관동대학학도호국단, 1984
정석교, 「삼척지역의 고대산성에 대한 지리적 고찰」『悉直文化』24, 삼척문화원, 2013
지현병·전유길, 「襄陽郡의 關防遺蹟」『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學術叢書 5冊, 1994
지현병, 「高城郡의 關防遺蹟」『高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學術叢書 10冊, 1995,
; http://uci.or.kr/G901:A-0008486781
池賢柄, 「襄州城의 性格과 特徵」『양주성축성 1천주년 기념을 위한 학술토론회』, 양양문화원, 2004
車勇杰,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鎭戍와 築城」『史學硏究』38, 韓國史學會, 1984

; http://uci.or.kr/G901:A-0002924777
최종석, 「고려 전기 지역방어체계의 특징」『史林』40, 首善史學會, 2011
; http://uci.or.kr/G901:A-0002993556
최종석, 「고려말기 지역방어체제와 그 시대성」『역사와 현실』85, 한국역사연구회, 2012
; http://uci.or.kr/G901:A-0003115948
최종석, 「고려시대 지역방어체제의 변화 양상과 그 성격」『韓國思想과文化』64,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2
; http://uci.or.kr/G901:A-0003478247
한정훈, 「고려 전기 兩界의 교통로와 운송권역」『韓國史硏究』141, 2008
; http://uci.or.kr/G901:A-0002503757
홍영호, 「오화리산성의 고고학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寥田山城 學術세미나』, 三陟文化院, 2002
홍영호, 「三陟市 下長面 宿岩里 山城의 발견과 역사성 검토-『三國史記』地理誌의 三陟郡 竹嶺縣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江原史學』19·20合輯, 江原大學校 史學會, 2004
; http://uci.or.kr/G901:A-0001942823
홍영호, 「양양 후포매리 신라 산성의 고찰」『先史와 古代』30, 韓國古代學會, 2009
; http://uci.or.kr/G901:A-0002657813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1)-평면 말굽형 城址를 중심으로-」『博物館誌』17號,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0
; http://uci.or.kr/G901:A-0002929111
홍영호, 「신라의 동해안 연안항해와 하슬라-강릉 경포호 강문동 신라토성을 중심으로-」『白山學報』95, 白山學會, 2013
; http://uci.or.kr/G901:A-0003511813
홍영호,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戍 조사 연구-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軍史』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http://uci.or.kr/G901:A-0004011537
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白山學報』108, 白山學會, 2017
; G901:A-0008911508

홍영호,「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3)-평면 말굽형 城址를 중심으로-」『博物館誌』25號,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8

[보고서 및 지도위원회의자료]

江陵大學校 博物館,『江陵正東津高麗城址地表調査報告書』, 學術叢書 18冊, 1998

江陵大學校 博物館,『東海 於達山 烽燧臺』, 學術叢書 33冊, 2001

강원고고문화연구원,「삼척 죽서루 주변 유적 3차 발굴조사 1차 학술자문회의자료」, 2013.8

江原文化財硏究所,『文化遺蹟分布地圖(三陟市)』, 學術叢書 16冊, 2004 ; http://uci.or.kr/G901:A-0006098001

江原文化財硏究所,『江陵 神福寺址 -부록 강릉 석교리 473-7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叢書 75冊, 2007 ; http://uci.or.kr/G901:A-0006180964

江原文化財硏究所,『江陵邑城』, 學術叢書 57冊, 2006 ; http://uci.or.kr/G901:A-0006150057

江原文化財硏究所,『襄陽 石城山城』, 學術叢書 85冊, 2008 ; http://uci.or.kr/G901:A-0006244775

江原文化財硏究所,『三陟 湖山里遺蹟』, 學術叢書 128冊, 2013 ; http://uci.or.kr/G901:A-0006487569

關東大學校 博物館,『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5, 1994

關東大學校 博物館,『三陟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 9冊, 1995 ; http://uci.or.kr/G901:A-0008467781

관동대학교 박물관,『江陵 溟州山城-地表調査報告書-』, 학술총서 43책, 2009 ; http://uci.or.kr/G901:A-0006353919

예맥문화재연구원,『東草 東明洞遺蹟』, 學術調査報告 第61冊, 2014 ; http://uci.or.kr/G901:A-0006531347

李相洙 外,『국도7호선(북면~원덕간)도로확·포장공사 예정지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關東大 博物館 學術叢書 24冊, 2000

한백문화재연구원,『양양읍성-추정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2013 ; http://uci.or.kr/G901:A-0006483322

<Abstract>

The time of construction and nature of the valley encircling fortresses, called as 'Pogoksic' one, on the flatland sites in the East Coast of Gangwon-do

Hong Young-ho

In the East Coast of Gangwon-do, there are valley encircling fortresses on the flatland sites that taken advantage of the natural mountain ridges as ramparts. Mostly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mountains (north high and south low), and the east, southeast and south of the mountain fortresses lead to flatland, they had served as the entrance. And there used to be a river flowing in front and a farmland.

Based on the folk materials regarding these mountain fortress, which have been handed down to us, many believe that they were constructed in the age of Yeguk (the Iron Age), the age of Three Kingdoms and the Unified Shilla period. But the researcher classified these types of mountain fortresses, and analyzed archeological materials and folk materials,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mountain fortress cannot date back to the age of Yeguk (the Iron Age) and the age of Three Kingdoms.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only very few of these mountain fortresses were utilized in the Unified Shilla period, and most mountain fortresses were constructed and utilizeed during the Goryo Dynasty, and many of them were built and used at the end of the Goryo Dynasty an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period. In this respect, caution must be exercised when these fortresses are used as base data for historical

interpretation.

The nature of these fortresses varies depending on their sizes, but as the mountain fortresses have a wells, people could live and seek protection in them, and as there are roof tiles, these mountain fortress may be related to the ruling class. In some mountain fortress, roof tiles bearing the name of the 'official residence' were excavated, and as the origins of names of places like 'Jangan (seong),' 'Manho' and 'Jinjang' have been handed down to us, they may be related to Chiso-seong (eup-seong and hyeon-seong), but most of them were controlled by them, or they can be seen as the administrative and military strongholds (villages) of local indigenous forces in charge of managing these fortresses.

Furthermore, as some fortresses are located on the seashore, they are seen to have plated the role of non-regular marine transportation and ocean transportation bases on the East Coast, and the reason that these fortresses have a river flowing nearby may be related to transportation of goods.

Key words : Valley encircling fortress on the flatland site, eastern border region, official residence, Jangan (fortress), Manho, Jinjang, Chiso-seong, administrative and military stronghold (base village, fortress for residence) the local indigenous forces, marine transportation and ocean transportation bas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217-258
https://doi.org/10.29212/mh.2019..111.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인도의 국방개혁: 전문성과 합동성 추구의 역사

손 한 별*

1. 서 론
2. 이론적 고찰
   가. 기존 논의의 검토
   나. 실패를 통한 학습(Learning from Failure)
   다. 사례선정 : 인도의 국방개혁
3. 인도의 국방개혁안
   가. 헨더슨브룩스-바잣 보고서(1962)
   나. 아룬싱 위원회 보고서(1990)
   다. 카르길 위원회 보고서(2000)와 장관그룹 보고서(2001)
   라. 나레쉬찬드라 TF (2011)
4. 인도 국방개혁의 교훈
5. 결 론 : 변화에 대한 요구와 적응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학과 조교수
** 본 원고는 한국국제정치학회 2018년 하계학술대회(18.6.21.)의 발표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한 국가가 국방개혁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구조와 절차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정치적·문화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1)]

1. 서 론

인도가 가지고 있는 국토와 인구의 크기에 비해 한국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인도는 냉전시기에도 비동맹노선을 결성하면서 스스로 중립노선을 표방했으며,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한국과 인도는 공동의 위협인식을 갖게 되었고,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서로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해지면서 인도에 대한 관심은 정치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2)] 또 탈냉전 이후 인도가 추진해온 "동진정책(Look East, Act East)"[3)]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

1) David Chuter, 『국방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쟁점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지침』(서울: 국방부, 2004), p.10.

2) 한국과 인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1973년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지만, 2010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부터 협력의 폭을 확대해왔다. 2010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사회보장협정, 2011년 민간원자력협력협정, 업무협력MOU,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2012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등을 맺은 바 있다. 양국 국방협력에서는 2015년 양국 국방장관은 군사교류와 호혜적 방산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인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외교·국방 차관회의 개설에 합의하면서 군사협력을 공식화했다. 2018년에는 양국 정상회담 및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채널의 유지를 재확인하였다. 국방부, 『국방백서 2016』(서울: 국방부, 2016), p.140; 『국방백서 2018』(서울: 국방부, 2018), p.139.

3) Ashok Sajjanhar, "2 Years On, Has Modi's 'Act East' Policy Made a Difference for India?," The Diplomat (2016.6.3.). https://thediplomat.com/2016/06/2-years-on-has-modis-act-east-policy-made-a-difference-for-india/; Walter C. Ladwig III, "Delhi's Pacific Ambition: Naval Power, 'Look East,' and India's Emerging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Asian Security*,

방정책"[4],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이 부응하면서 인도가 가지고 있는 지전략적 중요성과 안보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군사적 차원에서 인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도의 지전략적인 환경에서 비롯되는 국방정책 및 전략의 변화에 있다. 인도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및 파키스탄과 수차례 전쟁을 치른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국방개혁을 추진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2.0의 비교사례로서 인도에 관심이 간다. 지난 4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육군개혁의 사례 연구를 위해 영국, 일본과 함께 인도를 찾았다.[5] 전통적인 군사강국이 아닌 인도를 처음 방문한 것은, 우리 국방개혁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인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 군사적 의미를 재확인해주는 사례도 된다.

국방개혁에 주목하여 인도로부터 어떤 함의를 찾아낼 것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인도와 한국이 처한 전략적 상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유사점으로는 먼저 인도-파키스탄의 적대적인 역사를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이 파키스탄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6] 북한과 적대적인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인도의 유사성을 반증하는 것이고, 아울러 인도로부터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7] 둘째, 2차

Vol.5, No.2 (2009); David Scott, "Strategic Imperatives of India as an Emerging Player in Pacific Asia," *International Studies*, Vol.44, No.2 (2007),

4)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울: 국가안보실, 2018), pp.91-93

5)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영국, 인도, 일본 방문," 『아주경제』(2018.4.8.).

6)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5권 2호 (2009); 김재엽, "핵무장국 사이의 제한전쟁 수행과 한반도에의 적용: 1999년 인도·파키스탄의 카르길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14권 3호 (2014); 손한별, "파키스탄의 핵태세와 북핵," 『국방과 기술』(2016.11월) 등.

7) 모병제를 시행 중인 인도의 총병력은 144.5만명으로 세계 3위 수준이며, 이중 육군이 123.7만, 해군은 6.7만, 공군은 12.7만명이다. 국방비는 2018년 기준 57.9억 달러로 세계 4위 수준이다.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Chapter Six: Asia," The Military Balance (London: IISS, 2019).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민주국가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전통적 민주국가에 비해 미성숙한 민-군관계,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경직성이나 각 군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차이점으로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다양한 전쟁의 경험을 들 수 있다. 1974년 5월 18일 인도는 "평화적인" 핵폭발 실험을 진행했다.[8] 시기적으로 한국의 핵개발 시도와 포기가 인도보다 조금 늦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작동했을 수도 있겠지만,[9] 인도가 한국과는 달리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둘째는 인도의 전쟁경험에 있다. 한국의 경우 1950년부터 3년간 치열한 전면전을 치른 이후 대규모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 하지만 인도는 1962년 10월 중국과의 전쟁, 파키스탄과는 1947년, 1965년, 1971년, 1999년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모두 네 번의 전쟁을 치렀다. 인도가 전쟁에서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는 차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10]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적 환경의 유사점과 차이점 때문에, 인도의 국방개혁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

pp.266-271.

8) 인도의 핵개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Ashok Kapur, *India's Nuclear Option: Atomic Diplomacy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George Perkovich, *India's Nuclear Bomb: The Impact on Global Prolif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손한별, "인도 핵개발의 네 가지 원동력," 『군사연구』 제142집 (2016) 참고.

9) 핵개발 동기와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1970년대 핵개발을 시도했던 한국과 북한의 차이를 강대국 간의 경쟁과 강대국의 지원에서 찾고 있는 연구로, Hongseo Park and Tae-Hyung Kim, "Great-Power Rivalry and the Nuclear Development of Weak States: The Cases of the Two Korea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6, No.2 (2016).

10) Robert Jervis, *Perceptions and Mispercep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218-235; Amy C. Edmondson, "Strategies for Learning from Failure"; Francesca Gino and Gary P. Pisano, "Why Leaders Don't Learn from Success," *Harvard Business Review* (April, 2011) 참고.

2. 이론적 고찰

가. 기존 논의의 검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방개혁에 대한 정의나 개념도 다양하고, 개혁의 범위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현실적으로는 정부별로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개혁의 목표와 개념, 주체, 방법, 모델 등에서 서로 다른 논의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개혁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은 기존 국방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바람직한 국방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11] 이와 함께 군구조 개편, 국방운영의 효율성, 군의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주제들이 주로 다루어졌으며,[12] 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국방개혁의 배경과 성공요인, 정책결정과정도 함께 다루어졌다.[13]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국방개혁이 국방력 증강과 문민통제에 치중하여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14]

---

11) 권영근, 『한국군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 818계획, 국방개혁2020, 국방개혁307을 중심으로』(서울: 연경문화사, 2013); 이미숙, "한국 국방개혁과 818계획의 교훈," 『군사』, 제106호 (2018); 노훈,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 『전략연구』, 제19권 3호 (2012) 등.

12) 황병무, 『국방개혁과 안보외교: 포괄안보시대의 한국의 선택』(서울: 오름, 2009); 노훈, "신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정책 방향," 『전략연구』, 제15권 1호 (2008); 전제국, "국방개혁의 쟁점과 과제: 합동성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8권 1호 (2012); 홍규덕,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의 전략적 연계," 『전략연구』, 제35호 (2005) 등.

13) 김동한, "군구조 개편정책의 결정과정 및 요인연구: 818계획과 국방개혁2020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박휘락, "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국방개혁 2020 추진방향 분석," 『국가전략』, 제15권 2호 (2009); 박휘락, "최근 한국군 국방개혁의 계획과 현실 간의 괴리 분석," 『국방연구』, 제59권 3호 (2016) 등.

14) 김태효, "국방개혁 307계획: 지향점과 도전요인,"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권 2호 (2013), pp.349-350.

국방개혁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미국의 사례가 많이 다루어졌지만,[15] 국력을 고려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사례에서도 교훈을 찾았다.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국방부가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국방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16] 이는 국방개혁의 내용 자체보다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NATO와 핵무장을 두고 자국의 주권을 미국에 주장해왔다는 점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0년대에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었으며, 해외사례를 통해 교훈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17]

그러나 국방개혁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방개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사실 국방력 증강이라는 당위적인 목표만을 고려한다면 국방개혁은 "개혁"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왜 국방개혁이 필요한지, 국방개혁을 추진하게 된 정치적, 전략적 배경은 무엇인지에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한정된 시간, 개별 사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방개혁의 내용과 논의를 역사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통사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상황의 변화와 국방개혁의 내용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주요한 변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를 보다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선진국에 국한

15) 김대성, 정광호, "국방개혁의 법제화 성공요인: Goldwater-Nichols 법안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 『신아세아』, 제77호 (2013).

16) 김무일, "프랑스군 개혁의 교훈," 『합참』, 제25호 (2005); 심경욱, "프랑스군 개혁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군사논단』, 제43호 (2005); 한용섭, 김무일, 『프랑스 국방개혁 2015 분석』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홍성표, "프랑스 국방개혁 교훈을 통해 본 한국군 개혁방안," 『신아세아』, 제12권 4호 (2005), 황진하, "프랑스식 국방개혁 벤치마킹에 문제 없는가," 『군사세계』, 제124호 (2005) 등.

17) 박민형, "국방개혁: 유럽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적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제12권 3호 (2012); 문인혁, 이강호, "프랑스 국방개혁의 재평가와 한국군에 정책적 함의," 『한국군사학논집』. 제72집 1호 (2016); 우평균, "러시아의 국방개혁: 성과와 시사점," 『중소연구』, 제150호 (2016) 등.

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사례로 확장할 때 이론적 논의를 확대하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적대적 경쟁, 신생독립국이라는 유사성을 가진 인도로 관심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앞선 이유로 인해 한국에 주는 함의는 매우 피상적이었다. 서로 다른 전략상황 속에서 국방개혁의 내용만을 가져온다면 각국의 국력, 전략상황, 전략문화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대한 이같은 문제제기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간다. 본 2장에서는 국방개혁의 원인과 배경으로서 "전쟁"에 주목한다. 승리한 전쟁에서도 군사적 실패는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면 전쟁 자체보다는 전쟁의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군사적 실패"를 국방개혁의 시발점으로 본다. 이어 인도의 국방개혁을 사례로 다룬다. 중국, 파키스탄과 수차례 전쟁을 치른 인도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안을 담고 있는 다양한 보고서 중 주요한 전쟁 또는 국제체제의 변화에 뒤이은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국방개혁안을 분석하는 것이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국방개혁에 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실패를 통한 학습(Learning from Failure)

조셉 나이(Joseph S. Nye)는 "국가는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거나, 손익구조의 변화에 대해 행위를 교정"하며, "선거, 군부의 집권, 세대교체와 같은 국내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8] 물론 이러한 현상변화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한용섭은 전략의 변화요인을 크게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구분하면서 "기존 전략의 수행결과"를 별도로 제시하였고,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도 "전쟁과 같은

18) Joseph S. Nye Jr.,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No.3 (Summer 1987), pp.371-379.

사건이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고,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19]

본 논문은 국방개혁의 추진 배경으로서 "군사적 실패"를 제시한다. "군사적 성공"이 기존 전략을 고수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면, "군사적 실패"를 통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전쟁의 패배는 군사력 운용과 건설, 국방운영, 전력 및 병력구조를 전환, 발전시킬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국방개혁을 이끈다는 것이다. 때로 정치적 책임을 군에 전가하기 위해서,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적 실패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 군사적 실패는 국방개혁의 중요한 원인이자, 동력으로 작동한다.

군사적 실패가 국방개혁을 이끈 사례는 많지만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6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골드워터-니콜스 법(Goldwater-Nichols Act)"이다. 군의 합동성 강화 필요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줄기차게 제기되었고, 베트남전을 통해서도 교훈이 도출되었지만 지지부진한 성과만을 가져왔다. 각 군은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에 매진하였고, 각 군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통합전투력이 발휘되지 못했으며, 합참보다 각 군의 이익을 우선하는 풍토 등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4월 이란 인질구출작전의 실패와 1983년 10월 그라나다 침공작전이 실패하면서 의회가 나서서 국방태세 전반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군사적 실패를 통해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재강조되고, 의회와 정부, 군이 함께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9.11 테러 역시 국방개혁을 이끈 중요한 군사적 실패 중 하나이다. 비정부 테러조직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의 심장부를 공격하면서, 정규군에 의한 공격을 미 본토에 이르기 전에 격퇴한다는 기존의 군사전략 개념은 완전히 깨어졌다. 이를 통해 미국은 위협

19) 한용섭, 『국방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2), pp.30-35; Robert Jervis, *Perceptions and Mispercep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218.

이라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16개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을 출범하였다. 아울러 정보분석, 정보유통의 속도와 통합성, 비대칭위협(asymmetric threat),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네트워크 중심전(NCW), "새로운 전쟁", 민영군수회사, "제2차 핵시대"와 같은 개념이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군사적 실패"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내용을 결정한다. 첫째, 목표를 재인식하도록 한다. 기존 국방정책의 목표는 국가안보목표, 전략환경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군사적 실패는 전략목표를 축소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는 내외부의 전략환경을 재평가하도록 한다. 군사적 실패는 국가간 관계, 능력과 영향력, 위험과 같은 외부환경이나, 국가의 다양한 능력, 기존 군사전략과 같은 내부환경에 대한 평가가 실패한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셋째, 군사적 실패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군사적 교훈이다. 전쟁의 불확실성과 상대성 때문에 군사력 건설의 방향, 배분, 운용방법이 항상 완전할 수는 없으며, 군사적 실패를 통해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다. 사례선정 : 인도의 국방개혁

인도는 3면의 안보위협에 처해있다. 첫째는 파키스탄과의 적대관계이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양국은 4차례의 전쟁을 치렀으며, 특히 1999년 카르길 전쟁은 핵전쟁에 근접했던 가장 최근의 사례로 기록된다. 양국 접경지역에서는 여전히 적대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100여명이 넘는 UN감시단(UNMOGIP)이 파견되어 있다.[20] 둘째, 중국과의 긴장관계도 관심의 대상이다. 1959년 티벳의

20) 1949년 1월부터 배치된 UN감시단은 2018년 4월 현재, 114명이 근무하고 있다. 민간인력 71명, 군사전문가 43명 등이다. UNMOGIP의 병력, 지원국, 예산, 보고서 등에 대한 공식자료는 UN PKO 홈페이지 https://peacekeeping.un.org/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넘어오면서 시작된 정치적 갈등, 1962년 10월 중-인전쟁 이후 군사적 적대감, 합의되지 않은 50,000제곱마일의 국경문제도 있다. 중국이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 항을 임차하고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항의 운영권을 받으면서 인도양에서의 세력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셋째, 인도는 급진세력의 테러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지원 여부를 떠나 2001년 인도 의회에 대한 공격, 2008년과 2011년의 뭄바이(Mumbai) 테러, 2013년에는 하이드라베드(Hyderabad), 방갈로르(Bangalore), 차키스가르(Chhattisgarh), 캐슈미르(Kashmir) 테러 등으로 인해 경각심을 크게 높였다.

인도는 낮은 단계의 군사적 충돌로부터 핵전쟁 위험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군사적 긴장 속에 있으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모든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동안 인도가 추진해온 국방개혁의 주제는 위협인식의 불일치, 국방기획의 능동성 부족, 단기 대응위주의 전략, 육군 위주의 군사력 건설, 명확한 국가안보전략의 부재, 민-군관계의 부정합성, 장기적 군현대화에 대한 재정 부족, 각군 간의 반목과 합동성 미흡 등이다.[21] 인도는 수차례의 전쟁에서 얻어낸 교훈을 통해 위와 같은 다양한 위협과 도전요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으며, 현재와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는 것을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22]

인도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사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칸

---

en,mission/unmogip 참고

21) Gurmeet Kanwal, "Introduction: The Need for Defence Reforms," in Gurmeet Kanwal and Neha Kohli, eds., *Defence Reforms: A National Imperative*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8), p.1.

22) 국가안보의 목표는 국가별, 시기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안전, 주권과 영토의 보존, 경제적 번영의 지속, 민주적 제도와 가치의 유지 등을 든다. 한국(박근혜 정부)의 경우 영토 및 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동북하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왈(Gurmeet Kanwal)이 정리한 인도의 국방기획, 국방정책의 결정, 국방획득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위원회 및 법적기구들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이 중 인도가 전쟁을 치른 이후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를 우선 선정하되, 시기에 따른 구간을 고려하여 몇 개의 사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들 보고서가 완전히 공개되지도 않았고, 개혁안이 실제로 이행된 것을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23] 인도의 국방개혁이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1〉 인도의 국방개혁 관련 주요 위원회 및 보고서

- Henderson Brooks-Bhagat Report, 1962.
- Arun Singh Committee on Defence Expenditure(CDE), 1990.
- K C Pant Committee on the NSC, 1989-90.
- Abdul Kalam Committee on Self-reliance in Weapons Acquisition, 1992.
- Kargil Review Committee(KRC) Report, 2000.
- GoM-appointed task forces on Higher Defence Management, Border Management, Inter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2000-01.
- GoM chaired by Deputy Prime Minister and Home Minister L.K. Advani, 2001-02.
- P. Rama Rao Committee on restructuring the DRDO.
- Vinod Misra Defence Expenditure Review Committee, 2008-09.
- Naresh Chandra Committee, 2011-12.
- Ravindra Gupta Committee on Defence Modernisation and Self-reliance, 2011-12.
- Dhirendra Singh Committee on Defence Procurement, 2015.
- Shekatker Committee to Enhance Combat Capability and Rebalance Defence Expenditure, 2016.
- 10th Finance Commission headed by Vijay Kelkar.
- Standing Committee(s) on Defence in Parliament.
-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CAG).

출처: Gurmeet Kanwal, "Introduction: The Need for Defence Reforms," p.13 보완 및 강조

23) 이들 보고서에 대한 분석은 ①국방개혁의 계획 ②실제 이행된 국방개혁, ③계획과 집행 사이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완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는 전쟁을 경험했던 인도가 추진하고자 했던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통사적으로 다루는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논문의 완전성을 위해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3. 인도의 국방개혁안

가. 헨더슨브룩스-바잣 보고서(Henderson Brooks - Bhagat Report, 1962)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인도는 국방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칸왈은 1983년부터의 위원회를 정리했지만, 인도 국방개혁의 첫 시도는 1962년 중-인전쟁 이후로 볼 수 있다. 사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인도의 국방정책은 식민지 시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조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상위에 총리, 국방장관 및 관계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국방위원회(Defence Committee of the Cabinet, DCC)에서 모든 국방정책이 결정되었다. 국방장관 아래의 군사조직으로는 국방장관위원회(Defence Minister's Committee, DMC), 참모총장위원회(CoSC), 기타 위원회가 산재해있었다.[24] 즉 문민통제의 원칙 아래에서 민간관료로 구성된 내각국방위원회와 국방장관 아래에 군사조직(military wing)으로서 각군 참모총장(Chiefs of Staff)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민간관료에게 군사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고자 했던 군사참모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간 정치인들에 의해 군의 주장은 종종 기각되었다. 군의 힘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25] 1962년까지의 국방조직은 아래

24) P.V.R. Rao, "Governmental Machinery for the Evolution of National Defence Policy and the Higher Direction of War," in Sisodia and Dutta, eds., *India and the World: Selected Articles from IDSA Journals*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pp.63-64.

25) 독립 직후 국방조직에 대한 이스마이(Lord Hasting Lionel Ismay)의 설계와 초기 국방조직에 대해서는 찬드라쉐카르가 자세히 정리하였으며, 인도의 초기 문민통제의 근거가 된 메논(Menon) 국방장관과 티마야(Thimayya) 육군참모총장의 민-군 갈등 사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R. Chandrashekhar, "Higher Defence Organization Independence to the Mid-1990s," in Gurmeet Kanwal and Neha Kohli, eds., *Defence Reforms: A National Imperative*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도의 국방조직 (1947-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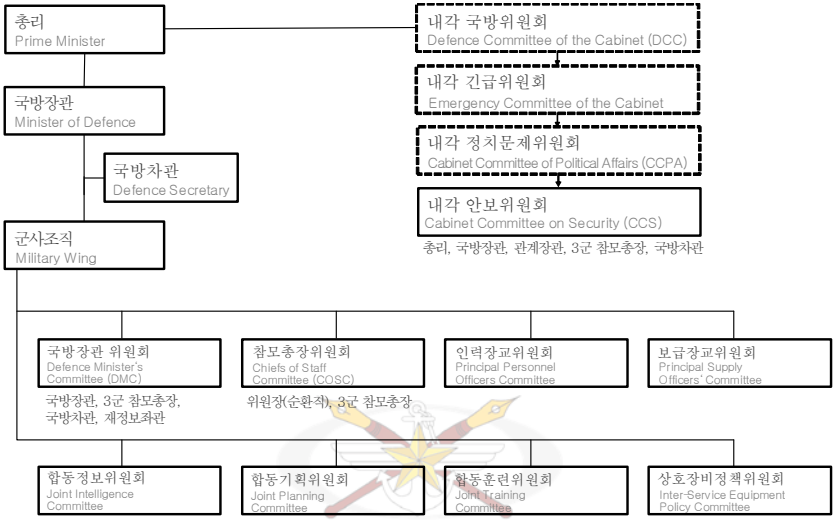

출처: Rajeev Bhutani, Reforming and Restructuring: Higher Defence Organization of India (New Delhi: Centre for Joint Warfare Studies: 2016), p.42 Annexure 4를 수정 및 보완

그러나 1962년 10월 20일부터 시작된 중-인전쟁은 인도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바꾸었고", 핵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인도의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었지만, 사실 중국 대약진운동의 여파와 지리적 여건, 인도의 화력 우세 등으로 인도의 우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 달여의 짧은 기간동안 인도는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전쟁은 인도에 항모를 제공한 영국, 지원요청을 받은 미국, 군사적 원조를 지속하고 있던 소련,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26] 또 전쟁의 패배는 국내적으로는 민-군간 긴장을 증폭시켰다.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8).

독립 이후 네루(Jawaharlal Nehru) 총리가 만든 절대적인 문민통제의 국방조직 하에서, 민-군의 분열과 소통 부재가 전쟁의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27]

전쟁은 인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전쟁의 실패를 다룬 헨더슨 브룩스-바갓(Henderson Brooks-Bhagat) 보고서는 전쟁의 패배를 교리, 훈련, 조직, 장비의 측면에서 점검하였다.[28]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인전쟁의 패배는 인도에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첫째, 국방기획절차의 정립이다. 내각에 국방기획위원회(Committee for Defence Planning, CDP)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의 전략기획을 추진했으며, 1965년에는 국방부 산하에 기획조정실(Planning and Coordination Cell)을 설치했다. 또 1964년부터 5개년 국방계획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인도의 현재 국방기획 체계 및 방법론은 이 시기에 정립된 것이다. 사실 이후로는 별다른 통합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 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지만,[29] 현재까지 국방개혁의 기초를 마련했다. 둘째는 통합성의 추구이다. 정책개발에 있어 보다 높은 차원의 통합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

26) 중-인전쟁과 양국의 국경분쟁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Das Gupta, Amit R., and Lorenz M. Lüthi eds., *The Sino-Indian War of 1962: New perspectives* (New York: Taylor & Francis, 2016); A.G. Noorani, *India-China Boundary Problem: History and Diplo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ndia, 2010) 참고.

27) Gen. V.P. Malik, "Higher Management of Defence and Defence Reforms: Towards Better Management Techniques," in Air Marshal B.D. Jayal, Gen. V.P. Malik, Anit Mukherjee, and Adm. Arun Prakash, eds., *A Call for Change: Higher Defence Management in India*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2), p.39.

28) 동 보고서는 의회에서의 논란 속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으나 호주의 기자인 네빌 맥스웰(Neville Maxwell)에 의해서 공개되었다. Sandeep Unnithan, "Henderson Brooks report lists the guilty men of 1962," *India Today* (8 April 2014), 원문은 http://www.indiandefencereview.com/wp-content/ uploads/2014/03/TopSecretdocuments2.pdf 참고.

29) 다양한 통합조직이 설립되었지만, 모 조직과 군의 이익만을 대표했으며, 합일된 기획으로 통합되지 못했다. Laxman Kumar Behera, "Defence Planning in India," *Journal of Defence Studies* (July 2010), p.127.

군사 전문가들이 국방정책의 결정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각 군 참모총장들이 국방장관과의 정기적인 "아침회동"에 참석하게 된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후에는 형식적인 모임이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30] 마지막으로 중-인전쟁은 인도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제공했는데, 병력은 두 배로 증강되었고, 1963년과 1964년의 국방예산은 각각 15%, 17%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국가예산의 28%를 차지했다.[31]

물론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가운데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는 요란스러운 행동(Much Ado about Nothing)"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내각 안보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Security, CCS)와 국방장관의 지침은 일관적이지 않았으며, 제10차 및 11차 5개년 국방계획의 사례처럼 문민정부의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파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연간 단위의 국방예산 결정에 따라 장기적인 국방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도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각 군의 자군 이기주의에 의해 합동성에 기반한 전력건설이 제한되었다는 점이다.[32]

나. 아룬싱 위원회 보고서(Arun Singh Report, 1990)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도가 처한 전략환경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사실 인도는 독립과 함께 지속적으로 비동맹노선을 추구해왔다.[33]

---

30) V.P. Malik, "Higher Management of Defence and Defence Reforms," p.40.
31) 고경희, "인도의 핵정책," 『서남아연구』 제2호 (1997), p.18.
32) P.R. Chari, "Defence Reforms after 1962: Much Ado about Nothing," *Journal of Defence Studies*, Vol.6, No.4 (2012), pp.171-188.
33)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네루가 표방한 비동맹·중립정책은 그의 이상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는 핵에 대해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저급한 상태에 있던 인도의 경제상황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에너지를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여겼다. 당시 인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빈곤한 인구를 가진 거대한 발전도상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경희, "인도의 핵정책," 『서남아연구』제2호 (1997), pp.2-3. 인도의 비동맹노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로는, Sampooran Singh, *India*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 회의에서 공식화된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은 사실 동서진영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한다기 보다는, 강대국의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양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받는데 목적이 있었다.[34] 인도의 비동맹노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과 모호함은 냉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었다.[35] 그러나 냉전기 인도의 비동맹노선을 뒷받침하고 있던 양자블록과 주권의 국가귀속성은 탈냉전과 함께 지구화, 다자화, 지역화로 대체되었고, 현실적으로 첨단전력의 대부분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했던 인도에게 탈냉전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탈냉전을 맞아 아룬싱의 국방지출 위원회(Arun Singh Committee on Defence Expenditure)의 보고서는, 1971년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느려졌던 인도 국방개혁의 속도를 높였다. 명칭은 국방지출에 국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탈냉전을 맞아 국방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36] 여전히 국방기구의 구성원들은 자군의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민군협력을 증진하고 무기도입기획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보고서의

---

and the Nuclear Bomb (New Delhi: S. Chand & Co,, 1971), pp.83-85; A. P. Rana, "Indian Non-Alignment and the Balance of Power;" Arthur Lall, "Evolution and Permanence," in Paul F. Power, ed., *India's Non-alignment Policy* (Boston: D.C. Health, 1967) 참고.

34) 카푸르에 따르면 인도의 비동맹노선은 강대국보다 약한 국력과 영향력을 가진 '중견국가(middle power)'가 아니라, '중간에 선(power in the middle)'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데 목표가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인도는 힘에 의한 국제정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외교력을 이용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제네바 구축회의와 같이 핵정책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자세를 유지했다. 또한 인도는 안보문제에 대한 국제레짐 또는 협력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Ashok Kapur, *India's Nuclear Option: Atomic Diplomacy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pp.3-4.

35) Roberta Wohlstetter, "The Buddha Smiles: U.S. Peaceful Aid and the Indian Bomb," in Robert Zarate and Henry Sokolski, *Nuclear Heuristics: Selected Writings of Albert and Roberta Wohlstetter* (Carlisl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p.342

36) Inder Malhotra, "A Tale of Two Aruns," *The Hindu* (May 17, 2000).

일부 내용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7]

첫째, 각 군의 통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참모의장(Chief of Defence Staff, CDS) 직을 신설한다. 국방참모의장은 군을 대표하며, 국방장관 및 내각의 상위기관에 군사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를 연계하고 국방기관 간의 업무수행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CDS의 목표는 군사(軍事)에 대한 민간관료의 간섭으로 인한 지연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목표는 민간관료들의 우려를 낳았으며 아직까지 이 제안이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위원회의 명칭처럼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급격한 물가상승 때문에 국방예산은 자동적으로 증가했는데, 국내적으로는 재무부의, 국제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반대에 부딪혔다. 따라서 각 군 총장들에게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재정적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기와 장비도입 정책의 결정과정을 간소화하였으며, 이는 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38] 또 국방도입절차가 정립되고, 국방조달위원회(Defence Procurement Board, DPB)가 설립되면서 정책결정과정이 제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동 위원회의 보고는 1998년 설립된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39] NSC는 외

37) 언론에 공개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https://www.indiatoday.in/magazine/cover-story/story/19930430-panel-suggests-automatic annual-increase-in-defence-budget-to-off-set-inflation-810905-1993-0430 (검색일: 2018.5.28.) 참고.

38) 이러한 성과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사업들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투명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이를 우려하여 관료와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건의 방산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Anit Mukherjee, *Failing to Deliver: Post-Crises Defence Reforms in India, 1998-2010*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1), pp.10-12.

교, 경제, 정치, 군사 상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국내적 관심과 목적과 연계하는 역할을 했다. 국방, 외교, 재정, 내무부 장관이 참여하며, 필요시 관계장관,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인도의 NSC는 사무국(secretariat)과 전략정책그룹(Strategic Policy Group, SPG), 국가안보자문단(National Security Advisory Board, NSAB)로 구성되어 있다.[40]

그러나 외부의 충격적 변화없이 추진된 개혁은 저항에 부딪혔다.[41] 군의 통합과 자체 조정을 위한 국방조직의 구축은 민간관료들과 의회 정당으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계획에 더 많은 변화와 조정을 가져오는 반면에, 군은 여전히 하부단계에서만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큰 방향에 동참할 수 없었다. 사실 국방참모의장과 같이 군이 합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휘체계를 마련하지도 못했으며, 진정한 의미의 통합된 국방정책의 구조도 마련되지 않았다. 내각의 다양한 국방조직은 민간관료와 그의 측근들에 의해서 국방정책을 결정했으며, 군사적 조언없이 마련된 대안은 장기적인 전략 및 계획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999년에 발생한 카르길(Kargil) 전쟁은 중-인전쟁과 같은 충격적 전환점이 되어, 인도군의 개혁을 강요하였다.

다. 카르길 위원회 보고서(2000)와 장관그룹 보고서(2001)

1999년 카르길(Kargil) 전쟁은 인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

39) Anit Mukherjee, *Failing to Deliver,* pp.10-12.

40) D. Shyam Babu, "India's National Security Council: Stuck in the Cradle?" *Security Dialogue* (June 2003), pp. 220-221.

41) 아니트는 동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중 실현되지 않은 사항은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CDS 창설, 둘째 "군사(軍史)"의 출간과 비밀해제, 셋째 군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위원회의 설립 등이다. 세가지 모두 문민통제의 폐해를 교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Anit Mukherjee, *Failing to Deliver,* pp.30-31.

요하는 사건이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동절기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해, UN이 관리 중인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통제선(Line of Control, LoC)을 은밀하게 침투하여 카르길의 산악지역을 장악하였다. 파키스탄이 왜 도발을 감행했는지, 어떠한 전략적 계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42] 사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99년 2월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라호르(Lahore) 선언에 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인도는 파키스탄의 도발에 대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인도는 소규모의 지상군만을 투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후에 점진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였다. 결국 인도군의 화력전투와 공군의 공습, 국제사회의 압박 등으로 파키스탄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카르길 전쟁은 종료되었다.

파키스탄과의 전쟁 이후, 카르길 검토위원회(Kargil Review Committee, KRC)가 제출한 보고서는 인도 국방개혁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43] 잠무와 카슈미르(Jammu & Kashmir) 지역에서 파키스탄의 도발적 행위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당 위원회는 수브라마냠(K. Subrahamyam)과 하자리(K. K. Hazari) 중장, 버게스(BG Verghese) 칼럼리스트, NSC 사무총장인 사티쉬 찬드라(Satish Chandra)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인도가 처한 위협과 도전요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안보 관리의 허점을 분석하였다. 2000년 2월 인도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핵억제력 발전, 정보분야의 개혁, 국경관리, 국방재원, 항공력 활용, 대반란작전, 통합된 인력정책, 국방연구개발 및 언론관계 등을 포괄적

42) 카르길 전쟁의 경과와 파키스탄의 강압전략 및 인도의 역강압전략을 개관한 연구로, 손한별, “핵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강압: 1999년 카르길 전쟁,” 『국가전략』 제23권 4호 (2017); 김재엽, “핵무장국 사이의 제한전쟁 수행과 한반도에의 적용: 1999년 인도·파키스탄의 카르길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14권 3호 (2014); Marium Fatima, "The Kargil War: Contending Perspective,"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28, No.4 (2016) 참고.

43)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요약내용은,http://nuclearweaponarchive.org/ India/KargilRCA.html 참고. (검색일: 2018.4.10.).

으로 다루었다.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내각안보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Security, CSS)는 특별히 구성된 장관그룹(Group of Ministers, GoM)에게 동 보고서를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할 것을 승인했다. 2000년 4월 창설된 장관그룹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방부,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보개혁, 국내안보, 국경관리, 국방관리 등 4가지 과제를 가지고 국방개혁에 착수했다. 각각의 과제는 전직 장관급 인사에 의해 심층 분석되었다. 카르길 위원회의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2001년에 발행된 GoM의 최종 보고서는 대부분 승인되었다.[44] 대표적인 내용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서는 다시 한 번 국방참모의장(CDS) 직의 신설을 요구했다. 합동참모회의는 존재하지만, 군사교리, 기획, 정책, 작전적 문제를 합동성에 기반하여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군이 단일한 군사조언을 제공하고, 전략군에 대한 통제와 관리 권한을 부여하며, 중기 및 장기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토록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군종의 합동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카르길 위원회는 국방정책 결정과정에서 민간인과 군사적 투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2001년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국방차관 예하에 통합국방참모(Integrated Defence Staff, IDS) 본부를 우선 신설하였다.[45]

둘째, 국방참모의장의 신설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각 군이 국방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비판했다. 군이 정책결정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정적 권한이 제한되어 실제

---

44) 인도 정부가 일부를 삭제하고 공개한 카르길 위원회의 원문은, *Reforming the National Security System: Report of the Group of Ministers on National Security* (New Delhi: Government of India, 2001).

45) 당연한 것이지만 국방참모의장이 없는 통합참모조직만으로는 실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 반쪽에 그친 합동성 강화노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는, Anit Mukherjee, *Failing to Deliver,* p.36..

작전운용에 긴요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46] 결국 부실한 국가안보전략 차원의 기획절차는 그나마 군사조언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각 군의 기획은 경쟁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기획과 예산이 연계되지 못하고 별개로 진행된 점도 지적되었다. 추가적으로는 여기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학계의 노력과 연계되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ce University)의 설립 제언으로 연결되었다.[47]

셋째,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전투사령부의 창설을 요구했다.[48] 파키스탄과 중국의 위협에는 단일군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다는 평가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2001년 합동성 강화를 위해 전략사령부와 함께 안다만(Andaman)-니코바르(Nicobar) 합동사령부를 신설했다. 벵갈만과 아라비아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해군전력 이외에 전투비행단과 헬기, 8천여 명의 육군을 배치한 것이다. 또 국경지역에는 "하나의 국경, 하나의 부대(one border, one force)" 원칙에 따라 국경보안대(Border Security Force)를 별도로 조직하여 국경수비를 전담토록 했다.

넷째, 카르길 전쟁은 정보실패에 대한 인도의 반성을 가져왔다. 각 군의 상호불신, 정보공유 미흡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49] 또한 보고서는 구조적으로 정보기관과 활용기관이 별개로 위치하여,

---

46) Air Marshal BD Jayal, "Management and Delivery of Joint Military Capabilities," p.61

47) Gen. V.P. Malik, "Higher Management of Defence and Defence Reforms: Towards Better Management Techniques," p.43.

48) 다른 이슈와 달리 합동성과 관련해서는 공군의 반대를 특기할만하다. 공군은 자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작전영역을 빼앗기고 지원역할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아니트에 따르면 육군 및 해군/공군의 대립구도는 결과적으로 군 작전기획의 효율성과 상호운용성을 훼손하고, 무기 및 장비도입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으며, 각 군이 고착된 정체성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Anit Mukherjee, *Failing to Deliver,* pp.33-38

49) Benjamin S. Lambeth, *Airpower at 18,000': The Indian Air Force in the Kargil War*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2).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의 조정이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과 평가의 부실한 관리도 강조했다. 그 결과 합동참모위원회 산하에 3군 합동국방정보기관(DIA)를 신설하면서 효과적인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전담토록 하였다.[50]

마지막으로는, 국방획득분야에서 정책결정을 신속히 하고, 무기도입의 투명성과 책임 확보를 위해 국방조달절차(Defence Procurement Procedure, DPP) 2002를 승인했다. 2006년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획득위원회를 통해 획득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도록 이를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어 국방획득위원회(Defence Acquisition Council, DAC)와 국가기술연구기구(NTRO)도 신설하였다.

카르길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전쟁이 인도에 미친 영향은 컸다.[51] 실패를 통한 교훈은 여실히 인식되었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국방개혁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또 장관그룹은 제안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았다. 물론 개혁은 아직 진행중이다. 국방조직 내에 통합국방참모 조직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성과 조율능력을 확대하지 못했다. 정보공유와 유통의 미흡, 민간관료에 대한 군사조언의 미흡함, 군의 통합되지 않은 대응 등은 2008년 뭄바이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공격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로 이어졌다.[52]

---

50) 산재되어 있던 정보를 취합하여 다양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관이 통합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보자산과 능력을 보유한 육군의 정보부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육군의 보고서를 복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부작용이 있었다. 국방영상처리분석센터(DIPAC)와 국방정보전(DIWA)를 창설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통합 자체에만 중점을 둔 안다만-니코바 사령부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Anit Mukherjee, *Failing to Deliver,* pp.37-38

51)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동시에 핵실험을 한 이후 처음 군사적으로 충돌했다는 점에서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기된다. 저비스는 "전면적 핵전쟁의 차원(at the level of all-out war)에서는 군사적 균형이 안정적일 수 있어도, 폭력의 낮은 단계(at lower level of violence)에서는 덜 안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obert Jervis,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Ithaca: Cornell Uni. Press, 1985), p.31.

라. 나레쉬찬드라 TF (Naresh Chandra Report, 2011)

인도는 카르길 전쟁 이후 다양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처해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전통적 위협과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이다. 카르길 이후 인도군의 전략은 파키스탄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간 및 이라크전쟁, 러시아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개입과 같은 강대국이 연계된 국제적 사건에도 주목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2008년 뭄바이 테러, 진행 중에 있는 낙살(Naxal) 폭동,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불안정 등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후에도 2014년 5월 헤랏(Herat)에서 인도 영사 피격 뿐만 아니라, 2015년과 2016년에는 공군 및 육군기지가 직접 공격받기도 했다. 결국 전통적인 전력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국경을 확보하고 국내의 갈등과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의식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군사력의 투사범위를 인도양 너머로 확장할 것인가? 국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군과 경찰의 균형은 어떠해야 하는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구조와 교리를 변경해야 할 것인가? 사이버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군사태세를 공세적으로 변경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다. 이는 카르길 위원회의 보고서 이후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국방개혁이 "이행에 실패(failed to deliver)"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53]

국방정책관리에 있어 이러한 통합계획과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한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정부는, 2011년 주미대사를 역임한

52) Harsh V. Pant, "Indian Defence Policy at a Crossroads," *Asia-Pacific Review* (May 2010), pp.128, 135-36.

53) Anit Mukherjee, *Failing to Deliver: Post-Crises Defence Reforms in India, 1998-2010*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1).

나레쉬 찬드라(Naresh Chandra)를 대표로 하는 또 다른 위원회를 소집했다. 당 위원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파키스탄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to Pakistan) 파르타사라티(G. Parthasarathy), 공군참모총장 크리슈나스와미(S. Krishnaswamy), 해군대장 아룬 프라카쉬(Arun Prakash), 라가반(Raghavan) 중장, 원자력부 장관 아닐 카코드카(Anil Kakodkar), 연구분석차관 베르마(K.C. Verma) 등이다. 동 위원회의 보고서는 6개월간의 연구기간 이후 관련 부처의 회람을 거쳐 2012년 5월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여전히 기밀로 남아 있고 정부의 공개를 보류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실없는 국가안보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부만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점진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54]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한 군사태세를 유지하고, 육, 해, 공군에서 순환 지명하던 합참의장이 아니라 상임직으로서 합동군을 지휘하는 국방참모의장을 두어 합동성을 강화하며, 특수전사령부, 우주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 3개의 전투사령부를 신설하여 미래 도전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 민-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토록 하고, 국방장관의 과학보좌관 아래에 고등연구기관(Advanced Projects Agency)을 설립하여 국방과학연구를 촉진토록 하였다. 국방부, 외무부 조직에 더 많은 현역 장교를 파견하고, 민간 관료를 각 군 본부에 파견토록 하여 보다 원활한 업무협조를 요구했다. 또 외국직접투자(FDI) 비율을 26%에서 49%로 증가토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방참모의장 신설을 비롯하여 국방개혁이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 인도의 국

54) 대표적 분석으로, www.vifindia.org/article/2012/july/16/naresh-chandra-task-force-s-report-on-national-security-an-appraisal (검색일: 2018.4.28.). 인도의 새로운 전쟁교리로 알려진 "Cold Start Doctrine"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알려지지는 않았다. Walter C. Ladwig III, "A Cold Start for Hot Wars?: The Indian Army's New Limited War Doctrine," *International Security*, Vol.32, No.3 (Winter 2007/08); 손한별, "인도의 Cold Start: 전략적 시공간의 선점,"『국방과 기술』(2017.10.) 참고.

방조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인도의 국방조직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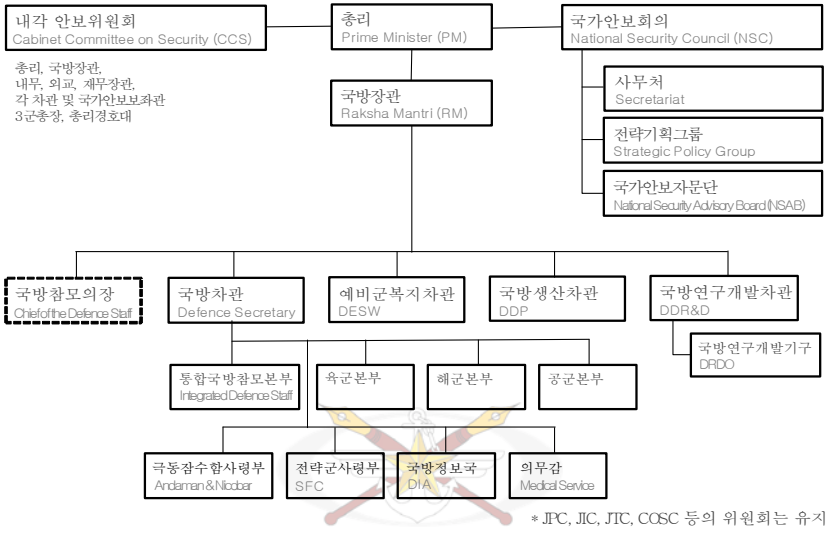

출처: Rajeev Bhutani, *Reforming and Restructuring*, p.44 Annexure 5를 수정 및 보완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아니트 무크헤르지(Anit Mukherjee)는 이 보고서가 비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법안이 진행될 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국방개혁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방참모의장직 신설과 같은 상부지휘구조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전투사령부와 각 군이 원거리에 위치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기관들의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완전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55]

55) Anit Mukherjee, *Failing to Deliver.* p.10.

찬드라 위원회 이후에도, 2015년부터 전 내무부장관이었던 싱(Dhirendra Singh)의 국방획득 분야 위원회와 2016년 쉐카트커(Shekatker)의 전투능력증강 및 국방지출 분야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쉐카트커 위원회의 99개 제언은 2019년 12월까지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65개는 육군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개혁과제는 작전적 차원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작전적으로 중첩되어 비효율적인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영역, 방공무기, C4I 등의 영역에 대한 정리와, 지역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각 군으로부터 지휘를 받는 14개 전투사령부에 대한 조정 등이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전략적으로 공세성을 띠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작전적 통합은 필수적이며, 상부의 합동성 뿐만 아니라 지역사령부에서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전망이다.[56]

4. 인도 국방개혁의 교훈

인도의 국방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이 필수적인 조치로 제기되는 국방참모의장(CDS) 직을 신설하는 작업만 이미 수십 년간을 끌어오고 있다. 하지만 적대적인 핵무장국가와 마주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유사성과 함께, 전쟁을 통해 교훈을 도출해 온 국방개혁의 경험은 다양한 교훈을 준다.

첫째, 인도는 실패를 통한 자기반성으로부터 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1962년 중-인전쟁이나 1999년 카르길전쟁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1971년 겨울 인-파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은 교훈과 다르다. 이는 1990년 탈냉전 직후의 아룬 싱(Arun Singh) 보고서가 기존의 개혁안을 답습하고 느슨하게 실행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56) Air Marshal BD Jayal, "Management and Delivery of Joint Military Capabilities," pp.62-64.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은 보다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개혁방안으로 이어졌다.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시간은 더딜 수 있지만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있다. 각 군의 통합성, 문민통제의 한계 극복,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국방획득, 국방연구개발의 확대, 작전적 수준의 합동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다만 설정된 방향으로 행동력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논의가 반복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합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참모의장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합동참모의장직을 상설로 두자는 주장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수십 년간 줄기차게 논의되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회로 화살을 돌린다. 분명한 것은 행동력있게 추진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혁 실패의 책임을 다른 측에 전가하면서 다른 긴요한 핵심조치들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개혁조치가 미진한 속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당부분 아래에서 다루게 될 대전략의 부재와 "고착화된 관료제(entrenched bureaucracies)"에서 기인한다.[57] 여기에 융통성없는 문민통제의 원칙 때문에 군이 전략기획에서 배제되는 기형적인 상부지휘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58] 많은 경우 민군관계 속에서 개혁의 대상은 민간관료보다는 군이었지만, 민간관료의 관성적 행태는 결과적으로 개혁을 지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59] 또 유리된 민군

57) 의도적인 거부가 아니라 관성에 따라 인력 및 자원의 재조정이 금세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의 결정들이 집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Anit Mukherjee, *Failing to Deliver: Post-Crises Defence Reforms in India, 1998-2010*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1), pp.41-44.

58) 그러나 실제로 군사전략을 기획하고 군사력을 운용해야 할 군이 지휘구조 자체에서 배제되고, 합일된 의견을 낼 수 없는 구도에서는 적절한 군사적 조언을 제공할 수도 없다. 안보환경이 지구화되고 위협의 스펙트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합동성은 군이 갖춰야할 핵심이며, 합동성에 기반하여 군사적인 조언이 제공되어야만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이를 수 있다.

59) Anit Mukherjee, *Failing to Deliver.* p.10.

관계로 인해 상호소통이 부재하였고, 계획된 개혁조치들이 현장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60]

둘째, 인도 국방개혁은 국가의 대전략 기획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오도넬과 팬트(Frank O'Donnell and Harsh V. Pant)는 인도가 "국가이익의 보호 및 발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리더십"과 "국가능력의 포괄적 통합과 적절한 배분 및 운용을 위한 체제 마련"이라는 두 개의 노력선을 병행하면서 대전략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한다.[61]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의 자원과 노력을 통합하는 데 있고, 정치적 판단과 군사적 전문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심하지만 복잡하지 않게 대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전략기획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국방참모의장 직제의 신설을 통해 내각안보위원회에 올바른 군사조언을 할 수 있어야, 군사력을 포함한 국가능력을 포괄한 대전략을 수립하고, 통합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기획 중에서도 위협 및 위험평가가 우선될 필요도 있다. 냉전 직후 아룬 싱(Arun Singh) 보고서와 카르길 이후 제한전쟁 및 테러 위협에 직면하여 작성된 나레쉬 찬드라(Naresh Chandra) 보고서는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위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국가재원의 제약과 복잡한 안보현실을 고려한다면, 미국 등 강대국의 "능력기반(capability-based) 전력기획"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환경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 국방기관이 위협평가를 공유함으로써 통합된 대응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

60) 인도와 파키스탄의 민군관계를 비교하고 이를 양국의 핵전략과 연결한 대표적인 연구로, Ayesha Ray, *The Soldier and the State in India: Nuclear Weapons, Counterinsurgency and the Transformation of Indian Civil-Military Relations* (London: Sage, 2013); 김태형, "민군관계와 핵전략 발전: 인도와 파키스탄 라이벌 관계의 사례," 제4회 육군력포럼 발표 (2018.6.28.), 참고.

61) Frank O'Donnell and Harsh V. Pant, "Managing Indian Defense Policy: The Missing Grand Strategy Connection," *Orbis* (February 2015).

이다.[62]

다른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인도 총리에 의해서 승인된 국가안보 전략을 의회와 국민들에게 적정수준에서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된 위원회도 많은 예비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의 공개를 주장한다. 민주국가의 국방개혁은 국민과 의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63] 인도의 경우, 2017년 3월에 종료되는 제12차 국방계획을 승인받지 못했고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 통합국방참모본부(IDS)가 제출한 LTIPP 2007-22도 승인되지 않았다. 이같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1년 단위의 단기적인 도입계획에 의해서만 군사력 건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전략을 일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유와 설득과정이 필수적이다.

셋째, 상부지휘구조(Higher Defence Organization)의 개편이다. 인도의 국방개혁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통합성이다. 국가안보는 정부의 다른 모든 업무와 관계되어 있다. 정부부처간, 기관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합동참모회의의 체계 속에서 각 군 참모총장은 자군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방참모의장직 신설 또는 합참의장직을 상임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통합으로의 지향은 영국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10년 영국 정부는 레빈(Levene) 경을 중심으로 국방조직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21세기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권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64] 인

62) Narender Kumar, "Defence Planning: A Review," in Gurmeet Kanwal and Neha Kohli, eds., *Defence Reforms: A National Imperative*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8), pp.87-94.
63) Anit Mukherjee, "Next Generation Defence Reforms: A Roadmap," p.73.
64) Rajneesh Singh, "Reforms Initiated by Major Military Powers," in Gurmeet Kanwal and Neha Kohli, eds., *Defence Reforms: A National Imperative*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8), p.19.

도의 경우에도 CDS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작전과 무기도입, 군사 등에 대한 책임을 군사전문가인 CDS에 주는 것이고,[65] 이를 통해 군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및 전략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군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더욱 커질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와 같은 인접 국가들이 군사쿠데타를 경험한데 비해 인도는 군부를 잘 억제해왔는데,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을 철저히 배제했던 결과로도 볼 수 있다.[66] 그러나 민간 관료로만 구성된 현재 국방부 체계 내에서는 일관적인 국가안보전략의 부재, 국가안보목표의 모호성, 고위 조직의 복잡성, 군의 시너지 부족, 군-방산기업간의 한심한(pathetic) 관계, 군의 낮은 서열로 인한 의전문제, 각 군 본부의 원거리 위치 등이 지적된다.[67] 말릭(V.P. Malik) 대장이 지적하는 사항도 귀기울일만하다. 철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시에는 어떠한 정책결정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반면, 전시에는 군의 요구와 조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평시와 전시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실제 전투력 발휘가 불가능하다는

65) Kotera M. Bhimaya, "Nuclear Deterrence in South Asia: Civil-Military Relations and Decision-Making," *Asian Survey* (July 1994), p.654; Stephen P. Cohen and Sunil Dasgupta, "The Drag on India's Military Growth," *Brookings Policy Briefs* (Sept. 2010), p.3, http://www.brookings.edu/~/media/research/files/papers/2010/9/india%20cohen%20dasgupta/09_india_cohen_dasgupta.pdf.; "Army Chief's Letter to PM: General V.K. Singh Exposes Chinks in Armour," *Times of India* (March 29, 2012).

66) 이러한 문-민의 분리현상은 문민통제를 강화하기보다 군에 대한 방임(non-interference)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민간관료의 군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군은 정치 및 정책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군사조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아니트가 수브라마니암을 인터뷰한 내용은 인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관료들은 의무감 없이 권력을 휘두르고, 군은 방향성도 없이 책임을 떠안는다." Anit Mukherjee, *Failing to Deliver,* pp.45-49.

67) 국방참모의장 논의와 관련 현재 인도 국방조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한 글로, "Does India Require Chief of Defence staff Post,"https://iasscore.in/national-issues/does-india-require-chief-of-defence-staff-post (검색일: 2019.2.11.) 참고.

것이다.[68] 군사력 건설과 운용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실제 군사력을 운용하는 군이 전략과 전력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넷째,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 유지 노력에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이 소프트웨어에 주목하고 있다면, 인도가 군사력 증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인도 무기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70-80%가 구 소련제 무기로 소련 붕괴 이후 부품공급이 어려워 작전수행 상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항공기와 전차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첨단장비를 전력화하면서도 낡고 오래되어 수명이 거의 다한 장비를 다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미사일·위성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 방산분야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는 역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국방의 목표를 두고 있다.[69] 인도는 최소한 지역 차원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마찬가지 이유로 이미 1974년에 첫 번째 핵실험을 하면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실제로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국방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끌어올려 낙후된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외국직접투자 비율을 49%까지 높여 방산분야에서 기술을 확보하고 자체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0] 정책적으로는 자국생산 중심, 기술이전 및 협력생산 방식의 선호, 절충교역(offset) 의무화, 에이전트 활동 제한과 같

68) V.P. Malik, "Higher Management of Defence and Defence Reforms," pp.40-42.

69) 인도의 국가안보전략, 국방정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Nitin Gadkari, "India's Defence Policy: Issues & Perspectives," *Bharat Shakti: Self-Reliance in Defence* (March 11, 2017), http://bharatshakti.in/indias-defence-policy-issues-perspectives/ (검색일: 2018.6.8.).

70) 모디 총리의 Defence Procurement Procedure 2016은 자체 설계, 개발,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며, "Make in India" 구상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Ministry of Defence, *Transforming India: Key Accomplishments* (July 2016), https://mod.gov.in/e-book

은 방산정책을 통해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생산능력을 보유하고자 한다.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전쟁, 파키스탄과의 네 차례 전쟁 이후, 이들 국가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71] 노후화된 무기체계를 대체하면서 전쟁억제력 확보를 위한 신무기체계 도입에 주력하고 있는데, 군사력 투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공중조기경보기, 대함요격 미사일과 같은 전력증강에도 힘쓰고 있다. 또 C4ISR, 포병의 현대화, 최신 전투기의 도입, 항공모함 및 잠수함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P8I 해상초계기, Rafale 전투기, Kamov Ka-226 헬기, Howiters 야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력 균형 유지를 통해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면서, 군사력 투사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인도의 국방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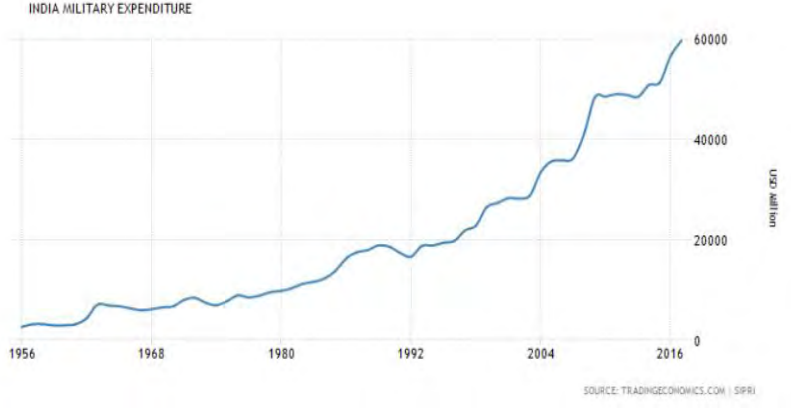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india/military-expenditure

71) IISS, "Chapter Six: Asia," *The Military Balance* (London: IISS, 2018), p.260.

5. 결론 : 변화에 대한 요구와 적응

한국 국방부의 국방개혁2.0에 대한 다양한 말들이 오간다. 그 중에는 북한과의 대화국면과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국방개혁이 발목을 잡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비단 눈앞의 위협이 아니라 국가안보목표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2.0의 비전으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군대' 건설"을 내세웠다. 또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를 구축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인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개혁도 군사적 실패 후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방개혁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강조된다.

물론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존재하고, 국방개혁이 정치적 고려와 무관할 수는 없다. 2011년 찬드라 TF의 개혁안이 카르길 위원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를 적용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72] 전쟁의 경험은 정치적 저항을 반감시키고, 국방개혁의 속도를 촉진한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47년 국방수권법(National Security Act)을 통해 국방부와 국방장관직을 신설하고 육군으로부터 공군을 독립시켜 3군 체제를 만들면서 지금의 국방조직과 체계를 구축했다. 인도의 더딘 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성과를 가져온 것은 전쟁과 실패로부터 국방개혁을 위한 교훈과 추진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보장과, 주권과 영토의 보존을 위해서는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전쟁과 실패로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한 인도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성공과 실패로부터도 교

72) Admiral Arun Prakash, "Defence Reforms: Contemporary Debates and Issues," in BD Jayal, et al., *A Call for Change: Higher Defence Management in India* (IDSA Monograph Series No.6, July 2012), p.35.

훈을 도출하여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행동력있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위해서는 대전략과 군사전략 기획을 위한 절차를 정립해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위협 및 위험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기획된 전략은 적정수준에서 의회와 국민에 공개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역량을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할 필요도 있다. 셋째, 군사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면 군의 통합성을 추구하면서도, 민간관료에 대한 충실한 군사조언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전략기획의 부단한 환류를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긴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국방개혁에 주는 함의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은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며, 국방개혁의 결과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인도는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고려하면서 핵무기 개발 및 재래전력 현대화를 통해 전쟁억제력을 확보해왔다. 둘째,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할수록 위협평가에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카르길에서의 제한전쟁과 각종 테러위협에 직면한 인도는 다양한 능력 확보와 함께 위협평가를 구체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문민통제의 원칙은 군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도의 사례는 절대적인 문민통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군의 전문성과 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현대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건전한 군사조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넷째, 소통은 국방개혁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 의회 및 국민의 지지와 동의, 건전한 군사조언과 정치지도자의 비판적 수용, 각 군 간 이익의 조정통제를 위해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9. 1. 6, 심사수정일 : 2019. 4. 25, 게재확정일 : 2019. 5. 7)

주제어 : 인도 국방정책, 전쟁의 교훈, 국방개혁, 중인전쟁, 인파분쟁, 카르길전쟁

〈참고 문헌〉

국가안보실. 2018.『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국방부. 2016.『국방백서 2016』. 서울: 국방부.

국방부. 2018.『국방백서 2018』. 서울: 국방부.

고경희. 1997. "인도의 핵정책,"『서남아연구』 제2호.

권영근. 2013.『한국군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 818계획, 국방개혁2020, 국방개혁 307을 중심으로』. 서울: 연경문화사.

김대성, 정광호. 2013. "국방개혁의 법제화 성공요인: Goldwater-Nichols 법안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
『신아세아』, 제77호, http://uci.or.kr/G704-000851.2013.20.4.004

김동한. 2009. "군구조 개편정책의 결정과정 및 요인연구: 818계획과 국방개혁2020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무일. 2005.『프랑스군 개혁의 교훈』,『합참』, 제25호.

김재엽. 2014. "핵무장국 사이의 제한전쟁 수행과 한반도에의 적용: 1999년 인도-파키스탄의 카르길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국제문제연구』 제14권 3호,
http://uci.or.kr/G704-SER000010557.2014.14.3.001

김태형. 2018. "민군관계와 핵전략 발전: 인도와 파키스탄 라이벌 관계의 사례," 제4회 육군력포럼 발표 (2018.6.28.).

김태효. 2013. "국방개혁 307계획: 지향점과 도전요인,"『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권 2호,
http://uci.or.kr/G704-001329.2013.34.2.009

노 훈. 2008. "신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정책 방향,"『전략연구』, 제15권 1호,
http://uci.or.kr/G704-001467.2008.14.42.006

_____. 2012.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
『전략연구』, 제19권 3호, http://uci.or.kr/G704-001467.2012.19.56.002

문인혁, 이강호. 2016. "프랑스 국방개혁의 재평가와 한국군에 정책적 함의,"『한국군사학논집』. 제72집 1호, http://uci.or.kr/G704-SER000001512.2016.72.1.010

박민형. 2012. "국방개혁: 유럽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적 함의,"『국가안보와 전략』,
제12권 3호, http://uci.or.kr/G704-SER000010557.2012.12.3.004

박휘락. 2009. "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국방개혁 2020 추진방향 분석," 『국가

전략』, 제15권 2호, http://uci.or.kr/G704-000434.2009.15.2.005
_____. 2016. “최근 한국군 국방개혁의 계획과 현실 간의 괴리분석,”『국방연구』, 제59권 3호, http://uci.or.kr/G704-001669.2016.59.3.001
손한별. 2016a. “인도 핵개발의 네가지 원동력,”『군사연구』. 제142집, http://uci.or.kr/G704-SER000002076.2016..142.010
_____. 2016b. “파키스탄의 핵태세와 북핵,”『국방과 기술』. 2016.11월.
_____. 2017a. “인도의 Cold Start: 전략적 시공간의 선점,”『국방과 기술』, 2017.10.
_____. 2017b. “핵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강압: 1999년 카르길 전쟁,”『국가전략』, 제23권 4호.
심경욱. 2005. “프랑스군 개혁방향과 정책적 시사점,”『군사논단』, 제43호.
우평균. 2016. “러시아의 국방개혁: 성과와 시사점,”『중소연구』, 제150호, http://uci.or.kr/G704-000471.2016.40.2.008
이미숙. 2018. “한국 국방개혁과 818계획의 교훈,” 『군사』, 제106호, https://doi.org/10.29212/mh.2018..106.127
전제국. 2012. “국방개혁의 쟁점과 과제: 합동성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8권 1호.
한용섭, 김무일. 2006.『프랑스 국방개혁 2015 분석』.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한용섭. 2012.『국방정책론』. 서울: 박영사.
함형필. 2009.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국방정책연구』, 제25권 2호, http://uci.or.kr/G704-001646.2009.25.2.001
홍규덕. 2005.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의 전략적 연계,” 『전략연구』, 제35호, http://uci.or.kr/G704-001467.2005.12.35.005
홍성표. 2005. “프랑스 국방개혁 교훈을 통해 본 한국군 개혁방안,”『신아세아』. 제12권 4호, http://uci.or.kr/G704-000851.2005.12.4.006
황병무. 2009. 『국방개혁과 안보외교: 포괄안보시대의 한국의 선택』. 서울: 오름.
황진하. 2005. “프랑스식 국방개혁 벤치마킹에 문제 없는가,”『군사세계』, 제124호.
Babu, D. Shyam. 2003. “India's National Security Council: Stuck in the Cradle?” *Security Dialogue*, June 2003, https://doi.org/

10.1177/0967010603034002007

Behera, Laxman Kumar, 2010. "Defence Planning in India," *Journal of Defence Studies*, July 2010.

Bhimaya, Kotera M. 1994. "Nuclear Deterrence in South Asia: Civil-Military Relations and Decision-Making," *Asian Survey*, July 1994, https://doi.org/10.1525/as.1994.34.7.00p0409r

Bhutani, Rajeev. 2016. *Reforming and Restructuring: Higher Defence Organization of India*. New Delhi: Centre for Joint Warfare Studies.

Chari, P.R. 2012. "Defence Reforms after 1962: Much Ado about Nothing," *Journal of Defence Studies*, Vol.6, No.4.

Chuter, David. 2004.『국방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쟁점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지침』. 서울: 국방부.

Cohen, Stephen P. and Sunil Dasgupta. 2010. "The Drag on India's Military Growth," *Brookings Policy Briefs*, Sept. 2010.

Das Gupta, Amit R and Lorenz M. Lüthi eds. 2016. *The Sino-Indian War of 1962: New perspectives*. New York: Taylor & Francis, https://doi.org/10.4324/9781315388946

Edmondson, Amy C. 2011. "Strategies for Learning from Failure," *Harvard Business Review*, April 2011.

Fatima, Marium. 2016. "The Kargil War: Contending Perspective,"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28, No.4, http://uci.or.kr/G704-001109.2016.28.4.008

Gino, Francesca and Gary P. Pisano. 2011. "Why Leaders Don't Learn from Success," *Harvard Business Review*, April 2011.

Government of India. 2001. *Reforming the National Security System: Report of the Group of Ministers on National Security*. New Delhi: Government of India.

Jayal, B.D., V.P. Malik, Anit Mukherjee and Arun Prakash, eds. 2012. *A Call for Change: Higher Defence Management in India*.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Jervis, Robert. 1976. *Perceptions and Mispercep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anwal, Gurmeet and Neha Kohli, eds. 2018. *Defence Reforms: A National Imperative*.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Kapur, Ashok. 1976. *India's Nuclear Option: Atomic Diplomacy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Praeger Publishers.

Ladwig III, Walter C. 2009. "Delhi's Pacific Ambition: Naval Power, 'Look East,' and India's Emerging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Asian Security*, Vol.5, No.2, https://doi.org/10.1080/14799850902886476

_____. 2007. "A Cold Start for Hot Wars?: The Indian Army's New Limited War Doctrine," *International Security*, Vol.32, No.3.

Lambeth, Benjamin S. 2012. *Airpower at 18,000': The Indian Air Force in the Kargil War*.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inistry of Defence. 2016. *Transforming India: Key Accomplishments*, July 2016.

Mukherjee, Anit. 2011. *Failing to Deliver: Post-Crises Defence Reforms in India, 1998-2010*.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Noorani, A.G. 2010. *India-China Boundary Problem: History and Diplo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ndia.

Nye, Joseph S. Jr. 1987.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No.3, https://doi.org/10.1017/s0020818300027521

O'Donnell, Frank and Harsh V. Pant. 2015. "Managing Indian Defense Policy: The Missing Grand Strategy Connection," *Orbis*, February 2015, https://doi.org/10.1016/j.orbis.2015.02.003

Pant, Harsh V. 2010. "Indian Defence Policy at a Crossroads," *Asia-Pacific*

Review, May 2010, https://doi.org/10.1080/13439006.2010.482759

Park, Hongseo and Tae-Hyung Kim. 2016. "Great-Power Rivalry and the Nuclear Development of Weak States: The Cases of the Two Korea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6, No.2, http://uci.or.kr/G704-SER000004161.2016.6.2.001

Perkovich, George. *India's Nuclear Bomb: The Impact on Global Prolif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ower, Paul F. ed. 1967. *India's Non-alignment Policy*. Boston: D.C. Health.

Ray, Ayesha. 2013. *The Soldier and the State in India: Nuclear Weapons, Counterinsurgency and the Transformation of Indian Civil-Military Relations*. London: Sage.

Scott, David. 2007. "Strategic Imperatives of India as an Emerging Player in Pacific Asia," *International Studies*, Vol.44, No.2, https://doi.org/10.1177/002088170704400203

Singh, Sampooran. 1971. *India and the Nuclear Bomb*. New Delhi: S. Chand & Co.

Sisodia, N.S. and Sujit Dutta, eds. 2005. *India and the World: Selected Articles from IDSA Journals*.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9. *The Military Balance*. London: IISS.

_____. 2018. *The Military Balance*. London: IISS.

Zarate, Robert and Henry Sokolski. 2009. *Nuclear Heuristics: Selected Writings of Albert and Roberta Wohlstetter*. Carlisl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rmy Chief's Letter to PM: General V.K. Singh Exposes Chinks in Armour," *Times of India* (March 29, 2012).

Gadkari, Nitin. 2017. "India's Defence Policy: Issues & Perspectives," *Bharat Shakti: Self-Reliance in Defence* (March 11, 2017).

Malhotra, Inder. 2000. “A Tale of Two Aruns,” *The Hindu* (May 17, 2000).

Sajjanhar, Ashok. 2016. “2 Years On, Has Modi's 'Act East' Policy Made a Difference for India?,” *The Diplomat* (June 3, 2016).

Unnithan, Sandeep. 2014. "Henderson Brooks report lists the guilty men of 1962," *India Today* (8 April 2014).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영국, 인도, 일본 방문,”『아주경제』(2018.4.8.).

UN PKO 홈페이지 https://peacekeeping.un.org/en.mission/unmogip

www.vifindia.org/article/2012/july/16/naresh-chandra-task-force-s-report-on-national-security-an-appraisal

http://nuclearweaponarchive.org/India/KargilRCA.html

<Abstract>

The India's Defense Reform: Searching for Expertise and Jointness

Sohn, Han-byeol

This article deals with the history of India's defense reform. Particularly on a military level, India has gained momentum for reform as it has experienced several wars. Regardless of whether the war itself ended in success or failure, India has maintained its direction of reform through lessons learned from these war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ports and actual application of the Defense Reform Committees, which were organized right after the war between India and China in 1962,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90, the Kargil War against neighboring Pakistan in 1999, and the multiple terror attacks in the 2000s. Based on this, it analyzes the Indian defense reform's characteristics such as self-reflection and sett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mation of a grand strategy, reorganization of the upper command structure, and maintenance of military balanc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implication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a lesson learned must be drawn from any success or failure to establish a clear direction, and then actively pursue it. Second, in order to adapt to changes in strategic environments, procedures for military strategy planning must be established, and above all, it begins with threat and risk assessment. The planned strategy also needs to be open to Congress and the people at the right level to form a consensus and unite the national power in one direction. Third, at a military level, the military should seek integration of the military while preparing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 faithful military advice on civilian

officials. Finally, the government needs a financial foundation to secure critical military power so that it can respond to any threat. Given that defense reform is aimed at achieving the national security objective in an 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 its importance is emphasized even more today.

Key words : India's Defense Policy, Lessons from War, Defense Reform, Sino-Indian War, Indo-Pakistani Wars, Kargil war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259-290
https://doi.org/10.29212/mh.2019..111.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로마군 공성전의 전술사적 의미*

배은숙**

1. 머리말
2. 아바리쿰과 욱셀로두눔 공격전의 양상
3. 알레시아 포위망의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고대에 군사적 거점이나 행정적 거주지로 선호하는 축성 장소는 높은 곳이었다. 베게티우스(Publius Flavius Vegetius)에 따르면, 높은 지역은 배수와 통풍이 잘되고, 적을 관찰하기 쉽고, 적의 창이나 화살의 공격을 어렵게 하며, 내리막으로 치달으면

* 이 논문은 2017년 계명대학교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타불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공격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1] 한마디로 높은 곳의 성곽이 방어와 공격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성벽으로 둘러싸인 적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공성전을 치러야 한다. 공성을 위해서는 포위망을 구축하거나 땅굴을 파거나 적의 성벽으로 오를 수 있는 장비나 성벽을 파괴하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2] 따라서 축성이나 수성, 공성은 건설 공사와 공성 장비를 동원해야 하므로 한 개인의 군사적 역량이 아닌 전체 군대, 전 국가의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행위이다.

로마가 적국의 성곽을 공략하는 적극적인 공성전을 편 초기의 사례는 기원전 436년 피데나이(Fidenae) 시를 장악하기 위해 땅굴(*cuniculus*)을 판 것, 기원전 417년 라비키(Labici)와 406년 안크수르(Anxur)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을 들 수 있다. 기원전 399년 베이이(Veii) 성벽 밑으로 이어지는 땅굴을 파서 도시를 장악한 것 또한 동일한 사례이다.[3] 기원전 3-2세기 로마-카르타고 전쟁을 치루면서 로마군은 장기간의 공성전을 경험하였다. 기원전 213-211년의 시라쿠사이(Syracusae) 전투, 기원전 210년의 카르타게나(Cartagena) 전투, 기원전 191년의 헤라클레아(Heraclea) 전투, 기원전 133년의 누만티아(Numantia) 전투는 '모든 종류의 비틀림 노포(*genus omne tormentorum*)'를 사용하여 적국에 대항한 대표적인 사례이다.[4]

공성전을 통해 로마의 영토를 넓히게 된 계기 중의 하나는 카이사르(Julius Caesar)의 로마-갈리아 전쟁(기원전 58-51년)이었다. 로마-갈리아 전쟁은 스위스 지역에 거주하던 헬베티족(Helvetii)이 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더 비옥한 지역으로 대거

1)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8.
2) Josephus, *Bellum Judaicum*, 3.7.1-36.
3) Livius, *Ab Urbe Condita* 4.22, 4.47, 4.59, 5.5.
4) Livius, Ab Urbe Condita 24.33, 25.23, 26.42, 36.22; Appianus, Hispanica 90-98.

이주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카이사르는 게르만족, 갈리아 북부에 있던 벨가이족(Belgae)에 대항하였다. 기원전 57년 그는 벨가이족과 인근 네르비이족(Nervii)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복종을 약속받았다. 이와 동시에 카이사르 군대는 브리타니아를 침입했다. 이 일은 서부 갈리아 지역과 브리타니아 사이의 무역을 주업으로 하던 베네티족(Veneti)을 자극했다. 기원전 56년 여름 대서양 연안에서 벌어진 베네티족과의 해전은 카이사르의 승리로 돌아갔다. 기원전 55-54년에는 브리타니아에 재침입하여 카시벨라우누스(Cassivellaunus)를 굴복시켰다. 기원전 54-53년 동안 네르비이족, 트레베리족(Treveri), 에부로네스족(Eburones)과 연이어 전투했다.

기원전 52년 아르베르니족(Arverni)의 지도자인 베르킨게토릭스(Vercingetorix)를 중심으로 하여 중부 갈리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는 아바리쿰(Avaricum) 전투에서는 패배하였지만 게르고비아(Gergovia) 전투에서 카이사르군 백부장 46명을 포함하여 700명을 전사시키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서 베르킨게토릭스는 요새화된 알레시아(Alesia)로 들어갔다. 카이사르는 알레시아를 포위했고, 굶주림에 지친 주민과 병사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생포된 베르킨게토릭스는 카이사르의 개선식 때 전리품으로 전시된 후 처형되었다. 이로써 최종 정복된 갈리아 지역은 로마에 병력을 공급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었다.

기원전 1세기 후반 카이사르군이 치룬 공성전은 총 26번이었고,[5] 그 중 카이사르가 직접 지휘한 공성전은 총 17번이었다. 그 중 갈리아에서 치룬 공성전은 기원전 57년의 노비오두눔

5) 26번의 공성전은 Noviodunum, Veneti, Atuatuci, Alexandrion, Sotiates, Zenodotium, Vellaunodunum, Cenabum, Avaricum, Gergovia, Alesia, Uxellodunum, Pindenissus, Corfinium, Brundisium, Massillia, Utica, Salonae, Oricum, Dyrrachium, Gomphi, Alexandria, 기원전 47년과 45년의 Ulia, Thapsus, Ategua 등이다(Caesar, *Bellum Gallicum*; *Bellum Civile* 1-8; Appianus, *Bellum Civile* 2; Plutarchos, *Caesar* 1-39).

(Noviodunum) 전투와 아투아투키족(Atuatuci) 전투, 기원전 56년의 베네티족 전투와 소티아테스(Sotiates) 전투, 기원전 52년의 벨라우노두눔(Vellaunodunum) 전투, 케나붐(Cenabum) 전투, 아바리쿰 전투, 게르고비아 전투, 알레시아 전투, 기원전 51년의 욱셀로두눔(Uxellodunum) 전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전장은 험난한 지형에 위치해 있어서 공성전이 쉽지 않았다.[6]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치룬 공성전의 전술사적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하나는 카이사르의 로마-갈리아 전쟁을 공성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계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포위망 구축은 헬레니즘 시기부터 있어 왔지만 이것이 제정기 동안 로마 공성전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카이사르 덕택이라는 것이다. 공성전의 대가인 카이사르는 포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병을 활용하여 원군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포위된 적군을 항복하게 만드는 뛰어난 전술을 구사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노소프(K. Nossov)는 로마의 공성전은 카이사르가 완성하였다고 했다. 카이사르는 포병을 정규 부대원으로 편성한 최초의 군사령관이었고, 그의 로마-갈리아 전쟁은 이 시기 로마 공성 전술의 다양성과 무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7]

카이사르의 공성전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도 있다. 캠벨(D. B. Campbell)에 따르면, 군단병들이 매일 행군 후 주둔지를 건설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카이사르 시대에는

---

6) Caesar, *Bellum Gallicum* 7.17, 7.36, 7.69.

7) K. Nossov, *Ancient and medieval siege weapons: a fully illustrated guide to siege weapons and tactics*, Connecticut: The Lyons Press, 2005, 49-50; P. Roth,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New York: Brill Academic, 2012, 316; J. Peddie, *The Roman war machine*, Washington: Sutton, 2004, 156-184; L. Keppie, *The Making of the Roman Army from Republic to Empire*,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80-96; G. Webster, *The Roman Imperial Army of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A.D.*,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240-254.

이미 오래전부터 야전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전술을 사용한 카이사르는 공성 장비를 새롭게 만들지도, 전술을 새롭게 창안해내지도 않았다. 가령 로마 포위전의 전형적인 사례인 알레시아 공성전도 실상은 스키피오(Scipio Aemilianus Africanus)의 누만티아 전투에서 채택한 전술이라는 것이다.[8]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치룬 공성전의 전술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마-갈리아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로마가 싸웠던 공성전의 사례들을 분석,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전술적 결정을 하는 것은 군사령관이고, 군사령관은 자신이나 선임자들의 전쟁 경험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과거 전투에서 사용했던 전술과 기술이 일종의 안내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9] 따라서 기존의 공성전과 로마-갈리아 전쟁의 공성전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파악해야 로마-갈리아 전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갈리아 전쟁이 지속되었던 9년이라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로마-갈리아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카이사르나 갈리아가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유형의 공성전을 치렀는가 하는 문제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투를 치루는 종족이나 지도자의 경험이 축적되는 상황에서 갈리아의 전술을 통합적으로 판단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카이사르의 전술을 통칭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성전을 치루면서 양군의 전술적 변화는 없었는지를 파악한다면 로마의 공성전에서 로마-갈리아 전쟁이 차지하는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

8) T. R. Holmes, *Caesar's Conquest of Gaul*, Oxford: Clarendon Press, 1911, 70-85; D. B. Campbell, *Siege Warfare in the Roman World: 146 BC-AD 378*, Oxford: Osprey Publishing, 2005, 19-26; A. Goldsworthy, *Roman Warfare*, London: Cassell, 2000, 86-87, 100-104.

9) D. B. Campbell, "Teach Yourself How to Be a General," *Journal of Roman Studies* 77, 1987, 13-29.

이에 본고에서는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카이사르가 치룬 공성전을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전술적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다만 본고는 공성전 중 아바리쿰 전투와 욱셀로두눔 전투, 알레시아 전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전쟁 막바지에 치러진 이 전투들이 카이사르가 수년에 걸쳐 갈리아에서 치룬 공성 전술을 집약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아바리쿰과 욱셀로두눔 공격전의 양상

높은 곳이나 진입이 어려운 지형에 위치한 적의 성곽을 장악하기 위한 공성전에는 직접 공격하는 전술이 있다. 이것은 각종 공성기계들(*machinae*)을 투입하여 적의 성곽을 파괴하거나 성벽을 넘어 장악하는 전술이다. 공성기계에 대해 리비우스(Titus Livius)나 암미아누스(Ammianus Marcellinus)는 "비틀림 노포와 기계(*tormenta machinaeque*)", 혹은 "커다란 파성퇴(*arietes, krioi*)를 제외하고 모든 공성기계들이 파괴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비틀림 노포란 양팔이 비트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이나 돌을 발사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다.[10] 또 카이사르는 공성탑(*turris*)을 거대한 공성기계로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공성기계란 포, 파성퇴, 공성탑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11] 이러한 공성기계를 동원한 직접 공격 전술은 살상용, 파괴

10) P. Ole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699-701; D. B. Campbell, *Greek and Roman Artillery 399 BC-AD 363*, Oxford: Osprey Publishing, 2003, 42.

11) Zosimus, *Historia Nova* 1.70, 2.23-26, 3.17-18; Ammianus, *Res Gestae* 20.11, 24.2; Livius, *Ab Urbe Condita* 6.9.2; Caesar, *Bellum Gallicum* 2.12.

용 기계들을 활용하는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적의 성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성벽을 오르거나 성문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아군에게도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전술이다.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카이사르가 직접 공격 전술을 택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바리쿰 전투와 욱셀로두눔 전투이다. 아바리쿰은 한쪽 면을 제외하고 강과 소택지로 둘러싸여 있는 험난한 곳이어서 포위전을 할 수 없었고, 욱셀로두눔에서는 적의 수원을 안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공격전이었다. 카이사르는 아바리쿰에서 아군 보호용 이동로(*vineae*)와 공성탑을 배치하여 아군의 병사들이 작업이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보호용 이동로는 가죽이나 젖은 천으로 덮여 있는 이동로로서 병사들이 적의 화살이나 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흙을 나르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치이다. 공성탑은 "작업한 것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12] 이것은 전나무나 소나무 같은 부드러운 목재로 내부에 사다리와 도개교를 설치하고, 외부는 점토나 가죽으로 덮어 화재에 대비하는 장치였다. 아바리쿰에서 로마군은 너비 330페스(*pes* 97.68m), 높이 80페스(23.68m)의 공성로(*agger*)를 25일 만에 건설하여 적의 성벽 높이만큼 닿게 하였다.

아바리쿰의 공성로가 완성되자 로마군은 화살을 발사하는 포(*scorpio*)를 장착하였고, 이 포에서 발사한 화살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갈리아 병사들을 쓰러뜨렸다. 비트루비우스(Vitruvius)는 스코르피오를 화살을 쏘는 작은 노포라고 하였고, 트라야누스 기둥에 묘사된 것은 비트는 두 팔을 가진 것이었다. 이는 두 팔을 가지고 있지만 발리스타(*ballista*)보다는 작은 크기라는 의미이다.[13] 암미아누스가 오나거(*onager*)를 스코르피오라고 불렀는

12)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75-76; M. Joseph, "Roman Siege Machinery and the Siege of Masada", *2012 AHS Capstone Projects*, 2012, 2-6.

데, 이는 투석하는 뼈대가 전갈의 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이름은 스코르피오가 비트는 뼈대가 기존의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어 공화정 후기나 제정 초기의 것보다 더 작아졌음을 추정케 한다.[14] 욱셀로두눔에서 로마군이 60페스(17.76m) 높이의 공성로를 건설하고, 그 위에 공성탑과 '비틀림 노포(*tormentis*)'를 설치하여 화살을 쏘아대자 도시의 주민들은 물을 길어갈 수 없었다.[15]

아바리쿰과 욱셀로두눔에서 카이사르는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공성로, 포 등은 사용하였다. 로마가 이들 장비들을 사용한 과정을 살펴보자. 로마는 기원전 4세기 베이이 점령과 사트리쿰(Satricum) 전투에서 포위전부터 시작하였다. 베이이에서는 땅굴을 통해, 사트리쿰에서는 사다리를 활용하여 점령하였다. 보호용 이동로를 통해 공성로를 건설하고 작은 공성탑을 배치한 것은 기원전 335년 칼레스(Cales) 전투에서였다. 기원전 293년 아퀼로니아(Aquilonia) 전투에서 처음으로 귀갑대형(*testudines*)을 사용하면서 적의 성곽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로마-카르타고 전쟁을 치루면서 장기간의 공성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 로마군은 기원전 3세기 시칠리아에서 전쟁하면서 파성퇴와 포를 알게 되었다.[16] 기원전 3세기부터 로마-갈리아 전쟁기까지

---

13) Vitruvius, *De Architectura* 10.10; Ammianus, *Res Gestae* 23-24.
14) Heron of Alexandria, *Belopoeica* 7-8; Ammianus, *Res Gestae* 23.4.4-5; W. Gurstelle, *The Art of the Catapult: Build Greek Ballistae, Roman Onagers, English Trebuchets, and More Ancient Artillery*, Chicago: Chicago Review Press, 2004, 19-21; J. Forge, *Designed to Kill: The Case Against Weapons Research*, Switzerland: Springer Nature, 2012, 55-56; V. Tsamakda, *A Companion to Byzantine Illustrated Manuscripts*, Netherlands: Brill Academic Pub., 2017, 109-110.
15) Caesar, *Bellum Gallicum* 7.17-29; Hirtius, *Bellum Gallicum* 8.41.
16) Livius, *Ab Urbe Condita* 6.8, 8.16; Polybius, *Historiae* 1.17-24, 1.42; Diodoro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23-24; K. Nossov, *Ancient and medieval siege weapons*, 44-45.

로마군이 공성전에서 사용한 공성기계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원전 3-1세기 공성전에서 사용된 공성 장비

시기	전투 명	사료	공성 장비
기원전 254년	파노르무스 (Panormus)	Polybius, *Historiae* 1.39; Zonaras, *Epitome Historiarum* 8.14	파성퇴(*krios*)
기원전 250-241년	릴리바이움 (Lilybaeum)	Polybius, *Historiae* 1.41-55; Zonaras, *Epitome Historiarum* 8.15	공성탑, 파성퇴
기원전 214년	카실리눔(Casilinum)	Livius, *Ab Urbe Condita* 28.19	보호용 이동로, 기계들 (*machinae*)
기원전 208년	로크리(Locri)	Livius, *Ab Urbe Condita* 27-28	포, 기계들
기원전 204-203년	우티카(Utica)	Appianus, *Bellum Punicum* 16.30; Livius, *Ab Urbe Condita* 29-35	포, 기계들, 파성퇴
기원전 198년	아트락스(Atrax)	Livius, *Ab Urbe Condita* 32.17-18	파성퇴, 공성탑
기원전 197년	레우카스(Leucas)	Livius, *Ab Urbe Condita* 33.17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파성퇴, 포
기원전 195년	기테움(Gytheum)	Livius, *Ab Urbe Condita* 34.29	보호용 이동로, 파성퇴
기원전 191년	헤라클레아 (Heraclea)	Livius, *Ab Urbe Condita* 36.22-24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파성퇴
기원전 190년	암피사(Amphissa)	Livius, *Ab Urbe Condita* 37.5-7	파성퇴
기원전 189년	암브라키아 (Ambracia)	Livius, *Ab Urbe Condita* 38.4-39.4; Polybius, *Historiae* 21.27-28	보호용 이동로, 파성퇴, 기계들
기원전 156-155년	델미니움 (Delminium)	Florus, 2.25; Zonaras, *Epitome Historiarum* 9.25	포
기원전 149-146년	카르타고 (Carthage)	Appianus, *Bellum Punicum* 80-127; Zonaras, *Epitome Historiarum* 9.26-30	파성퇴, 기계들

기원전 133년	누만티아 (Numantia)	Appianus, *Hispanica* 90-98; Frontinus *Strategemata* 2.8, 4.1, 7.27	포
기원전 108년	탈라(Thala)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75-76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파성퇴
기원전 87-86년	피라이우스(Piraeus)	Appianus, *Bellum Mithridaticum* 30-41; Plutarchos, *Sulla* 12-14	보호용 이동로, 파성퇴, 포
기원전 72년	테미스키라 (Themyscira)	Appianus, *Bellum Mithridaticum* 78	공성탑
기원전 69년	티그라노케르타 (Tigranocerta)	Appianus, *Bellum Mithridaticum* 84-86; Plutarchos, *Lucullus* 26-29	기계들(*mechanai*)
기원전 63년	예루살렘(Jerusalem)	Josephus, *Antiquitates Judaicae* 14; *Bellum Judaicum* 1.141-154	공성탑, 포, 파성퇴
기원전 57년	노비오두눔 (Noviodunum)	Caesar, *Bellum Gallicum* 2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기원전 57년	아투아투키	Caesar, *Bellum Gallicum* 2.30-33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파성퇴
기원전 56년	소티아테스	Caesar, *Bellum Gallicum* 3.21-22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기원전 52년	아바리쿰	Caesar, *Bellum Gallicum* 7.17-32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포
기원전 51년	욱셀로두눔	Hirtius, *Bellum Gallicum* 8.33-44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포

〈표 1〉에서 '기계들'이라는 단어는 사료에서 장비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기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쓴 표현이다. 기원전 3세기부터 로마군이 사용한 공성기계들은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파성퇴, 포가 대표적이었다. 카이사르가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쓴 장비들과 동일하였다. 이는 카이사르가 공성 장비의 종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카이사르가 전개한 공성과정이 일반적인 전술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기원전 3세기부터 치룬 공성전에 대한 사가들의 기록을 볼 때 카실리눔 전투, 로크리 전투, 카르타고 전투, 누만티아 전투의 경우 보호용 이동로나 포를 동원했다는 정도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어 구체적인 전투 상황을 알 수 없다. 우티카 전투, 아트락스 전투의 경우는 공성탑에서 커다란 돌을 발사하였다거나 공성탑 바퀴 하나가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단편적인 상황만 기록되어 있다. 파노르무스 전투, 릴리바이움 전투, 아트락스 전투, 암피사 전투, 레우카스 전투, 탈라 전투의 경우는 공성탑과 파성퇴를 사용하였다고 기록하지만 공성탑을 세우고, 파성퇴로 적의 망루나 성문을 강타했다는 식의 단순한 상황만 언급하고 있다.[17]

기록에서 공성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개의 전투가 있다. 헤라클레아 전투에서 로마군은 며칠에 걸쳐 공성기계들을 장착하였다. 공성로와 보호용 이동로로 공격하였고, 파성퇴로 성문을 강타하였다. 주민들은 공성로를 불태우려고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모아 던졌다. 이러한 공성전이 24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암브라키아 전투에서 공성기계들을 옮긴 후 파성퇴로 적의 성벽을 강타하는 동시에 긴 갈고리로 적의 흉벽을 끌어내리기 시작하였다. 적군이 불화살과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던지고, 파괴된 성벽을 재빨리 보수하자 로마군은 보호용 이동로의 엄호를 받으면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 피라이우스 전투에서 로마군은 우선 성벽에 사다리(*scala*)를 대고 올라가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테베(Thebes)가 포(*katapeltai*)를 제공해 주었고, 이 포가 적군의 공성탑을 파괴하였다. 로마군은 공성로를 건설하였으나 적군의 공격으로 일부 파괴되자 재건설하였다. 로마

17) Livius, *Ab Urbe Condita* 27-35, 37-39; Appianus, *Bellum Punicum* 16.30; Polybius, *Historiae* 1.39; Appianus, *Bellum Mithridaticum* 30-41, 78.

군이 파성퇴로 적의 허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적이 수리하고, 그러면 로마가 재공격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공성탑과 공성기계를 장착하고 성을 파괴시키려는 시도는 예루살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다.[18]

기존의 공성전의 과정을 보면 보호용 이동로로 병사들이 건축자재와 흙을 옮기고, 공성로가 건설되면 공성탑, 파성퇴, 포를 장착하여 적의 성벽이나 성문에 오르거나 파괴하는 방식이었다.[19] 아바리쿰과 욱셀로두눔의 사례에서 볼 때 카이사르 또한 보호용 이동로로 병사들을 이동, 공성로를 건설하게 하였고, 이후 공성탑와 포를 장착, 활용하였다. 이 두 전투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카이사르는 파성퇴도 사용할 줄 알았다. 기원전 57년 그가 아투아투키족에 대한 최후통첩에서 파성퇴가 성벽을 건드리기 전에 항복한다면 부족을 살려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20] 따라서 카이사르의 로마-갈리아 전쟁은 기존에 로마가 치룬 공성전의 전형적인 전개 과정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공성기계의 종류나 공성전의 전개과정이 동일하다면 공성기계를 활용하는 방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바리쿰 전투에서 사용한 공성로와 공성탑의 길이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카이사르가 건설한 공성로는 너비가 330페스(97.68m), 높이가 80페스(23.68m)이지만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다. 피라이우스 전투에서 로마군이 성벽에 사다리를 대려고 했던 높이가 19m인 점,[21] 256-257년 사산조 페르시아가 두라-에우로포스(Dura-Europos)를 장악하기 위해 건설한 공성로가

18) Livius, *Ab Urbe Condita* 36.22-24, 38-39; Polybius, *Historiae* 21.27-28; Appianus, *Bellum Mithridaticum* 30-41; Plutarchos, *Sulla* 12-14.
19) J. Peddie, *The Roman war machine*, 164-165.
20) Caesar, *Bellum Gallicum* 2.32; Cicero, *De Officiis* 1.35.
21) Appianus, *Bellum Mithridaticum* 30-37, 40-41; Plutarchos, *Sulla* 12-14; Velleius Paterculus 2.23.

유적지 발굴을 근거로 볼 때 길이 40m, 높이가 최대 12.5m라는 점[22]을 비교해 볼 때 아바리쿰의 공성로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성로의 크기 외에 그 위치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성전에서 공성로는 적의 성벽과의 거리는 상관없이 단순히 공성기계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릴리바이움 전투나 우티카 전투, 피라이우스 전투처럼 적군이 성 안에서 땅굴을 파고 나와 공성로를 무너뜨리려는 작전이나 헤라클레아 전투처럼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던져 공성로를 불태우려는 작전을 구사할 수 있었다. 또 기원전 147년 카르타고 전투에서 스키피오는 새 주둔지의 위치를 "카르타고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였지만 이곳은 카르타고인들이 성벽에서 5스타디움(*stadium* 925m) 떨어진 곳에 자신들의 또 다른 주둔지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먼 거리였다.[23] 이에 비해 카이사르는 소위 '아바리쿰 방식(Avaricum Style)'[24], 즉 '적의 성벽에 거의 닿을 정도로' 공성로를 건설하였다. 이 공성로를 활용하여 공성탑과 보호용 이동로를 끌어올려 적의 성벽에서 최대한 근접하여 공격할 수 있었다.[25]

카이사르가 적의 성벽에 가깝게 공성기계들을 포진시키려는 이유는 아바리쿰의 성벽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었다. 아바리쿰은 전형적인 갈리아 방식으로 축성되었는데, 돌과 목재를 번갈아 섞은 층을 만들고, 그 틈을 잡석으로 채웠다. 이렇게 되면 돌로 된 부분은 불을 막아주고, 목재로 된 부분은 파성퇴의 공격을

22) J. P. Ole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704.
23) Appianus, *Bellum Punicum* 114.
24) G. Davies, *Roman siege works*, Stroud: Tempus, 2006, 99-104; J. P. Ole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703-704.
25) Caesar, *Bellum Gallicum* 2.30, 7.24-27.

흡수할 수 있었다. 게다가 길이가 40페스(11.84m)인 목재로 안쪽을 보강함으로써 성벽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되어 쉽게 부서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단단한 성벽으로 보호받는 아바리쿰의 성벽에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공성기계를 최대한 가까이까지 접근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카이사르도 로마-갈리아 전쟁 초창기인 기원전 57년에는 적의 성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공성탑을 배치하였다.[26] 하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갈리아족의 축성 방법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는 공성기계의 설치 방식을 바꾸는 형태로 나타났다.

'아바리쿰 방식'은 욱셀로두눔 전투에서도 그대로 실행되었다. 60페스(17.76m) 높이의 공성로 위에 설치한 공성탑을 10층(*decem tabulatum*) 높이로 아주 높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성벽의 높이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최대한 끌어올린 높이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당시의 어떤 기술로도 성벽의 높이만큼 공성탑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10층이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공성전에서 사용한 공성탑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카르타고 전투에서 로마군은 높이 12페스(3.55m)의 토루를 쌓았고, 그 둘레에 공성탑을 배치했을 때 이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공성탑의 높이가 4층이어서 적이 성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일 정도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 361년 아퀼레이아(Aquileia) 전투에서 로마군이 사용한 공성탑의 높이도 2층에 불과했다.[27]

카이사르가 아바리쿰이나 욱셀로두눔에서 공성로, 공성탑, 포

---

26) Caesar, *Bellum Gallicum* 7.23; J. Levithan, *Roman Siege Warfare*, Michigan: The University Michigan Press, 2013, 205; H. Skaarup, *Siegecraft: No Fortress Impregnable*, Indiana: iUniverse, Inc. 2003, 38-40; J. Peddie, *The Roman war machine*, 156-161.

27) Appianus, *Bellum Punicum* 119; Ammianus, *Res Gestae* 19.8, 21.11-12, 24.10; W. Gurstelle, *The Art of the Catapult*, 12.

공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또 다른 이유는 로마군의 공격에 대항한 갈리아족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노비오두눔 전투에서 공성탑이 설치되자 갈리아군은 "그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대한 공성기계와 로마군의 빠른 작업 속도에 놀라 협상하였다. 아투아투키족과의 전투에서 로마군이 보호용 이동로를 이용하여 공성로를 쌓고, 멀리 떨어진 곳에 공성탑을 설치하자 갈리아족은 비웃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런 거대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웃기고, 작은 체구의 로마군이 그렇게 무거운 탑을 성벽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갈리아족은 로마군이 그렇게 높은 장비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보자 강화를 제의했다. 이처럼 갈리아족은 로마군의 공성 장비와 빠른 작업 속도에 놀랐다.[28]

로마군의 공격에 대해 갈리아족의 대응은 초창기 방패로 머리를 가리고 접근하면서 돌을 던지거나 땅굴을 파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갈리아 지역에 광산이 많아 땅굴을 파는 데는 유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들과 다른 공성전을 펼치는 로마군에 놀라던 갈리아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과 땅굴에 의존하는 것 외에 로마군 방식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사료에 갈리아족이 "아군의 전투 방식에 따라", "아군의 포로들이 가르쳐 준대로", "남의 것을 모방"한다는[29] 표현이 눈에 띈다. 이는 갈리아족의 전술적 모방 가능성을 추측케 한다. 왜냐하면 적과 전쟁하면서 적의 방식을 배우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공성전과 관련한 로마의 공학기술에 대해 기원전 25년경 비트루비우스는 기계에 관해 글을 쓴 사가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용한 사료는 그리스인들이 출판한 것이고, 로마의 것은 거의 없다고 한탄하였다. 그리스의 것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28) Caesar, *Bellum Gallicum* 2.12, 2.30-31.
29) Caesar, *Bellum Gallicum* 3.23, 5.42, 5.52, 7.22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디오도루스(Diodorus Siculus) 또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에게 공성 기술을 배웠다고 하였다. “항상 스승을 능가하는 학생들”이었던 로마인들은 이제 스승의 도시들에게 명령한다.[30] 로마가 그리스로부터 공성기계와 방법을 배웠지만 그 배운 전술로 그리스를 장악했음을 뜻한다. 적의 전술을 모방한 또 다른 사례로 사산조 페르시아를 들 수 있다. 베게티우스는 사산조 페르시아인들이 로마인들의 뛰어난 성곽 건설 능력을 모방하여 해자로 둘러싸인 성벽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또 359년 로마군의 성곽인 아미다(Amida)를 사산조 페르시아가 공략할 때 비틀림 노포를 사용하였는데, 이 포는 신가라(Singara)에서 로마의 포를 약탈한 것이었다.[31]

로마군의 전투 방식을 모방한 갈리아족은 이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주둔지를 요새화하였고, 로마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술을 쓸 줄 알았다. 급기야 기원전 54년 네르비이족은 세 시간도 안 되어 3밀레 파수스(*mille passus*=5,000pes 4.44km)의 방벽을 쌓았을 뿐 아니라 로마군 포로들에게 배워 로마군의 공성로의 높이에 맞추어 공성탑과 보호용 이동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물론 갈리아족이 로마군에게서 공성 전술을 익히기는 했지만 자재가 부족하고, 적합한 작업도구가 없어서 부실하기는 했다. 하지만 갈리아족이 로마식 공성 장비를 건설, 제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로마가 기술적 우위나 전술적 독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로마군이 높은 공성탑을 설치하면 갈리아군은 자신들의 공성탑을 더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카이사르가 갈리아족이 만들어 놓은 공성탑과 방어용 덮개, 토루를 보고 놀랄 정도로 로마군의 기술적 우위는 사라져가고 있었다.[32]

---

30) Vitruvius, *De Architectura* 7. praefatio 14;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23.2.5-6.
31) Ammianus, *Res Gestae* 20.11.11;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10.
32) Caesar, *Bellum Gallicum* 1.12-13, 3.21-22, 5.42, 5.52, 7.22; K.

이처럼 갈리아족의 대응력이 높아져 갔기 때문에 아바리쿰이나 욱셀로두눔의 공성로와 공성탑의 길이나 높이에서 보듯이 카이사르는 전쟁 막바지에 더 정교하고, 보다 더 치밀하게 전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에서 새로운 공성 장비나 독창적인 전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적의 상황에 대응하면서 현실적, 실용적인 전술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3. 알레시아 포위망의 의미

적의 성곽을 공격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적의 성곽을 포위하면서 적의 군수품 공급을 차단하고, 고립시켜 장악하는 간접적인 점령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전술의 이점은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적은 병력으로 적의 공격이나 탈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위망 구축은 아군에게 엄청난 강도의 육체적인 노동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적의 탈출과 공격에 대한 심리적인 긴장감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다.[33] 전투 사례로 게르고비아에서는 너무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 있어서 접근이 어려워 군량을 확보한 뒤 포위전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벨라우노두눔에서도 도착 후 바로 성곽을 포위하였고, 사흘 뒤 항복 협상을 요청받았다. 73년 마사다를 장악한 실바(Lucius Flavius Silva) 또한 높은 절벽으로 되어 있는 동쪽, 남쪽, 북쪽을 제외하고 경사가 완만한 서쪽 면에 포위

Nossov, *Ancient and medieval siege weapons*, 53-54; J. Levithan, *Roman Siege Warfare*, 130-135.

33) Onesandros, *Strategikos* 40.2-4; S. E. Phang, I. Spence, eds., *Conflict in Ancient Greece and Rome: The Definitive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Encyclopedia*, California: ABC-CLIO, 2016, 1213; J. Levithan, *Roman Siege Warfare*, 63-71.

망을 구축하여 점령하였다.[34]

포위망을 활용하여 적지를 점령한 대표적인 사례는 알레시아 포위전이었다. 알레시아는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포위전을 하지 않고는 함락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카이사르의 기록에 따르면, 먼저 15페스(4.44m) 너비의 해자를 두 개 파고, 강에서 물을 끌어와 채웠다. 그 뒤에 로마군이 방어를 위해 6페스(1.776m)의 방벽을 11밀레 파수스(16.28km)에 걸쳐 세웠다. 이 공사가 완성되자 카이사르는 훨씬 바깥쪽의 평평한 지형을 따라 14밀레 파수스(20.72km)의 방벽을 만들었다.[35]

카이사르는 알레시아 주민들과 면해 있는 쪽에 포위망을 구축하고,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 해자와 말뚝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로마-갈리아 전쟁 이전의 공성전에서 사용한 장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표 2〉와 같다.

〈표 2〉 기원전 3-1세기 공성전에서의 건설공사 목록

시기	전투 명	사료	공사 종류
기원전 262-261년	아그리겐툼 (Agrigentum)	Polybius, *Historiae* 1.17-19; Zonaras, *Epitome Historiarum* 8.10	두 개의 해자
기원전 254년	파노르무스	Polybius, *Historiae* 1.39; Zonaras, *Epitome Historiarum* 8.14	해자와 말뚝 울타리
기원전 250-241년	릴리바이움	Polybius, *Historiae* 1.41-55; Zonaras, *Epitome Historiarum* 8.15	해자와 말뚝 울타리
기원전 212-211년	카푸아(Capua)	Appianus, *Hannibalica* 37-43; Livius, *Ab Urbe Condita* 25-26	이중해자와 말뚝 울타리로 이중포위망

34) Caesar, *Bellum Gallicum* 2.30-33, 7.11; Josephus, *Bellum Judaicum* 7.276-280.

35) Caesar, *Bellum Gallicum* 7.69-74; Hirtius, *Bellum Gallicum* 8.9; G. Davies, *Roman siege works*, 41-42.

기원전 208년	로크리	Livius, *Ab Urbe Condita* 27-28	작업 가능성
기원전 207년	오론기스(Orongis)	Livius, *Ab Urbe Condita* 28.3	이중해자와 말뚝 울타리
기원전 199년	오레우스(Oreus)	Livius, *Ab Urbe Condita* 31.17	작업 가능성
기원전 189년	암브라키아	Livius, *Ab Urbe Condita* 38.4-39.4; Polybius, *Historiae* 21.27-28	두 개의 주둔지에 해자와 말뚝 울타리
기원전 149-146년	카르타고	Appianus, *Bellum Punicum* 80-127; Zonaras, *Epitome Historiarum* 9.26-30	이중해자와 말뚝 울타리
기원전 133년	누만티아	Appianus, *Hispanica* 90-98; Frontinus *Strategemata* 2.8, 4.1, 7.27	이중해자와 말뚝 울타리로 이중포위망
기원전 108년	탈라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37-38	해자와 말뚝 울타리
기원전 87-86년	아테네(Athens)	Appianus, *Bellum Mithridaticum* 30-39; Plutarchos, *Sulla* 12-14	해자
기원전 82년	프라이네스테 (Praeneste)	Appianus, *Bellum Civile* 1.87-94; Plutarchos, *Sulla* 29-32	방벽과 해자
기원전 75년	이사우라 베투스 (Isaura Vetus)	Sallustius, *Historiae* 2; Frontinus *Strategemata* 3.7	방벽 가능성
기원전 69년	티그라노케르타	Appianus, *Bellum Mithridaticum* 84-86; Plutarchos, *Lucullus* 26-29	해자
기원전 57년	아투아투키	Caesar, *Bellum Gallicum* 2.30-33	말뚝 울타리와 주둔지
기원전 52년	게르고비아	Caesar, *Bellum Gallicum* 7.36-53	해자와 주둔지
기원전 52년	알레시아	Caesar, *Bellum Gallicum* 7.69-89; Dio, 40.39-40	이중해자와 말뚝 울타리로 이중포위망
기원전 51년	욱셀로두눔	Hirtius, *Bellum Gallicum* 8.33-44	말뚝 울타리와 주둔지

〈표 2〉에서 보듯이 해자나 이중해자, 말뚝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포위전의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베게티우스에 따르면, 포위하려는 군대는 적의 발사물의 사정거리를 넘어서 해자를 만들고, 망루, 말뚝과 같은 시설을 지어야 적의 성곽에서 행하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방벽(*loricula*)'이라고 한다.[36] 이것은 정확히 도시 전체를 완벽하게 포위하는 포위망이라기보다는 주둔지를 연결하여 적의 출입을 차단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아그리겐툼에서 로마와 동맹군 10만 명이 적의 주둔지에서 8스타티움(1.48km) 떨어진 곳에 큰 주둔지를 건설하였지만 적의 급습으로 주둔지를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군대를 나누고, 도시 반대편에 두 개의 주둔지를 건설, 참호로 연결하였다. 릴리바이움 또한 해자와 말뚝 울타리로 주둔지를 연결하였다. 카르타고 전투에서도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시 앞에 주둔지를 설치했다가 밤에는 도시로 철수하기를 반복하면서 만에서 25스타디움(4.63km)에 걸쳐 이중해자와 말뚝 울타리를 쳤다.

기존의 해자와 울타리에 비해 알레시아 포위망의 특이점은 이중삼중의 방어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카이사르는 방벽을 따라 12페스(3.55m) 높이의 망루를 80페스(23.68m) 간격으로 세웠다. 방어벽 앞에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였다. 하나는 나무 밑동과 나무 가지를 잘라 끝을 뾰족하게 하여 5페스(1.48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박았다. 그 앞에는 'V'자형의 구덩이를 3페스(0.888m) 깊이로 파고, 뾰족한 말뚝을 박고, 잔가지와 덤불을 덮어 함정으로 위장하였다. 그 앞에 쇠갈고리가 박혀 있는 통나무들을 묻어 두었다. 과거 이중해자와 울타리를 설치한 전례가 있었지만 해자, V자형 구덩이, 나무 덤불 등과 같은 여러 겹의 방어시설은 기존의 포위전에서 찾아볼 수

36)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4.28.

없는 정교한 장치였다.[37]

알레시아 포위전의 또 다른 특징은 포위망의 수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포위망을 구축하지만 알레시아에서는 각각 11밀레 파수스와 14밀레 파수스인 2개의 포위망을 설치하였다. 이를 구분하여 전자는 병사들이 지키는 망루가 설치되어 있는 내부 포위망(circumvallation), 후자는 아군 배후에서 원군이 아군을 포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외부 포위망(contravallation)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카이사르가 이중포위망(bicircumvallation)을 구축한 것이다.[38]

이중포위망을 구축한 것이 카이사르가 최초의 사례는 아니다. 가령 카푸아 전투에서 로마의 군사령관들(Q. Fulvius Flaccus, A. Claudius)은 카푸아를 포위하는 방벽과 그 바깥의 적을 향한 방벽을 세웠다. 포위하고 있는 방벽과 카푸아 사이의 공간은 2스타디움(370m)이었다고 한다.[39] 하지만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는지, 아니면 출입이 용이한 특정 지역에 이중포위망을 구축했는지, 이중포위망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누만티아 전투도 이중포위망의 사례이다. 스키피오는 개방된 전쟁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만티아 주민들을 아사시키는 봉쇄 작전을 구사하였다. 스키피오는 도시 가까이에 두 개의 주둔지를 건설하게 한 후 본격적인 포위망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중포위망이었다. 스키피오는 7개의 주둔지를 건설하는 동시에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자를 파고 말뚝 울타리를 세우고, 그 뒤에 제2의 해자와 울타리가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포위망의 울타리 길

37) Y. Le Bohec, The Imperial Roman Army, London: Routledge, 2000, 134-140.
38) J. P. Ole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703; G. Davies, *Roman siege works*, 63.
39) Appianus, *Hannibalica* 37-38.

이는 50스타디움(9.25km), 너비는 8페스(2.47m), 높이는 10페스(3.1m)였고, 1플레트론(*plethron* 30.8m)마다 망루가 세워져 있었다. 이중포위망의 또 다른 사례는 기원전 41-40년의 페루시아(Perusia) 전투이다. 옥타비아누스(G. Octavianus)는 도시를 둘러싸고 15페스(4.4m)의 해자와 56스타디움(10.4km) 길이의 방벽을 건설하였고, 60페스(17.76m) 간격으로 1,500개의 망루를 세웠다.[40]

누만티아와 페루시아의 사례와 비교할 때 알레시아의 포위망은 두 배 정도 길었다. 물론 길이만 놓고 본다면 알레시아 포위망이 가장 긴 것은 아니었다. 크라수스(M. Licinius Crassus)가 스파르타쿠스(Spartacus)의 군대를 쫓으면서 레기움(Regium) 반도로 갔을 때 그 지협에 방벽을 쌓기 시작하였다. 이때 해자의 깊이가 15페스였고, 그 길이가 300스타디움(55.5km)에 달했다. 알레시아 외부포위망의 두 배가 넘는 길이였다. 하지만 이것은 병사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나태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과 적의 군수품 공급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건설된 것으로써[41] 공성전에서 구축하는 포위망과는 달랐다. 따라서 포위망으로서 알레시아 포위망의 길이는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포위망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병력의 규모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건설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으면 포위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기원전 254년 파노르무스 전투에서 포위망을 구축할 때 로마군은 6만 명, 카르타고군은 몸값을 지불한 14,000명, 전리품으로 팔린 13,000을 합쳐 총 27,000명이었다. 욱셀로두눔 전투에서 카이사르군은 15,000명의 적군에 비해 4개 군단 이상, 즉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적인 우위에 있었다. 기원전 49년 트레보

40) Appianus, *Hispanica* 97; *Bellum Civile* 4.32-38.
41) Plutarchos, *Crassus* 10.7-8; Appianus, *Bellum Civile* 1.118-119.

니우스(Gaius Trebonius)의 마실리아(Massilia) 전투에서 두 개의 공성로를 건설하였고, 그 중 하나는 80페스(23.68m)에 달하였다. 이때 트레보니우스는 적군 8,000명에 비해 총 3개 군단, 최소한 15,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였다. 67년 요타파타(Jotapata) 전투에서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us)는 기병과 보병 일부를 보내 공성로를 닦도록 했고, 병사들은 4일 만에 좁고 험한 길을 평탄한 대로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공성로만으로 성벽을 공격하기 쉽지 않자 로마군은 요타파타 성곽의 맞은편에 토루를 쌓았다. 로마군의 토루가 점점 높아지자 유대인도 성벽을 더 높게 쌓아 공격 작전이 쉽지 않았다. 이때 4만 명 정도의 요타파타 병력에 비해 베스파시아누스에게는 6만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42] 이들 사례들은 포위하는 측의 병력이 수적 우세를 점하여 토루나 공성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한 사례이다.

하지만 포위망 건설은 단순히 병력의 규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아그리겐툼 전투, 카르타고 전투, 알레시아 전투는 적의 병력보다 적은 상태에서 포위망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아그리겐툼에서 로마군은 4만 명 정도이고, 카르타고 군은 5만 명 정도였다. 카르타고 전투에서는 로마군 84,000명이 4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를 포위하였다. 카이사르의 기록에 따르면, 알레시아에 정예 부대가 8만 명, 베르킨게토릭스를 구하러 온 원군은 보병 25만 명, 기병은 8천 명에 달하였다. 플루타르코스(Plutarchos)는 알레시아에 있는 적군의 수는 총 17만 명이고, 원군은 총 30만 명이라고 하였다. 로마군은 10개 군단으로서 보조군과 합쳐 5만 명 정도였다.[43] 이처럼

42) Polybius, *Historiae* 1.39-40; Caesar, *Bellum Gallicum* 7.25; Hirtius, *Bellum Gallicum* 8.33-37; Caesar, *Bellum Civile* 2.8.9; Vitruvius, *De Architectura* 10.16.11; Josephus, *Bellum Judaicum* 3.7; M. Joseph, "Roman Siege Machinery and the Siege of Masada", 2.

43) Livius, *Ab Urbe Condita* 26.4; Diodoros Siculus, *Bibliotheca*

적군에 비해 열세거나 우세거나 상관없이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을 볼 때 이중포위망, 혹은 긴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은 병력 규모와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

알레시아에서 로마군이 정교한 이중포위망 체제를 구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베르킨게토릭스와 갈리아 원군의 접촉 차단에 있었다. 알레시아 서쪽 평지에 갈리아 원군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포위된 알레시아 주민의 탈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갈리아 원군이 로마군의 배후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중포위망과 해자, 구덩이, 말뚝, 덤불로 여러 겹의 방어시설을 구축한 배경에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왜냐하면 아그리겐툼 전투에서 로마군이 도시에서의 공격과 배후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도시로 유입되는 군수품을 차단하기 위해 남쪽과 서쪽에 두 개의 주둔지를 건설하고, 해자로 두 개의 주둔지를 연결했지만 이중포위망이나 여러 겹의 방어시설을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44]

베게티우스는 훌륭한 군 지휘관이라면 아군의 노출 없이 치밀하게 적을 파괴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교한 작전을 사용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45] 아군의 노출 없이 적을 파괴하려면 아군을 보호하면서 적의 성향에 맞는 장치가 필요하다. 베게티우스의 말을 참조할 때 알레시아의 정교한 포위망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로마군의 건설 능력에 대한 갈리아족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Historica 23.8; Polybius, *Historiae* 1.17-19; Zonares, *Epitome Historiarum* 8.10; Caesar, *Bellum Gallicum* 7.68-90; Plutarchos, *Caesar* 27.2-5; L. Keppie, *The Making of the Roman Army from Republic to Empire*, 80-101.

44) Polybius, *Historiae* 1.17-19; Diodoro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23.9; Zonaras, *Epitome Historiarum* 8.10.

45)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8.

로마-갈리아 전쟁 초창기인 기원전 58년 카이사르가 헬베티족의 남은 군대를 추격하려고 아라르(Arar) 강에 단 하루 만에 다리를 건설하여 도하했다. 헬베티족은 자신들이 20일 걸려 건넜던 강에 로마군이 하루 만에 갑자기 나타나자 당황하였다. 아퀴타니족(Aquitani)은 자국에 채석장이 있어서 땅굴을 파는데 능했지만 땅굴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자 당황하여 항복하였다. 기원전 56년 보카테스족(Vocates)과 타루사테스족(Tarusates)은 자신들의 요새화된 도시를 로마군이 단 며칠 만에 함락하자 놀라 평화사절단을 파견하였다.[46] 이러한 사례들은 로마-갈리아 전쟁 초기 갈리아족이 땅굴 공사에는 능했지만 지상 작전에서 도하나 포위망 구축에는 취약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로마군이 당시 정교한 포위망을 건설하지 않아도 갈리아족을 포위전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에 있었음을 반영한다.

갈리아족은 처음의 당황스러움에서 차츰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기원전 54년 네르비이족이 10페스(2.96m) 높이의 방벽과 15페스(4.44m) 너비의 해자로 키케로(Quintus Cicero)의 겨울 주둔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갈리아족이 로마의 군사령관이었던 세르토리우스(Quintus Sertorius) 휘하에서 복무하여 노련하였던 군인들을 자신들의 지휘관으로 영입하여 로마군의 전투 방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로마군과 싸우면서 로마군의 건설 방법을 눈여겨보았고, 포로로 잡은 로마군 병사들에게 캐물어 배워서 익혔던 것이다. 물론 건설 도구들이 변변치 않아 맨손으로 땅을 파고, 흙을 옷에 담아 퍼 나를 정도로 속도와 정교함은 떨어졌지만 이런 포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카이사르를 놀라게 하였다.[47]

---

46) Caesar, *Bellum Gallicum* 1.12-13, 3.21-23.
47) Caesar, *Bellum Gallicum* 3.23, 5.42-52.

갈리아족은 전쟁을 하면서 로마군의 해자, 망루, 주둔지, 포위망과 같은 토목건설 기술을 경험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로마군의 기술을 습득하였던 것이다. 카이사르는 갈리아족이 자체적으로 재주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고, 그렇게 배운 것을 응용하기까지 하는 재능을 가졌다고 기록하였다.[48] 카이사르의 기록처럼 갈리아족은 로마군의 기술을 습득하였고, 이를 실제로 응용하여 로마군을 도리어 포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막바지인 알레시아 전투에서는 단일의 포위망이나 간단한 방어 시설로 포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로마군의 포위전을 파악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포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알레시아 전투는 카이사르가 기존에 없는 포위망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적과 대응하면서 기존에 비해 좀 더 정교하고, 더 치밀한 포위망을 구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전술을 창안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전술의 활용성을 높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베게티우스는 "적은 수의 로마군이 다수의 갈리아족을 어찌 대항할 수 있었겠는가?"하면서 그 배경에는 병력 규모나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기술과 지속적인 훈련이 있었다고 하였다. "화려한 무기는 적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그의 말도 무기 제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49] 공성전에서 공성기계는 처음에 갈리아족을 당황시켜 항복을 이끌어냈지만 전투가 지속되면서 로마군의 기계와 전술에 익숙해진 갈리아족이 격렬히 대응하면서 전투는 쉽지 않았다. 로마식의 해자, 망루, 포위망을 구축할 줄 아는 갈리아족을 상대하기 위해 카이사르는 공성기계와 포위망을 더 정교하고, 더 치밀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군지휘관으로서 카이사르의 장점

48) Caesar, *Bellum Gallicum* 7.22.
49)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1.1, 2.14.

은 새로운 무기나 전술을 창안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무기나 전술의 적합성을 높였다는데 있다.

4. 맺음말

카이사르가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치룬 공성전 중에서 공성기계를 동원한 대표적인 전투는 아바리쿰 전투와 욱셀로두눔 전투이고, 포위망을 구축한 전투는 알레시아 전투이다. 아바리쿰과 욱셀로두눔에서 카이사르는 보호용 이동로로 병사들을 이동시켜 공성로를 건설하게 한 후 공성탑, 파성퇴, 포를 장착하여 적의 성벽을 넘거나 파괴하는 일반적인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전의 전술과 다른 점은 공성로와 공성탑을 최대한 적의 성벽 가까이에, 성벽의 높이까지 장착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갈리아의 성벽이 돌과 목재로 겹겹이 채워져 불이나 파성퇴의 공격에 잘 견뎠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에 붙여야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또 갈리아족이 전쟁 초창기에는 로마군의 공성 방식에 생소하여 당황하였으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로마군의 방식을 모방하여 로마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제 로마가 기술적 우위나 전술적 독창성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정교하고, 최대한 치밀하게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알레시아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해자와 말뚝으로 울타리를 치는 기존과 유사한 포위망 전술을 구사하였다. 다만 해자, V자형 구덩이, 말뚝, 덤불 등으로 더 정교하게 적의 출입을 차단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게다가 알레시아 주민을 감시하는 내부 포위망과 배후에서 원군의 공격 가능성을 대비하는 외부 포위망으로 된 이중포위망을 구축하였다. 이 또한 기존에 로마군이 사용했

던 장치였다. 다만 그 길이를 더 길게 만들어 포위하고 있는 적군의 출입과 원군의 지원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정교한 포위망을 구축한 이유는 병력면에서 원군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갈리아족의 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갈리아족이 로마군의 방식을 모방하고, 포로로부터 로마식의 해자, 망루, 주둔지, 포위망을 구축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로마군의 전술을 파악하게 된 갈리아족에 대항하기 위해 카이사르는 갈수록 더 정교한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볼 때 카이사르가 새로운 공성기계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공성 전술을 창안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공성기계와 공성 전술을 현지에 맞게, 적의 대응에 맞게 개선하여 전투력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술의 실용적 측면을 더 높였던 것이다.

로마가 그리스로부터 공성기계와 전술을 배웠듯이 갈리아와 사산조 페르시아는 로마와 긴 전쟁을 하면서 공성 전술을 배웠다. 하지만 이것은 갈리아와 사산조 페르시아에게만 일방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로마 또한 기술적, 전술적으로 발전하였다. 갈리아족이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항복하다가 차츰 로마의 공성 전술에 익숙하고 모방하면서 대응력을 향상시키자 로마 역시 공성기계의 정확도를 위해 높은 공성로와 공성탑을 장착하고, 더 치밀한 포위망을 구축해 나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공성전은 로마와 갈리아 양군의 기술적, 전술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9. 3. 22, 심사수정일 : 2019. 4. 25, 게재확정일 : 2019. 5. 7)

주제어 : 공성전, 공성로, 공성기계, 해자와 망루, 이중포위망, 전술적 모방

〈참고 문헌〉

1차 사료

Ammianus, *Res Gestae*.

Appianus, *Bellum Civile*.

Appianus, *Hispanica*.

Caesar, *Bellum Gallicum*.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Josephus, *Bellum Judaicum*.

Livius, *Ab Urbe Condita*.

Polybius, *Historiae*.

Plutarchos, *Caesar*.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Vitruvius, *De Architectura*.

Zonaras, *Epitome Historiarum*.

Zosimus, *Historia Nova*.

2차 사료

Campbell, D. B., "Teach Yourself How to Be a General," *Journal of Roman Studies* 77, 1987, 13-29.

————————, *Greek and Roman Artillery 399 BC-AD 363*, Oxford: Osprey Publishing, 2003.

————————, *Siege Warfare in the Roman World: 146 BC-AD 378*, Oxford: Osprey Publishing, 2005.

Davies, G., *Roman siege works*, Stroud: Tempus, 2006.

Forge, J., *Designed to Kill: The Case Against Weapons Research*, Switzerland: Springer Nature, 2012.

Goldsworthy, A., *Roman Warfare*, London: Cassell, 2000.

Gurstelle, W., *The Art of the Catapult: Build Greek Ballistae, Roman Onagers, English Trebuchets, and More Ancient Artillery*, Chicago: Chicago Review Press, 2004.

Joseph, M., "Roman Siege Machinery and the Siege of Masada", *2012 AHS Capstone Projects*, 2012, 1-14.

Keppie, L., *The Making of the Roman Army from Republic to Empire*,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Le Bohec, Y., *The Imperial Roman Army*, London: Routledge, 2000.

Levithan, J., *Roman Siege Warfare*, Michigan: The University Michigan Press, 2013.

Nossov, K., *Ancient and medieval siege weapons: a fully illustrated guide to siege weapons and tactics*, Connecticut: The Lyons Press, 2005.

Oleson, J. P.,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eddie, J., *The Roman war machine*, Washington: Sutton, 2004.

Phang, S. E. & Spence, I., eds., *Conflict in Ancient Greece and Rome: The Definitive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Encyclopedia*, California: ABC-CLIO, 2016.

Roth, J. P.,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New York: Brill Academic, 2012.

Skaarup, H., *Siegecraft: No Fortress Impregnable*, Indiana,: iUniverse, Inc. 2003.

Tsamakda, V., *A Companion to Byzantine Illustrated Manuscripts*, Netherlands: Brill Academic Pub., 2017.

Webster, G., *The Roman Imperial Army of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A.D.*,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Abstract>

The Implication of the Roman Siege Warfare from the Tactical Point of View in the Gallic Wars

Bae, Eun-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historical meaning of tactics by analyzing the cases of Caesar 's siege in the Gallic Wars. In the case of the Battle of Avaricum and Uxcellodunum, Caesar had carried out a general operation of moving soldiers on a protective transport route, and destroying enemy walls by mounting a siege tower, a battering ram, and a ballista. The uniqueness of Caesar's tactic was to mount the embankment and siege tower as close as possible to the enemy's wall. The reason is that the walls of Gaul were filled with rocks and timbers and they were able to withstand fire or wave attacks. Another reason is that the Gallic tribes were embarrassed by the unfamiliarity of the siege of the Roman army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but as the war proceeded, they responded in Roman style by imitating the Roman way.

In the battle of Alesia, Caesar used the past siege tactics of fencing with moats and piles. He blocked the enemy's entry with a device like a moat, a V-shaped pit, and a pile. In addition, Caesar had built up a circumvallation that monitors Alesia residents and a contravallation that blocks the possibility of an attack behind. The so-called 'bicircumvallation' was constructed. This was also a device that the Roman army had used before. However, it made the length longer and blocked the possibility of external and internal attacks. This sophisticated

encirclement was built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the armed forces, and because of the improved tactical capacity of the Gallic tribes.

In the case of the siege of the Gallic Wars, Caesar did not invent new siege machines or develop new siege warfare tactics. However, he improved the existing siege machine and siege warfare tactics to suit the enemy situation, thereby improving the combat power of the Roman army. He had increased the practical aspect of tactics. Therefore, the Gallic Wars could be seen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siege tactics in both Rome and Gallia.

Key words : Siege warfare, embankment, siege machines, ditch and rampart, bicircumvallation, tactical imitatio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291-304
https://doi.org/10.29212/mh.2019..111.8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북한사, 북소관계

기광서 저,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선인, 2018)

이재훈*

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순간 해방이 되었고, 해방된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보기도 전에 한반도의 정체성을 자신의 의지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틈바구니에 끼어들게 되었다. 이후 한반도는 내외부 세력이 복합적으로 참여하여 펼치는 권력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 되었고, 분단을 겪게 되었으며, 종국에는 한반도의 남과 북을 점유한 상처 입은 반쪽 국가들이 열강의 간섭과 지원을 등에 업은 채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비극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해방 이후 벌어졌던 이러한 급격하고 어지러운 변화의 본질은 제2차 세계대전 수행을 위한 연합국들의 전시외교와 종전 후 미국,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소련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만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해방이 한국인 자체의 역량이 아닌 외부의 충격, 즉 연합국의 전쟁 수행에 의해 주어진 바가 크고, 해방의 결정적 주체가 종전 후 국제질서 재편을 놓고 세기의 대결을 벌이게 되는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었으며, 한반도와 관련된 양국 정책의 주안점이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 유지하면서 타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는 이른바 패권주의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 한반도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미국과 소련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이제 일본이 퇴장하고 자신들이 그 빈 자리를 채우게 될 동아시아 무대에 대한 앞으로의 영향력 확대와 패권 수립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한반도가 하나의 유의미한 실체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해방, 분할점령과 분단, 전쟁 등 해방 이후 전개되는 총체적 변동을 탐구하는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지배세력인 미국과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본 모습을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은 세계 도처의 다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 한반도의 변화를 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연결시켜 가치 있는 많은 연구물을 생산해냈다.

그러한 연구자들 중에서 이 책의 저자인 기광서 교수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러시아(문서보관소)의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사와 해당 시기 북소관계를 정리하고 규명해 낸, 그리고 현재도 동 분야의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이다. 그는 옛 소련이 해체된 이

후 한창 체제전환의 과정을 거치고 있던 1990년대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동방학연구소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과 소련의 역할(1945-1947년)」/Формирова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оль СССР(1945-1947 гг.)/이라는 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이 책의 말미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북한사와 북소관계를 아우르는 다수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 책은 그러한 저자의 연구 성과가 오롯이 녹아들어 있는 역작이다.

Ⅱ

저자는 이 책에서 해방 이후 북한정부 수립과 소련군 철군까지 3년여의 기간 동안 어떠한 북소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형성되어갔는지 그 진상을 세밀하게 복원해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방부터 북한 국가 수립까지 북소관계를 정의하는 기존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주도가 되어 소비에트식 체제를 만들 목적으로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을 '꼭두각시'로 내세웠다는 관점이다. 이는 분단의 상황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관점이다. 둘째는 소련의 역할이 북한의 민족적 발전과 국가건설을 위한 원조와 조력에 한정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당연히 옛 소련 측이 내세웠던 선전적 논리이다. 셋째는 북한 측이 주도가 되어 체제 구축과정을 진행하였다는 관점이다. 이는 소련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은 채 혹은 주목하지 못한 채 북한 주도세력의 행동에만 시선을 집중하는 관점이다.

이 책은 이 세 가지 관점 모두를 비판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해방 후 북소관계에서 소련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그 반대로 소련의 일방적 지도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도 옳지 못하다.” “북한 국가 형성 과정에서 소련의 주도권이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대소 독립 또는 종속 따위로 나누는 연구모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컨대 저자는 해당 시기의 북소관계에 기존의 세 가지 관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저자는 러시아 문서보관소들에 소장되어 있는 해당 시기 북소관계 사료들을 포함한 국내외 자료들을 통하여 해방 후 북한 정치체제에 참여한 정치세력과 소련의 지도부를 추적하고 그들의 활동상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저자가 주목한 것은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안 작성과정, 북한 헌법제정 경로,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1946년)와 북한 정부의 내각 구성안 작성과정 등과 같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소련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례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저자는 북한 측과 소련 지도부를 정책적 행위의 “공동주체”로 규정하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게 되었다. 요컨대 “북한 체제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소련의 지도적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그 역할을 규정지은 것은 소련과 남북 공산당의 상호작용”이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공동의 행위주체란 상호 동등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지만, 양자 간에 상호의존도가 높은 관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모스크바 결정, 토지개혁, 군대 조직, 헌법 제정 등 북한 국가 수립 과정의 주요 국면들에 이러한 (공동행위주체의) 구조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북소)

양측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일치"했고 "해방 이후 북한 정부 수립까지 소련과 북한 지도부는 단순한 물리적 협력관계 이상으로 내적인 결합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자는 두 가지의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이 애초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른바 분단 책임론의 문제이다. 사실 한반도 분단 책임론과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훈령을 통하여 "북조선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власть) 수립에 방조할 것"이라고 지시한 대목을 근거로 소련 측이 애초부터 분단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1946년 6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분단국가 수립의 첫걸음이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의 경향도 존재한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과 소련, 좌와 우, 어느 쪽이 먼저 분단을 추구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모든 당사자들이 자기 세력이 우위에 선 단일국가 수립을 원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해방 직후 미소와 한반도의 정치세력들이 자기주도의 단일국가 수립을 추구하였고, 남북한의 어떠한 정치세력도 처음부터 분단국가의 수립을 기도하지는 않았으며, 분단국가의 출현은 자기 주도의 한반도 단일정부 수립을 위한 모든 세력의 기대가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위를 통해 수포로 돌아간 결과이기 때문에 분단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인식체계에 적지 않은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주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자의 글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저자가 왜 이러한 관점을 제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바가 아니다. 저자는 이 관점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1945년 9월 20일

자 스탈린의 훈령을 북한 분단국가 수립의 시초로 정의하고, 이후의 정치 과정을 이 행보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서술하고 해석함으로써 북한정치사 연구의 기본 구성틀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자 하는 듯하다. 미소공위 결렬 이전에는 미소를 비롯한 남북 양 진영 공히 분단국가 수립의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저자의 판단이나 1945년 9월 20일 스탈린 훈령의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이 가지는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 항변은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스탈린의 훈령이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건 혹은 미국과 소련,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의도했던 다른 무엇이건 한반도에 실제로 발생한 분단을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의 주체와 상황은 당연히 있는 것이며, 이를 찾아내고 알리는 것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감당해야 할 숙제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은 북한사에 대한 파벌투쟁적 접근을 지양하는 것이다. 파벌 간의 권력투쟁을 북한사의 중심에 놓고 서술하는 기존의 북한사 연구 경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사 서술의 모순적이고 단선적인 구조로부터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좌우세력의 대립 속에서 정치적 역동성이 뚜렷했던 남한과는 달리 공산당(노동당)이라는 사실상의 독점적 정당 구조 내에서 대립보다는 협력과 엄격한 이념적 규율에 입각한 노선 경쟁을 주요한 특성으로 하는 북한의 정치사를 보다 진실에 가깝게 복원해 내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파벌을 “정당 내에서 주도권 획득과 같은 특정한 이익을 위해 결합한 분파”로 정의하면서 해방 이후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이러한 규정에 묶어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해방 초기부터 북한 국가수립 시까지 ‘빨치산계’,

'국내계', '연안계', '소련계'[1] 등 4개의 계열 간에 자기만의 이해관계가 뚜렷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의 인적 관계가 상호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세력이 분화되어 파벌을 형성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있었던 1920년대의 분파투쟁과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종파투쟁을 보는 시각이 해당 주제의 연구에 가져다 준 부정적 의미를 익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초기 북한사에 대한 파벌투쟁적 시각으로의 접근이 꺼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중첩적인 정치과정이 권력투쟁이라는 단선적이고 정형화된 틀을 통해 왜곡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릇 정치란 권력투쟁을 그 본질로 하고 있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외부 집단을 상대로 한 투쟁 뿐 아니라 내부 집단들 사이에도 거의 예외 없이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초기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위의 4개 집단이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듯이 "정치적 이익에 입각한 조직구성이라기보다는 출신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른 것뿐일지라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4개 집단 각자에게 형성된 내적 유대의식과 고유한 특성화는 각자의 집단을 초월하는 공통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언제이건 노출될 수 있는 표상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물론 기우이겠지만, 해당 시기 북한 지도부 내 내부 집단들의 존재와 그 내부 집단 간의 투쟁이 다른 모든 현상에 우선하여 논의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무시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

1) 저자는 연구자들이 해방 초기 북한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들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식인 '빨치산파(만주파)',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이 책에 '빨치산계', '국내계', '연안계', '소련계' 등의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Ⅲ

이 책은 모두 6개의 장과 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해방 전 소련의 대한정책과 국내외 운동세력'에서는 해방 이전 소련이 한반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와 그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구상을 분석하고, 빨치산 그룹을 비롯한 조선 정치세력의 동향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해방 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과 관련하여 "대일전 참전이 결정된 얄타협약 이전에는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소련의 전통적 이해관계와 전후 극동정책 수행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소련의 개입의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구체화되었던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기본 목표가 "어느 열강이든 독점적인 지위를 배제하며, 독립된 조선과 반드시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빨치산 그룹을 비롯한 조선 정치세력의 동향 부분에서는 장차 북한의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김일성그룹을 비롯한 국내외 한인 정치세력의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그룹에 대해서는 러시아 자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여 1940년 동 그룹의 소련 영내 이동부터 해방 직전까지의 활동 및 상황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저자는 소련의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김일성그룹은 중요한 지원세력인 것은 틀림없지만 다른 공산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이 자신이 지지하는 김일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공산주의자들을 소외시켰다는 전통적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2장 '해방과 정치체제의 태동'에서는 해방 직후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초기 정책, 공산당을 비롯한 각 정치세력의 활동, 행

정체계의 성립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초기 정책 부분에서는 과거 소련에서 발간된 관련 책자들을 주로 인용하여 소련군의 북한 내 전투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소련의 북한 진주 초기 정책을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와의 관계, 대북한정책의 기본 지침인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 수립' 노선 등과 연관시켜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 수립'을 북한에 이른바 분단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지시로 이해하는 학계 일각의 시각을 논박하면서, 이를 소련이 "북한 내 좌우 연대를 통해 소련에 우호적인 권력기관을 수립하여 자신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서 '친소적' 기반을 공고히 한 다음 전국적인 정부 수립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복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산당을 비롯한 각 정치세력의 활동 부분에서는 장차 북한 국가 수립의 주축이 되는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북한 내 김일성의 입지를 그의 귀국 후 활동 및 다른 지도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시기 박헌영과 김일성의 양자관계가 "알력과 견제보다는 협력적 색채에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체계의 성립 부분에서는 북소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해방 초에 개시된 정권기관과 당, 그리고 무력의 조직화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관련 자료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 모든 조직화 과정에서 "소련군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쪽과 공동으로 사전 의견 조율을 거친 관계로 일방적일 수 없었다"는 자신의 관점을 입증하고 있다.

제3장 '정책의 전환과 변화의 동력'에서는 모스크바 결정과 북한 정세의 변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토지개혁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한반도 운명의 변곡점이 된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소련의 입장과 수행한 역할,

결정 직후 북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모스크바삼상회의 이전 소련의 한반도 구상에서 가장 일관되고 핵심적인 내용은 조선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이었지, 신탁통치(혹은 후견)의 실시는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5년 동안의 "탁치 실시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를 합의"해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이후 신탁통치 정국 하에서 북한의 '민주기지론'이 제기되는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조만식그룹의 이탈이 가져온 정국의 급변이 중앙정권기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회경제 구조를 뒤바꾼 토지개혁에 대하여 공산지도부의 구상으로부터 최종안의 도출을 위한 경로, 개혁의 실행 결과를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민주기지 강화 정책의 구체적 실천단계 중 하나로 보고 민주기지 강화와 관련하여 대다수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토지 문제의 해결, 즉 토지개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4장 '타협과 독자적 발전의 길'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의 대미 협상전략과 제1차 미소공위 이후 소련의 정책 변화, 주도세력의 연합과 강화 일환으로서의 북조선노동당의 결성, 권력의 정통성 확보를 의도한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와 북조선인민위원회 창설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미소공위와 관련하여 소련대표단에 하달된 훈령들과 미소 협상에서 제시된 소련 측 안을 토대로 소련의 전략과 정책을 규명하고,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민주개혁을 포함한 주요 정치적 국면의 검토를 통하여 북한 정국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러시아 사료를 통해 미소공위에서 소련 측의 일관된 입장이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조선인들이 반소, 반공적이 돼서는 안 되며 ..... 소련의 이해관계에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련

측이 미소공위의 결렬을 실패로 보지 않고, 아예 “공위에서 반동 세력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을 승리”로 간주하였음을 밝혀내고 있으며,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공산측이 미국과 남한 우파세력과의 “타협이나 협상보다는 ..... 북한의 민주근거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일환으로 노동법령, 남녀 평등권법령, 주요산업 국유화법령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변화 가운데 주도세력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단행된 북로당의 결성 배경과 조직 구조, 지도체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러시아 사료를 근거로 북한 내 공산당과 신민당의 노동당으로의 합당이 스탈린의 권유에 따른 것임을 밝히면서, 합당의 이유로는 “한반도 차원에서 공산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당의 색채를 완화해서라도 좌파의 단결뿐 아니라 여타 세력과의 통일전선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력기관의 임시성을 제거하고 적법성을 불어넣고자 실시한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의 추진 과정 및 선거 상황을 규명하고, 임시인위가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조되는데 따른 조직적 변화와 이 기관의 독자적 권한 확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공산 측이 분단의 고착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독자선거와 권력의 합법화에 나선 이유와 관련하여 ‘확보된 지역에서 사회주의 굳히기’라는 전통주의적 주장을 반박하면서, 북한 지역을 정치경제적으로 강화시켜 전 한반도 차원의 혁명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북조선 민주기지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5장 ‘내부 체계의 정비와 제2차 미소 협상’에서는 남북, 북소 주도세력들의 상호작용과 북한 내 권력구도의 변화, 제2차 미소공위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우선 주도세력들의 상호작용

부분에서 저자는 내부 지도체계 정비과정에서의 남북과 북소 공산주의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북한 내 권력구도, 소련 민정체계의 개편 등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제2차 미소공위의 재개 준비와 전개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소공위 재개에 즈음한 소련 측의 새로운 전략과 공위 과정에서 이의 실현을 위한 시도를 살펴보고, 공위 사업의 결렬 원인과 소련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6장 '정부 수립의 여정'에서는 분단정부 수립을 대비하는 모습, 통일과 분단의 갈림길로서의 남북연석회의, 북한의 헌법, 최고인민회의 선거, 북한정부의 수립과 소련군 철수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저자는 분단정부 수립을 대비하는 모습의 하나로 공산 측이 가지고 있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해방 직후 진행된 무력 조직이 국가 수립의 물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인민군의 창설로 이어지는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연석회의 부분에서 저자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분단을 저지할 목적으로 소집된 것에 의미를 두고 고찰하는 경향성을 뛰어넘어 이것이 실패할 경우 공산 측 지도부가 그린 구체적인 구상과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연석회의를 치르면서 공산 측은 통일정부의 굴레에서 벗어나 '반동세력'과 함께하는 통일정부 보다는 자국에 우호적인 분단정부를 선호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어서 분단정부의 수립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북한의 헌법 제정 부분에서는 헌법의 초안 작성부터 제정까지를 둘러싼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그 과정이 "밑에서부터 소련공산당 정치국에 이르기까지 입장을 개진할 만큼 복잡한 경로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북한정부의 수립 부분에서는 북한 국가 수립의 최종단계로서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된 조선최

고인민회의 선거의 준비와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남쪽 '지하선거'의 실체를 조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북한 정부의 조직적 구성과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보론 '소련의 대한반도-북한 정책 관련 기관 및 인적 구성'에서는 해당 시기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조직이었던 당 중앙위원회 기관, 외무성, 무력성, 연해주군관구, 제25군 사령부 및 민정부(민정국), 경무사령부 등의 구조와 역할, 관련 인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Ⅳ

국내의 일반 연구자들에게 북한사, 북소관계 관련 러시아 자료가 알려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이다. 몇몇 연구자들이 극히 기본적인 정보만을 가진 채 러시아의 문서보관소들을 찾고 자료를 발굴해서 국내에 소개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국내로 반입된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러시아연방 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ЦАМОРФ)'와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Ф)',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때 들여온 자료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책자의 형태로 발간되어 일반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개별 논문들에 이따금씩 모습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문서자료가 해방 전후 한반도와 북한의 상황과 그에 대한 소련의 정책을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서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문헌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 책은 가치가 있다.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해당 시기 자료 거의 전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의 진

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실로 탄생하였기에 그렇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때때로 새로움을 넘어 곤혹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러시아 문헌 자료들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보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타인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불편함과 당혹감을 느낀다. 냉전의 상대측이었던 소련/러시아의 자료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이었고, 현재도 많은 부분 타인의 시선일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군사연구기관 조정위원회 연례회의 개최

- 일자 / 장소 : '19. 3. 28.(목) / 연구소 회의실
- 참석인원 : 합참, 육·해·공군 및 해병대 관계자
- 주요내용 : 2021~ 2025 중기계획 발표 및 조정

○ 19-1차 군사사 연구논문 발표회

- 일시 / 장소 : '19. 3. 29(금) / 연구소 회의실
- 참석인원 : 40여 명(연구소, 군사사학회, 군 및 학계연구자 등)
- 세부진행

14:30~14:40	개회사,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4:40~15:30	제1주제 : 한국의 의장기에 대한 고찰 · 발표자 : 김주미 (가천대) · 토론자 : 노영구 (국방대)
15:30~16:20	제2주제 : 임진왜란 당시 팔공산 권역의 의병활동 연구시론 · 발표자 : 최재호 (육군3사관학교) · 토론자 : 김진수 (서강대)
16:20~16:30	휴 식
16:30~17:20	제3주제 : 원주원씨 무반가문의 벌열화와 근거지 확산 · 발표자 : 신채용 (국민대) · 토론자 : 이근호 (고려대)
17:20~17:30	맺음말씀, 사진촬영, 폐회

○ 19년도 전반기 군사학술교류 세미나

- 일시 / 장소 : '19. 4. 4.(목) /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4F
- 참석인원 : 50여 명(연구소 및 군사사 연구자 등)
- 세부진행

13:30~13:40	환 영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13:40~14:00	기조발표 (이재석 / 인천대 교수)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와 변환기 한국의 선택"
제 1 부 사회: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	
14:00~16:00	중·소국의 안보를 위한 대외정책 · 발 표 : 김진호(경향신문사), 안상욱(부경대), 김종일(아세아연합신학대) · 토 론 : 이신재(군편소), 이강수(전쟁기념관), 이정우(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16:00~16:20	휴식
제 2 부 사회: 신복룡 (건국대 명예교수)	
16:200~17:50	한국역사상의 자주적 실리 외교의 교훈과 한국 외교의 길 · 발 표 : 윤명철(동국대),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 토 론 : 이삼성(한림대), 심헌용(군편소)
17:50~18:00	폐회

2. 신규 임용 (4. 1. 부)

○ 군사사부 부장 : 심헌용 박사

○ 국제분쟁사부 군사사연구원 : 남보람 박사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內

1. 원고 내용 및 범위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군사제도、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논문」,『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00에 관한 연구」,『군사』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imhmnd.2017.105..103.010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학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윤재두)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부분개정 2017. 8. 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 314
제2조 적용대상 ····· 314
제3조 적용범위 ····· 314
제4조 용어의 정의 ····· 314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315

제2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316
제7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317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318

제 9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318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318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319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319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320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320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321
제16조 판 정 ····· 321
제17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321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322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 322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323
부 칙 ····· 3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 논문 · 간행물 · 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 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 · 판단하는 기구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1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 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논문표절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이 있는가?

A)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유사율은 곧바로 표절을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유사도가 높은 논문을 검출하거나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사율이 높아도 해당 분야에서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나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표절이 되지 않으며, 낮은 유사도라 할지라도 타인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표절의 대상이 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유사도율을 지정해서 표절을 판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의 '연구부정행위조사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유사도율이 높게 나와 해당 부분이 출처표시 대상이라면 출처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7. 인용 및 출처 표시 등

①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②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편집위원장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광서(조선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연세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근욱(서강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신재(군사편찬연구소)
이한우(서강대학교)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정용욱(서울대학교)

편집간사
윤재두(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9/6(第111號)

2019년 6월 3일 印刷
2019년 6월 15일 發行

發行處_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_ 국군인쇄창 (M19050563)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硏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청렴세상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PEN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Military History Vol. 111. 2019.6.

Kim, Seon-ho —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North Korea's National Ministry of Defense and the Composition of it's Organization

Yang, Yong-Jo — The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of Japanese Laborers and their repatriation in the US military Bases in Japan

Im, Seong-soo — The Flexibility of Suwonbu(水原府) gunyeok(軍役) and implement of dongpoje(洞布制)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Jong-soo — The Status of Defense at the Initial Period of Imjin-War(壬辰倭亂) and the Seongju(星州) Combat

Hong, Young-ho — The time of construction and nature of the valley encircling fortresses, called as 'Pogoksic' one, on the flatland sites in the East Coast of Gangwon-do

Sohn, Han-byeol — The India's Defense Reform: Searching for Expertise and Jointness

Bae, Eun-suk — The Implication of the Roman Siege Warfare from the Tactical Point of View in the Gallic Wars

Lee, Jae-hoon — North Korean History and North Korean-Soviet Relations with a New Seeing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